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2020. 2.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2020. 2.



CONTENTS

I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 추진 배경 / 1
2. 협의회 구성·운영방식 / 1
3. 진행 경과 / 4

II 주요 논의내용

1.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 5
2. 인터넷망 이용 환경 개선 / 20
3.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 35
4.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 47
5. 개인정보 규제 개선 / 52
6.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58

III 참고 자료

1. 발제 자료 / 69
2. 회의록 / 194

I.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 추진배경

- 국내외 기업 간 공정 경쟁과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효과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19. 6월 ~ 20. 1월)

2 협의회 구성·운영방식

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 (위원) 학계·법률 등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통신·인터넷 국내·외 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및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 <첨부>

* 인터넷기업(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콘텐츠연합플랫폼, 시지온), 통신사(SK, KT, L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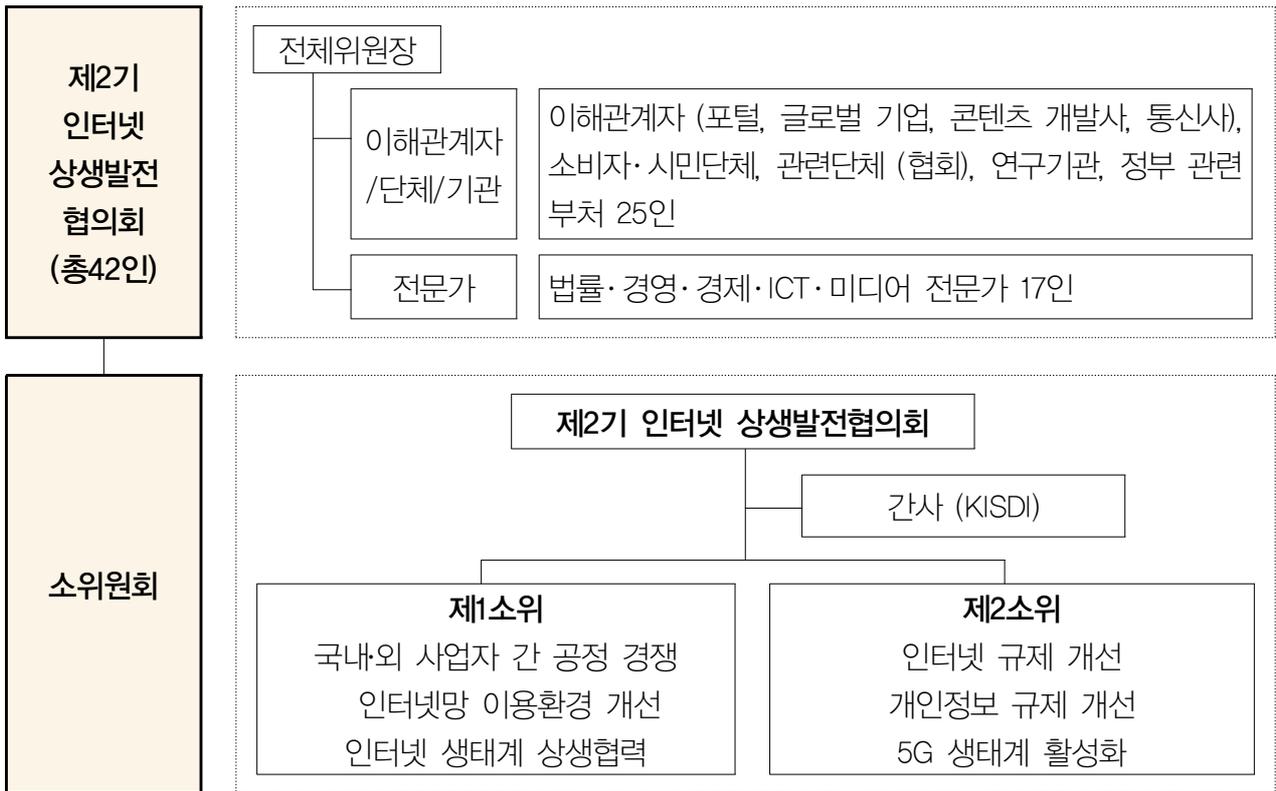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기 협의회와 논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의제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 구성원 수를 조정(47인 → 42인)

– (위원장) 전문가 중에서 이원우 교수를 선정,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주재·논의 안건 조율 등을 담당

- (운영 방식)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정부 내 인터넷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
 -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하되, 참석을 원할 경우 1, 2 소위 구분하지 않고 참여 가능



- (논의 의제) 인터넷 분야의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해소, 5G 시대에 적합한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의제 선정·논의
- (운영 기간) 약 7개월 간 운영(19. 6월 ~ 20. 1월)
- (회의 진행) 발제자의 의제 발표 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별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회의 공개) 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동의를 받아 공개 가능
- (활용 방안) 논의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정책 수립에 참고

나. 소위원회 구성 및 논의 의제

- (구성) 각 소위원회는 협의회 위원 중 전문가(8~9인), 소비자시민단체(2~3인) 및 사업자단체(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 구성하고,
 - 사업자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논의·검토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기업들, 오픈넷과 진보네트워드는 1소위 3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정한 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라는 명칭과 협의회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이후 협의회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
- (제1소위원회)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논의

<제1소위원회 구성(13인)>

성명	소속직책	비고	성명	소속직책	비고
이원우 (전체위원장/소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법률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ICT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소비자 시민단체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소비자 시민단체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법률/ICT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협회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미디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협회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 (제2소위원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및 개인정보 규제 개선,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논의

<제2소위원회 구성(13인)>

성명	소속직책	비고	성명	소속직책	비고
최정일 (소위원장)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법률/ICT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소비자 시민단체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경영	오병일	진보네트워킹 대표	소비자 시민단체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법률/ICT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소비자 시민단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률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협회
김범수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개인정보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협회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경영			

3 진행 경과

● (전체회의) 총 2회 개최(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1회)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9. 6. 19)	협의회 운영계획, 기조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운영계획 및 운영규정 ○ 5G 시대의 시장·기술 환경 변화 및 정책 이슈 ○ 인터넷/통신사 분야별 주요 이슈 및 정책 과제
2차 (20. 1. 30)	결과보고서 (서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별 결과 보고 ○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 확정

● (제1소위원회 회의) 총 5회 개최(대면회의 4회, 서면회의 1회)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9. 7. 22)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망 이용관계 관련 법률개정안 검토 ○ 국내대리인, 임시중지명령 관련 법률개정안 검토
2차 (19. 10. 22)	글로벌 공정경쟁을 위한 법제도 개선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정 경쟁을 위한 인터넷망 제도 개선방안 논의
3차 (19. 11. 19)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망 이용 현황 및 인터넷기업/통신사 의견 ○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 검토
4차 (19. 12. 9)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의 중소CP/스타트업 지원 현황 및 계획
5차 (20. 1. 20)	결과보고서 (서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소위 결과보고서 확정

● (제2소위원회 회의) 총 4회 개최(대면회의 3회, 서면회의 1회)

차수	안건	주요 논의내용
1차 (19. 9. 27)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 인터넷 기업의 규제 개선 의견 검토
2차 (19. 11. 12)	개인정보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의제도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규정과 보호사례
3차 (19. 12. 13)	5G 생태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토대 ○ 경쟁 양상의 다변화에 대응되는 정책공간의 확대
4차 (20. 1. 20)	결과보고서 (서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소위 결과보고서 확정

II. 주요 논의내용

1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 ◆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및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에 관하여 총 2차례(1소위 1·2차 회의) 논의
 -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명령 관련 법안, 망 이용 관련 법안과 제도 검토 등
- ◆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 등 논의

가. 개요

-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문제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관할권의 문제와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조사·제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된 집행 실효성의 문제로 구분됨
 - 해외 사업자에 대한 방통위의 규제사례 및 법원의 관할권 인정, 전기통신사업법상 역외적용 규정 신설(18. 12월) 등으로 관할권 문제는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금번 협의회에서는 집행 실효성 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에 집중
 -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필요성 등 검토
 - ※ 18. 9월 정보통신망법에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19. 3. 14. 시행)
- 인터넷망 이용 관련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 경쟁 기반 조성은 기간-부가통신사업자간 망 이용관계에서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중심으로 논의

- 18년 구성·운영된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한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하여는 아래 “Ⅱ.2.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서 검토

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 논의 배경

-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규제기관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청 등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어 18. 8월 정보통신망법에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
 - 더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동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 여부 및 도입 시 통상법 위반 가능성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김성태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8. 2월) 외국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을 처리
 - 해외사업자의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국내대리인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정 조치·과징금 부과 가능
 - 국내대리인 미지정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 (박선숙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 4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국내대리인은 이용자 보호 업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명령의 이행,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송부 의무의 이행, 요금한도 초과의 고지, 통계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의 이행을 대리

- 국내대리인의 의무 위반행위를 해당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의제하고, 국내대리인 미지정시 과태료 부과

■ 주요 쟁점

- (과잉 규제 여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국내대리인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과잉 규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 존재
 - 국내대리인 제도의 모태가 된 유럽연합 GDPR의 역내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측면에 한정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을 요구
- (통상법 위반 여부) 해외 사업자에게 광범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할 경우 현지주재의무 금지 원칙(한미FTA 제12.5조), 내국민대우 원칙(한미FTA 제12.2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 존재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1) 인터넷 기업

- 해외 기업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에 제반 절차 및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국내시장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될 우려
 - 이는 우리나라가 산업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립되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결과가 초래될 상황도 고려해야 할 문제임
- 한미 FTA에 따른 현지주재의무 금지 조항,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EU GDPR의 역내 대리인 제도는 회원국 밖에서 대규모로 빈번하게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취지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는 단순히 해외 기업에 대한 제재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

2) 일부 중소 CP

-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외사업자가 이미 국내에 자회사를 두고 있어 규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범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은 법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 소명 등 규제기관과의 연락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하지만 사실조사時 국내대리인의 서류·자료만으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며 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될지 미지수임
- 국내대리인 미지정時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에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부과할 필요
 - 국내시장 진입의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한국에 수요가 있는 이상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비용과 투자일 것으로 생각함

3) 통신사

- 해외에 기반을 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국내법을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국내대리인 제도를 통해 이를 규율할 필요
 - 다만,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시정명령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 준수 및 규제기관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대리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대리인에게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절차적인 업무로만 국한할 필요
 - 한편, 제재 수단이 과태료에 국한되는 경우 집행력에 한계가 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 다만, 한미 FTA상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및 내국민 대우 조항에 위배되고, 해외 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다. 임시중지명령 제도 도입

■ 논의 배경

- 급속도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 규제에 앞서 임시 명령을 통해 피해의 확산을 막는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이종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 4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고,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변재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8. 2월) 개인정보 침해 관련,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휴·폐업으로 연락 불가능 또는 이용자 피해 확산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 호스팅서비스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역무 제공 중단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주요 쟁점

-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임시중지명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전기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임시중지명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등이 중단될 경우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

- (과잉규제 여부)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유사 목적을 위한 다양한 사전·사후 규제 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 기존의 규제 수단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효율적이면서도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1) 인터넷 기업

- 임시중지 명령은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내려지고 있음
 - ※ (전자상거래법)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광고법) 부당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광고행위
 - 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우선 조치 위한 행위로서, 개정안의 금지행위 일시중지 조치와는 차이가 있음
- 개정안의 임시중지 명령의 대상인 금지행위가 임시중지에 적합한지 의문임
 - 일부 금지행위(예: 제50조제1항제2호 '협정체결의 거부' 등)는 긴급한 조치 등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며, 임시중지 명령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임시중지 명령의 중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범자가 받을 불이익이 과도하게 커져 사실상 무기한의 금지가 될 수 있음
 - 이행명령을 받을 경우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인해 명령을 받은 경우 고지만이 아니라, 이용자 환경(UI)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수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
 - 이를 간과하고 서비스를 중지시킬 경우 이용자들은 막대한 편익 침해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됨

- 개정안은 어느 범위까지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전기통신망 시설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사업자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일부분에 문제 발생시 전체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이 정하는 금지행위보다 더 큰 사업자와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함
- 개정안의 경우 임시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는 임시중지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그러한 절차가 없음

2) 통신사

- 금지행위 위반 또는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불공정 경쟁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
 - 그간 정부가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가 가중
 - 다만, 규제 집행력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 (찬성) 이용자 피해 예방의 긴급성을 고려할 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판단 이전에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엄격한 발동요건을 규정할 필요
 - 절차적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 과잉금지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존재

- (반대) 전기통신사업이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 급박한 위험이나 시정조치 불이행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므로 규제 적합성에 의문이 있음
 - 이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복규제이며, 행정기구에 의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확대할 위험이 있음

라. 망 이용 관련 금지행위, CP의 품질유지 의무 도입

■ 논의 배경

- 17년말부터 통신사-CP 간 망 이용 계약에 있어 당사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한 차별적 가격책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네이버는 17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CP가 국내법에 따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수익만 챙긴다고 비판
 - 국회·언론 또한 통신사가 국내 CP에게는 망 이용료를 높게 부과하면서,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등 글로벌 CP에게는 망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게 부과하는 등 차별한다고 지적
 - 18년 구성·운영된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및 협상 과정에서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료 실태 파악, CP의 불공정행위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등의 정책방안 제시
 - 이 중 망 이용료 실태 파악 및 CP의 불공정행위 금지, CP의 품질유지 의무 등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어 금번 협의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논의
- ※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하여는 “II.2. 인터넷망 이용환경 개선”에서 검토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 (김경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8. 9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유민봉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 3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일정 수준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망용량 확보 등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이용·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및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품질 저하 행위 금지
- (노웅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9. 10월)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및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를 금지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변재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8. 10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국내에 서버 설치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주요 쟁점

- (CP의 품질 유지 의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CP(부가통신사업자)에게 네트워크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일정한 품질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대립
- (CP의 불공정행위 금지) CP는 이용자이므로 통신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견해와 CP도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최종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

-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한미 FTA의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은 인적 요소에 대한 조건 부과의 금지를 의미하여 서버 등 물적 설비에 대한 조건 부과는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실질적으로 현지 주재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1) 인터넷 기업

① CP의 품질유지 의무

-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판단 기준과 범위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존재함
 - 부가통신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결여된 입법이라고 판단됨
 - 또한, 이용자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동영상 등을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가 가해진다면, 단순히 플랫폼만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게시물에 대해 사전검열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
 - 특히, 트래픽양은 시간별·사안별 유동적이며 기술·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변화하여 법률로 일정 기준을 정하기 어려우며,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임
 - 인터넷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임
-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망을 이용하는 고객이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의무를 지워야 할 대상이 아님
 - 또한, 적절한 망 용량 확보는 이미 CP의 사업적 판단으로 진행하고 있고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전부 망 용량의 문제인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 품질을 명목으로 망 용량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한편, 품질저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규율하려고 하는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음

- CP는 사업적 판단에 의해 망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전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임

② CP의 불공정 행위 금지

- 제안이유에서는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CP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나, 개정 법문에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부가통신사업자를 수범자로 규정

- 이용자수, 트래픽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과 함께 국내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망 이용계약과 관련해 CP는 판매자인 통신사에 대해 을의 입장에서 오히려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체이며, 그 외의 일반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③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 실효성이 의심됨

2) 일부 중소 CP

- OTT 서비스 시장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망 이용료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시일이 많이 걸리는 법 개정 앞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CP의 품질유지 의무는 역차별 해소보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규제의 수준을 맞추는 상향규제는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결국 집행력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만 더욱 강화되는 부작용을 초래

3) 통신사

① CP의 품질유지 의무

- ICT 발달에 따라 기간·부가통신사업자는 모두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수준의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

② CP의 불공정 행위 금지

- 일부 글로벌 CP에 의한 서비스 품질저하 방지, 인터넷망 무임승차 해소, 국내외 기업간 공정 경쟁 등을 위해 차별 금지 및 협정 체결 의무화 필요

- 현행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이용·임차 관련 금지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에 부합

※ 예: 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9항제9호 신설(설비 등의 이용, 임차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 하위법에서 계약상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트래픽을 우회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가능

- 다만, 사후규제 성격인 금지행위로만 규율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기본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예: 제44조의2로 신설하는 방안(제44조: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③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CP 등에 대해 국내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

-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서버의 범위를 ‘콘텐츠를 임시 저장하기 위한 서버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④ 기타

- 그 밖에 품질평가 실시, ISP에 대한 트래픽 관리책임 부여 등의 방안도 제안
 - (품질평가 실시) 적정품질 서비스 제공 의무 보장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품질평가 시행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대상 품질평가가 품질경쟁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19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까지 확대
 - OTT 사업자가 기존 방송사업자 지위를 위협하는 등 과거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가 ICT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 대상 품질평가 시행 필요
 - (ISP의 트래픽 관리책임) 특정 CP로 인해 타 CP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에 ISP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임 부여
 - 별도조항 신설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ISP의 부가통신사업자 트래픽 관리 등 조문을 신설하거나 기존 트래픽 관리기준 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유형 추가
- ※ 규정 예시: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일방적인 라우팅 변경이나 트래픽 증가로 인해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여 트래픽의 전송지연이나 패킷손실, 새로운 접속연결 수용 곤란 등 통신망의 품질수준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때는 해당 콘텐츠 제공사업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속도 이하로 제한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하는 경우

■ 소위원회 논의결과

◆ 대형 CP에게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① (반대) 최근 거대 CP의 등장 등으로 인해 인터넷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더라도 네트워크단과 이를 이용한 CP단은 구별되고 각각의 책임도 구분되므로,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되기 어려운 책임을 CP에게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특수유형이 아닌 일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설비조건과 같은 물적 시설과 기술적 조치를 요구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진입 규제를 실시하는 것이며, 콘텐츠 계층에서 국제적으로 찾기 어려운 규제 내용을 담고 있음
- 기본적인 전송서비스가 아닌 이용자의 이용방식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어 아직은 CP에게 인터넷망 품질유지를 위해 사전에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움

② (찬성)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ISP와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을 하고 있는 CP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 의무 부과가 필요

- CP가 보유/운용 중인 Server Farm이 ISP와 BGP로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CP의 Routing Policy에 의해 ISP가 통제할 수 없는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① (반대)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인 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CP와 CP의 고객間 관계는 공정거래법 등 他소비자법제에서 다룰 문제이고 망의 품질을 다루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님

- 인터넷망의 이용질서와 생태계의 특성상 상호성이 강하여 품질 저하를 누가 유발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고, 품질 저하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어려움
- 금지행위로 규정하면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므로, 우선 구체적인 시장 상황 및 이용자 피해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입법은 선행분석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존재

② (찬성) 품질 저하 금지 규제는 행위규제 중 하나로서 타당성은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준비(합의 도출, 모니터링을 위한 규제비용 등)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인터넷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품질(속도)이 저하된다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 다만, 최선형인터넷의 특성상 속도 저하의 원인 및 그 원인을 야기한 주체를 규명하기 쉽지 않고, 속도 저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선정, 사업자의 고의 입증 등의 문제가 있음

◆ 망 이용관계에서 ISP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 행위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① (찬성) ISP와 CP 모두가 협상력에 기초한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어느 일방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인해 최종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양측 모두가 수범자에 포섭되는 것이 타당함

- 이제 CP도 단순한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최종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SP 또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금지행위 의무 부담 주체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
- 협력 의무를 전제로 사후적으로 불공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의 규제는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② (반대) CP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이용자이므로 통신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 등 他소비자법제로 다루야 함

- 금지행위로 규정하면 직접적인 제재가 부과되므로, 우선 구체적인 시장 상황 및 이용자 피해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입법은 선행분석 이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존재

◆ 대형 CP에게 국내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① (반대) 국가에 의한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는 효과가 크며, 불필요한 캐시서버 접속료 부담을 발생시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물리적 서버 지정은 규제 실익이 작음

- 또한,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에 특정된 규제이므로, FTA 등 통상법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내국민 대우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임

② (찬성) 글로벌 CP가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용자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 보호, 동등 규제 등을 위해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는 적절

◆ 그밖에 상호접속고시에서 발신자 종량제를 폐지해야 공정한 상호접속계약이 가능해지며, 현재는 망 사업자들 간 경쟁을 제한하여 접속료를 과도하게 높아지게 만들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됨

2 인터넷망 이용 환경 개선

-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하여 1소위 제3차 회의에서 논의 진행
- ◆ 방통위/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 방안 등 논의

가. 논의 배경

-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망 이용료 차별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됨에 따라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를 제안
 - 18. 11월부터 방통위·과기정통부·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 (18. 11월 ~ 19. 6월) 연구반을 통해 통신사·CP 등 업계 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내부 초안 마련
 - (19. 7월)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통신사·CP 대상 비공개 의견 수렴
 - (19. 7월 ~ 10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 및 수정안 마련
- ※ 19. 12. 26일 수정안과 동일 내용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완료

나. 가이드라인(안)의 주요내용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제1장 총칙	가이드라인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제2장 계약 절차 및 조건	계약의 원칙, 계약서 작성 원칙, 정보의 제공 등
제3장 불공정행위	불공정행위 유형, 부당성 판단기준
제4장 이용자 보호	ISP의 의무, CP의 의무
제5장 보칙	관련 법령 준수, 시행일 등

■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 (규정의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의 취지) 인터넷액세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 간 거래 요소의 대가인 망이용대가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망이용대가를 산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
 - 인터넷생태계를 구성하는 ISP, CP, 최종이용자간 이루어지는 계약 및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억제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를 강화토록 하는 것, 더불어 양자의 균형에 초점

■ 제2조(용어의 정의) 및 제3조(적용범위)

- (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따른다.
 1.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란 콘텐츠 제공 사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등 전송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 Provider)”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CDN: Content Delivery Network)”란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콘텐츠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적용된다.

- (규정의 취지) 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용대가에 있지 않고 이용계약에 있음
 - 따라서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사업자간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

■ 제4조(계약의 원칙)

- (규정의 내용)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이하 “이용계약 당사자”라 한다)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계약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상한다.
 2.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3. 계약의 규모,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규정의 취지) 정부규제보다는 혁신이 필요한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간 자율적인 거래방식까지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

■ 제5조(서면계약)

- (규정의 내용)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요청은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 분쟁 발생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규정의 취지) 국내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며,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서면 이용계약 요청을 원칙으로 제시
 - 일부 사업자의 구두 계약요청과 취소 등 사업자간 불성실 계약 요청 사례가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계약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상호 간 신뢰확보 측면에서도 유의적이며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사후규제기관의 조사, 심결 과정에서 증거 기반결정(evidence-based decision)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높음

■ 제6조(계약서 작성 원칙)

- (규정의 내용)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및 제3자가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3.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전송용량, 이용기간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규정의 취지)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인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의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으로, 각 호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조항임

■ 제7조(정보의 제공)

- (규정의 내용) ① 이용계약 당사자 간에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상대방은 이에 응한다.
- (규정의 취지)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투명성이 가장 요구됨
 - 거래 과정에서 정보를 통제하려는 목적은 거래정보 노출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기피하는 측면도 있으나 양사 간 거래조건이 공개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측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협상력이 낮은 측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싶어도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등을 이유로 실행할 수 없는 현실임
 - 따라서 이용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상호 간에 투명한 거래가 필요하므로, 이를 불이행 시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임

- 최근 일본 정부도 글로벌 IT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계약 조항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거래 정보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결정

※ 日 정부, GAFA의 거래 관행 규제를 위한 정부(안) 제시, 2019. 4. 24., INCA Brief, (日經電子版(2019), 巨大IT規制 社名公開や独禁法適用へ 政府案提示, 2019. 4. 24., 産経新聞(2019), 政府が巨大IT規制案 取引条件の開示で新法 違反に社名公開株式会社 産経デジタル, 2019. 4. 24.)

■ 제8조(불공정행위 유형1)

- (규정의 내용) 이용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내용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4. 이용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규정의 취지) 1~4호 모두 사업자 인터뷰 등에서 실제 사례로 언급된 바 있음
 - 일방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안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협상력 우위, 즉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방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연, 거부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행위는 일종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함

- 자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타사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타사에도 계약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함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소위 담합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에서 당연위법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됨

■ 제8조(불공정행위 유형2)

- (규정의 내용) 이용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규정의 취지) B2B 거래에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제공 조건, 특히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수준이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임
 - 따라서 제3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며, 현저성 여부는 규제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

■ 제8조(불공정행위 유형3)

- (규정의 내용) 이용계약 당사자는 합의사항 일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 (규정의 취지) 네트워크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임
 - 이해당사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한 부당한 계약체결 거부, 이면계약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를 반영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이익을 야기하는 계약은 허용하지 않음을 적시
 - 통상 협상력 우위에 있는 측이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음

■ 제9조(부당성 판단기준)

- (규정의 내용) 제8조에 따른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2. 콘텐츠 경쟁력,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3.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4.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이용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
- (규정의 취지)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계약 일방 당사자 의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가격, 거래기간 등 단편적인 항목의 변화만으로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계약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고려
 - 비교 가능한 시기에 비교 가능한 대상에 대한 정보 또한 고려
 - 콘텐츠 경쟁력,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

■ 제10조(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의무)

- (규정의 내용)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제공사업자, 콘텐츠전송 네트워크사업자(이하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②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계약상대방과 협의한다.
 - ③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규정의 취지) 제10조 및 제11조는 ISP-CP, ISP-CDN, ISP-이용자, CP-이용자 관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규율
 - ISP가 CP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CP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
 - 인터넷 생태계 내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들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짐
 - 이때 의무는 윤리적 차원의 의무가 아니라 약관, 즉 민법상 계약에 따른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로 회피 불가능한 의무임

■ 제11조(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 (규정의 내용) 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규정의 취지) ISP-CP가 BGP (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 중일 경우 라우팅 경로 등을 CP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에 통제권이 일정 수준 있다고 판단됨
 - *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대규모 네트워크 간에 주로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
 - 따라서 CP의 BGP 관련정책에 따라 ISP의 네트워크 품질 및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CP가 ISP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다.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1) 인터넷 기업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가이드라인 수정안에 앞서 7월 3일 공개된 초안에 대하여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번 수정안의 내용도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안에 존재했던 부당성 등이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표명함
- (가이드라인안의 정당성 여부)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계약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고, 망이용계약은 사인 간 계약이므로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할 영역임
 - 그러나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정부가 CP와 ISP의 사인 간 계약에 직접 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임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근거가 법률로써 존재하여야 하는데, CP와 ISP의 계약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음
 - 혹여 글로벌 CP가 시장에서 지배적 또는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그러한 지위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남용한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등으로 해결이 가능함
 - 이와 같이 기존 규제로써 CP와 ISP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안과 같은 방식의 추가적인 규제를 신설한다면 이는 최소침해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임
 - 따라서 가이드라인안은 위헌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가이드라인안은 통신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강화할 우려가 있음
 - 가이드라인안은 CP와 ISP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정부와 ISP가 함께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
 - 계약 상대방 외에 제3자와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계약 내용을 비교하여 각 계약 조건 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다수의 CP와 계약을 하는 공급자인 ISP만 가능한 일일뿐, 일반적 수요자인 CP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
 - ISP의 입장에서 볼 때, 1계위 3사와 모두 계약 관계가 있는 일부 CP 사례를 거론하며 CP가 ISP에게 계약조건을 따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한 CP조차도 저가에 계약한 특정 ISP 경우를 들어서 다른 ISP와 가격을 협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다른 ISP가 수용할 가능성도 없음
 - 반면, 불공정, 차별 등을 이유로 소수의 공급자(ISP)는 다수의 수요자(CP) 중 공급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수요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바, 가이드라인을 핑계로 ISP간 담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음
 - 과거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이하, 상호접속고시)의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간 거래 단가의 상한을 정하자, 이 상한가가 현실에서는 시장 가격으로 작동하게 된 사례처럼 결국 가격 등 계약 조건은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수렴해 갈 것임
- 가이드라인안은 콘텐츠 시장 내에서 ISP의 시장지배력을 제고해 결과적으로 시장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가이드라인안으로 인해 협상력이 약한 국내 CP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자명하며, 창의적 신규 CP의 등장에도 장애요소가 될 것임
 - 반면, 국내 ISP들은 진입장벽이 높은 통신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사업자로서 자유시장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국가가 마련한 제도적 보호 하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음
 - 더 나아가 국내 ISP들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CP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ISP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강화되면 그 지배력을 콘텐츠 공급시장으로 전이·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는 결국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효과에서 더 나아가 CP와 ISP간 갈등 관계를 고착화할 우려

- (가이드라인안의 합목적성 여부) 선례 없는 제도의 설계는 신중해야 함
 - 프랑스,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CP와 ISP 사이의 망 이용과 관련한 이슈가 여러 차례 발생하였지만 모두 CP와 ISP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례는 없음
 - 인터넷 시장의 상생·발전은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임
 - 앞서 상호접속고시가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여 경쟁을 제한하였는지를 보면 정부가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임
- 망 유지·증설에 따른 ISP의 부담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와 해결해야 할 문제임
 - ISP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가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의 직접적 수혜자이므로, 망 유지·증설에 따른 부담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대가 관계에 있는 것이지 CP들로 인하여 인터넷 트래픽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아님
 - ISP들은 CP의 서비스 확장 등으로 트래픽이 증가하여 망 유지·증설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CP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CP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자신의 부담으로 개발하고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ISP가 제공하는 망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CP로 인하여 망의 경제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음
 - 한편, 국내외 CP간 접속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ISP와 개별 CP가 자유롭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결과일 뿐, 이 차이를 이유로 정부의 개입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없다고 할 것임

2) 통신사

-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최근 ICT 시장은 대형 글로벌 CP의 협상력 우위와 지배력 편중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등 자율적 문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페이스북의 인위적 접속경로 우회 사건, 국내 ISP가 일부 글로벌 CP에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음
- 국내외 역차별,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등이 심화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사업자간 협상으로 해소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정부의 합리적 규율이 필요
- 이와 관련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며,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세부 조항별 의견)

- ①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 산정 및 지불’을 명시(제1조 수정)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 관련 협의 및 계약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여 정당한 인터넷망 이용대가 산정·지불, 합리적 계약조건 적용 등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기존 ‘망 이용계약’뿐만 아니라,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CP도 포괄하는 취지로 가이드라인을 보완(제3조제2항 신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적용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가이드라인의 제10조(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의무), 제11조(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의 의무)는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인터넷망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③ 계약서에 반영해야 할 항목의 예시로 ‘이용대가’를 명시(제6조제3항 수정)

제6조(계약서 작성 원칙) 3.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전송용량, 이용기간, 이용대가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④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변경을 요구하는 계약 당사자는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규정(제7조제1항 수정)

제7조(정보의 제공) ① 이용계약 당사자 간에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한다.

- ⑤ 기존에 망 이용계약이 없는 일정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적용(제○조 신설)

제○조(성실 협상) ① 망 제공 및 이용 당사자는 상대방이 서면, 이메일 등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인터넷망 이용계약 협상을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② 기존에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인터넷망을 연동하는 사업자 중 제1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제공·이용 현황, 트래픽 규모 등을 반영한 상대방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을 경우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⑥ 가이드라인안의 규정만으로는 대형 CP의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조항을 보완(제8조제1항제1호 수정, 제1항제5호/제6호 신설, 제2항 수정)

제8조(불공정행위 유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안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5. 망 이용계약의 협의권자를 정하지 않거나, 적절한 협의 일시·장소 등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6.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비용 지급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② 이용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제공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⑦ 대형 CP에 한하여 품질유지 의무를 반영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에 대한 단순 정보 제공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자간 협의 의무 및 계약 변경 등에 대한 사전통보 의무를 부여(제11조제1항/제4항 신설, 기존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변경하고 수정)

제11조(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인터넷전용회선 용량 확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

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와 협의한다.**

③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하고자 할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국내 대리인 제도의 사업자 지정 기준을 참고하되, CP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 매출액과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의무 적용

- ⑧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면서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서는 ISP가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제○조 신설)

제○조(트래픽 관리)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이 유발하는 트래픽의 급증, 일방적인 라우팅 변경 등으로 인해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여 전송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망 접속 수용 곤란 등 통신망의 품질 저하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통신사는 해당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서비스에 한하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다.

■ 소위원회 논의결과

◆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 ① (찬성)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이용자 지위에 불과했던 CP들에게 이용자 보호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어 제정에 찬성하나, 일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
 - 가격 인상을 요구할 때 그 사유를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협상과 거래에서 가격 설정의 근거를 항상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반하고 자유로운 협상과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의무라고 생각됨
 - 정보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려 할 때 분쟁의 소지가 크고 상대 사업자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기관이 양측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
 - 망 이용에 관한 불공정 행위의 근본적인 전제는 일방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② (반대) 가이드라인은 단지 통신사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는 것일 뿐이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환경의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
 - 가이드라인은 계약時 고려해야 할 일반 원칙의 제시를 넘어 계약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으나, 해외 접속망의 특성, CDN 등 다양한 연결주체들과의 관계가 포함된 망 이용 계약의 조건과 형식을 단순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음
 - 인터넷에서는 정보 전달 자체에 대해서는 서로 무료이고 각자의 이웃 단말과의 접속료를 정산해줄 뿐이므로, 해외 CP가 국내 ISP와 직접 접속하지 않는 한 접속료를 내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국내 ISP가 해외 CP의 캐시서버와 직접 접속할 때도 접속료가 없거나 낮은 것은 캐시서버 접속료는 캐시서버에서 국내 이용자까지의 루트에 대한 접속료인 반면, 국내 CP의 전용회선 요금은 국내 CP와 전세계 이용자까지의 루트에 대한 접속료이기 때문임
 -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은 16년부터 국내 망 접속료를 종량제로 만든 상호접속 고시로 인해 유럽의 7~8배, 미국의 4~5배(Telegeography의 1Mbps median price 기준)에 달하는 국내 CP의 전용회선 요금을 국제 수준으로 낮추는 것임
 - 따라서 상호접속 고시를 그대로 두고 공정성을 위해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모순적이며, 결국 망 품질 유지 의무를 CP에 분산시켜 망 사업자들의 의무를 희석시키는 의미를 갖게 되어 반대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3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 ◆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 간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하여 1소위 제4차 회의에서 논의 진행
- ◆ 사업자가 발표한 상생 협력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 제안

■ 논의 배경

- 파괴적 혁신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지능정보 시대에는 개별 기업 간의 경쟁 및 수직적 가치 사슬보다는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 가치 창출이 중요
 - 특히, 혁신적 스타트업들이 일자리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양면 시장 특성으로 인해 이들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생산·공급자 측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스타트업은 서비스가 활성화된 후 수익 모델이 개발되므로 트래픽 급증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기간 트래픽 상승을 보완할 수 있는 망 이용료 구조가 필요함을 지적
 - 이에 금번 협의회에서는 창업 초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중소CP·스타트업의 망 이용료 경감 방안을 포함하여 논의

■ 사업자별 상생협력 현황 및 향후 계획

1) SK텔레콤 / SK브로드밴드

(1) SK텔레콤의 스타트업 지원·협력 현황

- True Innovation 5GX / NUGU Accelerator 프로그램
 - 사무공간, 테스트 단말, 기술지원, 사업전략 등 실무 멘토링, 사업 연계 추진
 - 법무, 마케팅, 세무, 특허 등 8개 교육 커리큘럼 운영
 -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연계, 정부/민간Accelerator/대학 등 협업 지원

<True Innovation 5GX Accelerator 선정 스타트업(11개)>

스타트업	사업 내용	스타트업	사업 내용
디엔엑스	AI 어시스턴트(행동인지, 건강케어)	Teamzepa	외병환자 등 VR 간병시스템
Ai Systems	실시간 상황 인지/식별 기술	리얼위드	AR 색칠공부 및 심리분석
딤픽셀	AR 커머스 관련 주얼리 가상 착용	VRANI	소셜 VR 플랫폼, 퀴즈/게임 등
푸딩	VR 교육 솔루션	예간아이티	초실감 스크린 투어 서비스
PIER.6	정글비트 AR(교육 콘텐츠)	카이	고품질 VR, 광고/커머스 솔루션
M2ME	IoT 센서 및 VR 피트니스 서비스	-	-

<True Innovation NUGU Accelerator 선정 스타트업(13개)>

스타트업	사업 내용	스타트업	사업 내용
우디	해외 여행 정보, 간편한 환전 제공	솔스트롱	혼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
브레인	방법용 남성 음원 서비스	리슨무비	영화 상영 정보, 내용 제공 등
리보이스	쇼핑몰통합관리 음성 서비스	스트라토스	영화 흥행순위 정보 제공
김이윤	마피아 게임의 사회자 대행 서비스	온에어	실시간 전기차 충전 현황 확인
업라이프	식물 재배 관련 정보 제공	딩코	반려견 음식, 훈련, 건강 등 정보
메디코넥스	시니어 안전/건강 관리	운동매니아	홈 트레이닝 가이드 제공
화두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뉴스 요약 등	-	-

- ImpactUps 프로그램(ImpactUps = (Social) Impact + Startups)
 - 혁신기술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환경오염, 취약계층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추진
 - 11개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 지원, 국내외 PR 지원, SK 관계사와 협업 기회 발굴

<ImpactUps 스타트업(11개)>

스타트업	사업 내용	스타트업	사업 내용
닥터스냅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 및 진단장치	에이런	하/폐수 여과장치, 필터링 시스템
룩시드랩스	스트레스, 불안 해소 등 솔루션	에이티랩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리그넘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개발	유메인	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센서
수퍼빈	AI 기반 자원회수 로봇 개발	H2K	소리 중심 한글교육 앱 개발
스마프	노지재배용 물, 양분 공급 솔루션	칸필터	미세먼지, 냄새 제거 필터 솔루션
스페클립스	피부 손상 없는 피부암 진단 솔루션	-	-

-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
 - 20년에는 빅데이터, NUGU, 5G, 모빌리티, T map 등 주제별 5개의 Accelerator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 선발 예정(규모는 미정)

※ 20. 1월 빅데이터 분야 스타트업 모집을 시작으로 5개 분야를 차례로 론칭

(2) SK텔레콤의 중소 CP 지원 계획

- (운영방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CP(스타트업)의 서비스에 대해 제로 레이팅 지원
 -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일정기간(예: 1년), 일정용량에 한하여 무상 제휴 계약
 - 참여 대상은 중소 CP 관련 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에서 1차 후보군을 선정한 이후 SKT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 제로레이팅 적용 대상/기준에 대한 기본적 가이드라인 공유: ① CP별 데이터 제공량 설정, ② 기존 제로레이팅 서비스 계약 기업은 제외(무상 제휴 조건과 Conflict), ③ CP별 제로레이팅 제휴 규모 초과시 대가 기반의 제로레이팅 지속 여부 등

- (향후 계획) 제공량 및 참여 CP 등은 중소 CP 관련 협회 등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

※ 예: 월 2TB를 50개 CP에 제공 (100TB/월)

- (기대 효과) 초기 사업비용에 부담이 있는 중소 CP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소 벤처의 초기 단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며, 제로레이팅 제공 등을 통한 중소 CP 홍보 효과도 기대

(3) SK브로드밴드의 중소 CP 지원 계획

- (운영방안) 스타트업을 포함한 총 200개의 온라인 서비스 기반 중소 CP를 대상으로 SK브로드밴드 서초센터의 100개 랙을 ‘중소 CP 상생 Zone’으로 운영

- 개별 CP에 대해 최대 월 142만원(2Rack 72만원 + 최대 100Mbps 네트워크 60만원 + 관제 10만원, 전기료 포함 시 월 192만원) 상당 지원

※ 상면: 기업당 평균 Half Rack 이용 예상되며 최대 2Rack까지 무상제공

※ 관제: 서버 및 네트워크 기본 관제 서비스 무상제공(Smart IDC 관제 플랫폼 활용)

-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통신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 검토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지원 대상 1차 선정 → 협의체에서 적합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1년간 프로그램 제공 → 고객 Feedback 등 효과 분석 후 연장 등 협의

※ (기업 선정기준 예시) IoT/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 및 사회적 기업 우대 (법인 설립 2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가산점 부여)

- (향후 계획) 중소 CP 상생 Zone 구성(서초1센터 100Rack 배정, Infra 구성, Help Desk 운영)

- 지원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 수립

- 중소 CP 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지 및 세부방안 등 언론 공개

2) KT

(1) 지원 현황

- (Cloud 서비스) 인프라 무상 제공(Cloud Incubation Center) 및 Cloud 무상 교육 제공
 - (인프라 무상 제공) 스타트업 및 중소 신규 서비스 개발사에게 월 50만원 상당의 인프라(가상서버 3대/월, storage 100GB/월, CDN 전송량 2TB/월) 6개월 간 지원
 - ※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간 이용요금의 30% 추가 할인
 - (Cloud 무상 교육) 웹 페이지 운영, 서버관리 등 테스트를 희망하는 신규 고객에게 KT Cloud 무료 체험 쿠폰(10만원) 제공, IT 인프라 운영 담당자 대상 무료 클라우드 전일 교육 제공
-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고객사와 KT지사를 GiGA LAN으로 연결하여, KT지사에서 장비 호스팅, 인터넷접속, 보안, 통합관제 등 서비스 제공
 - 이용고객: 중소기업(중소 CP 포함)
 - 요금내역: GiGA office Standard (550만원/월, 인터넷접속 1G, 1/4 Rack 호스팅, 관리서비스 등)
 - 지원내역: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기준가 대비 약 1/5 수준 제공
- (스타트업 사업화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발굴, KT와 함께 공동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지원내역: 연간 15개사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지원/연구개발, 특허출원, 인증,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업체당 최대 5천만원 규모 지원
- (초기기술기업 투자 프로그램) 초기 테크 기반 스타트업 대상 투자 및 멘토링 제공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지원내역: 창업팀 당 약 1억원 투자 예정(3년간 50억원 규모)
 - ※ KT-플래티넘 컨소시엄 TIPS 운영사 선발(19. 5월) 운영

- (특허 무상 양도) 협력사/중소기업 대상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KT 보유 특허 무상 양도
 - 양도범위: 양도 특허의 KT 지분 전부, 이전 비용 연차 수수료는 기업 부담
 - ※ 44건 특허 20개사 양도(17년 기준)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스타트업 지원) 예비 창업자/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온오프라인 상담,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과 관련 기관 연계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KT 전담기업 지정(15. 3월),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16. 3월 ~ , 5G 오픈랩 구축 등)
 - ※ 5G 네트워크 기반 혁신기술/서비스 개발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 프린터 등 설비 제공
 - ※ 18년 실적: 매출 1,234억원, 투자유치 837억원, 일자리창출 601명, 보육기업 육성 90개(누적)
 -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KT 전담기업 지정(16. 10월, 한진과 공동)

(2) 지원 계획

- (IDC 서비스 지원) 중소 CP(설립 2년 미만, 10인 이하의 신규 창업기업)에게 최대 1년간 IDC 서비스 무상 제공(연 3천만원 상당)
 - 지원내역: 상면(고객당 3 Rack) + 인터넷접속 100M + 전력료 지원
 - ※ 단, 6개월 이후 전력료는 사용량에 따라 원가(한전납부액) 과금하며, 고객 필요에 의한 기준 이상의 Rack 및 인터넷접속 초과분은 시장요금의 30% 할인 제공
 - ※ 지원종료 후에는 1년간 시장요금의 30% 할인, 기타사항은 세부기준 마련 후 시행

(3)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연계 상생협력 프로그램(안)

- (Cloud 서비스) 스타트업 및 중소 신규 서비스 개발사에게 월 50만원 상당의 인프라 6개월간 지원
 -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추천한 중소기업 대상 우선 심사
 - 지원내역: 가상서버 3대/월, storage 100GB/월, CDN 전송량 2TB/월
 - ※ 지원기간 종료 후 1년간 이용요금의 30% 추가 할인

- (스타트업 사업화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발굴, KT와 함께 공동 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지원내역: 연간 15개사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지원/연구개발, 특허출원, 인증,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업체당 최대 5천만원 규모 지원
 -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추천한 중소기업 대상 서류심사 면제 및 우선 심사권 부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측 선발심사위원회 참여 등 협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스타트업 지원) 창조센터 입주 공간,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지원(판교 경기센터 내 5G Open Lab 구축)
 - ※ 코리아스타트업이 추천한 중소기업 대상 우선 배정 등 협의
 - 5G 네트워크 기반 혁신기술/서비스 개발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테스트베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 프린터 등 설비 제공

3) LG유플러스

(1) 협력업체와 지원 방안

- (자금지원) 5G 장비 개발비 선제적 신규 지원 및 직접지원 금액 50% 확대 운영
 - IP장비/전송장비 개발/공급사에 100억(유비쿼스/코워버에 각 50억) 지원하여 5G 구축 조기 대응 및 직접지원 금액을 기존 200억에서 300억으로 상향
- (장비지원 생태계 구축)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5G 전략협력사 확대하여 운영
 - NW장비 주요 품목군 선정 완료, IoT 등 디바이스 분야로 확대 추진중
 - 개발 전/중/후 모든 단계에 걸쳐 차별화된 메리트 제공
 - ※ ESI 활동(Early Supplier Involvement) 및 주기적인 기술 워크샵/Working Group 진행
 - ※ 협력사의 제안을 공동개발 과제로 도출하여 개발 참여 우선권을 제공하고, 최적화된 장비 설계 지원 및 개발시 개발비 지원, 상용화시에는 일정물량에 대한 구매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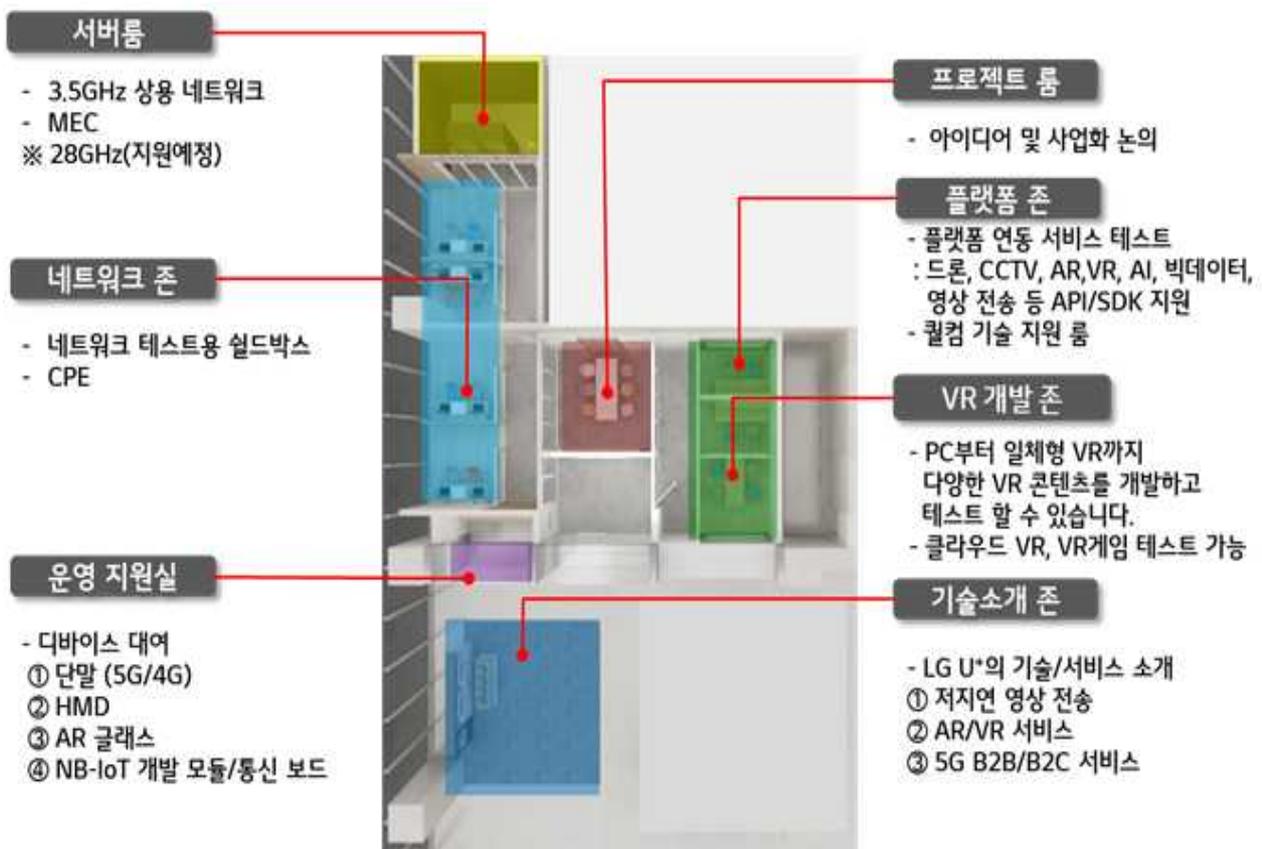
-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특화영역 설정 및 확대
 - ※ 중소기업 제안 참여 분야를 설정하여 외산장비/대기업장비 최대한 배제
 - ※ 중소기업 솔루션 없는 분야에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국산화 추진, “협력사 제안의 날” 등을 통해 협력사의 아이디어/신제품 제안 활성화
- (공사 생태계 구축) 공사업체 계약금액을 상생협업체를 통한 적정 가격으로 결정, 공사업체의 손익 관리
 - 5G 공사의 경우 기존 턴키방식 공사업체 선정에서 유플러스 공사업체 활용한 분리 발주 방식으로 전환(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로 선정하지 않음)
 - 기존 NW장비 위주에서 NW 공사로 생태계 저변을 확대
 - ※ NW공사에 특화한 상생협업체를 별도로 신규 운영하여, 기존 간담회 형태에서 공사업체/유플러스가 동등 참여하는 협업체로 정립

(2) 스타트업 육성 계획

- (스타트업 발굴) 제휴 벤처 투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펀드 출자를 통해 ICT 분야 스타트업 기업 대상 투자 진행
 - 미래 성장성이 있고,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체를 발굴하여 ICT 생태계에서 성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스타트업 육성회사(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와 제휴를 통해 투자, 지원 대상 스타트업 선정
 - ※ 심사를 통해 당사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직간접적인 자본참여 등 지원 추진
 - LG그룹에서 미국 실리콘벨리에 설립한 펀드 운용사인 ‘LG Technology Ventures’ 출자를 통해 유망 벤처 발굴 및 지원
 - ※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 및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 발굴
 - LG그룹 차원에서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술을 전시하고 당사와 협업 가능한 스타트업 발굴 및 공동연구 기회 제공(매 2년마다 개최)

- (개발환경 지원)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간(5G 이노베이션랩) 제공
 - 테스트 및 상용화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및 회의 공간, 장비(셸드박스, RF 케이블, 디바이스), SW플랫폼, 검증 환경 제공
 - 총 230m³ 규모로 서버룸과 NW존, 운영지원실, 프로젝트룸, 플랫폼존, VR개발존, VR개발존 등으로 구성

<5G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조>



- (향후 계획) 스타트업 발굴 사업 확대, 사업 및 경영지원 예정
 - (사업 확대) 투자 벤처투자회사 및 제휴 엑셀러레이터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 지원 대상 확대
 - ※ 해외로 확장을 원할 경우 해외 통신사에 소개하여 기회 제공
 - (사업지원) 투자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 및 동반성장 기회 제공
 - ※ 해외로 확장을 원할 경우 해외 통신사에 소개하여 기회 제공
 - ※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 그룹사 연계를 통한 협력 지원
 - (경영지원) 경영, 재무, 회계, 인사, 주요 계약시 법률 검토 등 투자기업의 관리시스템 미비점 개선 지원
 - (스타트업포럼 협력) 투자, 지원 대상 신규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스타트업 포럼 등과의 협력 프로세스 추가 가능
 - ※ 스타트업포럼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회 제공

(3) 망 이용대가 지원 방안

- (추진배경) 창립 초기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스타트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자립 및 사업 기반 지원
- (적용대상) 스타트업 또는 중소 CP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고려함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 확인 기업

※ 현재 총 36,924개 기업('19. 11. 11. 기준)

구분	벤처투자 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연구개발 기업	예비벤처 기업	계
업체수	2,033	27,047	5,114	2,622	108	36,924

② 스타트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협회 회원(예: 코리아스타트업포럼)

③ 스타트업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협회의 추천 등

- 대상 기업수는 제도 운영 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상한 설정

- (지원내역) 스타트업의 망이용 형태/규모에 따라 인터넷전용회선 또는 IDC 이용요금 중 감경 대상을 선택할 예정이며, 조직개편이 완료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견

- 각 통신사가 계획하는 스타트업 상생 정책과 코스포 등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임
-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클라우드 업체 등이 제공하는 스타트업 프로모션 혜택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특히,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므로 Lock-in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타 통신사로 이동시 비용을 감안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선택의 유인이 충분할지 우려되어 보완이 필요
 - 창업 초기부터 트래픽이 많이 소요되는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보완이 필요
- 스타트업과의 상생 협력은 비단 비용적 측면만이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임
 - 따라서 통신사는 보다 근본적으로 네트워크 시장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협상력 열위에 있는 스타트업을 위해 역진적 가격정책을 도입하거나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게 해나가고 있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입을 자제하고, 시장 전체 차원의 상생협력 방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는 대승적 결단을 기대함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협력 관계의 연관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 상생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됨
 - 통신사들이 제안한 클라우드 공간, AI, 오픈 이노베이션 및 IDC 관련 다양한 지원방안과 스타트업 사업화 프로그램 등은 인터넷 상생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임
 - 상생 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중소 CP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KIF 펀드를 활용한 벤처기업 자금 지원도 의미 있는 방안임

- ◆ 다만, 아래 사항들에 대한 검토·보완을 제안하는 견해가 제시됨
 - 특정 접속용량 미만의 CP에게는 산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접속료를 할인하는 자동지원 방식이 되어야지, 심사하여 혜택을 주는 선별지원 방식은 망 환경 전체에 보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예측가능성이 중요한 사업자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무상 IDC 입주서비스도 100Mbps 정도의 접속용량으로는 소규모 CP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통신사의 투자 역시 투자를 받게 될 CP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진행되므로, 보편적인 중소 CP 망 이용 환경 개선에 미흡
 - 규제관점에서 이용자 차별 논란이 있는 제로레이팅 관련 이슈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로레이팅 지원을 종량제로 하는 경우, 해당 CP가 제로레이팅으로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들을 많이 유치한 상황에서 트래픽양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통신사가 갑작스럽게 접속료를 높게 책정해도 他통신사로 이동하기 어려움

- ◆ 아울러,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근간으로 다양한 층위의 비즈니스에서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협력 비즈니스 비전 제시가 아쉽다는 견해도 제시됨

4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방향에 관하여 2소위 1차 회의에서 논의 진행
- ◆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 제안

■ 논의 배경

- 국가 경제에서 인터넷 기반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10대 기업(시가총액 기준)에 네이버가 포함되고('15년), 카카오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지정('19년)
 -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 GAFG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위기감 고조
- 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며, 특히 최근 제정된 가이드라인들은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상 근거를 넘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혁신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방통위 가이드라인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포함한 인터넷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1) 인터넷 기업

-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지침은 19. 9월 기준 총 27개에 달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상 근거를 넘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회의를 통한 권고안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

●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①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권 가이드라인

- 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소위 '잊힐 권리'의 도입방안으로 제정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일반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

②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 12년 '스마트폰 요금폭탄'이라는 일부 기사와 여론에 방통위가 대책마련의 차원에서 제정
- 내용도 문제이나,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MOBIA(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위임

③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 아프리카TV 후원금, 유튜버 수입 등 일부 이슈에 기반하여 제정
-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등 가이드라인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그 근거를 넘어서는 가이드라인)

①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하여 제정
- 'Ⅲ.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준수사항'에 밴드, 카톡 등의 영업에 사전승낙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링크 형태로 표시, 불법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어 사용 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이통사의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②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
- 법률에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방통위에 위임한 바도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필수/선택동의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식, 위탁업체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신규 규제의 창설의 실질이 있음

● (가이드라인 이외 형식의 규제)

① 방통위 &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② KISA: 앱 푸시(App Push) 광고 안내서

- 영리목적 광고성의 정보의 범위, 예외 등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규제의 문제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규제법정주의 원칙, 행정지도 원칙 위반

- (적법절차 원칙 위반)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헌확인(2018헌마465)

- 가이드라인이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작용으로서의 공권력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규제법정주의 원칙 위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음**
- (행정지도 원칙 위반) 행정절차법 제48조에 따르면,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그림자규제의 정비 필요성)

- (규제법정주의 원칙 준수) 플랫폼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규제의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최근 페이스북 사건에서 서울 행정법원 판결 中)
- (국내외 동등 규제 원칙 설정)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없으면 국내 사업자도 규제하지 않아야 함
- (행정지도 원칙 준수)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2) 통신사

- 인터넷 서비스가 매우 다양하고 혁신적이어서 법률이 서비스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가급적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해됨
 - 현행 규제의 부족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이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통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 가이드라인을 이용자 이익 저해 등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연성법(soft law)으로서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서 벗어나거나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형식 또는 내용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들은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
 -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첫째, 법령이 있으나 규정의 해석이나 판단기준에 대한 선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쟁점에 대한 규제기관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둘째, 아직 법령으로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나 법령상 근거가 없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집행력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사업자들과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임
 - 가이드라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현실에서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손쉬운 규제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음
- ◆ 다만,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이드라인의 마련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다변화되는 인터넷 생태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가이드라인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 산재되어 있는 각종 가이드라인의 일관성 내지 균형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정비 작업은 필요
- ◆ 기타
 - 인터넷 분야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이고 주도적인 개입 방식보다는 사업자 및 이용자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대화와 협의, 대체적 해결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정부가 협력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한 영역이 적지 않음(예: 거짓 정보와 유해 콘텐츠의 필터링)
 -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장 기구가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가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상당히 많은 경우 인터넷 분야에서는 소수의 부작용이 언론 등을 통해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한 부작용을 제거하려는 규제가 다수의 자유를 통제하여 결과적으로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음(예: 청소년 인터넷게임 섯다운제, 인터넷 댓글 규제, SNI 필드 접속 차단)
 - 따라서 인터넷 분야는 비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규제 도입 논의시 공익을 위한 규제의 불가피성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함
 - 현재 논의 중인 규제 개선 요구는 주로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 역시 많이 존재함(예: 방심위의 내용심의 및 시정 요구, 방통위의 삭제명령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규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연계정보(CI) 제도)
 - 플랫폼 및 데이터 독점 규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있는 분야, 지능정보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범위의 변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의 의무분류 개편 및 경쟁상황평가 방법론의 변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규제 대응 등에 있어 공정 경쟁도 중요하나 산업 정책 차원에서의 논의 진행이 필요

5 개인정보 규제 개선

- ◆ 5G 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방향에 관하여 2소위 제2차 회의에서 논의 진행
- ◆ 위원 및 외부 전문가가 발표한 정책자료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 등 논의

■ 논의 배경

- 5G 시대에는 사람間, 사람과 단말·장비間, 단말과 단말間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방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짐
 - 나아가 5G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른 단말과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데이터를 통한 산업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 주요 논의사항

- (사전 동의 원칙의 개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완화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
- (개별적·선택적 동의 원칙의 개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포괄 동의를 금지하고 각 동의사항을 분리해서 별도로 받도록 하는 동의방식(개별적 동의방식) 및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수집하게 하면서 최소 정보 외에는 ‘선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의방식(선택적 동의방식)을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
- (제3자 제공 허용범위의 개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

- (개인정보 처리정지청구권의 개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을 거의 절대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권리의 행사요건·항변사유·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
- (형사처벌의 개선) 법 위반 시 5년·3년·2년 이하 징역이라는 과도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논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알림 개선)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제3자 제공시 제공받는 자의 성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1) 인터넷 기업

- 대부분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유출 사고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상 동의를 까다롭게 하거나 별개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온 방향성에 문제가 있음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사전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해외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움
 - 국내법 상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열거하여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항목은 시시각각 변하여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유형화되어 있음
 - 민감정보 및 위탁정보의 경우에는 위탁·수탁업체를 열거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음
- 이러한 방법으로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으므로, 논의의 초점을 실질적인 보호 및 유연한 활용에 맞추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실효성 있는 약관으로 이용자를 先보호하고 Opt-out 방식으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설계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 특히,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문제 발생時 시정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므로 개선 필요

2) 통신사

- 해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처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능력이나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있어서 현행 규제를 일정 수준 완화해도 된다고 생각함
-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지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해커 등 가해자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소위원회 논의결과

◆ 사전 동의 원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 (찬성)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법적인 통로를 마련해주고, 대신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정보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사전 동의 원칙이 사실상 형해화되어 요식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 행위 자체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사전 동의 원칙 및 방식 등은 완화될 필요가 있음
- (반대) 이미 정보주체의 동의 외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재의 사전 동의 원칙이 엄청 강력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는 반대함
 -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가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임

◆ 개별적 동의 방식 및 선택적 동의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 (개별적 동의 원칙) 과다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의를 형해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집·이용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느 정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포괄적 동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 포괄적 동의를 허용할 경우 정보주체가 예상하지 못한 개인정보의 남용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최소 정보 외의 정보도 일괄 동의를 받게 할 경우 최소수집의 원칙을 어떻게 보장할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존재
- (선택적 동의 원칙) 필요최소한의 정보 수집 원칙은 특별히 수정될 필요가 없고 선택적 동의는 정보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 정보주체가 선택으로 된 항목에 대한 동의를 일률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조건 동의하는 등 오히려 동의 절차가 형식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

◆ 개인정보처리자·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의 허용 여부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 (찬성)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되, 정보주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의 판단기준을 법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아울러 정보주체가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는 제도(삭제권, 정보이동권, 자동화된 개별 의사 결정 제한 등)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반대)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정보 유통 범위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의 없이 이루어지면 제공 목적 및 예측되는 이익·손실의 범위를 넘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처리정지청구권의 행사요건, 항변사유, 예외인정 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 (반대) 처리정지청구권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정보주체도 처리정지청구권을 포함한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권리의 완화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함
 - 특히, 사전 동의 절차가 완화되는 경우에는 정보주권의 핵심적 사항인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의 보장은 보다 강화될 필요
- (찬성)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개 원칙이 정립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리정지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현재의 처리정지청구권은 행태나 활동 정보가 자동적으로 수집되어 가공되는 최근의 현실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간의 균형을 오히려 깨뜨리는 제도임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양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 (찬성) 형사처벌 규정을 둔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개인정보의 성격이 인격권을 그 본질로 하고 있고, 빅 데이터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인격권(명예훼손 등) 침해, 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반대) 개인정보는 데이터 유통 활성화에 필요한 정보로서 개인 정보 유통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데이터 과소 공급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뢰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성에 대한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음
 - 형벌을 완화하려면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나 집단 소송제도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성명을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찬반으로 견해가 나뉨

- (찬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명칭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과 같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접근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음
 - 이용 목적에 동의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자에게 제공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신규

사업자는 제공 동의를 받기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공받는 자의 성명을 제외할 필요

- 다만, 무분별한 제3자 제공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공개가 필요한 제3자 제공 현황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종류(예: 식별가능성 존재 정보)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반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하려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유통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의 3자 제공 알림에 더하여 전체 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 축적이 가능한 상태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개인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의 이익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목록을 정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들여야 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됨

◆ 기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순단계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혁신적 개인정보처리정책 유인을 저해하고 정보주체의 역량 강화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과 정책 집행 방식의 대대적인 검토, 정비와 개선이 필요함
- 개인정보 규제에 있어 무엇보다 감독기구가 실효적 역할을 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부처로 격상하고 감독기구로서의 실효성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빅데이터, IoT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어야 함(예: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강화, 프라이버시 중심설계와 기본설정)
- 개인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려면 프라이버시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재산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6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관하여 2소위 제3차 회의에서 논의 진행
- ◆ 위원 및 사업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안 등 논의

■ 논의 배경

- 5G는 전 산업분야와 전면적으로 융합되면서 부품·장비·단말·콘텐츠 등 ICT 산업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타 산업에서도 혁신을 촉발해 대규모 신규시장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
 - 기존 통신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 즉, B2C 서비스에 국한되었다면, 5G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 단말에 적용되어 B2B 서비스에 전면 활용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과 다른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짐
- 5G는 단순한 통신기술의 발전이 아닌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범용 기술로서 글로벌 패권 경쟁을 주도할 핵심 기술임
 -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범위 확대, 5G 이용의 활성화, 하드웨어 장비의 수출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5G 활성화 정책이 마련될 필요

■ 주요 정책방안

- (IoT 활성화) IoT 전용 주파수 조기 발굴 및 공급, 관련 기술기준의 확정, IoT 관련 책임 법제 정비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
 - 디지털 헬스케어 등 IoT 전용 주파수 조기 발굴 및 공급, 관련 기술기준의 확정 등 이용자 확대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
 - 정부는 “5G+ 스펙트럼플랜”에서 현재 차량충돌 방지 레이더 용도로 지정된 77~81GHz 대역의 용도를 완화하여 해당 대역을 비접촉 생체정보측정용 고해상도 레이더(디지털 헬스케어)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다른 기기의 IoT 구현을 위한 추가적인 주파수 발굴·공급이 필요할 것임

- 이용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책임 소재 확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사물인터넷 활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
- 가령, 사물인터넷의 오작동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소유자·개발자·판매자 등 다양한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책임소재의 확정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산업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의 활용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5G 통신의 적극적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제 등의 정비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정책공간의 확대)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범위의 확대 및 경쟁 양상의 다변화에 대응되는 정책공간의 확대가 요구됨

-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C-P-N-D 각 사업 내의 경쟁(intra-competition)에서 사업 간의 경쟁(inter-competition)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5G 활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C-P-N-D를 넘어서 새로운 경쟁자와의 경쟁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기존의 경쟁정책이 C-P-N-D 사업자 내의 경쟁을 규율하였다면 5G 시대의 경쟁정책은 C-P-N-D 사업자 간, 나아가 전통적인 아날로그 사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함
- 기존의 경쟁은 사업자 간의 대립구도로 이루어졌다면 5G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상호 의존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다만, 대형 기업들이 독과점하는 형태로 생태계가 조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생태계의 외연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투자유인 제고) 비도심 지역 투자시 세액 공제, 이중적 과세 통합 등 투자 유인 정책 마련
 - 5G 시대에는 정보 복지 차원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진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5G 인프라의 균형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통사는 수익이 담보되는 도심 지역 위주로 5G 무선국과 초고속 유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므로, 비도심 지역 투자시 세액 공제나 이중적 과세(전파사용료와 등록면허세)의 통합과 같은 비도심 지역 투자 유인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 5G 시대의 산업 외연 확장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방안 마련
 - 5G 시대의 정보 격차는 단순한 이용 편익 격차 및 취약계층의 소외현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5G 활용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나타날 수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 5G를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자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

■ 이해관계자별 주요 입장

1) 통신사

- 5G에서는 폴더블 폰이나 플렉서블, VR 기기 등과 같은 차별화된 단말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혁신적 단말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B2B의 경우 통신뿐만 아니라 제조업·운송 등 여러 산업과 연결되어야 하나, 기존 산업의 규제가 존재하여 통신사가 협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기존 산업들이 통신과 결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음

- 또한, B2B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5G 특성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을 이용해야 하는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제한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되길 희망함
- 5G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B2B, B2G로 인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므로, **정부의 B2G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코리아스타트업포럼

- 스타트업은 5G에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트래픽 증가**로 인한 **네트워크 접속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것임
 - 통신사가 5G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5G 투자 비용을 스타트업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됨
- 무엇보다도 **통신사**는 사전적으로 5G 서비스를 예시로 들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을 이유로 비용을 상승시키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요청하고, 주요 콘텐츠 서비스에 직접 진출하여 불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큼
 - 이에 5G 시대에 맞는 **망 중립성과 망 공공성을 확대**하고 **네트워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곧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라고 판단됨

■ 소위원회 논의결과

- ◆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적시 공급, 관련 법제 정비, 경쟁 촉진, B2G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경쟁 촉진 측면에서 5G 시대에는 IoT 서비스의 개발·보급·상용화 과정에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개방적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유인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 피쳐폰 시대에 네트워크 사업자의 주도로 폐쇄적 인터넷 서비스 환경이 형성되어 스마트폰 시대에 뒤쳐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재난, 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5G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5G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
- ◆ 5G 활용이 어려운 기업 및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나, 유효한 정책수단에 대한 수요 조사와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며, 인위적인 활성화 및 시장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5G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 지속가능한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음
 - ※ 예: 정부 지원으로 기존 생산시스템과 맞지 않는 IoT를 도입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
 -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품을 구입하여 테스트 베드가 되어 줄 필요가 있음
- ◆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공정 경쟁을 위해 5G 환경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됨

〈첨부〉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총 42인〉

구 분	성 명	소속·직책	비 고	
위원장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소위원장	
전문가 (16인)	미디어·경영· 경제·ICT 등 (10인)	김범수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곽정호	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최정일	송실대 경영학부 교수	제2소위원장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률 (6인)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비자·시민단체 (5인)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단체 추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단체 추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단체 추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	단체 추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단체 추천	

구 분		성 명	소속·직책	비 고
인터넷·통신사업자 (11인)	통신사 (3인)	하성호	SKT CR센터 전무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이승용	KT CR 기획실장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박형일	LGU+ CR그룹장 전무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포털 등 (3인)	원윤식	네이버 상무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양현서	카카오 CR실 이사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김준성	아프리카TV 부사장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글로벌 기업 (3인)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박대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연주환	넷플릭스 정책총괄 매니저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콘텐츠개발사 (2인)	이희주	콘텐츠연합플랫폼 플랫폼사업본부장	기업추천(임원 또는 전문가)
		김미균	(주)시지온 대표이사	벤처협회 추천
연구·전문기관 (2인)	여재현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기관 추천	
	오용석	KISA 데이터이용지원센터장	기관 추천	
관련단체 (5인)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단체 추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단체 추천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단체 추천	
정부 부처 (2인)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		

※ 간사: KISDI 김현수 통신정책그룹장

Ⅲ. 참고 자료

1. 발제 자료
 2. 회의록
-

CONTENTS

Ⅲ 참고 자료

1. 발제 자료 / 69
 - 1-1.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 69
 - 1-2. 인터넷망 이용 환경 개선 / 89
 - 1-3.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 120
 - 1-4. 개인정보 규제 개선 / 144
 - 1-5.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 184

2. 회의록 / 194
 - 2-1. 전체회의 / 194
 - 2-2. 제1소위원회 회의 / 207
 - 2-3. 제2소위원회 회의 / 277

Ⅲ. 참고자료

1 발제 자료

1-1.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 경쟁

1-1-1. 망 이용 관계에 대한 법안 분석, 평가 및 개선안 검토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서론

- 최근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음
- 최근 페이스북의 라우팅 임의 변경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불합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 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로 인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의 투자 부담이 가중되고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저열화가 발생하는 등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이 저하된 상황임
-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망 이용·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및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후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1))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글로벌 CP의 국내 ISP 망이용 관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 상 적절한 사전, 사후규제 도입에 대해 검토

□ 망이용 관계 법안의 내용

구분	유민봉 의원안 (*19.3.18.)	김경진 의원안 (*18.9.12.)	변재일 의원안 (*18.10.29.)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대상	<u>이용자 수, 트래픽 양</u>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중 <u>트래픽 양</u>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u>일일 평균 이용자 수</u>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내용	<u>적절한 망용량을 확보</u>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u>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u>기술적 조치</u>	<u>국내에 서버를 설치</u>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기술적 조치</u>
위반효과	<u>시정명령</u>	<u>역무제공 중지</u>	<u>과징금</u>
비고	<u>금지행위</u> (차별금지/협정 거부금지/품질저하금지 등)를 통해 <u>사후규제</u> 가능(과징금)		

1) 이상의 내용은 각각 유민봉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19.3.18), 김경진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2018.9.12) 상 제안이유의 내용을 발췌, 정리한것이다.

□ 망이용 관계 법안의 분석

1) 유민봉 의원(안)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유지 조치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0(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유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역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적절한 망용량을 확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2조의10을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수범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CP)
 - 국내외 CP 불문.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만 규율대상으로 할 것으로 예상
- 의무 행위: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한 망용량을 확보하는 등 관리적·경제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조치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지속적 모니터링(관리적 조치), 망이용계약 체결(경제적 조치), 망용량 확보(기술적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위반시 효과: 시정명령

나) 금지행위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이용·임차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이용·임차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이용·임차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 5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① CP의 망 이용·임차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
- CP가 망 이용·임차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
 - 망 이용과 임차 개념 신설
 -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② 의도적인 서비스 품질 저하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o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

2) 김경진 의원(안)

가) 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유지 조치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9(기술적 조치 의무) 부가통신사업자 중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제32조의9에 따른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부가통신사업자

o 유민봉 의원안의 부가통신사업자 품질유지(안 제32조의10)와 내용이 유사

- 단, 김경진 의원안의 경우 관리적·경제적 조치는 포함되지 않고 기술적 조치로 한정

3) 변재일 의원의 국내 서버 설치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8.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CP에 대해 국내에 콘텐츠 서버를 설치하는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위반시 과징금 부과

□ 망이용 관계 법안의 쟁점과 개선안

1)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콘텐츠 사업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기존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통신사에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고 차별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증가

※ 방통위는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보고서('18.12.13.)에서 현행 금지행위는 기간통신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페이스북의 경로변경에 따른 망 속도 저하와 같이 일부 CP의 경우 망품질 제어 능력이 있음이 확인

- 즉, 접속경로 변경'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형 CP는 접속경로를 임의로 설정하여 국내 통신망의 이용경로나 서비스 품질 등을 일정 부분 제어하는 등 기간통신역무와 이용자 후생에 부분적으로 개입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유지의무 부과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트래픽,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고 더 이상 단순한 부가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전기통신사업 분류의 근본적 재검토도 필요

2) 경제적 조치의 의미와 내용

-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함
- 만약 망이용대가를 포함한 망이용계약이나 최종이용자와의 이용약관상 품질유지 의무와 위반시 배상책임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경우
 - 전자는 금지행위상 차별금지 의무가 존재
 - 후자는 현행법상 약관 내용에 대한 심사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모순
- * 금지행위 상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도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가능함

3) 망이용과 임차의 개념의 모호성

- 망 미보유 사업자 입장에서는 망을 이용하는 형태의 하나가 임차라는 점에서 이용과 병렬적으로 임차를 나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부가통신사업의 경우에도 종래 임차 개념 삭제

4)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 글로벌 CP는 국내 CP와 달리 '해외에서의 서버 연동' Option을 선택할 수 있어, 망 이용대가 관련 ISP 대비 협상우위에 있으며 국내법 적용에 제약
- 특히, 데이터의 Localization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 이용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글로벌 CP 서버의 국내 설치 의무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가능

- 글로벌 CP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는 한미 FTA 제12.5조의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그 이유는 해당 규정은 인적 요소에 대한 조건 부과의 금지에 해당 하며, 서버 등 물적 설비에 대한 조건 부과는 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
- 다만, FTA협정은 상대국도 해석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현지 주재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입장도 가능

5) 가이드의 법적 근거 확보의 필요성

- 현재 논의중인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향후 금지행위에서 행위 유형을 고시로 구체화하는 방법을 취한 후 이를 동 가이드라인의 근거로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금지행위 조항의 개정 대안

- 한편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5의3. 설비등의 이용에 있어 각호 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1-2. 국내대리인제도 및 임시중지명령제도 관련 법안 검토

[박민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론

- 최근 정보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서비스가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이에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급속도로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사후규제에 앞서 임시 명령을 통해 피해의 확산을 막는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함께 논의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해결책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규제 목적에 비해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하는 실정임
- 이에 국내대리인 제도와 임시중지명령제도에 관한 최근의 법안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한편,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함

□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관련

1)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분	김성태 의원안 (2018. 2. 21.)	박선숙 의원안 (2019. 4. 8.)
대상	외국에서 국내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내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u>관련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국내대리인 지정</u>	다음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 1) <u>이용자 보호 업무</u> (제32조 제1항) 2)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필요한 <u>자료 제출명령의 이행</u> (제32조 제2항 후단) 3) 전기통신여무의 이용에 관한 <u>계약서 사본 송부의무의 이행</u> (제32조 제3항) 4) <u>요금한도 초과외 고지</u> (제32조의2 제1항) 5) <u>통계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의무의 이행</u> (제88조)
미지정의 효과	<u>시정명령</u> <u>과태료 (시정명령 미이행시)</u>	<u>과태료</u>
의무와 책임	국내대리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u>직접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함</u> 1)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u>직접 사실조사</u> 2)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u>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u>	국내대리인의 의무 위반행위를 해당 <u>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의제</u>
기타	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를 마친 것으로 의제	

2)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검토

가) 김성태 의원(안)

① 법안의 취지

- 글로벌 인터넷기업들이 국내의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세액 납부, 국내 매출액 공개 등 이에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국내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글로벌 인터넷기업 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글로벌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에서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의무화하여 이를 지정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예정임

② 검토

□ 국내대리인의 의무 범위의 모호성

- 김성태 의원안은 국내대리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대리인의 의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불분명함
 - 지나치게 광범위한 업무 범위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 본사와의 관계에서 국내대리인의 의무 이행 방안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국내대리인의 직접 의무·책임 부담에 따른 문제

- 김성태 의원안은 국내대리인에게 대리인으로서가 아닌 독립한 지위에서 직접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박선숙 의원안과 달리, 국내대리인의 이용자보호 의무는 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닌 국내대리인 자신의 독립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대리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 가능함 (안 제32조)
 -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사업장에 대한 사실조사가 가능함 (안 제51조)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의 관여 내지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대리인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 (안 제52조, 53조)
- 국내대리인이 사업자의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대리인 제도'의 본질에 반함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국내대리인이 해당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위법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 유럽연합의 GDPR상 역내 대리인 제도도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대리인이 아닌 “정보처리자 또는 수탁처리자”로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역시 개인정보보호라는 한정된 분야에 한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적용하면서 대리인은 자료제출 등 절차적 사항만 대리하고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사에게 부과하고 있음

□ 한미 FTA 등 통상 마찰 가능성

- 국내대리인에게 법 규범을 강제하여 위법행위를 시정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국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에 행정력을 갖춘 조직을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현지주재의무금지 원칙(한미 FTA 제12.5조)’을 위반할 우려
-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요건이 매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반해(법 제92조), 김성태 의원안은 국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국내대리인이 ‘이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한미 FTA 제 12.2조)’을 위반할 우려

나) 박선숙 의원안

① 법안의 취지

- 해외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② 검토

□ 국내대리인 제도의 제한적인 적용

- 박선숙 의원안은 국내대리인 제도에 관한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유사하게 도입하고 있음

박선숙 의원안	현 정보통신망법
<p>제32조의10(국내대리인의 지정)</p> <p>① <u>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p> <p>1. 제32조제1항에 따른 <u>이용자 보호 업무</u></p> <p>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u>자료제출명령</u>의 이행</p> <p>3. 제32조제3항에 따른 <u>술부</u></p> <p>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u>고지</u></p> <p>5. 제88조에 따른 <u>보고 및 자료 제출</u></p> <p>② <u>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u></p> <p>③ <u>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p>	<p>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p> <p>① <u>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u></p> <p>1. 제27조에 따른 <u>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u></p> <p>2.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u>통지·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캠</u></p> <p>3. 제64조제1항에 따른 <u>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u></p> <p>② <u>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u></p> <p>③ <생략></p> <p>④ <u>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p>

- 다만, 박선숙 의원안에 따르더라도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에 비하여 매우 광범위하여 과잉규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한정되나, 박선숙 의원안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보호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

3)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고려사항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과잉규제 문제
 - 국내대리인제도의 모태가 된 유럽연합의 GDPR의 역내 대리인 제도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측면에 한정하여 국내대리인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음
 -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일반적인 국내대리인제도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 ➔ 국내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함으로써 과잉규제 지적에 대처할 필요
- 국내대리인 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성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업계에서의 혼란을 막고, 법의 일관적인 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제도와 관련하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나, 아직까지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여 관련사업자들은 해당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는 상황임

-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어야 함

※ 입법 취지인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고충처리, 개인정보 침해신고 시 규제 집행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한국에 별개의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 해당됨

- 한국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고양는지 여부는 △한국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한국인을 이용 대상 중 하나로 상정하고 있는지, △국내에 사업 신고 등을 하였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참고>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중 적용대상 부분 발췌

➔ 따라서 국내대리인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선례의 축적을 통해 그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등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최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조사 등과 관련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우려를 표해 한미FTA 경쟁협약이 개최되는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이 해외 사업자에 대하여 광범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할 경우, 현지주재의무금지 원칙(한미 FTA 제12.5조), 내국민대우 원칙(한미 FTA 제12.2조)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제통상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타국에서도 국내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게 될 경우, 글로벌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국내 IT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관련

1)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관련 개정안

구분	변재일 의원안 (2018. 2. 14.)	이종걸 의원안 (2019. 4. 16.)
법률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과징금 대상행위(제64조의3 제1항 각호)에 대하여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2) 과징금 대상행위임이 명백하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할 경우 3)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 다수의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1) 금지행위(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2)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호스팅서비스 사업자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내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 (호스팅서비스 사업자) 역무의 제공 중단 등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음
위반시 효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호스팅서비스 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시중지명령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복	사업자 이의 제기시 비송사건으로 관할 법원에서 재판	불복하는 자는 7일 이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 제기 가능
기타	인터넷 진흥원은 임시중지 요청 가능	소비자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임시중지 요청 가능

2)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 검토

가) 변재일 의원안

① 법안의 취지

-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② 검토

□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광범위한 요건 설정

- 임시중지명령제도는 다른 사전적/사후적 규제수단과 달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적법절차에 따른 판단 이전에 취해지는 조치이므로, 현존하는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제재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 변재일 의원안은 '3회 이상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 대상 행위를 범하였음에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 임시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시중지명령이 규제의 집행력 강화 수단으로 변질됨
 - 사업의 중지를 단순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재처분에 필요한 행정상 적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제27조 제2항 제5호)
 - 시정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한 임시중지명령을 정보통신망법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부족함

□ 임시중지명령의 대상 및 기간의 광범위

- 변재일 의원안은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을 당해 문제된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일시 중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 규제의 우려가 존재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를 명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데, 합리적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음

○ 나아가, 임시중지를 명하는 경우 그 중지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잉 규제의 우려가 존재함

□ 중복적·중첩적 규제로 인한 기본권의 과잉 제한

○ 임시중지명령의 목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는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행정적/형사적 제재와 같은 사후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공표 의무 부과 등과 같은, 사업자의 기본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달성 가능할 수 있음

○ 이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다양한 사전/사후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규제에 대한 고려 없이 광범위한 임시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이종결 의원안

① 법안의 취지

○ 사실조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동안 해당 금지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중지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검토

□ 제한적인 임시중지명령제도 허용

- 이종결 의원안은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나, 이용자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변재일 의원안에 비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취지에 충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및 대상이 여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법 집행에 있어서의 혼란을 막고, 법의 일관적인 집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는지 여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불명확한 요건으로 자의적인 임시중지명령을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임시중지명령의 효과와, 그 예외적인 필요성에 비추어 보다 엄격한 명백성 통제가 필요함

□ 이의 처리 절차 미비

- 개정안은 임시중지명령에 불복하는 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권리의 실질적인 구제가 곤란할 우려가 있음

3)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관련 법안의 쟁점과 고려사항

□ 임시중지명령의 헌법상 한계 - 과잉금지 원칙의 준수 필요성

○ 임시중지명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전기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상 임시중지명령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 등이 중단될 경우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

➔ 따라서, 임시중지명령은 그 요건의 측면에서는 시급한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면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필요

- 나아가, 이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구성하므로, 단순히 법 위반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시중지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사후규제 및 유사규제의 존재로 인한 과잉규제 우려

○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제의 실효성 확보 등 목적은 과징금 부과나 행정적/형사적 제재와 같은 사후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규정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공표 의무 부과 등 보다 완화된 규제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미 유사 목적을 위한 다양한 사전·사후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 수단과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효율적이면서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1-2. 인터넷망 이용 환경 개선

1-2-1. Internet Transit and Peering in Korea: My Perspective

(John Milburn 하나넷 코퍼레이션 CTO)

Internet Transit and Peering in Korea: My Perspective

John Milburn • 22.10.2019

Ancient History

No early center

- HanaNet
- KREONET
- KREN
- KTIX
- INET
- DacomIX

Traffic 95% international

MIC agreement late 1996

- Three IX, Non-commercial, KT and Dacom
- ISPs/CPs all connect via KT or Dacom
- No other direct connection to non-commercial allowed

General Internet Status

- We have the best environment in Korea. Flat rate pricing, high bandwidth, great content!
 - Real competition, we have 3 full service telcos.
 - Difficult for regulators:
 - Should maximize benefit to society, not telcos
 - Should keep fair play, not distort competition
-

Transit or Peering

These terms are confused in Korea

- Transit is a provider/customer relationship. Peering is a relationship without payment, no customer or provider, just consenting organizations.
 - Korean regulation confuses these terms (상호접속고시).
 - Transit costs have been decreasing globally, but not in Korea.
 - Peering is increasing globally, but not in Korea.
 - Does Korea pay "transit" fees to deliver Hallyu content?
-

Transit or Peering

Telco IX in Korea are domestic transit, not IX

- The telcos do not permit direct peering between exchange members. All peering through telco router.
- Almost no foreign participants. Still.

No real Peering by telcos

- Only telcos peer with each other. No one else allowed.
 - All CPs are treated completely as transit customers.
 - Peers have no 갑 and 을.
-

1996-2001 Content Providers

Poor revenue

- Korea CPs begged telcos to share revenue. Users getting "free ride" from content sites.
- Complete rejection from telcos.

Telcos attempt content

- Many projects.
 - Search
 - Mail
 - Portal
 - All fail.
-

Today - Content Providers

Good CP revenue

- Korea telcos force Korean CPs to share revenue with excessive transit charges.
- Rejection from foreign CPs.

Telcos attempt content

- Many projects.
 - 20 years trying.
 - Still, all fail.
 - So, take from others.
-

Video on demand services

Live streaming, IPTV become viable. People start using "OTT" term.

Telcos again trying to charge extra to content providers.



Exceed 95% domestic traffic.

KT tries to charge for OTT content providers. Fails miserably.

Current

Telcos continue to fail with content and services

After 20 years, no significant content from telcos. Added value services all provided by CPs, domestic and foreign.

Pressure for CPs to pay more

Telcos add nothing new, but take revenue from others. Free market competition rejects this, so they ask for distorting regulations.

Damage to Korean customers

Customers pay telcos for access. If costs rise, they must be paid in some way by the customers. This is a **new tax to Korean consumers**.

Startups are hurt

Innovation

Costs to compete becomes higher. Startups hesitate, slow or fail. Fewer startups, less competitive pressure, slower change. This leads to lower quality and ability in international markets.

Benefits of Startups

Innovation. Market Progress. International ability. Jobs. Jobs. Jobs. Only startups and CPs have international service su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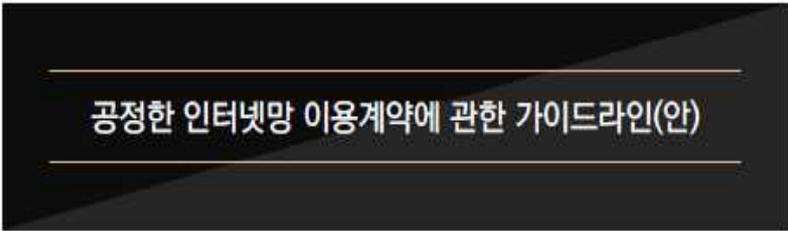
Bad logic

We saw this problem in the late 1990's, and content moved to the US, making all costs in Korea higher. Solution to return content was low cost IDC market.

What to do?

1. Mostly, do nothing. Do not give in to the greedy demands of telcos. Their access customers pay for access and traffic. There is no problem.
2. Domestic Korea traffic concentration makes cost of traffic lowest in the world. But, price is high.
3. The public consumer and innovative startups are damaged by increased, artificial and unreasonable costs.

1-2-2.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장)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정책센터
권오상 센터장

2019. 11.

목 차

1. 추진 배경 및 경과
2. 현황 및 이슈
3.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차별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문제됨에 따라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
- '18.11월부터 방통위, 과기정통부,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추진 경과

- 2018. 11 — ○ ('18.11월~19.6월) 가이드라인 관련 연구반* 구성·운영
- ISP, CP 등 업계 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내부 초안 마련
- 2019. 06 — ○ ('19.7월)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통신사, 국내외CP 대상 비공개 의견수렴
- 2019. 07 — ○ ('19.7월~10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속 및 수정안 마련
- 2019. 10 —

연구반: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디어미래연구소, KISDI

현황 및 이슈_망이용계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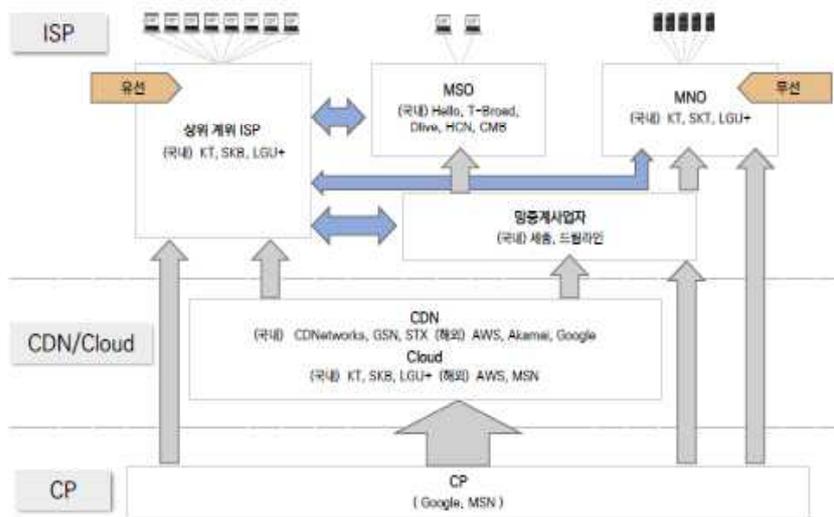
망이용계약 당사자

분류	사업자		
	국내		해외(국내 진입)
ISP	상위 계위		KT, SKB, LGU+
	하위 계위	망중계사	세종, 드림라인 등
		종합유선 방송(MSO)	Hello, T-Broad, DLive, HCN (다수 SO 포함)
CP	포털/동영상		Naver, Kakao 등
	미디어(OTT) /방송		• Wavve, 아프리카TV, Tving, 왓치플레이 등 • Tier-1 ISP OTT
CDN (Cloud)	CDN		CDNetworks, GSN, STX 등
	Cloud		KT, LGU+, SKB 등
			Google, MS, Facebook 등
			Netflix, Youtube 등
			Akamai, Amazon, Limelight 등
			AWS, MSN 등

4

현황 및 이슈_망이용계약 현황

국내 ISP/CP/CDN(Cloud) 연결구조



5

현황 및 이슈_망이용계약 주요 이슈

1 ISP-CP간 과금 방식

- ISP가 CP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전용회선이나 포트 대가는 용량에 기반을 둔 정액제인 반면, CP는 실제 이용량만큼 납부하고자 하는 종량제를 선호
 - CP의 CDN 선호 이유
 - ① 효율적인 대역폭 관리
 - ② 저렴한 비용
 - ③ 종량제 과금

2 국내 CP와 해외 CP간 차이

- ISP가 국내 CP에게 부과하는 대가 수준과 해외 CP에 부과하는 대가 수준의 차이 존재
- 국내 CP들에게만 과금하거나 더 비싸게 과금하는 것은 국내 CP에게 비용 측면에서의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해외CP의 경쟁력을 높여 국내 CP에게 이종고로 작용 가능
- 국내 ISP들은 글로벌 대형 CP의 글로벌 동영상이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해외 CP에 대해서도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고 있는 입장

6

현황 및 이슈_망이용계약 주요 이슈

3 글로벌 CP의 높은 협상력

- 캐시서버 철수에 따른 기회비용
 - 글로벌 CP의 높은 협상력은 언제든지 해당 통신사에서 캐시서버를 철수할 수 있다는 강력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아웃사이드 옵션에 근거
- 자사의 글로벌 표준 강요
 - 일부 글로벌 CP의 표준은 분쟁처리, SLA 등의 측면에서 국내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포함
- 불동 디스카운트
 - 국내 CP대비 글로벌 CP의 성장세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CP에 불동 디스카운트를 책정할 유인

반면, 국내 중소 CP들은 망이용계약 시 낮은 협상력때문에, ISP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

7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구성 〉

제1장 총칙

제1조 가이드라인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이용계약을 위한 절차 및 조건

제4조 계약의 원칙, 제5조 서면계약, 제6조 계약서 작성 원칙, 제7조 정보의 제공

제3장 불공정행위

제8조 불공정행위의 유형, 제9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4장 이용자 보호

제10조 인터넷제공사업자의 의무, 제11조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제5장 보칙

제12조 관련법령의 준수, 제13조 재검토 기한, 제14조 시행일

가이드라인 구성 특징

구성

전체 5장, 14개 조항

초점

망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예방 및 이용자보호

정책적 방향성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의 균형

- 또한, CP의 지위가 미디어시장에서 커짐에 따른 ISP-CP간 균형

제1장 총칙
1조 가이드라인의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3조 적용범위

제2장 이용계약을 위한 절차 및 조건
4조 계약의 원칙
5조 서면계약
6조 계약서 작성 원칙
7조 정보의 제공

제3장 불공정행위
8조 불공정행위의 유형
9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4장 이용자 보호
10조 인터넷제공사업자의 의무
11조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제5장 보칙
12조 관련법령의 준수
13조 재검토 기한
14조 시행일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인터넷엑세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이용하는 사업자 간 거래 요소의 대가인 망이용대가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망이용대가를 산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행위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이드라인에서는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
- ◆ 인터넷생태계를 구성하는 ISP, CP, 최종이용자간 이루어지는 계약 및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억제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를 강화토록 하는 것. 더불어 양자의 균형에 초점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_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제2장 이용계약의 기본 원칙 및 주요 제4조 제1항의 원칙
 제5조 제1항의 적용
 제6조 제1항의 적용
 제7조 제1항의 적용
 제8조 제1항의 적용
 제9조 제1항의 적용
 제10조 제1항의 적용
 제11조 제1항의 적용
 제12조 제1항의 적용
 제13조 제1항의 적용
 제14조 제1항의 적용
 제15조 제1항의 적용
 제16조 제1항의 적용
 제17조 제1항의 적용
 제18조 제1항의 적용
 제19조 제1항의 적용
 제20조 제1항의 적용
 제21조 제1항의 적용
 제22조 제1항의 적용
 제23조 제1항의 적용
 제24조 제1항의 적용
 제25조 제1항의 적용
 제26조 제1항의 적용
 제27조 제1항의 적용
 제28조 제1항의 적용
 제29조 제1항의 적용
 제30조 제1항의 적용
 제31조 제1항의 적용
 제32조 제1항의 적용
 제33조 제1항의 적용
 제34조 제1항의 적용
 제35조 제1항의 적용
 제36조 제1항의 적용
 제37조 제1항의 적용
 제38조 제1항의 적용
 제39조 제1항의 적용
 제40조 제1항의 적용
 제41조 제1항의 적용
 제42조 제1항의 적용
 제43조 제1항의 적용
 제44조 제1항의 적용
 제45조 제1항의 적용
 제46조 제1항의 적용
 제47조 제1항의 적용
 제48조 제1항의 적용
 제49조 제1항의 적용
 제50조 제1항의 적용
 제51조 제1항의 적용
 제52조 제1항의 적용
 제53조 제1항의 적용
 제54조 제1항의 적용
 제55조 제1항의 적용
 제56조 제1항의 적용
 제57조 제1항의 적용
 제58조 제1항의 적용
 제59조 제1항의 적용
 제60조 제1항의 적용
 제61조 제1항의 적용
 제62조 제1항의 적용
 제63조 제1항의 적용
 제64조 제1항의 적용
 제65조 제1항의 적용
 제66조 제1항의 적용
 제67조 제1항의 적용
 제68조 제1항의 적용
 제69조 제1항의 적용
 제70조 제1항의 적용
 제71조 제1항의 적용
 제72조 제1항의 적용
 제73조 제1항의 적용
 제74조 제1항의 적용
 제75조 제1항의 적용
 제76조 제1항의 적용
 제77조 제1항의 적용
 제78조 제1항의 적용
 제79조 제1항의 적용
 제80조 제1항의 적용
 제81조 제1항의 적용
 제82조 제1항의 적용
 제83조 제1항의 적용
 제84조 제1항의 적용
 제85조 제1항의 적용
 제86조 제1항의 적용
 제87조 제1항의 적용
 제88조 제1항의 적용
 제89조 제1항의 적용
 제90조 제1항의 적용
 제91조 제1항의 적용
 제92조 제1항의 적용
 제93조 제1항의 적용
 제94조 제1항의 적용
 제95조 제1항의 적용
 제96조 제1항의 적용
 제97조 제1항의 적용
 제98조 제1항의 적용
 제99조 제1항의 적용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따른다.

1.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란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송회선서비스 등 전송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 Provider)"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CDN: Content Delivery Network)"란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콘텐츠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적용된다.

- ◆ 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이용대가에 있지 않고 이용계약에 있음
- 따라서,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이 가이드라인에서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음
- 따라서, 정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사업자간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_ 제2장 이용계약을 위한 절차 및 조건

제1장 총칙
 1.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제2장 이용계약의 기본 원칙 및 주요 제4조 제1항의 원칙
 제5조 제1항의 적용
 제6조 제1항의 적용
 제7조 제1항의 적용
 제8조 제1항의 적용
 제9조 제1항의 적용
 제10조 제1항의 적용
 제11조 제1항의 적용
 제12조 제1항의 적용
 제13조 제1항의 적용
 제14조 제1항의 적용
 제15조 제1항의 적용
 제16조 제1항의 적용
 제17조 제1항의 적용
 제18조 제1항의 적용
 제19조 제1항의 적용
 제20조 제1항의 적용
 제21조 제1항의 적용
 제22조 제1항의 적용
 제23조 제1항의 적용
 제24조 제1항의 적용
 제25조 제1항의 적용
 제26조 제1항의 적용
 제27조 제1항의 적용
 제28조 제1항의 적용
 제29조 제1항의 적용
 제30조 제1항의 적용
 제31조 제1항의 적용
 제32조 제1항의 적용
 제33조 제1항의 적용
 제34조 제1항의 적용
 제35조 제1항의 적용
 제36조 제1항의 적용
 제37조 제1항의 적용
 제38조 제1항의 적용
 제39조 제1항의 적용
 제40조 제1항의 적용
 제41조 제1항의 적용
 제42조 제1항의 적용
 제43조 제1항의 적용
 제44조 제1항의 적용
 제45조 제1항의 적용
 제46조 제1항의 적용
 제47조 제1항의 적용
 제48조 제1항의 적용
 제49조 제1항의 적용
 제50조 제1항의 적용
 제51조 제1항의 적용
 제52조 제1항의 적용
 제53조 제1항의 적용
 제54조 제1항의 적용
 제55조 제1항의 적용
 제56조 제1항의 적용
 제57조 제1항의 적용
 제58조 제1항의 적용
 제59조 제1항의 적용
 제60조 제1항의 적용
 제61조 제1항의 적용
 제62조 제1항의 적용
 제63조 제1항의 적용
 제64조 제1항의 적용
 제65조 제1항의 적용
 제66조 제1항의 적용
 제67조 제1항의 적용
 제68조 제1항의 적용
 제69조 제1항의 적용
 제70조 제1항의 적용
 제71조 제1항의 적용
 제72조 제1항의 적용
 제73조 제1항의 적용
 제74조 제1항의 적용
 제75조 제1항의 적용
 제76조 제1항의 적용
 제77조 제1항의 적용
 제78조 제1항의 적용
 제79조 제1항의 적용
 제80조 제1항의 적용
 제81조 제1항의 적용
 제82조 제1항의 적용
 제83조 제1항의 적용
 제84조 제1항의 적용
 제85조 제1항의 적용
 제86조 제1항의 적용
 제87조 제1항의 적용
 제88조 제1항의 적용
 제89조 제1항의 적용
 제90조 제1항의 적용
 제91조 제1항의 적용
 제92조 제1항의 적용
 제93조 제1항의 적용
 제94조 제1항의 적용
 제95조 제1항의 적용
 제96조 제1항의 적용
 제97조 제1항의 적용
 제98조 제1항의 적용
 제99조 제1항의 적용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제4조(계약의 원칙)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이하 "이용계약 당사자"라 한다)는 인터넷망 이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계약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상한다.
2.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3. 계약의 규모,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사업자간 전략적 제휴가 많 이용대가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그 부당성이나 불공정을 판단
- ◆ 정부규제보다는 혁신이 필요한 분야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사업자간 자율적인 거래방식까지 제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_ 제2장 이용계약을 위한 절차 및 조건

제1장 총칙
 1. 목적
 2. 용어
 3. 적용범위
 제2장 이용계약
 제3장 분쟁
 제4장 기타 사항
 부속
 제5장 부속
 제6장 부속
 제7장 부속
 제8장 부속
 제9장 부속
 제10장 부속
 제11장 부속
 제12장 부속
 제13장 부속
 제14장 부속
 제15장 부속
 제16장 부속
 제17장 부속
 제18장 부속
 제19장 부속
 제20장 부속
 제21장 부속
 제22장 부속
 제23장 부속
 제24장 부속
 제25장 부속
 제26장 부속
 제27장 부속
 제28장 부속
 제29장 부속
 제30장 부속
 제31장 부속
 제32장 부속
 제33장 부속
 제34장 부속
 제35장 부속
 제36장 부속
 제37장 부속
 제38장 부속
 제39장 부속
 제40장 부속
 제41장 부속
 제42장 부속
 제43장 부속
 제44장 부속
 제45장 부속
 제46장 부속
 제47장 부속
 제48장 부속
 제49장 부속
 제50장 부속
 제51장 부속
 제52장 부속
 제53장 부속
 제54장 부속
 제55장 부속
 제56장 부속
 제57장 부속
 제58장 부속
 제59장 부속
 제60장 부속
 제61장 부속
 제62장 부속
 제63장 부속
 제64장 부속
 제65장 부속
 제66장 부속
 제67장 부속
 제68장 부속
 제69장 부속
 제70장 부속
 제71장 부속
 제72장 부속
 제73장 부속
 제74장 부속
 제75장 부속
 제76장 부속
 제77장 부속
 제78장 부속
 제79장 부속
 제80장 부속
 제81장 부속
 제82장 부속
 제83장 부속
 제84장 부속
 제85장 부속
 제86장 부속
 제87장 부속
 제88장 부속
 제89장 부속
 제90장 부속
 제91장 부속
 제92장 부속
 제93장 부속
 제94장 부속
 제95장 부속
 제96장 부속
 제97장 부속
 제98장 부속
 제99장 부속
 제100장 부속

제5조(서면계약)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요청은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 분쟁 발생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국내의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글로벌 사업자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면 이용계약 요청을 원칙으로 제시
- 글로벌 사업자 중 일부의 구두 계약요청과 취소 등 사업자간 불성실 계약 요청 사례가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
- 계약사항을 문서화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상호 간 신뢰확보 측면에서도 유익적이며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사후규제기관의 조사, 심결 과정에서 증거기반결정(evidence-based decision)에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높음

- 제6조(계약서 작성 원칙)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및 제3자가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3.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전송용량, 이용기간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인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의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임
- 1, 2, 3 호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조항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_ 제2장 이용계약을 위한 절차 및 조건

제1장 총칙
 1. 목적
 2. 용어
 3. 적용범위
 제2장 이용계약
 제3장 분쟁
 제4장 기타 사항
 부속
 제5장 부속
 제6장 부속
 제7장 부속
 제8장 부속
 제9장 부속
 제10장 부속
 제11장 부속
 제12장 부속
 제13장 부속
 제14장 부속
 제15장 부속
 제16장 부속
 제17장 부속
 제18장 부속
 제19장 부속
 제20장 부속
 제21장 부속
 제22장 부속
 제23장 부속
 제24장 부속
 제25장 부속
 제26장 부속
 제27장 부속
 제28장 부속
 제29장 부속
 제30장 부속
 제31장 부속
 제32장 부속
 제33장 부속
 제34장 부속
 제35장 부속
 제36장 부속
 제37장 부속
 제38장 부속
 제39장 부속
 제40장 부속
 제41장 부속
 제42장 부속
 제43장 부속
 제44장 부속
 제45장 부속
 제46장 부속
 제47장 부속
 제48장 부속
 제49장 부속
 제50장 부속
 제51장 부속
 제52장 부속
 제53장 부속
 제54장 부속
 제55장 부속
 제56장 부속
 제57장 부속
 제58장 부속
 제59장 부속
 제60장 부속
 제61장 부속
 제62장 부속
 제63장 부속
 제64장 부속
 제65장 부속
 제66장 부속
 제67장 부속
 제68장 부속
 제69장 부속
 제70장 부속
 제71장 부속
 제72장 부속
 제73장 부속
 제74장 부속
 제75장 부속
 제76장 부속
 제77장 부속
 제78장 부속
 제79장 부속
 제80장 부속
 제81장 부속
 제82장 부속
 제83장 부속
 제84장 부속
 제85장 부속
 제86장 부속
 제87장 부속
 제88장 부속
 제89장 부속
 제90장 부속
 제91장 부속
 제92장 부속
 제93장 부속
 제94장 부속
 제95장 부속
 제96장 부속
 제97장 부속
 제98장 부속
 제99장 부속
 제100장 부속

제7조(정보의 제공) ① 이용계약 당사자 간에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상대방은 이에 응한다.

- ◆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투명성이 가장 요구됨
- 거래 과정에서 정보를 통제하려는 목적은 거래정보 노출로 인해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기피하는 측면도 있으나 양사 간 거래조건이 공개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측의 요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 문제는 협상력이 낮은 측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싶어도 NDA(Non-Disclosure Agreement: 비밀유지계약) 등을 이유로 실행할 수 없는 현실
- 따라서, 이용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상호 간에 투명한 거래가 필요
- 따라서, 이를 불이행 시 가이드라인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
- 최근 일본 정부도 글로벌 IT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여도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계약 조항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거래 정보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결정

※ 日 정부, GAFA의 거래 관행 규제를 위한 정부(안) 제시, 2019. 04. 24., INCA Brief, (日経電子版(2019), 巨大IT規制, 社名公開中独禁法適用〜 政府案提示, 2019.4.24., 産経新聞 (2019), 政府が巨大IT規制案 取引条件の開示で新法 違反に社名公開株式会社 産経デジタル, 2019.4.24.)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_ 제3장 불공정행위

제1항 목적
제2항 구성요건
제3항 효과
제4항 적용
제5항 관련법령
제6항 판례
제7항 참고문헌
제8항 부속
제9항 기타사항

제8조(불공정행위 유형) ① 이용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내용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4. 이용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1 - 4호 모두 사업자 인터뷰 등에서 실제 사례로 언급된 바 있음

- 일방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방안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협상력 우위 즉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동상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됨
- 일방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지연, 거부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협상에 임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행위는 일종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위일 수 있음
- 자사와의 계약을 이유로 타사와의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영업 행위임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소위 담합(Cartel)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에서 당연위법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됨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_ 제3장 불공정행위

제1항 목적
제2항 구성요건
제3항 효과
제4항 적용
제5항 관련법령
제6항 판례
제7항 참고문헌
제8항 부속
제9항 기타사항

제8조(불공정행위 유형) ② 이용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규제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

- B2B 거래에서는 다양한 이유에서 제공 조건 특히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수준이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임.
- 따라서 제3자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제공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때 현저하다는 것은 규제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임

제8조(불공정행위 유형) ③ 이용계약 당사자는 합의사항 일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 네트워크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

- 네트워크 이용 및 제공 관련 계약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계약체결 거부, 이면계약 요구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불이익을 야기하는 계약은 불허함을 적시한 조항
- 통상 협상력 우위에 있는 측이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데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_ 제3장 불공정행위

차등 서비스
 7조 가이드라인으로
 특히
 1조 용어정의 참조
 2조 적용범위

제9조 이용계약의
 제8조 계약의 성립
 제9조 계약의 성립
 제10조 계약의 종료
 제11조 계약의 종료

제10조 불공정행위
 제10조 불공정행위
 제11조 불공정행위
 제12조 불공정행위

제13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4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5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6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7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8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9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20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9조(부당성 판단기준) 제8조에 따른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2. 콘텐츠 경쟁력,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3.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4.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이용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

◆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계약 일방 당사자 의견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가격, 거래기간 등 단편적인 항목의 변화만으로 결정할 수 없음

- 따라서, 계약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고려
- 비교 가능한 시기에 비교 가능한 대상에 대한 정보 또한 고려
- 해외CP의 망이용대가는 시장 경쟁상황, CP의 경쟁력 등이 반영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인) _ 제4장 이용자 보호

차등 서비스
 7조 가이드라인으로
 특히
 1조 용어정의 참조
 2조 적용범위

제9조 이용계약의
 제8조 계약의 성립
 제9조 계약의 성립
 제10조 계약의 종료
 제11조 계약의 종료

제10조 불공정행위
 제10조 불공정행위
 제11조 불공정행위
 제12조 불공정행위

제13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4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5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6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7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8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9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20조 부당성
 판단기준

제10조(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의무)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제공사업자,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이하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②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계약상대방과 협의한다.
- ③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10조, 제11조는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인 ISP, CP의 이용자 관계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 ISP-CP, ISP-CDN, ISP-이용자, CP-이용자 관계에서 이용자 보호를 각각 규율

- 인터넷 생태계 내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그들에게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짐
- 이때 의무는 윤리적 차원의 의무가 아니라 약관 즉, 민법상 계약에 따른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로 회피 불가능한 의무임
- 따라서 사업자간 분쟁과 같이 이용자 원인이 아닌 이유로 약관상 제공하기로 한 의무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것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약관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동 조항은 사업자의 의무를 환기시키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자는 인터넷생태계 내 모든 사업자가 해당됨
- 이용자가 지불하는 서비스 대가는 금전적인 대가에 제한되지 아니하며,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과 같이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로 부터 받는 모든 것이 해당됨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_ 제4장 이용자 보호

제10 조 총칙
 1. 총칙의 목적
 2. 적용범위
 제11 조 이용계약의
 1. 계약의 목적
 2. 계약의 당사자
 3. 계약의 기간
 4. 계약의 종료
 제12 조 콘텐츠제공사업자
 1.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무
 2.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책임
 제13 조 제12조 관련
 1. 제12조 관련
 2. 제12조 관련
 제14 조 시행일

제11조(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ISP-CP가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 중일 때는 라우팅 경로 등을 CP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에 통 제권이 일정 수준 있다고 판단됨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대규모 네트워크 간에 주로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

- 따라서 CP의 BGP 관정책에 따라 ISP의 네트워크 품질, 더 나아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CP가 ISP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전체적으로 중소규모의 CP에게 특별히 부담을 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중소규모-대규모 구분하여 차별 적용하지 않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_ 제5장 보칙

제10 조 총칙
 1. 총칙의 목적
 2. 적용범위
 3. 적용범위
 제11 조 이용계약의
 1. 계약의 목적
 2. 계약의 당사자
 3. 계약의 기간
 4. 계약의 종료
 제12 조 콘텐츠제공사업자
 1.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무
 2.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책임
 제13 조 제12조 관련
 1. 제12조 관련
 2. 제12조 관련
 제14 조 시행일

제12조(관련 법령의 준수 등)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제정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2-3.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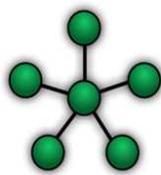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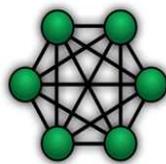
2019년 11월
박경신 고려대학교/오픈넷
kyungsinpark@korea.ac.kr

인터넷이라는 발명의 '문명사적' 의의:
힘없는 개인도 막강한 국가나 기업처럼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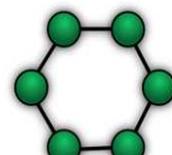
그렇다면 다음 중 어떤 구조가 이를 가능케할까? Fully connected되
지 않고 fully communicating하는 방법은 없을까?



Star



Fully Connected



Ring

인터넷: 정보전달서비스의 상부상조(클라우드소싱)

모두가 조건없이 “옆으로 전달”

(금전적/비금전적 조건을 만드는 순간 조건을 집행하는 gatekeeper가 필요해지므로)

→정보전달료(termination fee)는 없다

→왜냐하면 모두가 서로의 정보를 전달해주므로
정보전달료를 수령할 주체도 납부할 주체도 없다.

→정보전달료가 없으므로 종량제는 없다, 데이터상한제도 없다

(모바일접속료는 예측불가하여 예외:
나중에 '접속료'와 함께 설명)

3

N. Economides, J. Tåg/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24 (2012) 91–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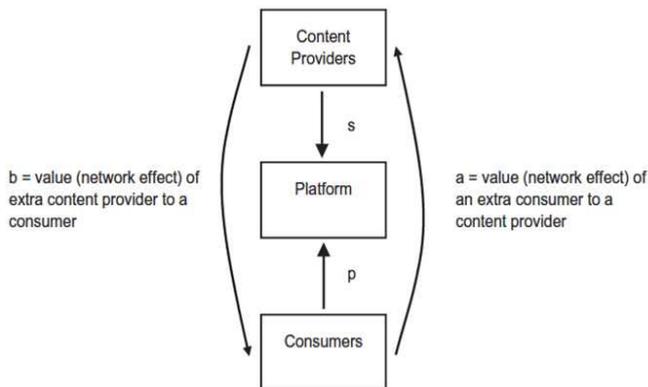


Fig. 2. Interaction of consumers with content providers and vice versa through the platform.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content provider는 consumer이
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p를 내고
있다는 점.

s는 모두가 내는 p외에 내는 정
보전달료를 말함.

a lump-sum fee equal to s to gain access to users, this fee is assumed to be the same for all content providers and it is set by the platform.¹⁵ Thus, a content provider j 's profit is

$$\pi_j = an_c - s - fy_j. \quad (2)$$

Network neutrality regulation corresponds to the case where s is zero. As discussed earlier, the traditional fees paid for transit service by content/applications providers are small, and here we take them to be zero at the status

4

정보전달료와 Fast Lane



5

그러나, 접속료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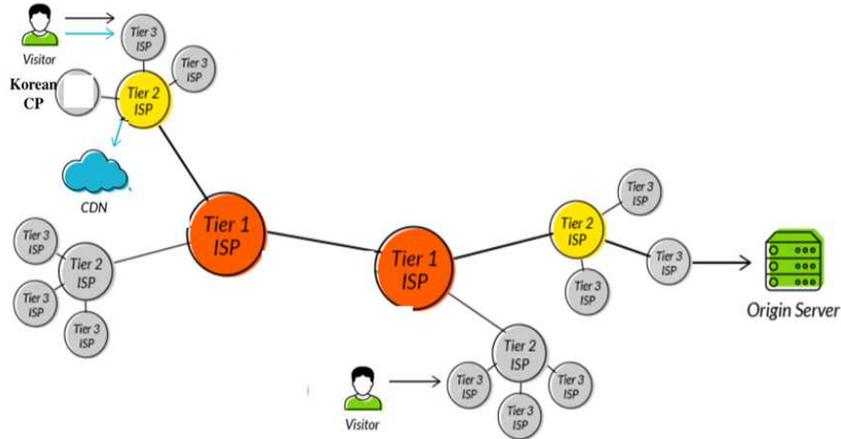
접속료는 접속상대와의 물리적 연결에 대한 비용

- 서로에게 좋은 상호접속의 비용, 누가 낼까? 접속속구가 더 높은 쪽.
- 어느 쪽이 접속속구가 더 높을까? → 연결성이 낮은 쪽이 연결성이 더 높은 쪽으로 연결하고자 할 것, 예) 10개 단말그룹 v. 100개 단말그룹
- 더 좋은 연결성 때문에 특정 단말과 접속을 요구하며 내는 비용 : **TRANSIT**
- 옆 단말을 통해 전세계 단말까지 모두 소통하면 : **FULL TRANSIT**
- 서로끼리만 주고 받는 것 → **PEERING**. 연결성이 무의미하므로 보통 무정산
- 서로끼리만 주고받되 한쪽의 콘텐츠가 좋아 한쪽으로는 접속속구가 더 높은 경우 → **paid peering**
- 서로 주고 받고 전세계가 아닌 일부 단말들에게 전달해주겠다는 단말까지 이어지는 다음 단말까지 전달 → **partial transit** (페북캐시서버와 KT의 관계: 무료)
- **접속료를 중량제로?** No. (1)위의 인터넷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에 위반 (2) 실제로 물리적 연결이 이루어진 이후 정보전달비용은 zero
- **중량제나 상한제가 없으면 혼잡 발생?** 각자 자신이 원하는 속도(용량)의 접속을 구매하고 접속판매자가 정직하게 그 속도를 받쳐줄 transit를 구매하면 혼잡 없음.

6

접속료는 누가 누구에게 내는가?

(“연결성이 더 좋은 자에게”, “킬러콘텐츠를 유치한 자에게”)



7

Paid peering, transit 등등 의 비율

전세계에 transit이 많을까 peering이 많을까?

- 당연히 transit으로 연결되는 단말들이 훨씬 더 많다. 인터넷의 발명의 핵심에는 바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transit이 있음.
- 그러나 통행량을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많다고 말하기 어려움. 모든 traffic은 언젠가는 peering을 통해서 전세계와 연결되기 때문.

peering중에는 free peering이 많을까? paid peering이 많을까?

- 계약의 숫자로 보면 free peering이 압도적으로 (99%이상) 많음(Packet Clearing House의 수십만개 peering관계 조사와 일치).
- 누적통행량으로 보면 paid peering이 킬러콘텐츠들(넷플릭스, 유튜브)과 연결성이 좋은 자(지역과점 망사업자) 사이의 접속과 관련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peering에 버금갈 수 있음(프랑스Arcep조사).
- 접속용량으로 본다면? 아마도 peering이 계약숫자 수준은 아니더라도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임.

8

망접속료 v. 망이용료

-조삼모사?

접속료 - 이웃에게 내는 것

이용료/정보전달료 - 발신자 수신자가 자신의 신호가 거쳐가는 길목에서 게이트키퍼에게 내는 것 → 게이트키퍼 숫자에 따라 무한대로 증가할 가능성

저자가 도서관에 책을 보냈다고 하자. 그 책을 빌려 읽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저자가 도서관에 돈을 낸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책을 보러 갔다고 하자. 도서관 내에서 1권씩 빌려보는데 책을 많이 볼수록 도서관에 돈을 많이 낸다?

네티즌이 자신이 올린 정보를 전세계의 누군가 본다고 해서 많이 보는 만큼 돈을 더 내야 한다면 온라인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것.

단, 자신의 책을 한꺼번에 많이 장서시키기 위해 또는 한꺼번에 많은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 돈을 내도록 하는 것? = 접속료, OK.

9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 v.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

-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
- 규범으로서의 망중립성: 특정 사업자가 "접속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구동원리를 해하는 것 → 독점규제법의 영역
- 미국 연방통신법 상의 규제를 하는지 여부는 별로 중요치 않음
 - 실제로 망중립성 규제가 폐지된 후에 망사업모델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음.
 - "망이용대가"론? "무임승차론"? 나오지 않고 있음.

10

우리나라: 2016년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

- 1.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좋은 콘텐츠기업을 자신의 망에 유치해서 소비자 고객들에게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제공할 동인이 사라져 버림. 결국 망사업자들이 **접속료 상향담합**을 가능하게 만듦.
- 2: 망사업자들 사이의 발신자종량제 즉 자신이 발신한 정보를 전달해 준 것에 대한 대가 → "정보전달료" → 인터넷의 구동원리 정면으로 위반 → 망사업자들이 CP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누적통행량을 감안하여 접속료를 산정 하도록 동기부여** → 페이스북 접속대란.
- → 발신자종량제: 장사 잘되는 가게에 대해서는 매출 비례하여 월세 올리라고 건물주인에게 강제. "디지털젠트리피케이션유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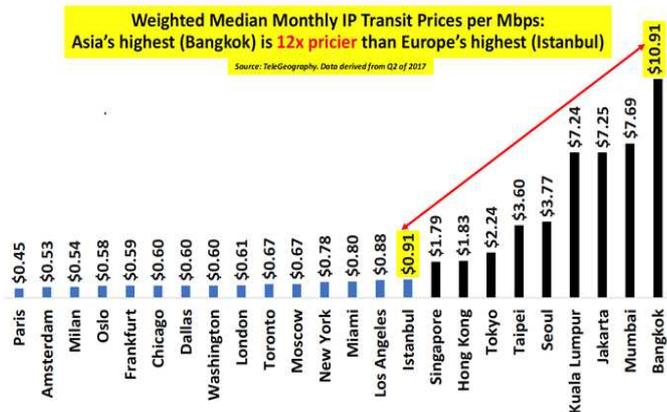
11

인터넷접속료 국제비교 (full transit)

서울 1 Mbps 3불77센트

- 파리의 8.3배
- 런던의 6.2배
- 뉴욕의 4.8배
- LA의 4.3배
- 싱가포르의 2.1배
- 도쿄의 1.7배

*지리적 소외성도 없음



12

상호접속료 in Asia over time

Weighted Median Asian IP Transit Prices per Mbps, 10 Gigabit Ethernet, Q2 2015-Q2 2018

	2015	2016	2017	2018	2017-18	CAGR 15-18
Bangkok	\$9.00	\$11.77	\$10.91	\$8.90	-18%	-0%
Hong Kong	\$4.13	\$3.10	\$1.83	\$1.75	-4%	-25%
Jakarta	\$9.27	\$8.00	\$7.25	\$7.43	2%	-7%
Kuala Lumpur	\$9.62	\$6.72	\$7.24	\$3.69	-49%	-27%
Mumbai	\$9.97	\$9.32	\$7.69	\$5.60	-27%	-17%
Seoul	\$6.00	\$5.00	\$3.77	\$3.51	-7%	-16%
Singapore	\$4.00	\$3.11	\$1.79	\$1.39	-22%	-30%
Taipei	\$7.30	\$5.08	\$3.60	\$3.35	-7%	-23%
Tokyo	\$5.00	\$3.00	\$2.24	\$2.00	-11%	-26%

Notes: Prices represent the weighted median monthly price per Mbps for a full-port commit in the listed city. Data derived from Q2 of each year. Prices are in USD and exclude local access and installation fees. 10 Gigabit Ethernet (10 GigE) = 10,000 Mbps.

Source: TeleGeography

© 2018 PriMetrix, Inc.

13

전용회선료 비교 (2017년정관)

- **KT:**
- 1 Mbps 월85만원,
- **SK브로드밴드:**
- 10 Mbps 월363만원
- **LGU+:**
- 10 Mbps 월419만원
- **AT&T:**
- 10 Mbps 약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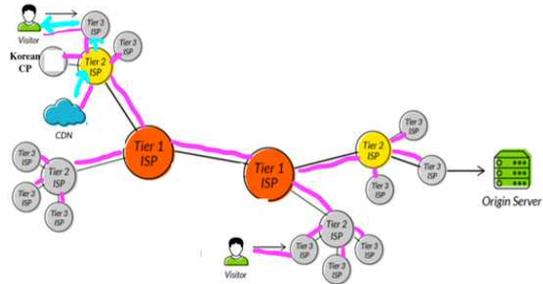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AT&T business website page for dedicated internet services. The browser address bar shows 'business.att.com/products/dedicated-internet/#/'. The page title is 'Dedicated Internet'. The breadcrumb navigation is 'Internet & Networking Services > Internet > Dedicated Internet'.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wo service options for 10Mbps service:

- 100Mbps Dedicated Internet:** Includes FREE AT&T Installation. Price: \$1,195 per location /mo. Includes 'with Voice Bundle' checkbox.
- 150Mbps Dedicated Internet:** Includes FREE AT&T Installation. Price: \$1,357 per location /mo. Includes 'with Voice Bundle' 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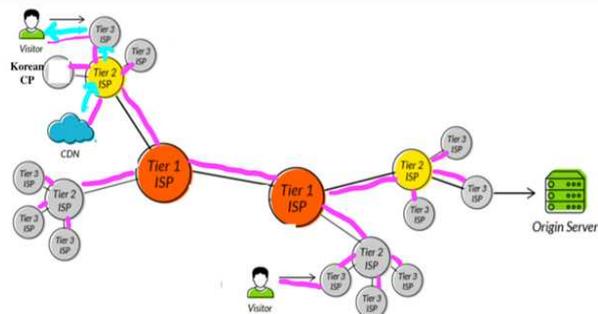
Both options have a 'See offer details' link and an 'Add Cybersecurity Services' checkbox at the bottom.

페이스북 접속대란:

- 2016년 발신자중량제 → '순수신망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망사업자들이 킬러콘텐츠 회피 → 그 중의 한 킬러콘텐츠는 바로 Facebook 캐시서버 (하늘색 루트로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전달)
- → KT: "SK나 LG방향 발신접속료 때문에 캐시서버 유지 힘들다"
- → FB: "그럼 캐시서버 쓰지 않겠다"
- → 원래의 핑크색 루트(오른쪽 연두색 박스와 왼쪽 연두색 이용자 사이의)복원 → 속도저하
- 방통위 징계? 해외포털은 캐시서버를 운영할 의무라도 있는가?



“망이용대가” 론
= “역차별론”
= 페이스북
접속속도 책임론



- 한국CP가 사는 서비스: 핑크색 루트
- 외국업체가 사는 서비스: 하늘색 루트
- " 망이용대가": 캐시서버접속료(하늘색)과 Full transit인터넷접속료(핑크색)라는 2개의 다른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 차별이 있다 ' 는 주장을 하기 위해 역지로 만들어낸 말.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1.

- 제11조(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콘텐츠접근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반함.

→ 콘텐츠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접근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사업하는 자들이 접속료를 모아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콘텐츠제공업자는 자신이 클라우드에 콘텐츠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접속료만 내는 것으로 족함. 국내업자든 외국업자든 그 이상 자신이 만든 콘텐츠가 원활하게 접속하도록 책임질 의무는 없음.

17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2.

가장 큰 문제점: 제4조-제10조 망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자를 동일하게 다룸.

→ Full connectivity를 돈을 받고 파는 자는 망사업자임.

→ 인터넷망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에 대해 돈을 받은 망사업자의 과업임. 콘텐츠제공업자가 참여할 일도 아니고 참여할 수도 없음. 콘텐츠제공업자는 어차피 망 속도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접속료를 내는 것임.

→ 결국 빌딩주에게 적절한 임대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에게 '공정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함.

→ 발신자종량제의 문제: 국가가 빌딩주에게 월세산정을 가게매출에 비례하도록 강제해놓고 상가임대차계약이 평화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18

수익자부담 원칙?

CP는 이미 접속료를 부담하고 있음. **중량제 선호하지 않음. 현재 발신자중량제 때문에 정액접속료가 너무 비싸져 조금이라도 접속료를 줄이기 위해 중량제를 선호하는 CP의 존재가능성?**

문제는 방식: 중량제? 정액제?

"수익"은 무엇을 말하는가? 비용인가? 매출인가?

전기/가스 수익자부담원칙.

책을 더 많이 읽으면 도서관료를 더 많이 낸다?

공부를 더 잘하면 수업료를 더 많이 낸다?

대표적인 수익자부담원칙모델: 상가임대차

고정월세 vs. 매출에 비례하는 월세 →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

중량제로 한다면 과연 킬러콘텐츠(무료 또는 거의 무료가 보통)가 나올 수 있을까?

킬러콘텐츠가 없는 인터넷에 사람들이 접속료를 내고 참가하려 할까?

19

양면시장 이론?



20

망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공정한 생태계 구축

신민수

한양대학교

minsooshin@hanyang.ac.kr

2019년 11월 19일

1

망이용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정 필요성

-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우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CP는 시장 지위를 활용하여 (국내 CP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가격으로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적합한 수준의 비용 지불 없이 인터넷망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ISP의 망 이용에 대한 계약 과정 혹은 협상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 협상 지연 혹은 거부)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가 없는 상태임
-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역차별과 불공정 경쟁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간 분쟁도 증가하고 있음
 - 페이스북 사례에서와 같이 글로벌 CP의 일방적 트래픽 변경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망 이용료 협상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망 이용 계약 과정의 협상 원칙 및 절차와 계약 요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망이용 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정당한 망 이용 대가 지불 필요성 포함

- 망 이용 비용에 대한 역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 중 하나임
- 이에 따라 '정당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가이드라인의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제6조(계약서 작성 원칙), 제6조(계약서 작성 원칙) 등에 '정당한 망 이용 대가' 항목 포함
-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적용 범위 확대 필요

- 국내 ISP와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외 CP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적용된다.
- →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적용된다.

6

정보 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

- 망 이용에는 비용 뿐만 아니라 그 외 요소도 있을 수 있어 이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
- 제7조(정보의 제공) ① 이용계약 당사자 간에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한다.
- → 제7조(정보의 제공) ① 이용계약 당사자 간에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한다.

7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 해결 필요

- 제8조(불공정행위)에 신설 조항 추가
-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유형(제1항 1호~4호)과 제2항의 내용만으로는 글로벌 CP의 망이용대가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국내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이용중인 글로벌 CP가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합리적 사유에 근거하였다고 주장하거나
 - 본인이 계약한 다른 이용계약(무상 이용 등)과 비교하여 불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음
- 따라서, 망이용에 따른 정당한 망이용료 지불을 회피하는 경우도 불공정행위 유형에 포함 필요
- → 5.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비용 지급을 지연 혹은 거부하는 경우
- → ②를 명확하게 표현
 - ② 이용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8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무 수준 강화 필요

- 현행 안은 ISP에 비해 CP의 품질유지 의무가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CP에 의한 이용자 피해 등을 규율하기 어려우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CP에게 실질적인 의무 부과 필요
- ISP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제10조제1항) 반면 CP는 관련 정보를 ISP에 제공하는(제11조제1항) 행위만으로 면책받게 됨
- 이용자에 대한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에 있는 행위 유형을 참고할 수 있음
- 제11조(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 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인터넷전용회선 용량 확보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
 - 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협의한다.

9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무 수준 강화 필요

-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품질유지 의무를 반영하고 관련 의무 대상을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한 대형 CP群으로 한정하고 중소CP는 제외(제11조 제1항 및 제4항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 기준 참조. CP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정수준 이상 매출액과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의무 적용

10

성실 협상 조항 신설

- ISP가 협상을 요청해도 망 이용대가의 협상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글로벌 CP의 협상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 해소 필요
- ISP와 CP는 상대방이 협상 요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일방이 협상을 요구했을 때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협상 권한을 지닌 책임자(대표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성실 협상 내용에 대한 조항 추가 필요
- 제0조(성실협상)
서면, 이메일 등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3회 이상 협상 요청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협상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협상에 대한 권한이 있는 책임자를 즉시 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명해야 한다.

11

ISP의 망품질 보호조치 근거 마련

-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ISP에 망을 점유하면서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서는 ISP가 이용자 품질보호를 위해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제0조(트래픽 관리)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유발하는 트래픽의 급증, 일방적인 라우팅 변경 등으로 인해 인터넷망에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하여 트래픽의 전송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망 접속 수용 곤란 등 통신망의 현저한 품질 저하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통신사는 해당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서비스에 한하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제한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다.

12

1-3. 인터넷 분야 규제 개선

1-3-1.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류민호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19. 09. 27

류민호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1

목 차 CONTENTS

1

인터넷사업자
규제 히스토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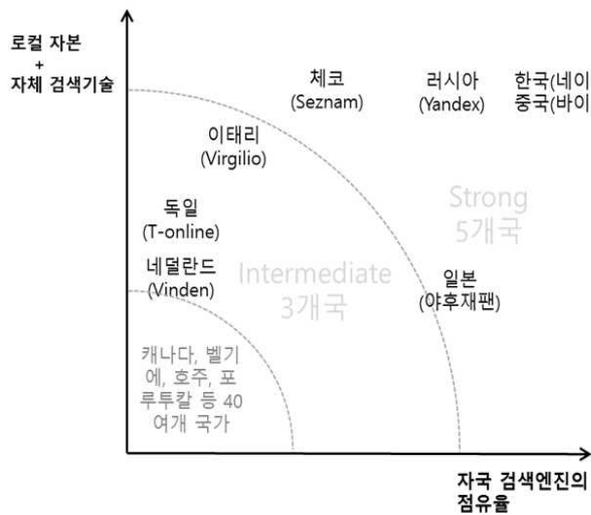
AI 환경에서
사업자 공정경쟁 주요 쟁점

3

시사점

2

로컬 플랫폼?



The economic effects of domestic search engines on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Sung Wook Ji^a, Young-jun Choi^b, Min Ho Ryu^{c,*}

^a Department of Radio, Television, and Digital Media,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United States
^b Department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Trade, Kyung Hee University, South Korea
^c Internet Research Team, Naver Corp., South Korea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7 October 2015
 Received in revised form 7 May 2016
 Accepted 24 May 2016

Keywords:
 Domestic search engine
 Online advertising market
 Two-sided market

ABSTRACT

A few global search engine platforms, notably Google and Yahoo!, have achieved worldwide dominance in the search engine market. However, some domestic search engine platforms, such as Naver in South Korea and Baidu in China, have come to dominate their domestic markets in competition with global search engine platforms. This study quantified the economic effects of domestic search engines on the development of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Using a country-level dynamic panel of 46 countries from 2009 to 2013, we investigated the change in the size of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caused by the existence of a domestic search engine. Th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ment of a domestic search engine may lead to an increase in the size of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A country with its own domestic search engine platform(s) may have an average of 0.018% more online advertising intensity—which is defined as online advertising spending/GDP—than one without this type of platform. The reasons behind these resul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 2016 Elsevier Ltd. All rights reserved.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

[국제] 중센스타임, 알리바바 등에서 6억달러 투자 유치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스타트업"

일방정: 2016.04.10

[특소TV] 클라우드 비용 50%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알려드립니다(4월 26일)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 센스타임이 6억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WISA가 9월(한국시간) 보도했다.

센스타임은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가치를 45억달러(약 4조8000억원)까지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스타임은 알리바바그룹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크벤처펀드, 중국 최대 가전유통업체 루니클이 참여한 시리즈A 라운드 투자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정확한 광고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는 인공지능(AI) 기술 기업이 단일 투자 라운드에서 조달한 금액 중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WISA는 이번 투자 라운드를 이끈 알리바바가 센스타임의 AI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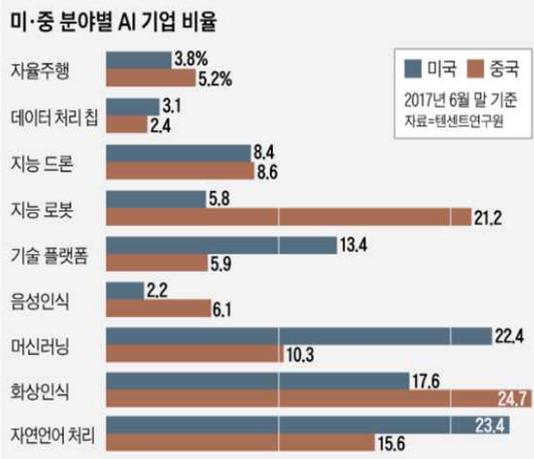
현재 알리바바 계열사인 알리바바인생은 인공지능 기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 알리바바도 경찰, 교통, 기타 공공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센스타임 최고경영자(CEO)는 스타트업이와 클라우드컴퓨팅 분야에서 알리바바와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하고 인프라와 리소스를 공급하는 데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우리는 컴퓨터 비전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능하다"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설립된 센스타임은 AI 기술 기반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범죄 용의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휴대와 차량주행 기술용, 통신망은 인공지능 등 스마트기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로니클은 센스타임이 지난 7월 시리즈B 라운드 투자에서 4억1000만달러를 모금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금액이 세 배나 뛰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업가치는 15억달러로 평가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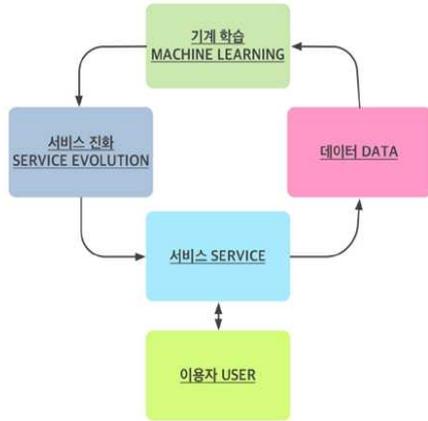
김종희기자 mjprint@et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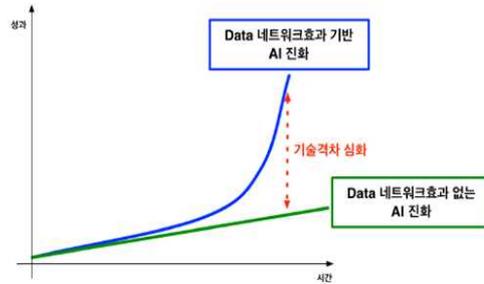
출처: 세계 최고 몸 값 시 유니콘 중국서 탄생... 얼굴인식 센스타임 30억 불 돌파 (조선비즈 2018.04.09)

쟁점 별 논의 3.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가?

데이터 = 선순환 연결고리



데이터 외부효과(Externality)



DATA는 국가의 핵심 자산!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GDPR

-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개인정보의 이동권, 잊혀질 권리)
- 데이터 관리 주체의 책임성 강화
 - 일정기준(예를
 - 들면, 공공기관이나 2개월 동안 5,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컨트롤러나 프로세서는 정보보호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지정 해야 함(GDPR 제37조부터제39조)
- 동의 요건 강화
 - 개인정보가 이용되는 목적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이어야함(GDPR 제7조및제4조)
 - 컨트롤러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침해 통지 의무 부과
- 통합 감독기관을 두고,
 - 1) 조사 2) 시정요구 3) 승인 및 조언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강화

데이터 3법

'데이터3법' 국회문턱 넘나

14일 정부와 신용정보법 심사
행안위서 개인정보법 간담회

이동통신진흥법 기자 입력 : 2019.08.13 17:51:30 수정 : 2019.08.13 17:55:23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 개정이 국제 규제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통과될 것인 전망도 나온다.

1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가 열렸다.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홍익 표·김영권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 하나금융지주,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들도 참석해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패널로 자리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에서도 사내 변호사를 간담회에 참석시켜 관심을 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정부는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3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으로 본격적인 통과 논의는 부진한 상황이다. 20대 국회 임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일몰 폐기될 예정이다. 유럽 등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통합과 단일화된 감독 기구를 갖춰야 유럽연합(EU) 및 반개인정보보호규제(GDPR)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많은 기업이 데이터 3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만 소관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다뤄지만 14일 신용정보법 개정안도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다룬 계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신용 정보를 모으거나 이동시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정보통신망법은 아직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아 데이터 3법 중 가장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동통신사·포털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대부분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 집행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시면단체 반대가 법안 통과에 큰 변수다.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 법 체계를 일원화
-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가명, 익명)
- 개인정보 동의 opt out, 3자 제공 동의 (?)
-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

국내 인터넷 규제 흐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주요 법안 (의원발의)	박찬숙 의원(2005, 한나라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노윤래 의원(2005, 열린우리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심재철 의원(2006, 열린우리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김영선 의원(2008, 한나라당) 검색서비스사업자 법안 김영선 의원(2008, 한나라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진성호 의원(2009, 한나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대출 의원(2013, 새누리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김용태 의원(2013, 새누리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강기윤 의원(2013, 새누리당)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포털을 인터넷 언론에 포함, 편집 조작에 대한 권리 부여, 사회적 책임 부여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강화, 검색광고 구분	부가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제도 도입
통과 법안	2004년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2006년 「정보통신망법」상 제한적 본인확인제 2007년 「정보통신망법」상 임시 조치 도입 (류석진, 송경재 2011, 408-409)	신문법, 언론중재법 통과 →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동의의결)

뉴스서비스

정보매개자 역할
+ 방송통신 발전기금

경정상황평가

쟁점 별 논의1. 임의조작, 차별금지

항목	규제 찬성 진영 논리	규제 반대 진영 논리
검색 중립성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엔진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거나 숨기는 행위 등을 통해 정보의 흐름을 임의로 조작 (manipulation)함(Hazan, 2013)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는 중립적(객관적)이어야 하고, 사업자의 주관적인 결정 (editorial decisions, hard-coding)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립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누가 중립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지?(Lao, 2013) 검색엔진은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알고리즘을 가질 수 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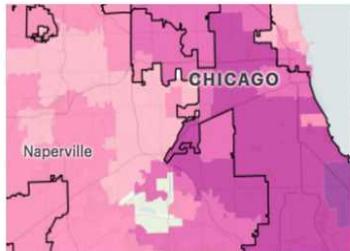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 결코 모두를 만족하는 '중립성' 존재하기 힘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절대적 선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

- 어떤 검색 결과가 중립적이고 편향적이라든지, "fair" 한 것이며, 언제 어떤 때 "unfair" 한가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가? 달리 말해, 검색에서의 중립성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 '시장의 선택'을 합리적 객관성으로 볼 수 밖에...
- 광고 유무에 대한 이용자의 인지...

쟁점 별 논의1. 임의조작, 차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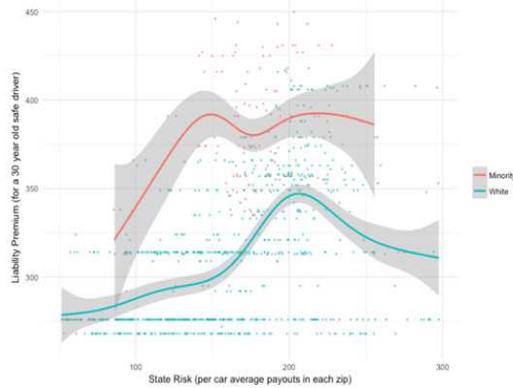
보험료 산정에서의 차별 (Propublica, 2017,4)

- 미국 일리노이주 백인 거주지역에 비해 소수 인종 밀집지역의 평균 보험료가 더 높게 나타남



Chicago Area Disparities in Car Insurance Premiums

Some car insurers charge higher premiums in Chicago's minority neighborhoods than in predominantly white neighborhoods with similar risk of accidents. [See the map.](#)



<https://www.propublica.org/article/minority-neighborhoods-higher-car-insurance-premiums-white-areas-same-risk>

쟁점 별 논의1. 임의조작, 차별금지

관련 규정	
미국	사회적 약자에게 더 비싸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 (Steel and Agwin, 2010)
유럽	보험사가 특정 집단(성별, 인종)에게 더 비싼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을 금지(European court of Justice, 2011) - 비록 가격 책정이 정확하고 객관적 근거가 충분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됐다 할지라도....

쟁점 별 논의 2. DOES SIZE MATTER?

항목	규제 찬성 진영 논리	규제 반대 진영 논리
지배적 사업자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엔진은 우리 사회의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력은 궁극적으로 전통적 미디어 시장을 잠식할 것임 보통 시장점유율이 70-90%되는 기업은 독점기업으로 분류되고, 독점기업의 결합 판매(tying) 행위는 경쟁을 저해한다고 간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모와 지배력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Lao, 2013) 인터넷 검색 시장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시장 내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음. 언젠은 새로운 서비스나 경쟁자가 경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 역사적으로 규모가 크다고 혹은 정보를 독점한다고 우려했던 많은 기업들이 (예: AOL, Myspace) 지금은 사라지거나 시장 내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

-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 One Click away!
- 설사 지배력이 있더라도, 지배력을 행사할 Power 없음 (크다고 나쁜것은 아니다)
- 지배력 남용 → 서비스 경쟁력 훼손 → 이용자 외면

쟁점 별 논의 2. DOES SIZE MATTER?

인터넷의 확장과정에서 대형 플랫폼 등장

전통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vs 인터넷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디지털 경제에서 시장 집중은, 플랫폼에 연결된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시킨다면 경제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디지털 독점(Digital monopoly)

- 공급, 유통, 인프라를 통제하여 고객의 선택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객이 더 좋은 서비스를 경험하고자 플랫폼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쟁점 별 논의 2. DOES SIZE MATTER?

서비스 이용 데이터가 Switching cost를 높이는가?

‘We need the Einstein of the Internet Age’:
Interview with Steven Wildman, FCC Chief
Economist

Terry Flew & Steven Wildman

To cite this article: Terry Flew & Steven Wildman (2015) ‘We need the Einstein of the Internet Age’: Interview with Steven Wildman, FCC Chief Economist, *Communication Research and Practice*, 1:1, 88-97, DOI: [10.1080/22041451.2015.1042420](https://doi.org/10.1080/22041451.2015.1042420)

To link to this article: <https://doi.org/10.1080/22041451.2015.1042420>

Published online: 01 May 2015.

[Submit your article to this journal](#)

Article views: 344

[View related articles](#)

쟁점 별 논의 2. DOES SIZE MATTER?

검색의 원조격이자 2000년대 초반까지 검색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야후가
2015년 말 핵심인 사업 부문인 인터넷 사업 매각



출처: beSUCCESS

쟁점 별 논의 3. 자연독점, 필수설비

항목	규제 찬성 진영 논리	규제 반대 진영 논리
자연독점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엔진은 철도산업 등의 자연독점시장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음(Bracha & Pasquale, 2008) 초기 투자비용(예: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커서 새로운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움(Pasquale,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혁신에 따른 설비가격 인하와 인터넷의 개방적 특성으로 인터넷 산업은 후발주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음(Jamison, 2012) 독점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격 통제에서 시작되는데, 검색 서비스들은 이용자들에게 검색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음(Oliver & Racheter, 2012)
필수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엔진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의 흐름을 통제 (gatekeeper) 하거나 병목역할(bottleneck)을 할 수 있음(Hazan,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들에게는 검색엔진 외에도 다양한 대안이 있음. 예를 들어, 검색엔진을 통하지 않고 직접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해 해당 서비스 또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음

지적 자산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 그 자산의 모든가치가 파괴

전통적으로 기업의 DB 및 콘텐츠는 공유될 수 없는("non-sharable") 자원으로, 공유될 수 없는 자원은 필수설비 개념을 적용할 수 없음

통신/방송과 인터넷산업의 차이를 인정해야

쟁점 별 논의 3. 자연독점, 필수설비

필수설비? DATA 혹은 인프라에 대한 접근 의무화?

Google Opens Its Cloud Vision API To All Developers



쟁점 별 논의 3. 자연독점, 필수설비



쟁점 별 논의 3. 자연독점, 필수설비



쟁점 별 논의 3. 자연독점, 필수설비

Clova API 활용 사례



우리은행 소리(SORI)
음성인식 AI 뱅킹

Clova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 기술은 우리은행의 AI뱅킹 서비스인 SORI (소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리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은행업무를 지원하며,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최소한의 사용으로 편리한 입출금 계좌 확인 및 송금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알아보기 >](#)



모젯 - 정오의 데이트 앱:
프로필 사진 인식 기능

Mozzet 사의 정오의 데이트 앱에서 클로바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 이미지 속의 얼굴을 감지하고 인식하며, 프로필 사진의 성별 구분 및 적합한 인물 사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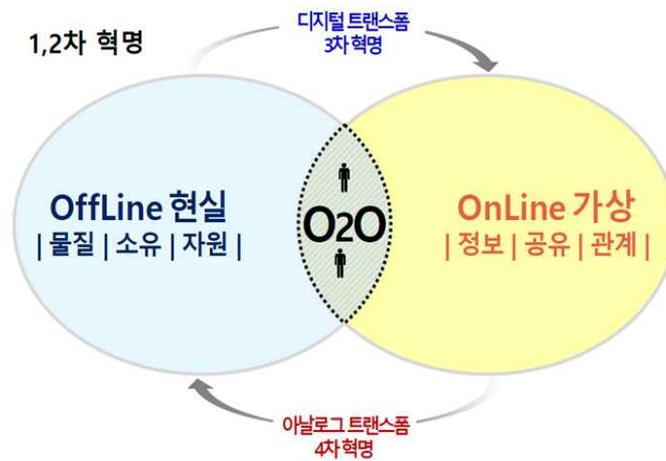
[서비스 알아보기 >](#)

쟁점 별 논의 3. 자연독점, 필수설비



- 네이버 지식iN 질문 유사도 예측
- 네이버 영화 평점 예측

쟁점 별 논의 3. 서비스 통합과 지배력 전이



쟁점 별 논의 3. 서비스 통합과 지배력 전이

서비스의 전이 = 온/오프라인 모두 장악

Inter-sectoral competition

데이터를 가진 기업은 AI 기업으로 보고 분류해야되는가



쟁점 별 논의 4. 투명성

항목	규제 찬성 진영 논리	규제 반대 진영 논리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검색 알고리즘의 공개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Bracha & Pasquale,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색 알고리즘 공개 시, 수많은 어부징이 발생할 수 있음. 검색엔진의 순수 기능 자체를 훼손할 여지 있음(Grimmelmann, 2011)

- AI 시대의 투명성 = Explainable AI (XAI)
 -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
 - 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

쟁점 별 논의 4. 투명성

arXiv:1612.04757v1 [cs.CV] 14 Dec 2016

Abstract

Deep models are the de facto standard in visual decision models due to their impressive performance on a wide array of visual tasks. However, they are frequently seen as opaque and are unable to explain their decisions. In contrast, humans can justify their decisions with natural language and point to the evidence in the visual world which led to their decisions. We postulate that deep models can do this as well and propose our Pointing and Justification (PJ-X) model which can justify its decision with a sentence and point to the evidence by introspecting its decision and explanation process using an attention mechanism. Unfortunately there is no dataset available with reference explanations for visual decision making. We thus collect two datasets in two domains where it is interesting and challenging to explain decisions. First, we extend the visual question answering task to not only provide an answer but also a natural language explanation for the answer. Second, we focus on explaining human activities which is traditionally more challenging than object classification. We extensively evaluate our PJ-X model, both on the justification and pointing tasks, by comparing it to prior models and ablations using both automatic and human evaluations.

1. Introduction

Humans are surprisingly good at explaining their decisions, even though their explanations do not necessarily align with their initial reasoning [13] and they arguably do not have full conscious access to their decision process. Still, explaining one's decisions is an integral part of human communication, understanding, and learning. Therefore, we aim to build models that can justify their decisions, something which comes naturally to humans. Explanations can take many forms. For example, humans can expl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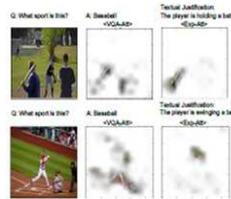


Figure 1: For a given question and corresponding image, we predict the answer and explain it by generating a natural language justification and introspect the model with two attention mechanisms, the first for the answer (qa_att) and the second for the explanation (exp_att); e.g. we point to the evidence for the answer (baseball) and the explanation (holding versus swinging a bat) specific to the image.

are important for a decision by providing visualizations of atten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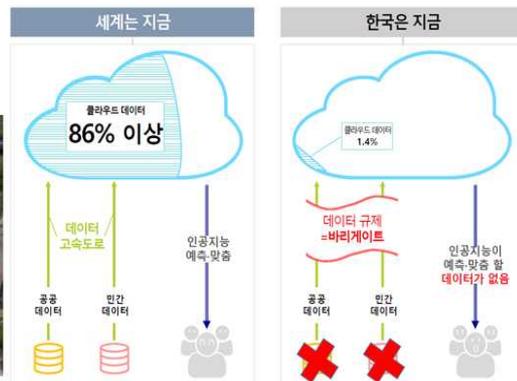
Generating convincing justifications requires models to not only recognize objects, activities, and attributes, but discuss which visual elements are important for a decision. For example, consider Figure 1, in which two images of people playing baseball are shown. In both examples, the question "What sport is this?" is asked, and the model correctly answers "Baseball". Though both images share common visual elements (e.g., people and baseball bats), the textual explanations reflect the differences in the two images: while one justifies the answer "Baseball" with the fact that one player is holding a bat, the other justifies the answer with

<https://arxiv.org/pdf/1612.04757v1.pdf>

시사점: 생각해 볼 문제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을 유지시키려면?

- 경쟁력 원천에 대한 연구 필요(한국어? 통신망? 통합검색 등이 차별화?)
- 강력한 인프라와 인재가 필요



시사점: 생각해 볼 문제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인제가 모이게 하려면?



시사점: 생각해 볼 문제

강한 규제?

GDPR adtech complaints keep stacking up in Europe

It's a year since Europe'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came into force and leaky adtech is now facing privacy complaints in four more European Union markets. This ups the tally to seven markets where data protection authorities have been urged to investigate a core function of behavioral advertising.

The latest clutch of GDPR complaints aimed at the real-time bidding (RTB) system have been filed in Belgium, Luxembourg, the Netherlands and Spain.

All the complaints argue that RTB entails "wide-scale and systemic" breaches of Europe's data protection regime, as personal data harvested to profile Internet users for ad-targeting purposes is broadcast widely to bidders in the

시사점: 생각해 볼 문제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포커스]
 프랑스를 스타트업 성지로 '디지털공화국법'이 뒤흔어...

조현주 기자 cho83@chosun.com



▲ 프랑스 파리 13구의 산업단지 '스타시옹 베르'에서 스타트업 박람회이 열리고 있다. photo 손진익 조선일보 기자

세계 최대 전자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 행사장에는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데 모인 '유레카파크(Eureka park)' 전시관이 마련돼 있었다. 지난 1월 미국 리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의 유레카파크에는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CES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회의(CTA)에 따르면 올해 유레카파크에 참여한 프랑스 기업 수는 375개로 참가국 중 순자가 가장 많았다. CES 개최 국가

우버에서 해법을?

- 1) 세상은 꼭 새부에 묻지 않아도 된다.
- 2) 기존 혁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출구를 마련해 주라
- 3)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존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라.
- 4) 혁신을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기존 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게 해라.

이집트는 공유자동차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유 의무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시사점: 생각해 볼 문제

프랑스 디지털공화국법

[포커스]
 프랑스를 스타트업 성지로 '디지털공화국법'이 뒤흔어...

조현주 기자 cho83@chosun.com



▲ 프랑스 파리 13구의 산업단지 '스타시옹 베르'에서 스타트업 박람회이 열리고 있다. photo 손진익 조선일보 기자

세계 최대 전자쇼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19' 행사장에는 유망 스타트업들이 한데 모인 '유레카파크(Eureka park)' 전시관이 마련돼 있었다. 지난 1월 미국 리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의 유레카파크에는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분위기를 압도했다. CES를 주최한 미국소비자기술회의(CTA)에 따르면 올해 유레카파크에 참여한 프랑스 기업 수는 375개로 참가국 중 순자가 가장 많았다. CES 개최 국가

우버에서 해법을?

- 1) 세상은 꼭 새부에 묻지 않아도 된다.
- 2) 기존 혁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출구를 마련해 주라
- 3)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존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라.
- 4) 혁신을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경쟁을 통해 기존 산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게 해라.

이집트는 공유자동차 사업자에게 데이터 공유 의무화!

디지털 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필요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완화

-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의 성장

- 인터넷기반 경제비중의 증가

- CPND의 역할 증대
인터넷 생태계에서 “콘텐츠(Content)-플랫폼(Platform)-네트워크(Network)-
단말(Device)”의
비중 및 역할 증대
- 국내시장
한국의 10대 기업에 네이버 포함(2015년), 카카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2019년)
- 해외시장
미국의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성장
-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심화

성장의 대가

• 우리나라 법체계에서의 인터넷 서비스 : 규제의 중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전기통신사업법 : "부가통신사업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증개업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저작권법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 방송법 개정안 :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개정 추진 중)

성장의 대가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2019. 9.기준)

- 소관 법률 13개
- 가이드라인/지침 27개

• 규제의 원칙 : 규제법정주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성장의 대가

•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2019. 9.기준)

- 소관 법률 13개
- 가이드라인/지침 27개

• 규제의 원칙 : 규제법정주의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및 가이드라인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the KCC logo, a search bar, and language options (Korean, English).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veral menu items: '정보공개' (Information Disclosure), '국민참여' (Public Participation), '정책/정보센터' (Policy/Information Center), '알림마당' (Notice Board), '위원회소개' (About the Commission), and '전체메뉴' (Full Menu).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a grid of boxes, each containing a category and a list of links. The '정책/정보센터' box is highlighted. The categories and their respective links are as follows:

위원회 회의	정책과제	예산정보	법령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결정(의의록/속기록) 발달연내 심결정보 국민의권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과제 제4기 방송의 정책과제 연도별 업무계획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정책 통신정책 통계자료 방송기관위원회의 활동 현황 국외 출판보고서 사업자 제출자료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현황 고시 규칙 훈령/예규 가이드라인 해설서 입법예고 법령 개정상황 공개
정책연구과제	간행물	자료마당	정부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연구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제보고서 가이드보고서 유관기관 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정책 통신정책 통계자료 방송기관위원회의 활동 현황 국외 출판보고서 사업자 제출자료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혁신 카드뉴스 혁신자료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are sections for '사진 뉴스' (Photo News), a '+ 쉽게 보는 정책' (Easily Viewed Policy) button, and social media icons for Facebook, Twitter, YouTube, and Instagram.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 13개

법령현황

방송통신위원회 법령현황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령은 법제처의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법령 검색을 원하시면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내창\)](#)

법률 시행령을 클릭하시면 새 창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시행령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방송법 · 한국교육방송통신법 · 방송통신진흥촉진법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자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중 방송 소관 법률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령 · 한국교육방송통신법 시행령 · 방송통신진흥촉진법 시행령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전자법 시행령

포의

- 대한민국 헌법외 헌법보충법(헌법개정) 및 기타 헌법보충 조항(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헌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가이드라인/지침 : 27개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Search | |

Total 27 건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7	자상라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방송지원정책과		2016-10-20	39894
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7.1.시행)	개인정보보호총과		2016-07-01	30270
5	인터넷 자기계시물접근해제요청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총과		2016-06-13	43189
4	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사의 채널제공 및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시장조사과		2012-12-27	58513
3	유료방송서비스 단절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방송시장조사과		2012-07-10	55295
2	중소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시장조사과		2012-06-27	60266
1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시장조사과		2012-05-22	51629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가이드라인/지침 : 27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정부과목	작성일	조회수
17	고정형 TV 시청률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미디어담당정책과	01	2019-06-12	90
16	홍수형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송시장조사과	01	2018-12-27	1627
15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이용자보호과	01	2018-12-13	2037
14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01	2018-11-15	15950
13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방송시장조사과	01	2018-02-15	51033
12	박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과	01	2018-01-03	41366
11	시장차별가능 선형 및 운영 가이드라인	지역미디어정책과	01	2017-04-03	42111
10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개인정보보호과	01	2017-03-24	42536
9	앱마켓 오버일관성 결제 가이드라인	이용자보호과	01	2017-02-28	43325
8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과	01	2017-02-07	44067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가이드라인/지침 : 27개

번호	제목	담당부서	정부과목	작성일	조회수
27	『유선분야 편해당 사전승인제』 가이드라인	통신시장조사과	01	2019-08-25	38
26	방송위 검찰 검찰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지원과	01	2019-07-29	117
25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이용자정책총괄과	01	2019-07-29	46
24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지침	이용자보호과	01	2019-07-26	61
23	건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	이용자보호과	01	2019-07-26	84
22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편성평가정책과	01	2019-07-19	83
21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과	01	2019-07-02	620
20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통신시장조사과	01	2019-07-01	147
19	장예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매번	미디어담당정책과	01	2019-06-14	101
18	오버일기 PC 시청기록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미디어담당정책과	01	2019-06-12	79

가이드라인 규제

- 가이드라인의 정의 및 역할

-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량준칙

- 가이드라인의 효력

- 법규적 효력 없음

- “가이드라인은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략)”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中

- 최근 가이드라인의 문제

-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상 근거를 넘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역할

-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의 움직임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 허위조작정보 전문가회의를 통한 권고안 등 도입

가이드라인 규제의 문제점

-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권 가이드라인(순번 5.번)

- 2014년 유렵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소위 ‘잊힐 권리’의 도입방안으로 제정

- 우리나라의 경우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일반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순번 9.번)

- 2012년 ‘스마트폰 요금폭탄’이라는 일부 기사와 여론에 방통위가 대책마련의 차원에서 제정

- 내용도 문제이나,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에 대한

- 모니터링 업무를 MOBIA(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위임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순번 15.번)

- 아프리카TV 후원금, 유튜브 수입 등 일부 이슈에 기반하여 제정

-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등 가이드라인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가이드라인 규제의 문제점

-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권 가이드라인(순번 5.번)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소위 '잊힐 권리'의 도입방안으로 제정
우리나라의 경우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일반 게시글은 정보통신방법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순번 9.번)

2012년 '스마트폰 요금폭탄'이라는 일부 기사와 여론에 방통위가 대책마련의 차원에서 제정
내용도 문제이나,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MOBIA(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위임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순번 15.번)

아프리카TV 후원금, 유튜브 수입 등 일부 이슈에 기반하여 제정
법적 근거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는 등 가이드라인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가이드라인 규제의 문제점

-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그 근거를 넘어서는 가이드라인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순번 14.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III.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준수사항'에 밴드, 카톡 등의 영업에 사전승낙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링크 형태로 표시, 불법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어사용 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 이통사의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음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순번 21.번)

"정보통신방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
법률에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방통위에 위임한
바도 없음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 필수/선택동의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방식, 위탁업체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신규 규제의 창설의 실질이 있음

가이드라인 규제의 문제점

- 가이드라인 이외 형식의 규제

- 방통위 & KISA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 KISA : 앱 푸쉬(App Push) 광고 안내서
영리목적 광고성의 정보의 범위, 예외 등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가이드라인 규제의 문제점

- 헌법 위반

- 적법절차 원칙 위반
-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헌확인(2018헌마465) 사건

가이드라인이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작용으로서의
공권력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법률 위반

- 규제법정주의 위반
- 행정지도 원칙 위반
-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거 사례

- **문화부,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

- **주요 내용**

게임머니 현금 30만원, 1회 베팅 한도 1만원, 하루 10만원 초과 손실시 48시간 동안 게임 제한 등

- **행정예고 : 2012. 11. 2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28조 제2호의2 등에 근거

- **규제개혁위원회**

“기준(안)에 대한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기 때문에 기준(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 **결과 : 문화부 위 기준(안) 제정 철회**

규제 완화 방안 : 그림자규제의 정비

- **규제법정주의 원칙 준수**

- “플랫폼의 법적 책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규제의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최근

페이스북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

- **국내외 동등 규제 원칙 설정**

- “해외사업자를 규제할 수 없으면 국내사업자도 규제하지 않는다”

- **행정지도 원칙 준수**

-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개인정보 규제 개선

1-4-1.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동의제도의 설계 결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한 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정보주체의 개별적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체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법제이다. 유럽연합(EU)이 1995년의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을 개정하여 보호를 더 강화했다고 평가받는 2016년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보다도 더 강력한 동의 기반의 사전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법제로 알려져 있다. 외국의 평가를 몇 가지 소개한다.

- (1)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데이터보호법(the strongest data privacy laws in Asia)을 가지고 있다.”(Constance Gustke, Which countries are better at protecting privacy?, BBC Capital, June 26, 2013)
- (2)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ivacy Professionals)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프라이버시 보호법(the world's strictest privacy laws)을 가지고 있다.”(Paul Sutton, Data Protection in South Korea: Why You Need to Pay Attention, Aug. 15, 2018)
- (3) “한국의 포괄적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프라이버시 규제체계중의 하나이다(one of the world's strictest privacy regimes).”(Alex Wall, GDPR matchup: South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Jan. 8, 2018).

논점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 GDPR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2015. 9. 9)
입법목적 → 이용/보호 균형	조문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2014년 개정) → 개정 전에는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내세웠음	제1조(목적) ① 본 규칙(Regulation)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u>준칙(rules)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준칙</u> 을 정한다. ② 본 규칙은 자연인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특히 <u>개인데이터보호권(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u> 을 보장한다. ③ 유럽연합 역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연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제1조(목적) 이 법률은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u>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이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활력 있는 경제사회와 풍요로운 국민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u> 이라는 점 외에 개인정보의 <u>有用性을 고려하면서</u>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입법취지에서부터 균형을 상실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비밀보호법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개인의 자유와 권리, 특히 개인정보보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연합 내에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함 (개인 데이터를 정보처리자 단계에서 막아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 - 사생활비밀 보호가 아님)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의 신사업 활성화에 개인정보의 '적정하고 효과적인 활용'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안전한 이용을 도모

o 헬렌 니센바움(Helen Nissenbaum) (코넬 공과대학원 정보과학 교수)

- 동의에 기반한 데이터보호정책이 근본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 ⇨ “동의를 이제 그만 생각해야 한다. 동의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Stop thinking about consent: it isn't possible and it isn't right.)
- 소비자는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모르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업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완벽하게 투명한 동의서는 절대 만들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기업이라도 수집한 정보가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다 알 수

없다. 동의서는 결코 개인정보 보호 수단이 될 수 없다.

- 프라이버시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기본 가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본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그리고 본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사람들의 개인정보 프로필을 만들어도 문제없다고 여기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제공한 대가로 다른 가치들을 얻는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권리가 이미 제한적이거나 균형적인 권리가기 때문이다

출전: “동의는 이제 그만!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Stop thinking about consent: it isn't possible and it isn't right.“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 2019 1-2월호)

o 김기창 (고려대 법전원 교수)

- 동의제도는 처음부터 잘못된 출발점이었다. 이제는 사전 동의제도를 폐지하자.
- 대안으로, 전통적인 약관규제의 법리에 따라 사후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면 된다. (행정법적 규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으로) ==> 외국의 논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보수탁자'(information fiduciary) 개념을 채택하자.

출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내면 그만인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 2019 1-2월호

목 차

- I.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의 관계에 대한 오해
 - 1. 헌법상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의 규범적 의미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권의 구별
 - 3.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권과 새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별
 - 4. 개인정보를 마치 사생활비밀처럼 보호하고자 하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II. 동의제도에 관한 규율 비교 (한국/유럽연합/일본/미국)
 - 1.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동의의 위상에 관한 국제비교
 - 2. 사전 동의의 원칙과 관련한 한국/유럽연합/일본의 규율비교
 - 3. 개별적 및 선택적 동의방식과 관련한 한국/유럽연합/일본의 규율 비교
 - 4.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적 근거 및 사후적 처리거부권/처리정지권에 관한 한국/GDPR/CCPA/일본의 규율비교
 - 5. 유럽과 일본의 형사처벌조항 비교

I.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의 관계에 대한 오해

- 1. 헌법상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는 것의 규범적 의미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²⁾에서, 주민등록 목적으로 수집한 3,900만 국민의 지문정보(指紋情報)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 등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의한 이러한 수집·제공·이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나마 있고 또 정당한 이용목적에 비추어 무리한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³⁾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정보주체에게 새로운 헌법상의 권리(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해석을 통해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헌법상의 권리

2)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판례집 17-1, 668

3) 6인 헌법재판관의 다수의견(합헌). 그러나 3인의 위헌의견은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고 나아가 실령 이용목적이 정당하다 라도 그 범위·대상기한 등 아무런 이용조건이 없이 경찰청이 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규범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그 의미는 이러하다. 이제 국가기관을 비롯하여 헌법의 구속을 받는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데이터를 처리(수집·이용·가공·제공 등)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하고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수준의 처리인지 아닌지는 그 처리가 정보주체의 사생활이나 다른 기본권적 이익을 훼손할 위험(risk)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어떤 처리의 조건들을 준수하여야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 인정된 이상, 공공기관이 개인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 수준의 처리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그러한 데이터처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위반이 되고, 헌법위반의 효과로서 그 처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만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동의를 했다면, 그 정보처리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처리로서 허용되게 된다. 여기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합법화시켜주는, 즉 위법·위헌성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는 별도의 의사표시이다. 요컨대, 정보주체의 '동의'는 정보주체가 가지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에 포함된 권능이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별개로, 기본권주체에게 귀속되어 있는 의사의 자유로서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위법성을 합법성(lawfulness)으로 전환시켜주는 행위이다.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권의 구별

흔히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권을 같은 권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의 권리내용 안에 정보주체의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데이터의 처리(수집·이용·가공·제공 등)는 곧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따라서 그 처리는 금지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는 양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誤解)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양자는 별개의 권리로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가 수행하는 개인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자칫 정보주체의 사생활권(right to privacy)이나 기타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risk)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주체로 하여금 그 데이터처리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데이터처리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 정보주체의 동의는 오·남용의 위험을 스스로 받아들이는(引受) 행위이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동의권의 행사에 있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요컨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권리내용 안에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는 서로 기능을 달리하는 별도의 권리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데이터의 처리는 곧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오해의 경향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국의 보호법 제는 '개별적인 사전 동의의 원칙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법제'라는 특징을 갖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 이 점과 관련하여 몇 가지 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권과 새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별

헌법에서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권'과 새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privacy)을 국가기관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항에서 사생활비밀보호권(right to privacy)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사생활비밀보호권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제18조에서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적으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통신) 과정에서의 비밀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16조에서는 주거(住居)라는 사생활 공간에서의 비밀(privacy)을 합법적으로 침해하려고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의 영장주의). 그 외에 제12조 제3항은 형사절차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사생활비밀을 합헌적으로 침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영장주의), 같은 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압수·수색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의 사생활비밀조항은 통상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숨기고 싶은 개인의 '사적 비밀'을 국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일 국가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동의 없이) 그의 사생활비밀을 침해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그 침해의 합법성(lawfulness)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입법자는 그 침해를 위한 요건과 절차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법률유보의 원칙). 그리고 법률에 규정된 침해의 요건과 절차가 헌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는 추구하는 공익과 잃게 되는 사생활이익을 형량하여 판단하게 된다(과잉금지의 원칙). 이는 개인의 사생활비밀보호권이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정당한 공익과의 형량을 통해 합법적으로 양보 혹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권리인 것이다. 즉, 사생활비밀을 가진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그 비밀을 깰 수 있는 규범적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사실 모든 기본권이 이처럼 절대적 권리가 아닌 상대적 권리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한국 헌법은 사생활비밀을 보호하는 권리들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개인정보 혹은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를 특별히 보호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사생활비밀'과는 달리, '개인에 관한 정보 혹은 데이터'는 모든 거래(transaction)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고 처리된다. 국가와 거래관계를 맺는 모든 시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나 데이터를 국가에게 제공한다. 국가는 그 데이터를 처리(수집·이용·가공·제공 등)해서 판단을 내리고 각종의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개인데이터는 이미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가에게 제공된 것이어서, 위에서 언급한 헌법상의 전형적인 '사생활비밀'의 범주에 원칙적으로 속하지 않는다.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privacy)이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된 데이터(personal dat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상의 사생활비밀보호조항들(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은 애초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예정하고 있던 규정이 아니다.⁴⁾

그렇지만 국가가 처리·이용하는 시민의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오늘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보호의 필요성이란 단순히 '사생활비밀보호'의 관점이 아니라 '잘못된 개인데이터의

4) 이 때문에 2005년에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권과는 달리 '새로운 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던 것이다.

처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에서 생겨난다. 틀린 데이터나 낡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에 대한 잘못된 복지결정이나 자격결정 등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아가 시민 개인에게 민감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민을 감시하거나 공격하는 등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외부의 보안침해(data breach)로부터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처리·이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을 담고 있는 권리가 곧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 것이다.

최근에 개인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권리를 규범화하고 있는 각국의 헌법들은 모두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권(right to privacy)과는 구별하여 ‘개인데이터보호권’(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8조(개인데이터의 보호)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개인데이터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concerning him or her.)고 규정하고 있다.⁵⁾ 스위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개인데이터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스 헌법도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개인데이터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수집, 처리 및 이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A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2005년에 ‘주민등록 지문정보DB 사건’에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이 권리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며,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5) 유럽연합의 경우 1995년의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에서도 ‘개인정보보호권’(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시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마치 수집에서부터 이용 및 제공에 이르기까지 정보주체가 처리의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처리자가 행하는 개인정보처리 전 과정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거나 통제하는 권리’가 아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결정권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있다.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은 개인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의 의미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개인데이터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을 말한다.”(제4조 제7항)고 정의하고 있다.⁶⁾

이에 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하는 자신에 관한 개인데이터의 처리과정에 참여하여 그 처리를 감시하는 권리(이른바 ‘역감시권’)이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따르는 위험(risk)의 본질은 ‘감시(監視)의 위험’이다. 여기서 감시의 위험이란 정보주체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에 관한 개인기록(personal record)이 만들어지고 그 기록에 담긴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공유되며 또 쉽게 통합되어 개인에 관한 프로파일(profile)이 이루어져 쉽게 개인을 분석하고 추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제이고,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정보주체에게 역으로 감시하는 권능(權能)을 준다. 정보주체 스스로 오·남용이 있는지를 감시하게 하고 위법한 처리가 있을 때 그 시정(是正)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감시의 권능을 담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바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보호권이다.

이러한 역감시의 기능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나에게 관한 데이터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고 있는지를 알 권리(열람청구권), 분명한 처리목적 설정하고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틀린 정보나 낡은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 권한 없는 자에

6)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5호).

의한 정보접근을 제한하고 부당한 누출의 방지를 요구할 권리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보호권의 내용으로 인정되고 있다.⁷⁾

요컨대, 이 새로운 기본권의 생성배경과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절대화하는 사고,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처리(수집·이용·가공·제공 등)를 하지 못한다는 관념은 이 새로운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물론 데이터처리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넘어서는 처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따져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데이터보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위헌적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4. 개인정보를 마치 사생활비밀처럼 보호하고자 하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한국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한 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정보주체의 개별적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체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심각하게 균형을 잃은 법제이다. 유럽연합(EU)이 1995년의 「개인정보보호지침」(DPD)을 개정하여 보호를 더 강화했다고 평가받는 2016년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보다도 더 강력한 동의기반의 사전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서는 유럽연합과 유사하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수집·이용'에 있어서도 이런 가능성마저 봉쇄하고 있다(제22조). 나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거의 절대화하고 있다. 즉,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그 자체로 불법(不法)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제71조 제2호,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및 제71조 제1항 제3호). 또한 이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 제1항 제4호).

7)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은 개인정보보호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보주체에게 열람권(제15조), 틀린 정보에 대한 정정권(제16조), 위법한 처리의 경우 삭제권(제17조)과 처리정지권(제18조), 정보이동권(제20조), 자동결정에 대한 거부권(제21-22조)을 인정하고 있다.

요컨대,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처리자(개인, 기업, 단체)가 자신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봉쇄되어 있다. 단지 세 가지 예외만 허용되고 있다. 즉, (i) 다른 법률에 이를 허용하는 특별 규정이 있거나, (ii) 정보주체가 사전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iii) 통계작성과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 3, 4호).

이런 법률 하에서는 개인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의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개인데이터를 단일의 정보처리자(기업, 단체) 내에서만 수집·이용할 수 있게 해 놓으면,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빅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다양한 혁신 또한 불가능해진다.

이런 한국의 법제와 달리,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은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processing), 즉 ‘수집·이용’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의 개인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제3자와 개인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두고 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보처리가 필요한 경우(다만, 그러한 이익보다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이익이 더 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를 합법적인 정보처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f)).

이처럼 유럽연합은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는 정보처리(수집·이용·제3자 제공)의 합법성(lawfulness)을 판단하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규범적 상태 하에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에 관한 규율 또한 의미를 갖게 된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이유는 개인데이터를 법적 제재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인데, 아무리 비식별화(de-identification)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식별(re-identification)의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경우 비록 정보주체의 동의는 없었지만 이익형량을 통해 제3자 제공의 합법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한국의 법제처럼 제3자 제공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거의 절대적인 합법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비식별조치를 통한 제3자 제공은 늘 법적 제재의 위협 하에 놓여 있는 셈이 된다.

한편,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개인 정보처리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광고나 마케팅 목적을 위하여 수집·처리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때 정보주체에게는 사전 고지와 사후 거부권(right to object)을 주어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후에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제3자 제공을 정지한다는 조건 하에, 4가지 사항을 미리 통지하거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 미리 알려 주어야 할 4가지 사항은 (i) 제3자 제공을 이용 목적으로 한다는 점 (ii)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 (iii) 제3자 제공의 수단 또는 방법 (iv) 본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당해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데이터의 제3자 제공을 정지한다는 점이다(제23조 제2항).

II. 동의제도에 관한 규율 비교 (한국/유럽연합/일본/미국)

1.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동의의 위상에 관한 국제비교

개인데이터 보호모델에서 동의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의 관점에서 고찰할 때, 보호모델은 크게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나는 유럽연합의 GDPR이 채택하고 있는 '이용과 보호의 균형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자율적/제한적 보호모델'이다.

전자의 GDPR은 정보처리의 합법성을 요구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합법적 근거의 하나로 요구한다. 그러나 동의 외에 여러 합법적 처리의 근거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합법적 처리의 근거로 폭넓게 인정한다. 그러나 합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에게 다양한 개인정보보호권을 인정하여 사후적 통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달리 정보처리의 합법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처리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개인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처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나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법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입법정책적으로 데이터처리의 오남용의 위험(risk)을 예방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목적구속의 원칙을 분명히 한다. 즉, 처음 수집할 때 목적을 특정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요구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에게는 열람청구권/사후적거부권(opt-out)을 인정하여 사후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일본/미국 CCPA). 또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때에는 정정/삭제청구권을 부여한다(일본).

그러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이들 글로벌 기준과는 동떨어진 경직된 보호모델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사전동의(opt-in)를 원칙으로 요구한다. 즉,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사생활비밀'처럼 보호하는 강력한 규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사전동의(opt-in)를 원칙으로 요구한다("사전동의의 원칙"). 둘째, 개별적/선택적 동의를 요구한다("포괄동의금지의 원칙"). 셋째, 정정/삭제/처리정지청구권을 거의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권리의 행사요건/항변사유/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개인정보보호권의 절대화"). 넷째, 위반 시 5년/3년/2년 이하 징역이라는 과도한 형벌권을 행사하고 있다("위헌적 형벌권의 행사").

요컨대, 한국의 법률이 채택하는 보호모델은 동의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며, 합법성 요건으로서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보호권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권의 본질이 여러 실체적 권리 침해의 위험(risk)을 제거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보호권 위반을 곧 정보주체의 실체적 권리의 침해라고 오해하고 있다.

유럽 GDPR의 보호모델

이용과 보호의 균형모델

- * 종래의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개인정보보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함(유럽연합 기본권헌장).
- *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권의 의의=> 디지털시대 데이터처리의 오남용의 위험(risk)으로부터 총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보호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
- * 국가의 보호방식=> 동의 혹은 법률에 의하지 않은 개인데이터 처리를 불법화함(제한의 정당성 근거를 요구함) + 개인에게 정보처리를 역감시할 수 있는 권능(개인정보보호권)을 부여 => 이를 통해 개인의 실제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 * 그러나 역내 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free movement of personal data)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됨(1조3항)
- * 동의는 정보처리의 합법성 요건 중의 하나로서, 동의 없이도 다른 5가지 사유로 합법적 처리가 가능함. => 그러나 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얻었더라도 데이터처리의 원칙들을 준수해야 함. 또한 정보주체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개인정보보호권을 포기한 것이 아님.
- * 요컨대, 사전동의(opt-in)를 원칙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정보처리자가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님. 정보주체는 동의 후에도 사후통제권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음.

정보처리의 합법성요건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권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적 권리/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 ■ 계약의이행 ■ 법적의무의이행 ■ 정보주체/자연인의이익보호 ■ 공익업무수행/공적권한행사 ■ 정보처리자/제3자의 정당한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청구권(액세스권) ■ 정정청구권 ■ 삭제청구권 ■ 처리정지청구권 ■ 사후적거부권(opt-out) ■ 자동결정에대한이의제기권 ■ 데이터이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 ■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재산적이익 ■ 신체의자유 ■ 기타 인격적이익 (명예/잊힐권리)
기본권제한의 정당성근거	위험(risk)의 예방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실체적 침해

미국/일본의 보호모델

자율적/제한적 보호모델

- * 종래의 프라이버시권과 구별되는 개인정보보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음
- * 따라서 개인데이터 처리에 법적 정당성의 근거를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다만, 특수 영역에서 법률로써 정당성의 근거로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 따라서 기업이 일반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임(임의적 동의요구)
- * 그러나 입법정책으로서 데이터처리의 오남용의 위험(risk)을 예방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음
- * 목적구속의 원칙을 분명히 함. 즉, 처음 수집할 때 목적을 특정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그 목적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허용함. 대신, 정보주체에게는 열람청구권/사후적 거부권(opt-out)을 인정하여 사후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처리하는 개인데이터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때에는 정정/삭제청구권을 부여함(일본).

정보처리의 합법성요건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권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적 권리/이익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단, 민감정보/특수영역에서 사전동의(opt-in)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일본/CCPA> ■ 열람청구권(액세스권) ■ 정정청구권 ■ 삭제청구권 ■ 사후적거부권(opt-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 ■ 부당한차별을받지않을권리 ■ 재산적이익 ■ 신체의자유 ■ 기타 인격적 이익 (명예/잊힐권리)
입법정책	위험(risk)의 예방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실체적 침해

한국의 보호모델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직된 보호모델 (균형상실)

- * 종래의 사생활비밀(17조)과 구별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보호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함(헌재 99헌마513).
- * 그러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비밀권=동의권으로 오해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 즉,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곧 불법이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음.
- * 그에 따라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사생활비밀'처럼 보호하는 강력한 규제모델을 채택함
- * (1)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사전동의(opt-in)를 원칙으로 요구함 (사전동의의 원칙)
- (2) 더 나아가, 개별적/선택적 동의를 요구함 (포괄동의금지의 원칙)
- (3) 이에 더하여, 정정/삭제/처리정지청구권을 거의 절대적 권리로 규정함. 권리의 행사요건/항변사유/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음 (개인정보보호권의 절대화)
- (4) 위반시 5년/3년/2년 이하 징역(위헌적인 형벌권 행사)
- * 법률의 보호모델 자체가 동의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며, 합법성 요건으로서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보호권을 구별하지 않음. 또한, 개인정보보호권의 본질이 여러 실체적 권리 침해의 위험(risk)을 제거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실체적 권리로 오해하고 있음.

정보처리의 합법성요건	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권	보호하고자 하는 실체적 권리/이익
<p><개인정보보호법> (1) 수집/이용에 한해 GDPR에 유사한 합법성 요건 인정 (2) 제공의 경우 사전동의의 원칙을 채택</p> <p><정보통신망법> 수집/이용/제공 모두에 있어 사전동의의 원칙을 채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청구권(액세스권) ■ 정정청구권(행사요건없음-절대권) ■ 삭제청구권(행사요건없음-거의절대권) ■ 처리정지청구권(행사요건없음-거의절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의 제정법은 "사생활비밀 등의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제시 => 2014년 개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제시. * 그러나 실체적 규율내용을 보면, 마치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법률에서 "개인정보침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함.
사전동의(opt-in)의 원칙	위험의 예방수준을 넘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절대화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듯

2. 사전 동의의 원칙과 관련한 한국/유럽연합/일본의 규율비교

-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가 개인데이터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물론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매우 제한적이다.

※ 유럽연합의 GDPR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과 같은 엄격한 사전 동의를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은 (민감정보/쿠기/위치데이터를 제외한) 일반개인데이터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처리자(기업)나 제3자(다른 기업)의 우월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일본 또한 (민감정보를 제외한) 일반개인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용목적만 분명히 특정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하고, 제3자 제공에 있어서도 소위 'opt-out 방식'(사후적 처리거부)을 채택하여 제3자 제공의 합법성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사전 동意的 원칙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p>(1) (15조1항) 수집 당시 수집/이용의 동의를 받으면 합법적임. 단, 동의(❶) 외 5가지 합법적인 수집/이용을 인정함 : ❷ 법률규정이나 법적 의무 ❸ 공무수행 ❹ 계약체결·이행 ❺ 급박한 이익 ❻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 이 동의는 수집/이용에 한정해서 효력을 가짐 <위반: 과태료 5천만원 (75조1항1호)></p> <p>➡ 수집/이용에 있어서는 GDPR과 유사한 규율임</p> <p>(2) (15조2항) 수집 시 동의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이용목적/개인 정보 항목/보유기간/동의거부 가능성)을 변경할 때 ➡ 사전 동의</p> <p>(3) (17조1항) 수집/이용과는 달리, 제3자 제공(공유 포함)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제공이 됨 (단, 법률규정이나 법적 의무의 이행/공공기관 업무수행/급박한 이익보호를 위한 제공은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없음. GDPR은 이 길을 열어둠)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호)></p> <p>(4) (17조2항)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수령자/수령자의 이용 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동의거부 가능성)을 변경할 때 ➡ 사전 동의</p> <p>(5) (17조3항)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때 ➡ 무조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가 없음.</p> <p>(6) (18조2항) 고지했던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민간의 경우 ❶ 법률규정 ❷ 급박한 이익 ❸ 통계/학술연구(이때는 비식별 조치해야) 목적 ➡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함.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2호)></p> <p>(7) (22조6항)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위반: 과태료 5천만원(75조1항2호)></p> <p>(8) (23조1항) 민감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때 ➡ 무조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가 없음. <위반: 5년 징역/5천</p>	<p>● 정보주체의 통제 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임</p> <p>● GDPR/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제임</p>

	<p>만원 벌금(71조3호)></p> <p>(9) (24조1항)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와 같이 법령에 의한 식별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때 ➡ 무조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가 없음.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 4호)></p>	
<p>한국 정보통신 망법</p>	<p>(1) (22조1항 및 2항) 수집 당시 수집/이용의 사전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아야 함. 단, 계약이행/요금정산/법률규정의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 ➡ 이 동의는 수집/이용에 한정해서 효력을 가짐 ➡ GDPR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둠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1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1호)></p> <p>(2) (22조1항) 수집 시 동의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이용목적/개인 정보 항목/보유기간)을 변경할 때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p> <p>(3) (22조의2) 휴대폰 앱의 접근권한을 요청할 때 ➡ 사전 동의 (예외 없음)</p> <p>(4) (24조의2 1항) 제3자 제공할 때 ➡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단, 요금정산/법률규정의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제공이 가능 ➡ GDPR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둠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4호); 5년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3호)></p> <p>(5) (24조의2 1항)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 (수령자/수령자의이용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을 변경할 때 ➡ 사전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 4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3호)></p> <p>(6) (23조1항)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단,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2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2호)></p> <p>(7) (24조의2 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원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수령자(제2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받은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함. 목적 외 이용 또는 다른 제3자 제공을 하려면 ➡ 사전 동의를 받거나 법률규정이 있어야 함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4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 (71조1항3호)></p> <p>(8) (25조1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수령자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때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단, 계약이행/이용자편의를 위해 고지사항을 미리 공개 또는 알린 경우에는 동의 필요 없음(25조2항).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 (64조의3 1항5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4호)></p> <p>(9) (25조1항) 처리위탁 동의를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수탁자/위탁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 ➡ 사전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5호); 5년징역/5천만원 벌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강한 규제 (수집/ 이용 에서 부터 동의를 원칙 으로 함) ● GDPR/일본 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제임 ● 다만, e-Privacy지침 (온라인특별법)에서 쿠키/위치 정보에 대해 사전 고지 및 동의를 요구함

	<p>(71조1항4호)> (10) (25조7항) 처리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재위탁이 가능함 <위반: 과태료 2천만원(76조2항 1의2호)> (11) (31조1항)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7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8호)></p>	
<p>한국 위치정보 법</p>	<p>(1) (15조1항)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때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단, 긴급구조 또는 경고발송/경찰관서의 요청/법률규정의 경우에 한해 동의 없이 가능) <위반: 3년 징역/3천만원 벌금(40조4호)> (2) (18조1항)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없음) <위반: 허가취소 등(13조1항6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39조3호)> ▶ 안내사항(상호등 연락처/정보주체 권리/서비스내용/위치정보수집사실확인자료 보유근거와 기간)은 이용약관에 명시하면 됨 (3) (19조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없음) <위반: 허가취소 등(13조1항6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39조3호)> ▶ 안내사항은 이용약관에 명시하면 됨 (4) (19조2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없음)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39조3호)> ▶ 안내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 수령자/제공목적은 정보주체에게 고지 (5) (21조)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단, 요금정산/통계·학술연구·시장조사(이때 비식별조치)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가능함. <위반: 허가취소 등(13조1항8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39조4호)> (6) (25조1항)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때 ▶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예외 없음) <위반: 1천만원 과태료(43조2항10호)></p>	<p>● 사전동의를 엄격히 요구함(형사 처벌)</p>
<p>한국 신용정보 법</p>	<p>(1) (15조2항)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단, 법률규정이나 법적 의무 이행/계약체결 및이행/급박한 이익 보호/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않아도 됨) <위반: 5천만원 과태료(52조1항2호)> (2) (16조1항)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 ▶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념/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정보 <위반: 업무정지(27조7항2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50조2항3호)> (3) (16조2항) 질병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때 ▶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 그 이용목적은 대통령령이 정함 <위반: 업무정지(27조7항2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50조2항3호)> (4) (32조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p>	<p>● 수집/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제공의 경우에는 건별로 사전 동의를 요구함(형사 처벌)</p>

	<p>제공할 때마다 ➡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단, 기존의 목적 안에서 정확성/최신성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가능)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50조2항6호)></p> <p>(5) (32조1항) 개인식별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때 ➡ 개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단, 기존의 목적 안에서 정확성/최신성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가능)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50조2항6호)></p>	
<p>유럽연합 GDPR (일반개인 정보보호 규칙)</p>	<p>(1) (민감데이터가 아닌) 일반개인데이터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6가지 합법적 처리의 요건을 규정함(6조1항) ➡ ① 동의(반드시 사전동의 아님)(a) ② 계약 체결·이행(b) ③ 법적 의무 이행(c) ④ 정보주체 혹은 제3자의 중대한 이익보호(d) ⑤ 공적업무 처리 또는 공적 권한행사(e) ⑥ 개인정보처리자 혹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f) ➡ 동의는 합법적 처리(수집/이용/제공)를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일 뿐임. 기업은 동의 없이도 자신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음. 다만, 그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더 크다는 판단이 설 때 채택할 수 있는 요건임. ➡ 요컨대, GDPR은 한국처럼 이른바 '사전동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음. 그리고 동의 요건(a)을 합법적 처리의 방법으로 채택하고자 할 때, 수집 시점에서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일괄동의를 받을 수 있음. 또 동의 요건(a)이나 정당한 이익 요건(f)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즉, 위법한 처리일 때),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은 없음.</p> <p>(2) 민감데이터('특수유형의 개인데이터')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10가지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인 것이 됨(9조1항및2항) ➡ ①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a) ② 의무이행 및 권리 행사(b) ③ 중대한 이익(c) ④ 정치/종교/노동조합 목적의 비영리단체의 정당한 활동(d) ⑤ 정보주체가 공개한 민감 데이터(e) ⑥ 권리의 설정/행사/방어(f) ⑦ 중대한 공익(g) ⑧ 의료서비스/복지서비스/피고용인 업무능력평가의 목적(h) ⑨ 공중보건(i) ⑩ 자료보존/연구/통계 목적(j) ➡ 개인정보 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 요건은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기업이 민감데이터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함. 민감데이터의 경우 사전동의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는 셈임. 다만,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민감데이터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 가능함.</p> <p>(3)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를 규율하는 온라인특별법인 「e-Privacy Directive(아-프라이버시 지침)」은 전기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용자의 단말기에 쿠키(cookie)를 저장하고 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고지와 동의를 받아야 함(5조3항). 그리고 위치데이터(location data)는 익명처리하거나 혹은 이용자의 사전고지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함(9조1항). ➡ 쿠키와 위치데이터에 대해 사전동의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음</p>	<p>◎ 일반개인 데이터를 수집/이용/제공할 때, 반드시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p> <p>➡ 우월한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이 가능</p> <p>◎ 민감데이터의 수집/이용/제공은 동의를 받아야 함</p> <p>◎ 쿠키/위치데이터는 동의를 요함</p>

<p>일본 개인정보 보호법</p>	<p>(1)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음. 수집/이용할 때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 자체가 없음. 다만, 수집할 때 그 이용목적을 특정해야 함(15조1항). 특정한 이용목적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처음의 이용목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15조2항). ▶ 목적의 변경이 제한적으로 인정됨</p> <p>(2) 위 이용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동의를 받아야 함(16조1항). 단, 4가지 예외가 인정됨 ▶ ① 법령의 근거 ②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③ 급박한 공중위생·아동의 육성 ④ 공무수행에 협조 (16조3항)</p> <p>(3) 합병 등의 사업승계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승계 이전의 이용목적 범위 안에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함(16조2항)</p> <p>(4) 민감정보('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 동의를 받아야 함. 단, 6가지 예외가 인정됨 ▶ ① 법령의 근거 ②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③ 급박한 공중위생·아동의 육성 ④ 공무수행에 협조 ⑤ 정보주체('본인')/국가기관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⑥ 기타 政令을 정하는 경우 (17조2항)</p> <p>(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다음 6가지 경우에 합법적인 것이 됨 ▶ ① 정보주체('본인')의 사전동의(opt-in) ② 법령의 근거 ③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④ 급박한 공중위생·아동의 육성 ⑤ 공무수행에 협조 ⑥ 정보주체('본인')의 사후적 처리거부(opt-out) [단, 사후적 처리거부 방식이 합법적이기 위한 조건 3가지 ▶ (i) 제3자 제공 후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으면 제3자 제공을 정지해야 하고, (ii) 제공이 있기 전에 미리 안내사항 4가지(제3자 제공이 이용목적이라는 점/제공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제공의 방법/요청이 있을 때 제공을 정지한다는 점/요청 접수방법)를 통지하거나 또는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iii)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23조1항/2항/3항) ▶ opt-out 방식, 즉 '사후적 처리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제3자 제공의 합법성을 폭넓게 허용함 ▶ 단, 민감데이터('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는 opt-out 방식의 대상에서 제외함. 즉, 민감데이터는 opt-out 방식으로 제3자 제공이 안 됨(23조2항)</p> <p>※ 한편, 다음의 3가지는 처음부터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23조5항) ▶ ① 처리위탁에 따른 제공 ② 합병 등 사업승계에 따른 제공 ③ 사업파트너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데이터의 제공 (단, ③의 경우 4가지 안내사항을 미리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함 ⇒ 안내사항: 공동이용의 취지/공동이용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공동이용하는 자의 범위/공동이용하는 자의 이용목적/관리책임자의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할 때 이용목적만 정확히 특정하면, 동의 없이 수집/이용이 가능 ● 민감정보는 취득 시 동의를 원칙적으로 요함. ● 제3자 제공에서 opt-out (사후적 처리거부)을 넓게 인정함 (단, 민감데이터는 그 대상에서 제외시킴)
----------------------------	--	--

3. 개별적 및 선택적 동의방식과 관련한 한국/유럽연합/일본의 규율비교

-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때,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혹은 일괄동의)를 금지하고 각 동의사항을 분리해서 별도로 받도록 하는 동의방식('개별적 동의방식') 및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만을 수집하게 하면서 최소 정보 외에는 '선택'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동의방식('선택적 동의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 ※ 유럽연합의 GDPR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한국과 같은 개별적 및 선택적 동의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

개별적 및 선택적 동의방식 (포괄동의의 금지)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1) (15조1항1호) 수집/이용 동의 (2) (15조2항) 수집 시 동의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이용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동의거부 가능성)을 변경할 때 ➡ 별도의 동의를 요구 (3) (17조1항1호) 수집/이용 동의와 별개로 제3자 제공(공유 포함) 할 때 ➡ 별도의 동의를 요구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호)> (4) (17조2항)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수령자/수령자의 이용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동의거부 가능성)을 변경할 때 ➡ 별도의 동의 요구 (5) (17조3항)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 별도의 동의 요구 (6) (18조2항) 고지했던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하거나 제공할 때 ➡ 별도의 동의 요구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2호)> (7) (23조1항1호) 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할 때 ➡ 별도의 동의 요구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3호)> (8) (24조1항1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할 때 ➡ 별도의 동의 요구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4호)> (9) (22조1항) 위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요구 <위반: 과태료 1천만원(75조3항2호)> (10) (22조4항) 마케팅 목적의 처리에 대해 별도의 동의 요구 <위반: 과태료 1천만원(75조3항2호)> (11) (22조6항)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위반: 과태료 5천만원(75조1항2호)> (12) (22조2항) 필수정보(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선택정보(동의를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서 동의를 받도록 요구 <위반: 과태료 1천만원(75조3항2호)> ※ (22조5항) 위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 마케팅 목적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 목적 외	● 포괄동의를 금지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임 ● GDPR/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제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 (16조3항) 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 외의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 <위반: 과태료 3천만원(75조2항2호)>	
한국 정보통신 망법	<p>(1) (22조1항 및 2항) 수집/이용의 동의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요구.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1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1호)></p> <p>(2) (22조1항) 수집 시 동의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이용목적/개인 정보 항목/보유기간)을 변경할 때 ➡ 별도의 동의</p> <p>(3) (22조의2) 휴대폰 앱의 접근권한을 요청할 때 ➡ 동의</p> <p>(4) (24조의2 1항) 제3자 제공할 때 ➡ 별도의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4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3호)></p> <p>(5) (24조의2 1항) 제3자 제공의 동의를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수령자/수령자의 이용목적/개인정보 항목/보유기간)을 변경할 때 ➡ 별도의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4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3호)></p> <p>(6) (23조1항) 민감정보를 수집할 때 ➡ 별도의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2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2호)></p> <p>(7) (24조의2 2항) 수령자는 제공받은 목적을 넘어서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함. 목적 외 이용 또는 다른 제3자 제공을 하려면 ➡ 별도의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4호); 5년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3호)></p> <p>(8) (25조1항)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할 때 ➡ 별도의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5호); 5년 징역 /5천만원 벌금(71조1항4호)></p> <p>(9) (24조의2 3항) 제3자 제공 동의/처리위탁 동의는 수집시의 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며, 제공 및 위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함 <위반: 과태료 3천만원(76조1항 2의2호)></p> <p>(10) (25조1항) 처리위탁 동의를 받을 때 고지했던 사항(수탁자/위탁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때 ➡ 별도의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5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4호)></p> <p>(11) (25조7항) 처리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재위탁이 가능함 <위반: 과태료 2천만원(76조2항 1의2호)></p> <p>(12) (31조1항)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별도 동의 <위반: 과징금 매출액 100분의3(64조의3 1항7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71조1항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선택적 동의를 엄격히 요구함 ● GDPR/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규제
한국 위치정보 법	<p>(1) (15조1항)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때 ➡ 동의 <위반: 3년징역/3천만원 벌금(40조4호)></p> <p>(2) (18조1항)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 동의 <위반: 허가취소 등(13조1항6호); 5년 징역/5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동의를 요구함

	<p>벌금(39조3호)></p> <p>(3) (19조1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때 ▶ 동의 <위반: 허가취소 등(13조1항6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39조3호)></p> <p>(4) (19조2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동의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39조3호)></p> <p>(5) (21조)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 ▶ 동의 <위반: 허가취소 등(13조1항8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39조4호)></p> <p>(6) (25조1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위반: 1천만원 과태료(43조2항10호)></p>	
<p>한국 신용정보 법</p>	<p>(1) (15조2항)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때 ▶ 동의 <위반: 5천만원 과태료(52조1항2호)></p> <p>(2) (16조2항) 질병정보를 수집 및 제공할 때 ▶ 동의 <위반: 업무정지(27조7항2호); 5년 징역/5천만원 벌금(50조2항3호)></p> <p>(3) (32조1항)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마다 ▶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50조2항6호)></p> <p>(4) (32조1항) 개인식별정보를 이용 및 제공할 때 ▶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5년 징역/5천만원 벌금(50조2항6호)></p>	<p>● 수집/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제공의 경우에는 건별로 사전동의를 요구함</p>
<p>유럽연합 GDPR (일반개 인 정보보호 규칙)</p>	<p>(1) (민감데이터가 아닌) 일반개인데이터를 수집할 시점에 이용 및 제공에 대한 포괄동의(혹은 일괄동의)를 받을 수 있음 [6조1항(a)]</p> <p>(2) 민감데이터(‘특수유형의 개인데이터’)를 수집할 시점에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explicit consent)를 포괄적으로 (일괄해서) 받을 수 있음[9조2항(a)]</p> <p>(3) 온라인특별법인 「e-Privacy Directive(이-프라이버시 지침)」에서 쿠키(cookie)를 단말기에 저장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고 (5조3항), 위치데이터(location data)는 익명처리하거나 혹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함(9조1항)</p>	<p>● 포괄동의 허용됨</p> <p>● 단, 민감데이터/쿠키/위치데이터는 별도 동의를 요함</p>
<p>일본 개인정보 보호법</p>	<p>(1) 수집할 때 이용의 목적만 분명히 특정하면 동의 없이 수집할 합리적으로 수 있고 (15조1항), 처음 안내한 이용목적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목적을 변경할 수 있음 (15조2항). ▶ 목적의 변경이 제한적으로 인정됨</p> <p>(2) 위 이용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4가지 예외 있음)(16조1항)</p> <p>(3) 합병 등의 사업승계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승계 이전의 이용목적 범위 안에서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함(16조2항)</p> <p>(4) 민감데이터(‘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취득할 때 ▶ 동의를 받아야 함(6가지 예외 인정)(17조2항)</p> <p>(5) (민감데이터가 아닌 일반개인데이터의) 제3자 제공은 사후적 처리거부(opt-out) 방식에 의해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사전 동의(opt-in)를 받으면 합법적인 처리로서 가능함.</p>	<p>● 포괄동의 허용됨</p>

4. 개인정보처리의 합법적 근거 및 사후적 처리거부권/처리정지권에 관한 한국/GDPR/CCPA/일본의 규율비교

(1) 사후적 처리거부권 (right to object; right to opt-out)

GDPR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는 6가지 정당한 근거를 인정한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 ② 계약의 체결/이행 ③ 법적 의무의 이행 ④정보주체/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⑤ 공익을 위한 업무의 처리 또는 공적 권한의 행사 ⑥ 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의 달성(다만, 처리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커야 함). 정보처리자가 이들 중 한 가지 근거를 가진다면, 그 처리(=수집/이용/제공)는 일단 합법적이다. 이들 중 한 가지 근거도 없다면, 그 처리는 곧 불법이 된다. 따라서 기업 등 민간의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처리의 합법성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공익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이 때 정보주체는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리(=수집/이용/제공)를 못하게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합법성의 근거가 (i) 공익을 위한 업무처리인 경우 (ii) 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에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처리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리(=수집/이용/제공)를 못하게 중단시킬 수 있다. 물론 처리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라도, 그 이전의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GDPR은 이러한 사후적 처리거부권을 제21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적 처리거부권은 합법성의 근거가 (i) 계약의 체결/이행 (ii) 법적 의무의 이행 (iii) 정보주체/다른 자연인의 중대한 이익의 보호 (iv) 공적 권한의 행사에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는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는 데에 달리 합법성의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위 '고지를 받을 권리'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어도 이용/판매 목적을 미리 고지해야 하고, 그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판매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사후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기업(business)에게 요구할 수 있다(사후적 판매거부권). CCPA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내 정보를 팔지 마세요"(Do Not Sell

My Personal Information)라는 제목을 가진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산 제3자는 재판매를 바로 할 수 없고, 그에 앞서 소비자에게 “명시적 고지”(explicit notice)를 하고 판매를 사후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음에야 비로소 재판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는 개인정보의 판매(sale)에 대해서만 사후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수집(collection)이나 기타 이용(use)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CCPA에서 ‘판매’(selling)의 의미는 제공과 공유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한편, CCPA상의 사후적 판매거부권은 항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절대적인 권리이다. 이에 비해, GDPR은 처리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변사유를 2가지 인정한다. 그렇지만 직접마케팅 목적의 처리에 대해서는 항변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의 처리거부권은 절대적이다.

일본은, CCPA와 마찬가지로, 민간의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제공)하는 데에 달리 합법성의 근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을 비롯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위 ‘고지를 받을 권리’ 항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적어도 이용/제공 목적을 미리 통지/공표해야 하고 그 통지/공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본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사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제3자 제공을 중단시킬 수 있다.

한국은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제공)의 합법적 근거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나마 수집/이용의 경우에는, GDPR과 유사하게, ① 정보주체의 동의 ②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계약의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⑤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함)를 합법적 근거로 인정한다. 이들 중 한 가지 근거도 없다면, 그 수집/이용은 곧 불법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민간의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소비자나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정보주체에게 GDPR과 같은 사후거부권을 달리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정보주체에게는 다음에서 살피는 처리정지청구권을 인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 제공의 합법적 근거는 더욱 제한적이다. 이 점은 GDPR과 크게 다른 점이다. 기업 등 민간의 정보처리자가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그 합법적 근거는 ① 정보주체의 동의 ②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제3자의 급박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⑤ 통계작성/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비식별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합법적인 처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이런 규범상태에서는 GDPR/CCPA/일본과 같은 사후적 제공거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런데 정보주체에게는 다음 항목에서 살피는 처리정지청구권의 형태로 처리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 GDPR	미국 CCPA	일본 개인정보법	한국 개인정보법
21조; 전문 70	1798.120, 1798.135	23조 2항	
(1) 정보주체는 2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개인데이터 처리를 사후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① 동의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 동의 철회 ② 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동의없이)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 ⇨ 처리 거부권의 행사 (1항) (2) 위 동의/정당한 이익/공익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합법적 처리근거(계약이행/법적의무이행/정보주체나 다른 사람의 중대 이익보호/공적 권한 행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경우	(1)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판매(비즈니스 목적의 제공 포함)되는 것을 사후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산 제3자가 재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가진다. (2) 개인정보를 산 제3자는 소비자에게 '명시적 고지'(explicit notice)를 하여 사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재판매할 수 없다. (3)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고지(privacy notice)에서 판매 거부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본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사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제3자 제공을 중단시킬 수 있다. (2) 그러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미리 아래의 5가지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도 해야 한다)⇨ ① 제3자 제공을 이용목적으로 한다는 점 ② 제3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데이터의 항목	(1) 다음 항목에서 검토하는 처리정지청구권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

<p>에는 ⇨ 사후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p> <p>(3) 처리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변사유 2가지 ⇨ ① 정보처리자가 법적 권리를 설정/행사/방어하기 위한 때 ② 정보주체의 이익을 능가하는 처리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때 (1항 단서)</p> <p>(4) 직접마케팅 목적의 처리에 대해 조건 없는 거부권 인정 ⇨ 직접 마케팅 목적의 처리에 대해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보처리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가 있으면, 정보주체는 무조건 직접마케팅 목적의 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3항)</p> <p>(5) 정보처리자는 위 처리거부권에 대해, 늦어도 정보주체와 처음 연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정보주체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다른 정보들과 구별되게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4항)</p> <p>(6) 학술적/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해 처리</p>	<p>(4) 기업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를 팔지 마세요” 페이지에 접근하는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p>	<p>③ 제3자 제공의 방법 ④ 본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때에 제3자 제공을 정지한다는 점 ⑤ 본인의 요청을 접수하는 방법.</p>	
--	---	--	--

되는 경우 ⇨ 정보주체는 처리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6항)			
유사점과 차이점			
(1) 처리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처리 상황은 제한적이다. ⇨ ① 정보처리자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 ②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 (2) 권리행사에 대해 2가지 항변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3) 직접마케팅 목적의 처리에 대해서는 조건없는 거부권이 인정된다.	(1) 소비자는 판매(selling-비즈니스 목적의 제공 포함)에 대해서만 사후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집과 그 밖의 이용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그러나 기업은 자신의 정당한 근거를 이유로 소비자의 거부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판매에 대한 사후적 거부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다.	(1)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제3자 제공에 대해서만 사후거부권을 인정한다. 수집과 이용에 대한 사후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사후거부권은 행사에 제한이 없다.	(1) 처리정지청구권의 형태로 인정되는 처리거부권은 거의 절대적인 권리이다.

(2) 처리정지청구권 (right to restriction)

GDPR은 개인정보의 정확성이나 위법성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임시로 처리를 못하도록 요구하는 이른바 처리정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권리의 행사요건을 4가지로 정하고 있다: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검증하는 동안만) ② 불법적인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 대신 정지를 요구한 경우 ③ 더 이상 처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정보주체가 권리의 설정/행사/방어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사후적 처리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처리의 우월성을 검증하는 동안). 또한 행사요건이 충족되었다더라도 4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CCPA는 관련 규정이 없으며, 처리정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① 처음에 특정했던 이용목적을 벗어나 이용하거나 ② 허위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용의 정지 또는 소거(消去)를 요구하는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인정한다. 또한 제3자 제공이 법률에 위반되게 이루어진 경우, 정보주체는 제공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들 청구에 대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는 이용의 정지/소거나 제공의 정지에 많은 비용이 들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한국은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러나 아무런 권리의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한적인 4가지 거부사유를 인정한다: ① 법률의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②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③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필요 ④ 계약 이행 필요. 이처럼 권리의 행사요건이 없고,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으며, 거부사유 또한 넓지 않아서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처리정지권을 가지는 셈이다. 심지어 처리정지를 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GDPR/CCPA/일본에 비해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한 것이다.

유럽 GDPR	미국 CCPA	일본 개인정보법	한국 개인정보법
18조; 전문 67항		30조	37조
(1) 정보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정보처리자에게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권리행사 요건 4가지] 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동안만) ② 처리가 불법적이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삭제에 반대하면서 대신 그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 ③ 처리 목적에 비추어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그러나	해당 규정 없음 ※ 처리정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의 판매에 대한 사후적 거부권(right to opt-out)을 인정할 뿐이다.	(1) 이용정지청구권⇒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수집 당시에 특정했던 이용목적의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16조 위반) 또는 허위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17조 위반)에 한하여, 이용의 정지 또는 소거(消去)를 청구할 수 있다. (1항) (2) 이용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도, 계속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 ⇒ ① 이용정지나 소거에 다액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 ② 그밖에 이용정지나 소거를 하는 것이 곤란한	(1)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처리자(공공기관 포함)에게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1항). ⇒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2항). (2) [항변사유]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거부사유 4가지 ⇒ ① 법률의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 ②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③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필요 ④ 계약이행 필요 (2항 단서) (3)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p>정보주체가 법적 권리의 설정,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보주체가 21조에 따라 사후적 처리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로서, 정보처리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가 정보주체의 그것보다 우월한지를 검증하는 기간 동안.</p> <p>(3) 처리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보관 외에 계속 처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 ① 정보주체의 동의 ② 법적 권리의 설정, 행사 혹은 방어 ③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의 권리 보호 ④ 중대한 공익 보호</p>		<p>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의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할 만한 조치를 취한 경우. (2항)</p> <p>(3) 제공정지청구권 ⇨ 제3자 제공의 적법성을 위반한 경우(23조1항/24조 위반)에 한하여, 제공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3항)</p> <p>(4) 제공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계속 제공이 허용되는 예외사유 ⇨ ① 제3자 제공의 정지에 다액의 비용을 요하는 경우 ② 그밖에 제3자 제공을 정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의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신할 만한 조치를 취한 경우. (4항)</p> <p>(5) 사업자는 요구에 따라 정지를 하거나 또는 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5항)</p>	<p>알려야 한다. (3항)</p> <p>(4) 처리정지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항)</p> <p>(5) 위반 ⇨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p>
---	--	---	--

유사점과 차이점

<p>(1) 처리정지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위법한 처리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다툼이 있는 경우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p> <p>(2) 권리의 행사요건을 위법한 처리 등</p>	<p>(1) 처리정지청구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p>	<p>(1) 이용정지청구권과 제공정지청구권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p> <p>(2) 이용정지든 제공정지든 권리의 행사요건을 위법한 이용과 제공에 한정하고 있다.</p> <p>(3) 설령 권리의 행사</p>	<p>(1) 권리행사요건이 없이, 항변사유 4가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 거의 절대적 권리로 인정한다. 처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또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요구가 있으면 정지</p>
--	-----------------------------------	--	--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설령 행사요건이 충족되었다도 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계속 처리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보 처리자의 입장에서 넓게 정하고 있다.	해야 한다. 정보 처리자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심지어 처리정지의 의미를 잘못 이해 ⇒ 파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 (3) 유럽/미국/일본에 비해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였다.
--	--	---	---

5. 유럽과 일본의 형사처벌조항 비교

- (1) 유럽연합 GDPR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administrative fines-제83조) 외에,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은 각 회원국의 법률에 맡김

<p>제84조(벌칙) ① 회원국은 이 규칙의 위반행위, 특히 제83조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위반행위에 적용될 다른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정하며, 그 벌칙이 확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 벌칙은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그리고 억지력이 있어야 한다.</p>
--

- (2) 독일 신 연방개인정보보호법 (Bundesdatenschutzgesetz; BDSG 2017)

제42조 제1항	계획적으로, 권한 없이, 공개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제42조 제2항	대가를 받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할 의도 혹은 누군가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공개되지 않은 개인데이터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또는 기망으로 획득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제42조 제3항	위 1항과 2항의 범죄는 고소/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다. 고소고발권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감독기관이 가진다.

(3) 영국 신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2018)

Offences relating to personal data
<p>제170조 (Unlawful obtaining etc of personal data)</p> <p>(1)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knowingly or recklessly),</p> <p>(a)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데이터를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행위</p> <p>(b)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또는</p> <p>(c) 개인데이터를 획득한 후, 획득 당시 그 데이터의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것을 보유하는 행위 → 범죄</p> <p>(2) 항변사유 : 위 1항의 행위들이 (a)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b) 법률이 요구한 경우 (c) 특수한 상황에서 공익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p> <p>(3) 항변사유 :</p> <p>(4) 위 제1항의 범죄행위로 획득한 개인데이터를 판매하는 행위 → 범죄</p>
<p>제171조 (Re-identification of de-identified personal data)</p> <p>(1)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개인데이터의 비식별화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식별화된 개인데이터를 재식별화하는 행위 → 범죄</p> <p>(2) 비식별화(de-identify) 및 재식별화(re-identify)의 개념</p> <p>(3) 항변사유 :</p> <p>(4) 항변사유 :</p> <p>(5)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재식별화된 개인데이터를 다음의 상황에서 처리하는 행위 → 범죄</p> <p>(a) 비식별화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and</p> <p>(b) 위 제1항에 의해 그 재식별화가 범죄가 되는 경우</p> <p>(6) 항변사유 :</p> <p>(7) 항변사유 :</p>
<p>제172조 (Re-identification: effectiveness testing conditions)</p> <p>(1) 제171조의 적용에 있어서, 비식별화된 개인데이터를 재식별화한 사람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테스트 조건"이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p>
<p>제173조 (Alteration etc of personal data to prevent disclosure to data subject)</p> <p>(1) 제3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정보주체가 데이터접근권(access right)의 행사로서 접근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한 사람이 그 요구에 따른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게 된 경우.</p> <p>(2) "데이터접근권"의 의미 :</p> <p>(3) 제4항에 열거된 사람이, 접근 요구를 한 정보주체가 받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는 것을 막을 의도로, 그 정보를 변경, 훼손, 차단, 삭제, 파괴 또는 은폐하는 행위 → 범죄</p>

- (4) [제3항의 사람들이란] (a) 개인정보처리자, 그리고 (b)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용한 사람, 임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 (5) 항변사유 :

(4) 일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장 벌칙

제82조 제7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盜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3조 개인정보취급사업자(그 자가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에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조 제1항에 있어서도 동일하다]인 경우에는, 그 임원, 대표자 또는 관리인) 혹은 그 종업원 또는 그러했던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등(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또는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을 자신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盜用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혹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자
2.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86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일본국 외에서 이들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87조 (양벌규정 - 생략)

제8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 제2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신고를 한 자

[집행방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우선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중대한 권리의익의 침해가 절박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42조(권고 및 명령)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제16조

에서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7조, 제28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29조 제2항 혹은 제3항, 제30조 제2항, 제4항 혹은 제5항, 제33조 제2항 또는 제36조(제6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가 제37조 또는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개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밖에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개인의 중대한 권리의익의 침해가 임박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의 두 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제16조, 제17조, 제20조에서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 제1항, 제24조 또는 제36조 제1항, 제2항 혹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익명가공정보취급사업자가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개인의 중대한 권리의익을 해한다는 사실이 있어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밖에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행사의 제한)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의 3개條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고 혹은 자료제출의 요구, 출입검사, 지도, 조연, 권고 또는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前項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사업자 등이 제76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자(각 당해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개인정보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인터넷상생위원회 제2소위

Evidence- and Risk-based Privacy Regulation Approaches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규정과 보호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바른 ICT연구소
Barun ICT Research Center

순서

1. Privacy Regulation Approaches

2. 개인정보 처리방침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4.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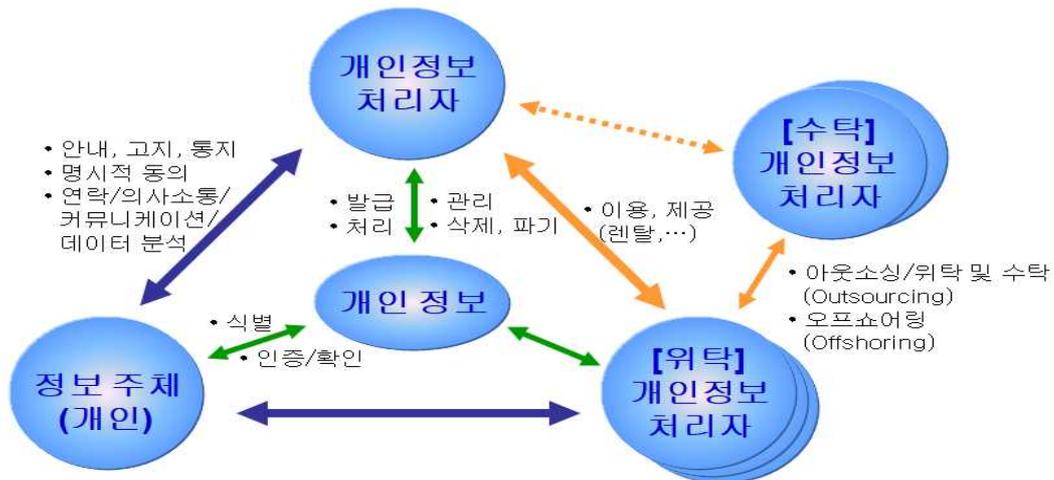
YONSEI,
Leading the Way to the Future

Privacy Regulations

- 정보보호 v. 정보 활용
- 효과적 보호 v. 합리적 활용

3

Privacy Regulations



* 개인식별정보(PII):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 Data Controller(관리자), Data Processor(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4

효과적 보호: 정보 고지

- 개인정보 처리방침 읽고 계시나요?
- 최근 확인하신 처리방침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효과

㈜내일컴즈 개인정보 취급방침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1) 수집항목
- 필수항목: 내일컴즈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
- 선택항목: 주소, 생년월일, 모바일 및 소셜네트웍 서비스 이용 시 이를 서비스 이용시, 결제 등을 위해 신원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 Address, 쿠키, ...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1)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관리
2)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적 3)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과 이벤트 행사에 따른 접속 속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3.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위탁업체	위탁
내일서비스	고객센터 운영
한국신용정보(주)	신용조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보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로그인 ID, ...

1) 보존 근거: 서비스 이용의 본인 방지
2) 보존 기간: 6개월

5.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
2)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 종이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 개인정보보호팀
(전화: 02-212-4321)

㈜내일컴즈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	수집
계약이행 요청성신	
주만등록번호	
금융정보	
연락정보	
쿠키	
구매정보	
사이트 활동기록	
위장정보	
기호/관심사	
연구통계학 정보	

㈜내일컴즈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	필수	내일컴즈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명, 연락처, 금융정보	
	선택	주소, 생년월일, 쿠키, 위치정보, 직업, 기호/관심사,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등	
			
수집 목적	보유 기간	위탁(1)	파기 방법
1) 서비스이용에 따른 계약이행과 요금 징산 2) 회원관리 3) 마케팅 등 광고 목적	6개월 보유 근거 서비스 이용의 혼선 방지, 유희적 사보서에 대한 관련 기관 수사협조	1)위탁업체: 내일서비스 2)위탁내용: 고객센터 운영, 고객 상담 3)위탁정보: 회원가입 시 입력정보 및 서비스 이용 시 생성된 정보	기록재정 불가능 기술적 방법 파기 : 소각/분쇄
		위탁(2)	파기 절차
		1)위탁업체: 한국신용정보 2)위탁내용: 신용인증 및 본인확인 3)위탁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번호 *본인확인기관 보유 개인정보이므로 별도 저장하지 않음	목적 달성된 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 보호 사유에 따라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후 파기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 개인정보보호팀
(전화: 1577-3321)

㈜내일컴즈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02-212-1234
help@neel.com

관심/생동감, 이해가능성, 기억, 행동의도

- 프라이버시 성향,...

개인정보 처리방침(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 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2016. 3. 2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3자’ 정보 제공 알림의 효과

- 시민이나 고객이 관심있고, 알아야하는 내용인가? 알고 있는가?

-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

Your California Privacy Rights

Under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s 1798.83-1798.84, California residents are entitled to ask us for a notice describing what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we share with third parties or corporate affiliates for those third parties or corporate affiliates' direct marketing purposes. That notice will identify the categories of personal information shared with third parties and used for direct marketing purposes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third parties that received such personal information. If you are a California resident and want a copy of this notice, please submit a written request to the following address: Macy's Customer Service, P.O. Box 8067, Mason, OH 45040. In your request, please specify that you want a "Your Macy's California Privacy Rights Notice." Please allow 30 days for a response.

제3자' 정보 제공 알림의 효과



Cookie Notice

We use Cookies on this site to enhance your experience and improve our marketing efforts. Click on "About Cookies" to learn more. By continuing to browse without changing your browser settings to block or delete Cookies, you agree to the storing of Cookies and related technologies on your device. [University of Illinois Web Privacy Notice](#)

[About Cookies](#) [I Agree](#)

Cookie usage

Our website uses cookies. A cookie is a small text file which will be saved on your computer or mobile device when you visit our website. More information? [Read our cookie policy.](#)

[Accept](#) [No, rather not](#)

데이터 기반 효과적 제도 및 정책

- **Evidence-based, Data-driven Approaches**
- **Risk-based and Long-term Research Initiative**
 - Case Studies, Simulations
 - Field/Quasi-Natural Experiments
 - Data Analytics

1-5.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1-5-1.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I. 5G 생태계의 특성

1. 5G의 개념

- 4G보다 20배 빠른 속도, 10배 많은 연결, 10배 짧은 저지연 기술로서 초고속, 초연결, 저지연으로 정의되는 차세대 통신기술

- 우리나라는 2019. 4. 3. 5G 스마트폰이 출시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 3사에서 5G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

※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ITU에서 지칭한 5G 정식 명식은 'IMT 2020'

<기존 이동통신(4G) 대비 5G 핵심성능 비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핵심성능		4G	5G	4G 대비
초고속	최대 전송속도	1Gbps	20Gbps	20배
초저지연	전송지연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1/10
초연결	최대 기기 연결수	십만개/km ²	백만개/km ²	10배

- 5G는 전 산업분야와 전면적으로 융합되면서 부품·디바이스·장비·콘텐츠 등 ICT 산업 그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 자동차, 제조·운송, 보건·의료, 재난·안전 등 타 산업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촉발해 대규모 신시장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전망

※ 과기부 또한 「5G+ 스펙트럼플랜」을 수립하는 등(19. 12. 5.) 전략산업별 5G 주파수 공급과 기술개발을 통해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

- 5세대 이동통신(5G)은 단순한 통신기술의 발전이 아닌 산업 생태계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범용기술로서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할 핵심 기술임

-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이 필요
- 즉,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장의 범위 확대, 5G 이용의 활성화, 하드웨어 장비의 수출 등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5G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2. 5G 생태계의 특성

- (개요) 5G시대에는 이용자의 범위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순환적 생태계로 변화됨과 함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닌 생태계로 확장됨
 - 5G 시대의 초연결성으로 인하여 타 산업과 이용자에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적 생태계로 변화됨
 - 5G 기술의 혁신적 가치로 인하여 생태계의 외연이 확장됨에 따라 다양성과 개방성을 지향하게 됨
- (산업융합 및 혁신) 기존 통신의 활용 영역이 스마트폰 즉, B2C서비스에 국한되었다면, 5G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 단말 디바이스에 적용되어 B2B 서비스에 전면 활용됨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과 다른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짐
 - 5G의 대용량, 초저지연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산업의 창출 및 산업간 융합, 그리고 기존 산업 내에 새로운 혁신 서비스 도입 등이 가능해짐
 - ※ 가령, 초지연으로 즉시성이 필요한 커넥티드카의 기술적 가용성을 높이고 생산공정에서 운용하는 기계나 장비를 사실상 실시간으로 감시 및 통제, 조정할 수 있음
 - 과거 통신기술 진화 과정과는 다르게, 자동차·유통 등 이종산업 기업들도 5G 개발 초기부터 상용 가능 서비스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 가령, 독일 자동차 3사(다임러, 아우디, BMW)는 5G 자동차협회(5GAA)를 설립하여 네트워킹장비·IT·통신사업자와 함께 5G 상용화를 위한 협력을 도모
- (데이터 경제 활성화) 5G의 등장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 됨

- 5G 시대에는 사람 간, 사람과 단말·장비 간, 단말과 단말 간 연결과 이를 통해 신속하고 방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해짐
- 나아가 5G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다른 단말과 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확대되고, 데이터를 통한 산업적 부가가치의 창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

※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란 2011년 데이비드 뉴먼(Davide Newman)이 쓴 가트(Gartner)년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서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경제적 패러다임을 의미

○ (단말장치의 다양화) 5G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기기와 클라우드가 5G 단일망으로 연결되어 가치사슬의 확대가 이루어짐

- 기존의 4G는 음성 및 SMS, 동영상 미디어, IP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중심이었으나, 5G 환경에서는 스마트폰이 UHD와 VR/AR 등 초실감 미디어 기기로 진화하며, 자율주행(커넥티드카) 및 무선망을 활용한 최적화 생산공정의 도입(스마트 공장) 그리고 드론이나 웨어러블 등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도입과 보편적 활용이 가능하게 됨
- 4G까지는 스마트폰·노트북 등 기기들에 제한되었던 연결이 5G 단일 망으로 다양한 IoT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IoT 서비스들을 자동·자율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수많은 데이터와 이를 운용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게 됨

<세대별 통신환경 진화에 따른 통신시장의 주요 변화¹⁾>

구분	3G	4G	5G
단말기	스마트폰의 본격화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대중화	단말기 다양화
주요 변화	· 인터넷 접속의 시작 · 데이터 서비스 등장	· 데이터 전송속도 증가 · 영상통화 보편화	· 대량연결 및 속도 증가 · 지연시간 감소
주요 서비스	· 스마트폰 플랫폼 경쟁 - 안드로이드, IOS	· 스트리밍 플랫폼 경쟁 - 넷플릭스, 유튜브 등	· 핵심서비스별 플랫폼 - 자율자동차, 실감콘

¹⁾ 5G 이슈와 성공전략, NIA,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용량 텍스트 중심의 SNS 활용 시작 · PC 중심의 웹하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패러다임 전환(사진, 영상중심) · 모바일 클라우드(웹하드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츠 등 · 고화질 몰입형 영상 중심의 SNS 전개 · 클라우드의 보편화(저장·연산 기능 등)
--	---	---	--

II. 5G 생태계에 나타나는 변화 및 그에 대한 지원 방안

1. 이용자의 역할과 범위의 확대

가. 통신 양상의 변화

- (개요) 5G 시대에는 C-P-N-D의 단방향적 가치사슬이 C-P-N-D-U의 순환적 가치사슬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은 물론 이용자의 개념이 변화함
 - 5G의 초연결성으로 인하여 이용자는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하여 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됨
- (이용자 역할 변화)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에서의 이용자의 역할은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렀다면, 순환적 가치사슬 하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투입요소로서 생산자의 기능을 수행함
 - 5G 시대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단말과 이용자 간의 수평적·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역할이 확대됨
 - 즉,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에는 이용자의 피드백도 포함되며, 이에 따라 단순한 수동적 소비자에 머물렀던 이용자의 역할이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 합리적 통제자로까지 확대
- (이용자 범위 확대) 기존의 통신이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통신을 의미하였다면, 5G 생태계에서는 사람과 단말·장비 간, 단말과 단말 간 통신이 구현됨에 따라 사물의 이용자화 현상이 나타남
 - 인간에 국한되어 있던 이용자의 개념이 사물인터넷 등을 구현한 5G의 초연결성으로 인하여 사물로 확대됨

- 통신을 통하여 자동차나 냉장고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장비나 단말과는 연결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5G시대에는 단말과의 통신을 통해 인간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단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됨

나. 지원 방안

- **이용자에 대한 개념과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정책철학과 법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
 - 5G의 초연결성에 기초한 사물 즉, 기계들이 새로운 이용자로 부상함에 따라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함
 - 다만, 사물의 경우 산업적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용자와 구별될 수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 등 IoT 전용 주파수 조기 발굴 및 공급, 관련 기술기준의 확정 등 이용자 확대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
 - 정부는 「5G+ 스펙트럼플랜」에서 현재 차량충돌 방지 레이다 용도로 지정된 77~81GHz 대역의 용도를 완화하여 해당 대역을 비접촉 생체정보측정용 고해상도 레이다(디지털 헬스케어)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다른 기기의 IoT 구현을 위한 추가적인 주파수 발굴·공급이 필요할 것임
- **이용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책임 소재 확정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사물인터넷 활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
 - 가령, 사물인터넷의 오작동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소유자·개발자·판매자 등 다양한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책임소재의 확정이 어려움
 - 이에 따라 산업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의 활용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5G 통신의 적극적 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바, 책임 소재에 관한 법제 등의 정비를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최근 관련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이른바 데이터3법의 경우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제한된 목적 범위 내에서 동의 없는 비식별정보의 처리 허용을 보다 분명히 하였으나, 민간 영역에서의 활용 가부와 범위가 여전히 불투명한바,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두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유럽(GDPR)은 상업적 연구를 포함한 모든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이나 미국은 비식별화된 정보 처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아니하고 폭넓은 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시 요구되는 사전 동의의 예외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내 규제를 해외와 같이 유연하게 수정하여,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가령,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동의가 필요한 조항을 수정하여 일부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는 현행규제를 완화하고 사후배제(opt-out)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가능

2. 사업자간 경쟁으로의 경쟁 범위 확대

가. 경쟁 양상의 변화

○ 5G 시대에는 C-P-N-D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쟁에서 나아가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과의 경쟁으로 범위가 확대됨

-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 영역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C-P-N-D 각 사업 내의 경쟁(intra-competition)에서 사업 간의 경쟁(inter-competition)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왔으며, 5G 활용이 본격화 됨에 따라 C-P-N-D를 넘어서 새로운 경쟁자와의 경쟁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이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에 머물렀던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분야에도 5G가 활용됨에 따라 C-P-N-D 외의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경쟁 범위가 확대됨
- 나아가 5G는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할 핵심 기술로서 국내 사업자간 경쟁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범위가 확대됨
 - 현 상황에서 5G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의 트렌드는 국내 산업과 기술에 의해서 촉발되고 변화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와 같은 미래 융합기술 선진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규모, 자본력, 파트너십 측면에서 국내 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 국내 규제 및 정책의 틀을 넘어서 글로벌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헤게모니를 쟁취할 수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들의 선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나. 지원방안

-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범위의 확대 및 경쟁 양상의 다변화에 대응되는 정책공간의 확대가 요구됨
 - 기존의 경쟁정책이 C-P-N-D 사업자 내의 경쟁을 규율하였다면 5G 시대의 경쟁정책은 C-P-N-D 사업자 간, 나아가 C-P-N-D 이외의 전통적인 아날로그 사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함
- 지배적인 사업자를 규제하기 보다는 사업자간 대립되는 양상의 경쟁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기존의 경쟁은 사업자 간의 대립구도로 이루어졌다면 5G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다만, 대형 기업들이 독과점 하는 형태로 생태계가 조성될 위험이 있으므로 생태계의 외연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내 5G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생태계 내의 경쟁정책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생태계 내의 협력과 경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5G 생태계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

3. 5G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디지털 격차의 해소

가. 디지털 격차의 심화 현상

- 5G 시대에는 정보통신의 종류와 양이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정보통신 기술 및 스마트 기기의 보급과 확산이 인간의 사회적 수용 속도를 능가하게 됨에 따라 정보접근 및 활용에 있어 이용자간 격차가 심화됨
 - 초기에는 정보격차의 개념이 단순히 물리적 접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접근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면서 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격차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 정보격차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경제적 계층별, 성별, 연령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심화되는 정보 격차를 “디지털격차”라고 정의하기도 함
- 디지털격차(정보격차)는 접근격차, 이용격차, 성과격차로 분류 가능함
 - ① 접근격차: TV, PC, 인터넷, 스마트폰 등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접근할 가능성에 따른 격차
 - ② 이용격차: 각종 단말기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이용에 따른 격차로서 매체 이용료나 서비스 종류와도 관련이 깊음
 - ③ 성과격차: 양적·질적 활용 수준과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격차
- 5G 시대에서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이용자 간 편익의 격차가 아닌 생산성 격차의 양상으로 나타남
 - 5G 통신이 제조업, 에너지·유틸리티, 헬스케어 등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5G 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될 전망

나. 지원방안

- 5G 시대에는 정보 복지 차원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진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5G 인프라의 균형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9년 4월 정부는 5G 시대의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지정하였음
 - ※ 정부의 정책 과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단말기기, 모바일 웹·앱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서비스 활용 교육 강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이통사는 수익이 담보되는 도심 지역 위주로 5G 무선국과 초고속 유선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지게 되므로, 비도심 지역 투자시 세액 공제나 이중적 과세(전파사용료와 등록면허세)의 통합과 같은 비도심 지역 투자 유인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5G 시대의 산업 외연 확장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
 - 5G 시대의 정보 격차는 단순한 이용 편의 격차 및 취약계층의 소외현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 5G 활용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로 나타날 수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필요
 - ※ 가령, 5G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생산설비 또는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격차가 심화될 것임
 - 5G를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자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 ※ 2000년도 초반의 벤처 붐 이후로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5G 시대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

○ 대형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여건 하에 경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우리나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통한 경쟁 제한 효과를 규율할 수 있는 경쟁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해외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더욱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더 많은 규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혁신 사업이 저해되거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비롯한 사업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도입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

2-1. 전체회의

2-1-1.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9. 6. 19.(목) 14:00~17:00
- 장소 : 더케이호텔 거문고A홀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전체위원장·1소위원장), 호서대 곽정호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한양대 신민수 교수, 고려대 이성엽 교수, 잉카리서치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숭실대 최정일 교수(2소위원장), 고려대 이희정 교수, 서강대 홍대식 교수,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변호사,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 (소비자)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경실련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 (관련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 (연구·전문기관) KISDI, KISA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시지온
 - (정부) 방통위, 과기정통부

2) 인사말씀

□ 방통위 위원장 인사말씀

-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인터넷 시장 내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상생협력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해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출범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논의 안건 중 역외적용 규정과 국내 대리인 제도는 이미 입법화 되고, 5G 시대의 망 중립성,

망 이용대가 등 통신 사후규제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추진에 상당히 기여

- 그러나 1년 내 마무리되기 어려운 의제도 있었고,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 속에서 정책적 이슈 역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
- 지난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100만을 돌파하며, 5G 시대의 본격화를 알리고 있는 가운데, 5G는 IoT, 스마트시티 등 우리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
- 이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OTT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AT&T-타임워너 합병 등과 같이 콘텐츠와 플랫폼의 결합이 확산되고 있으며, 구글의 자율주행사업체인 Waymo와 같이 탈통신 영역으로의 진출이 활발
- 이에 시장 내 혁신적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고, 국내·외 기업 간, 대·중소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통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에도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
- 조화롭게 풀어내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제2기 협의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주시기 바람

□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전체 위원장 인사말씀

- (이원우 협의회위원장) 지난 1기 협의회 경험을 토대로 한 단계 진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정책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용자 보호나 정부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함
- 더불어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논의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3) 안건보고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계획(안)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4) 주제 발표

[발제 1] 5G 시대 기술·시장환경 변화 및 정책 이슈(발제: 한양대 신민수 교수)

- 5G 기술 환경
 - 현재 3GPP에서 5G 서비스의 최소 기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5G 이동통신시스템인 NR(new Radio)를 개발 중인 가운데, 5G는 기존 이동통신 기술 개발 과정과 유사한 접근 방식으로 단계적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5G의 기술 특성으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5G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효율적인 유무선 전송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5G의 경우, 서로 다른 속성을 갖는 다양한 단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위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중요한 기술로 손꼽히고 있음

-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망상에서 여러 개의 논리적 망을 구성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o 5G 융합 산업 환경

- ITU 보고서(2018)에서는 5G 융합 산업 서비스의 적용 분야로, 사물인터넷, 재난, 교통, 공공 시설 등 16개 산업 분야를 발표
- 각 분야별 기술 요구사항 및 기술 기준의 구체성에 있어 편차가 심하여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있으나, 서비스별 기술 요구 사항들이 어느 정도 제시된 상황
- 4G 이동통신에서는 선도적 업체와 협력 업체와의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 초기 사용자 기반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 등이 있었다면,
- 5G 이동통신에서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관련 업계 및 산업 간 협력 부족, 생태계 육성 전략 부재 등의 이슈가 존재
- 이에 5G 기반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i) 정부-산업 간 협력을 통해 5G 이동통신 기술 조건과 구현 시기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네트워크 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ii) 서비스 공급자 측면과 수용자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산업 환경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o 5G 융합 시장 환경

- 기존 이동통신 기술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기술 중심으로 Speed가 핵심 성공 요인이었다면, 5G에서는 5G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출현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5G 시대에서 ICT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기반으로 인터넷 기업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포괄하는 혁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해외 사례 : BEREC report(2019.4.30.)

- BEREC(2019)은 5G에 대한 규제 목표로 소비자 보호와 함께 혁신의 엔진으로써 인터넷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내 역시도 인터넷 사업자와 통신 사업자를 포괄하는 생태계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BEREC은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서비스별 적합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품질 등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차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보호를 전제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와 같은 BEREC의 입장을 참고로 하여,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각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

o 정책 및 규제 이슈

- 공정 경쟁 이슈 : 망 이용대가 관련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규제의 형평성과 비례성, 규제의 지속적인 효력을 위한 원칙 중심의 규제
- 산업 활성화 이슈 :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 활성화, 중소기업자를 위한 상생·협력,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 조성
- 5G 도입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전송품질의 다양성과 소비자 후생 간

관계, 네트워크 진화와 커버리지 확대 지체 등의 시장실패 보완 등

- 이용자 보호 및 권익 강화 :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보호, 프라이버시, 자유로운 데이터 이용, 보안과 CSIRT(Computer Security Incident Response Team) 활성화

[발제 2]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협의를 통한 ICT 혁신 선순환 경제구조 조기구축 필요(발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윤상필 실장)

- o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국내 역시도 저성장 기조 속 투자 위축, 청년일자리 부족 등의 사회 문제를 겪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저성장 침체 탈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모멘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 o 세계 주요국은 5G, IoT, 10Giga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을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 국내 역시도 지난 1년 간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ICT 생태계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해왔음
 -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역외적용,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등 국회에서 다양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 CP간 상생협력 및 망 이용료 정책, 망중립성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 o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통신 사업자에게 더 많은 시대적 역할을 요구하는데,
 - 우리 사회 전반의 융합과 혁신을 위한 중추신경망(5G)과 말초신경망(IoT) 조기 구축을 위한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 B2B, B2C, B2B2C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요구
- o 한편, 통신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은 6~7% 수준으로, CP 또는 대규모 제조업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 외에도 정부 종합대책에 따라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 부실 지하 통신 긴급보수/보강 등 예정에 없던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등 통신사업자로서 많은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음
- o 이와 같은 규제 환경에서는 통신사업자가 4차 산업혁명 기반 융합 신서비스 및 신사업 개발·발전을 위한 적극적 혁신과 투자를 집행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으로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선도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과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위한 신속한 제도 정비, 정책수립이 요구됨
 -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에 기반한 융합 서비스가 출현하기도 전에 선급하게 규제하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 자유 토론

- (○○○) 금일 회의에서는 세부 이슈에 대해 논의하기 보다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전반적 이야기와 더불어, 앞으로 협의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먼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끝까지 참석할 수 없어 우선 발언기회를 요청하신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최성진 대표님께 발언기회 드리고, 다음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음
-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쁨. 협의회를 통해 5G 시대에 통신사, CP, 스타트업 모두 상생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 우리나라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 상호접속 고시 관련 비용 문제나 통신사와 스타트업의 네트워크 접근성, 협상력 차이 등의 문제로 인해 네트워크 이슈에 있어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환경에 있지 않다고 생각함
 - 그러다보니 비용이 비싸더라도 해외의 서비스(ex. AWS) 많이 이용하기도 함
 - 또한, 인터넷 시대에서 네트워크는 국내 통신사업자만이 감당할 수 있고,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점에서, 국가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통신사들이 산업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신사의 적절한 이윤과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상생발전협의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함
- (△△△) 이후부터는 시계 반대방향(오른쪽) 순으로 발언하는 것으로 하겠음. 고려대 이성엽 교수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 (○○○) 1기 협의회와 마찬가지로 2기 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법제 개선의 성과가 있었으면 함
 - 특히, 논의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ICT 생태계 전반의 발전,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 등 여러 상충되는 목표들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해외 사례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해외 사례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회의 참석 관련해서는 논의의 지속성을 위해 구성원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함
- (□□□) 1기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이슈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고, 이번에도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1, 2소위에서 각각 전담하시는 분들을 나누어 참여토록 하고, 이전과 같이 원할 경우에는 참관하는 형태로 함께 회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 (△△△) 2기 회의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른 위원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캐치업 하겠음
 - 그리고 협의회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소위별 논의 주제는 구분되지만, 궁극적으로 연결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소위의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브리핑해주셨으면 함

- (○○○) 개인적으로 기존의 규제가 현재의 시장을 통제할 수 있거나,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해서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또한, 사실관계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결론적으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LGU+) 시장 내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배력 등을 남용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외부와 내부의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음
 - 이에 회의 참석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접하면서 저희 내부의 시각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공정한 경쟁을 주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평'과 '공정'의 차이점에 대해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함
- (KT) 1기 협의회 결과물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음
 - 2기 협의회에서는 1기에서 논의한 내용을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길 바라며,
 -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에 대해 회사 내부에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저희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저희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SKT) 작년 운영방식 중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통신사와 인터넷 진영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뒤로 미루시다 보니 논쟁이 길어졌던 것 같음
 - 이번 2기 협의회에서는 전문가 분들께서 중간에 한 번씩 정리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협의회에 적극 협조하면서 필요한 의견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음
- (네이버) 네이버의 경우,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전체 매출액(6조) 중 1조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
 - 다시 말해 인터넷 상에서의 경쟁은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규제가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성장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논의 시 규제 환경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지난 1기에서는 조금 아쉽고 유감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2기에서는 좀 더 희망적이길 기대함
- (카카오) 네이버 원윤식 상무님의 말씀과 같이, 국내 사업자들은 데이터 활용 등에서 갈라파고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협의회가 국내 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혁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함
 - 그리고 2기 협의회 소위 구성 및 각 소위별 논의 주제에 대해 사전에 공유되지 않았는데, 논의의 투명성 제고 및 건강한 논의를 위해 주제 등에 대해 사전 공유가 되었으면 함

- o (□□□) 소위가 구분된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 o (카카오) 네
- o (구글코리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고 싶음
 - 첫째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둘째로, 논의 주제 결정에 있어서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지난 1기 회의록을 보면, 사업자 이름만 공개되고, 전문가 분들의 성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모두가 공평하게 오픈된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함
- o (페이스북코리아) 작년 이어 2기 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쁨
 - 지난 해 1기 협의회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역차별 해소 문제와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역차별이 있는지, 역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함
 - 1소위 논의 주제로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및 법제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이 실패해서 차별이 발생한 것인지, 시장 안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상생발전협의회에서의 논의가 새로운 규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바,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함
- o (넷플릭스) '16.1월 서비스 개시 이후, '18.5월 한국에 상주 오피스를 꾸리다보니 1기 협의회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이용자 보호나 산업 전반, 정책 부문에 대해 저희의 의견을 내는 것이 사업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여 2기 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함
 - 저희의 경우, 망 사용료 관련 이슈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 글로벌 1,000여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거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회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함
 - 2기부터 참여하다보니 1기 때 진행된 내용들에 대해 충분히 공유 받지 못했는데, 과거 논의 내용을 리뷰하고 논의를 진행한다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o (콘텐츠연합플랫폼) '14년부터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함
 - 그동안의 역차별은 망 사용료나 세금 부분에서 존재하였으나, 최근 국회 입법발의 내용을 보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약진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는 보이지 않고,
 - 오히려 PooQ과 같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규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상당함
 -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협의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사업자들을 명분으로 활용하지 않기를 바람

- (시지은) 저희 회사는 소셜댓글 '라이브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사의 댓글 시스템을 위탁운영 받아 악성댓글을 줄이기 위한 여러 기능들을 활용할 수 서비스를 제공
 - 국내에서는 400여 곳의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트래픽의 90%에 가까운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어 포털사 다음으로 댓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
 - 협의회에서 스타트업을 대변하는 역할로 불러주신 것 같은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회원사만 1,000개가 넘고 다양한 산업 군에 속해 있어 스타트업 관련 이슈는 굉장히 다양하고 예측 불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이슈를 전달하는 역할을 열심히 해내고 싶고,
 - 올해는 갈등을 넘어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논의가 집중되기를 기대함
- (△△△) 1기 협의회에서의 자료를 공유해주시면 이해도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소위원회 구성을 보니 저는 2소위에 속해있는데, 개인적으로 참여연대 입장에서는 1소위에 대한 의견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참관이 아닌 1소위, 2소위 모두에서 위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많은 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데, 협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대체로 다수결을 따르는 것 같음
 - 그러나 다수결을 따르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다수의 의견을 세밀하게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본 협의회에서는 다수결 보다는 합의를 통해 진행되었으면 함
 - 또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참여연대 역시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규제 완화 대상이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저희의 입장이 완벽히 일치하지 않음
 - 기존 방통위가 추진해 온 정책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이상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함. 이에 논의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 부문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주셨으면 함
- (○○○)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가 정부, 이해관계자(통신사, 인터넷 기업, CP), 전문가 들 모두 입장이 있어 합의에 다다르기 어려우나, 이런 논의의 장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봄
 - 인터넷 상생 협의회 1기에서도 결론이 모두의 마음에 들기는 어려우나, 보고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함
 - 오픈넷은 인터넷 이용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협의회에 충실히 입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음
 - 1소위는 역차별 해소와 공정 경쟁 이슈를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 1기 때도 보면 역차별 해소 논의가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만 논의가 흘러갔던 경향이 있음
 - 궁극적으로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함
 - 공정 경쟁 이슈에 대한 대형-중소형 CP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있어,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시도 하에 중소형 CP,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 접근권 등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여 논의 방향을 이끌어나가 주시길 바람
- o (□□□) 모든 입장에 대해 경실련의 의견이 있으며, 입장이 다 다를 것으로 보여 참여에 망설여지는 점도 있었음
 - 합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했지만, 서로 공유하며 논의를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 참여하게 되었음
 - 각 논의 주제에 대한 경실련 내부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내도록 하겠으며, 세부 내용은 위원회에 참여하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o (△△△) 2기에 처음 참여하게 되어 방통위 홈페이지에 있는 1기 보고서로 공부해보았는데, 굉장히 구체적·세부적이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셨던 점을 알 수 있었음
 - 소비자 및 개인의 입장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키워드는 '변화'임
 - '변화'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현재 시점에서의 전체적 입장에 대한 합의도 중요하나, 변화의 시기에 규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후의 방향이 달라짐
 - 따라서 현재 각 이해관계의 타협점을 찾는 것과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다른 효과가 있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좋은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협의의 방향은 여러 방향이 있으나, 공동의 공익의 관점에서 협의가 진행되길 바람
- o (○○○) 1기 협의회에서 다양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는 제공되었으므로, 2기 협의회에서는 1기 협의회 내용들을 발전시켜 사회후생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기대함
- o (□□□) 작년의 연장선상에서 좀 더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CP, CP들 간의 관계의 문제를 한 곳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으며,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잘 관리해야할 것으로 보임
 - 사업자 대표 분들의 경우 본인 회사에 불리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런 점을 전제로 위원장님,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원칙중심 규제와 이해관계에 매몰되다 보면 원칙이 무엇인지를 잊게 되며, 해외에서는 원칙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나 원칙도 합의가 잘 되지 않음
 - 개인적으로 플랫폼 제국주의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합의해야할 부분은 이용자의 후생이라고 생각함
- o (△△△) 소위 운영에 대한 공유가 잘 되었으면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은 '97년 이후에는 개정만 진행되어 현재 시장상황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
 - 현 시장상황에 대해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으로 보임
 - 규제 취지를 달성했거나 혹은 필요 없는 조항들을 숙아내기 시작하면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데이터 활용이 원활이 되어야 5G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5G가 충분히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초고속 인터넷 요금제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함
- o (OOO) 신민수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상생발전협의회 목표를 정해본다면, 인터넷 상생 발전이라는 거대한 담론 보다는 구체적으로 5G와 관련한 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보호와 같은 논의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봄
 - 기존의 통신서비스가 완결된 서비스로 제공된 반면 5G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하나를 정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선도해 나가야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심
 - 5G와 연계·확대된 서비스로 논의를 확대하고, 연계 법률에서의 규제완화 및 규제개선을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o (□□□) 1기 협의회는 알차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2기에도 잘 운영되길 바람
 - 회의 주제는 1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1기에 마무리되지 않았던 논의들이 발전되길 바람
 -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각 소위별 논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으며, 소위별 주제가 단절된 주제가 아니므로 연결된 검토가 있기를 바람
 -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좀 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o (한국방송협회)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미약하여 다른 스타트업 기업이나 인터넷 기반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과 같이 규제신설 및 강화에 대해 우려됨
 - 이용자 보호, 불공정 경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기회가 된다면 1, 2소위에 모두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었으면 함
 - 사업자 입장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음
-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실제로 소프트웨어·논리적으로 구분된 플랫폼이며, 통신사도 플랫폼임을 염두에 두시고 함께 논의해주시길 바람
 - 소규모CP, 스타트업은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자산이므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과 실패 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 마련이 필요함
 - 소규모CP, 스타트업이 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나아가야하지, 통신사를 제한하는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됨
 - 관련 단체 및 사업자, 협회 등은 소위원회 개최 전·후 별도 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계획, 의제, 소위 구성 등에 대한 사전 공유가 없어,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아쉬우며, 관련하여 사전 공유를 해주셨으면 함
 - 논의 의제도 일방 당사자에게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생발전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의제만 논의하는 것 같아, 상생의 결과도 도출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상생 발전 논의 의제인 '빅데이터 활용 방안'과 같은 추가 안전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 1차 협의회 논의 결과가 규제개선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롭고, 비정상적인 규제가 만들어져 부담으로 작용되었음
 - 부가통신사업자도 KT 화재로 피해를 본 이용자 중 하나이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소비자 중 하나인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장애를 고지해야하는 의무 수범자로 포함된 사례와 같이, 이런 규제들이 확대 및 신설되지 않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망 이용 공정 경쟁의 경우 망 이용대가에 대해서도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람
 - 무한경쟁시대에 노출되어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KISDI)** 1기 협의회에 이어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정부 국책 연구소로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자료 및 의견을 주실 때, 사전에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료 공유는 지난 1기에도 웹하드를 운영하여 회의록을 공유하였으므로 참조를 바라며, 작년에 유출에 대한 이슈가 있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KISA)** KISA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호, 인터넷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기 협의회때 논의되어 법제화된 국내 대리인제도 관련해서는 현재 국외사업자 중 매출 1조 이상 기업 중 5개 사업자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있음
 - 인터넷 플랫폼 현황 조사를 올해 저희가 방통위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자료가 협의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람
 - 협의회에서 제안된 국내 대리인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생발전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관련부처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방통위 박진희 과장)** 의제와 관련하여 투명한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 구성 등이 사전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제의 경우 올해 초 1기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국회·산업계 등의 정책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하게 되었음

- 새로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제들은 말씀해주시면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음
 - 1, 2소위에 모두 참여하는 건과 관련하여,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 지원하겠음
 - 회의록 또는 보고서 발간의 세부 사항의 경우 소위 내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경우 1, 2소위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두 소위에 모두 참여하시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 소위원회 논의 전후로 의제를 감안하여 관련 사업자, 협회 의견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도 있음
 - 5G 등에 대비한 규제 개선·완화, 산업발전 촉진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임
- **(과기정통부 이진수 과장)** 작년에 해결되지 못한 논의의 경우 2기 협의회를 거쳐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시장은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므로 작년에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들도 다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 본 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 관련 논의의 장으로 생각되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방송통신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 상생발전협의회라는 이름과 같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
 - 규제 논의에 있어 최소규제·자율규제가 필요하며, 일부 사전 규제도 있으나 사후규제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국내/해외 사업자간 동등규제가 필요함
 - 상생발전뿐만 아니라 혁신 생태계 자체가 커지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함
 - 정부참가자 입장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고, 결과물이 나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정책에 참조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정부부처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협의회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 의미를 두고 싶음**
-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협의회 목표나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마치 이 협의회가 정책을 만들거나, 갈등을 해결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보이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함
 -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간에 상의하고 논의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협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저희에게 있다고 생각함
 - 규제개선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상생발전협의회라는 이름을 통해 국회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음에 보람감도 있었음
 - 2기 협의회에는 발전적 제안을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진희 과장님께서 의제가 열려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음**
- 최근 망 이용대가 관련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해야한다는 이슈가 있으므로, 본 협의회에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대해서도 면밀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방통위 최성호 국장)** 1기 결과물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으셨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2기 협의회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명단 공개의 경우 사전에 명단이 유출되는 점에 대한 우려로,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소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의제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큰 틀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과 상의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 간에는 모든 것이 공유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새로운 의제가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빅데이터 활용방안의 경우 개인정보 이슈로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협의회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논의를 거쳐 포함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최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개선보다는 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며, 진통을 겪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플랫폼은 이용자이자 서비스 제공 사업자라는 점에서 이용자 보호도 고려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의제로 넣게 되었음
- 자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으며,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으나 미리 답을 정해놓고 협의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음

6)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빠트림 없이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차기 일정의 경우 추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음

2-2. 제1소위원회 회의

2-2-1.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9. 7. 22.(월) 14:00~17:30
- 장소 : 방통위 4층 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1소위원장), 아주대 김성환 교수, 호서대곽정호 교수, 김안장 박민철 변호사, 고려대 이성엽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고려대 이희정 교수, 잉카리서치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 (소비자 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 (관련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콘텐츠연합플랫폼
 - (정부) 방통위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2) 1소위 전체 토의 :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전문가 발제 및 사업자 의견 청취**

□ 소위 운영방안 논의

- (○○○) 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소위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두 분이 발표해주실 예정이며, 이후 전체 관계자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소위원회 위원들 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저희 협회에는 다수의 회원사가 존재하는데,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고, 발표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발제 내용에 대한 숙지 없이 의견을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유감스러움
- (□□□) 수렴기간이 짧았던 점에 공감함. 오늘 논의를 지켜보시고 추후 의견을 취합하신 뒤, 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는 것은 어떠신지?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현재 의견 취합 중에 있으며, 차기 회의에서 저희 측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차후 회의 진행 시, 아젠다 등은 미리 공유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길 바람
- o (△△△) 자문위원회이다 보니 아젠다는 1차적으로 방통위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Kick-off 회의 시 소위별로 예정된 아젠다가 있음.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며 아젠다를 정해가면 될 것으로 보임
- o (방통위 반상권 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음
- o (○○○) 추후 결과보고서의 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히 말씀해주시길 바람. 결과보고서 관련하여 모두가 참여한 결과보고서가 발표되는지, 아니면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대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인지?
- 이와 유사한 문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회에서도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람
- o (△△△)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방통위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방통위의 입장을 내실 것으로 보임
- 1기와 유사하게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합의된 것은 합의된 내용으로, 합의되지 못한 내용은 양측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반영할 것임
- o (방통위 반상권 과장) 1기 협의회 결과보고서 내용의 일부는 정부 정책에 참고하고 있음
- o (한국신문협회) 어느 정도까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인지?
- o (○○○) 각계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분들이 내주신 의견이므로 참고하실 것으로 보임
- o (□□□) 자문위원회가 방통위에서 순서를 정해주시면 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가지고 발표 및 토론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됨
- 박성호 사무총장님의 말씀은 이번 발표가 한쪽 입장에 치우쳐져있다면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으로 보이며,
- 다음에 그러한 기회를 주실 것인지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보임
- o (△△△) 자문위원회가 법적으로 독립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요청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함
- 자문의 취지는 1기와 같이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자는 것임
- 모든 쟁점을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행하면 1기의 결과가 의미가 없으므로, 1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정리된 내용이라면 그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부분이 있다면, 양측에서 추천해주시는 분들을 고려하여 발제하실 수 있도록 하겠음
- o (방통위 반상권 과장)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주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 (○○○) kick-off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2소위에 속해있지만 1소위 회의에 참석하였음
 - 구체적으로 각 분과별로 어떤 의제들을 논의할지를 알아야 관심 있는 분과에 들어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원한다면 제 분과를 옮길 수 있는지?
- (△△△) Kick-off 회의 자료에 의제가 나와 있으며, 2소위로 모신 것은 2소위에 더 적합하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임
 - 전문성을 가지신 분야에서 의견을 말씀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방통위 박경주 서기관) Kick-off 회의에서 세부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으며 소위별 의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한 바 있음
 - 저희가 키워드 밖에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회의 과정에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구성하고자 했기 때문임
- (○○○) 금일 회의에서는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다음 회의에서는 망 이용대가 관련 해외 정책동향, 망 이용대가 관련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음
 - 다음으로 인터넷 상생협력 발전방안은 주로 중소 CP와 관련된 상생협력 요청사항을 논의할 예정임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해가며 의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며, 큰 틀에서는 말씀드린 세 주제로 논의하려 하므로 발표자료 및 의견이 정리되어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번에 준비가 덜 되었으니 다음번에 준비하여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함
- (□□□) 그렇게 하겠음
-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 오늘 회의 안건은 지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쟁점별로 입장이 잘 정리되어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미 법률안이 다 제출되어 특별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
- (△△△) 논의 주제의 경우 1기에서 논의가 완료된 부분을 또 다시 논의할 수는 없으므로, 내용을 들어보시고 발표 수준에서의 반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구글코리아) Kick-off 회의에서 저희를 비롯한 모든 CP 및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안건, 소위 구성,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해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방통위 반상권 과장) 향후 절차적 문제로 소모적 논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회의 준비 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의견 수렴하도록 하겠음

- (구글코리아) '공정한 망 이용료'를 논의하기 전에 공정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 차별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인 '상호 접속고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야 형평성 및 진정성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에 지난 kick-off 회의 때 모든 CP 및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린 것임
- (○○○) 상호접속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므로, 방통위 내 자문기구가 상호접속 고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소관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임
- (□□□) 상호접속 고시가 원인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차기 회의에서 발표자로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 (방통위 박경주 서기관) 없음
- (○○○) 그렇다면 차기 회의 발표자에게 상호접속 고시와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시도록 하겠음
 - 다만 상호접속 고시와 관련하여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논의를 해야 하며, 논의 중심 자체는 망 이용 공정 경쟁 확보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음
 - 이는 방통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 근본적으로 상호접속 고시에 문제가 있다면 현상적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규제권한은 별개의 문제임
- (△△△) 역차별 해소, 망 이용료 공정 경쟁 확보 방안,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이라는 세 이슈는 1기 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며, 프레임이 있는 것은 아님
 - 역차별 해소의 경우 1기 협의회에서 논의되어 보고서에 정리되어있으며, 이 안은 법률안이 나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려 한 것이며,
 - 망 이용료 관련 공정 경쟁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나, 근본적으로 상호접속 고시에서 과생된 문제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 이슈가 논의의 중심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자문은 자문을 구하는 사람이 의제를 정해서 요청하고 그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숙지해주시길 바람
- (○○○) 상호접속 고시는 망 사업자 간 경쟁 정도를 낮추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망 접속료 관련 공정 경쟁 이슈의 원인이 상호접속 고시 때문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이에 대한 논의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또한 발표자 및 주제는 누가 정하고 있는지?
- (방통위 박경주 서기관) 방통위와 간사기관인 KISDI가 협의하여 정했음
 - 1기 때와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 추천해주시면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하겠음
- (□□□) 금번 회의의 경우, 2기 협의회가 시작된 이후 짧은 시간 내 추진되다보니 방송통신 위원회와 KISDI 간 논의를 통해 발표자 및 주제가 정해졌으나, 향후에는 1기 때와 동일하게 추천을 통해 발표자를 선정할 것으로 보임

- (방통위 반상권 과장) 상호접속의 경우, 방통위의 소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저희가 자문을 요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차기 회의부터는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 주제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 (△△△) 발표자 섭외 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섭외해주시길 바랍. 이성엽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음

□ 주제 발표

[발제 1] 망 이용 관계에 대한 법안 분석, 평가 및 개선안 검토(발제: 고려대 이성엽 교수)

- 망 이용관계 법안 제안 이유(발제)
 - 글로벌 CP들이 국내 망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권한을 사전/사후로 행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법안들이 발의됨
- 망 이용관계 법안내용
 - 1) 유민봉 의원안 - 전기통신사업법, 사전/사후규제 모두 규정
 - 수범자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 사전규제 : 부가통신사업자의 품질유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 * 관리적(모니터링)·경제적(망이용계약체결)·기술적(망용량 확보)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사후규제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조항에 CP의 망 이용·임차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하고, 의도적인 서비스 품질 저하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 2) 김경진 의원안 - 전기통신사업법, 사전규제 규정
 - 수범자 :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의무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만을 부여
 - 3) 변재일 의원안 - 정보통신망법, 사전규제 규정
 - 수범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기간·별정·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
 - 의무 :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 망이용 관계 법안의 쟁점과 개선안
 - 1) 망 품질 유지의무 부과 가능 여부
 - facebook 사례를 통해 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CP의 경우에도 망품질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규제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 망품질 제어를 모든 CP가 할 수 있는지, 일정 규모 이상의 CP만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망품질 제어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규제 필요

2) 경제적 조치의 의미와 내용

- 경제적 조치가 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양자 간 계약을 의미하는 경우 금지행위상 차별금지 의무가 존재하며,
- 최종이용자와의 이용약관상 품질유지 의무와 배상책임을 의미하는 경우, 현행법상 약관에 대한 심사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가능하여 모순이 존재

3) 망이용과 임차의 개념의 모호성

- 이용과 임차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임차도 이용의 한 형태이므로 임차라는 개념을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임

4)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 여러 규제 및 국내 사업자 보호 입장에서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가능하나,
- FTA의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에 대한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하여 논란이 있음

5) 가이드의 법적 근거 확보의 필요성

- 방통위에서 준비 중인 망이용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6) 금지행위 조항의 개정 대안

- 현재의 금지행위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안함

5의3. 설비 등의 이용에 있어 각호 1호 내지 제3호의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발제 2] 국내대리인제도 및 임시중지명령제도 관련 법안 검토(발제: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o 검토의 필요성

- 작년에 이어 국내 대리인과 및 임시중지명령에 대해 추가적으로 발의안들이 나오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점차 확대·구체화된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부합하는 제도로써 역할을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에 국내대리인제도와 임시중지명령제도에 관한 최근의 법안에 대해 살펴보는 한편, 바람직한 제도 설계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o 전기통신사업법상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관련

1) 김성태 의원안 - 포괄적 법안

- (법안내용) 외국에서 국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법안으로, 미지정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시정명령 미이행시)를 부과하며, 국내대리인이 직접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함

- (검토사항) 국내대리인 의무 범위가 모호*하고, 국내대리인의 직접의무 및 책임부담의 의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현지주재의무 금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존재

* 관련한 모든 사항이라는 내용은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모호함

** 대리인이 직접 관여했는지,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묻지 않는 경우 헌법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 존재하며, 예시로 든 GDPR의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음

2) 박선숙 의원안 - 요건 및 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 (법안내용) 망법과 거의 동일하며, 적용범위를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하여 규정함
- (검토사항)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가 정보통신망법에 비해 광범위하여 과잉규제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

3) 국내대리인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고려사항

- 현재 발의된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함에 따라, 기존 법안 대비 적용 범위가 광범위 하여 과잉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 범위 내로 한정하여 과잉규제 지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국내대리인제도의 적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선례 등을 축적해 나가며 해설서 또는 질의응답의 형태로 사업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내대리인제도 적용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 자회사가 있더라도 주소 및 영업소가 없으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나, 자회사 없이 지사를 두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회사더라도 영업소로 인정되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균형의 문제가 존재함. 또한, 온라인 서비스 상 한국어 기능 추가 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런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의 등이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미 FTA 등 통상 마찰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o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관련

1) 변재일 의원안 - 정보통신망법

- (검토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요건을 지정하여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에게 심각한 제재로 보여 요건이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이종걸 의원안 - 전기통신사업법

- (법안내용)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과 유사한 안으로 요건 등을 구성하였으며, 금지행위로 위법의 명백성과 긴급한 손해 방지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검토내용) 금지행위 요건의 만족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임시중지명령제도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

3)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 관련 쟁점과 고려사항

- 제도나 행위에 대한 판단 시 준수할 필요가 있는 과잉금지 원칙(비례원칙)을 고려해야하며, 임시중지명령은 서비스가 중지되므로 그를 상시할 정도의 목적이 달성되며, 최소한의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고민하며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법한 특정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아닌 전체 서비스를 제한하는 임시중지제도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야할 것으로 보임

□ 논의 주제 토론

- (○○○) 두 분의 발표문에 대한 의견을 세 기관에서 제출해주셨음. 세 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자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SKT) 국내대리인 지정은 망법과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반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정명령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이중걸 의원안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 서비스 품질유지 의무안들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유민봉 의원안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판단됨. 다만, 망이용의 임차/이용 등의 표현이 혼재될 수 있으며 이 의무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와 혼재되어있어 의미가 불분명하여, 조항을 분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 아울러 유민봉 의원안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품질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각종 자료제출의 경우 경쟁상황평가에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서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외사업자의 경우 서버의 범위를 '콘텐츠를 임시저장하기 위한 서버(캐시서버)'로 한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LGU+) 발표 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
 - 과거와 달리 이제는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적정 규모 이상의 CP에게는 이용자에 보호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콘텐츠연합플랫폼) 법안 검토 요청 시에는 4개의 발의안만 받았었는데, 발제를 들어보니 다른 발의안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 후 추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음
 - 1차 회의는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 방안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입법 발의안에 대한 검토보다는 역차별의 원인을 도출하고 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하는 것이 적절함
 - 저희 OTT는 역차별 문제를 이슈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은 발생하고 있음
 - 해외 사업자의 시장 잠식이 급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겠지만, 자문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신속하게 정책 방안으로 도출되길 바램

- (□□□)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차례대로 발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KT)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인터넷 에코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로, 규제 및 제도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상호접속 이슈는 메인 이슈가 아니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주제라고 판단됨
 - 상호접속 이슈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음
 - 방통위에서 상생발전협의회를 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본 발의안들은 CP들을 규제를 통해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혁신을 저해하거나 한 쪽을 힘들게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으로서 서로 발전하자는 의미로 판단됨
 - 인터넷 기업에 조금만 규제를 가하려 하면 망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를 10년 동안 들어왔으나, 통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 내 사업자 경쟁구도가 많이 달라졌으며, 이전에 ISP가 우위에 있었다면 지금은 글로벌 CP에게 일방적인 열위에 있음
 - 본 법안은 동일선상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이므로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으로 보이며, 박민철 변호사님께서 과잉이라고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실질적인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함
- (△△△) 통신사업자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고정적으로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사 모두 기본적으로 법안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 (○○○) 임시중지명령제도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임
 - 부가통신사업자는 스스로 만든 콘텐츠나 유저가 만든 콘텐츠를 타인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는 주체임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에 관해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여러 담론이 진행되어왔음. '90년도 불온통신 결정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경우' 정보통신부가 삭제를 명할 수 있다는 법률에 대해 그를 판단하기 어려워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15년도에는 개정 방송통신법의 '건전한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 역시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불법적인 정보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경고성 판시를 받은바 있음
 - 임시중지명령제도는 콘텐츠 회사에서 삭제 및 차단을 하는 조치가 아닌 웹사이트 운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조치로, 비례성의 원칙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그에 대한 기준 역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위헌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분장 문제 등이 있어 보다 심도 높은 검토가 필요함
 - 금일 회의에서 검토한 법안들은 역차별 해소와 크게 관계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4개 법안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접속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인터넷의 구성 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의 구성 원리는 누구나 자기가 공유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누가 볼 수 있는가는 콘텐츠제공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님. 세계 어디의 누군가가 몇 명이나 접속할지 어떻게 예측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도리어 책임은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이 속한 망사업자가 더 큰 경우가 많음. 보통 업스트림보다는 다운스트림에서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임. 그런데 자기가 올린 콘텐츠를 이름도 숫자도 모르는 접속희망자들에게 원활히 도달되도록 책임을 지지 않으면 올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인터넷의 역할을 막는 것임.

- 이와 같은 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을 것으로 보임. 망 용량의 희소성 때문에 모든 부가통신 사업자들은 지연을 줄이려 노력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하거나 행정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인터넷의 구성 원리와 맞지 않음
- 역차별의 가장 큰 원인은 '16.1월부터 시행된 상호접속 고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 사업자간 peering이 늘어나고 접속지점이 늘어나며 상호접속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나라만 상호접속 고시 시행 이후 떨어지지 않고 있음
- 미국과 유럽의 4배 내지 7배 정도의 상호접속료 시장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업체들에게 접속료를 받기 때문에 접속료가 너무 높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여기서 역차별이 발생함. 즉 접속료는 망사업자와 직접 접속하는 부가통신사업자만 내면 되는 것인데 그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임.
- 따라서 상호접속 고시가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대신, 다음 회의에서 상호접속 고시에 대해 누군가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하며, 필요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을 주어야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o (□□□)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법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 논의가 필요한 취지가 이해되지 않음
 - 현재 발의되지 않은 제도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함
 - 법안 자체가 문제점에 대한 잘못된 시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됨.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으면 세금을 내게 해야 하며, 망 증설 고도화 비용분담은 전혀 다른 내용이나 포함되어있어 프레임이 잘못된 것으로 보임
 -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공정거래법을 보아야 하나, 역차별 제도와 이용자 보호를 연관 지은 것은 이해되지 않음
 - 역차별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막대한 수익은 내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o (SKT)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등장 이후, 서비스 품질을 볼모로 망 이용계약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위가 발생하였으며, 협상력 차이에 따라 망 이용대가 지불여부가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관련 내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요구로 인해 이용자에 대한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의 망 투자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뿐 아니라, 망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 결과적으로 이용자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o **(구글코리아)** 오늘 이 자리에서 개별 법안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드릴 의견은 없음. 다만, 공정한 망 이용료를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당연히 논의가 일방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신사만 일방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묻고 이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 생각해주시기 바람
- o **(△△△)** 협의회 운영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며, 말씀하신 의견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임
 - 금일 논의 주제인 법안에 대해 통신사만 찬성하는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법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방통위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 **(페이스북코리아)** 내부 검토 후 법안에 대한 상세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음
 - 다만, 시장 내 협상력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 혹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에 대해 법제화하여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며, 규제의 내용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o **(넷플릭스)**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의 주제 선정 등 절차적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며, 이는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검토 시간이 부족하여 정제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글로벌 추세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정 예외적 사례를 과대 해석하여 보편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o **(네이버)** 인터넷기업협회에서 회의 절차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에 공감하며, 입법 발의안에 대해 입장이 상이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의견 드리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 방통위에서 보다 정교하게 고민해주셨으면 함
- o **(카카오)** 먼저 주제 선정 및 회의 안전에 대해 앞서 다른 사업자 분들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인터넷 산업에서 CP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충분한 상의 없이 논의 주제가 정해진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러움
 - 뿐만 아니라, 논의 주제에 대해 저희가 건의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발제문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점에서 향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주셨으면 함
- o **(한국신문협회)** 발제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음

- (LGU+) 마지막으로, ○○○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음. 말씀하신 내용 중 '16년 상호접속 제도 개선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전에 두 차례의 제도개선이 있었음. 이 중 언제의 상호접속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 (□□□) 2016년 상호접속 고시 개정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만 알고 있으며, 그 이전의 시장이 이상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음
- (LGU+) 현행 상호접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됨
- (△△△) 오늘 많은 분들께서 논의 주제 및 발표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토론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음
 - 차기 회의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통위와 간사 기관에서는 준비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 상호접속의 경우, 1기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한 바 있는데, 이번 2기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논의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음
 - 그럼 이것으로 1소위 전체 토의를 마치겠음

3) 소위원회 위원 토의 :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 지금부터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겠음
-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기간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자체를 규율하기 위함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이 통합됨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사업법상 역차별이 존재하는 상황임
 - 관련하여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관련 내용 중 트래픽, 이용자 수, 매출액 등에 대한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사업법 상 통계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면,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서버 설치 의무화와 관련하여 WTO 및 FTA 협정에서 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은 없으므로 통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인 제도는 이미 입법 사례가 있고, 제한적으로 적용할 경우 특별한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 같음
 -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CP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들 사업자의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G7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바 있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금일 회의에서 살펴본 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임

- (□□□) 금일 논의 주제는 지난 1기 1소위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안건으로, 이와 관련하여 지난 1기 1소위에 계셨던 곽정호 교수님과 박민철 변호사님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함
 - 실무상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국내 대리인 지정, 임시 중지 명령,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의 내용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조가 존재함
 - 이에 대해 지난 소위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당시 규제 권한은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상 제한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음
 - 다만, 김성태 의원안과 같이 부가통신사업자 전체를 사업법에 포섭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함
 - 특히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이들 사업자 모두를 포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필요한 범주를 선별하여, 그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어 FTA,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사회·경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또한, 논의 주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은 협의회 결과보고서에도 반영될 뿐만 아니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회의의 경우, 검토하시는 데 시간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나, 추후에라도 서면을 통해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임
 - 이와 같은 법안이 만들어질 경우,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인터넷 산업의 발전은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부가통신사업자가 투자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자가 이용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역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망 투자 및 마케팅 비용 부담 등으로 통신사의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상생협력을 위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겠으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성장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 없음
 - 만약 현재의 제도가 통신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 그것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통신사와 CP 간 규제균형을 맞추기 위해 CP의 규제를 강화한다면 성장이 제한되어 결국 생태계 전반이 열악해질 것임
 - 마지막으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하여 '16년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 사업자 간 정산방식이 기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장 내 왜곡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함

- (□□□)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시장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권한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
 - 그러나 중국, 미국, 유럽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제를 적용 중에 있어 국내에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 논의 과정에서 발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1기 협의회에서의 합의 사항과 정부가 고려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측면에서 발의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제도별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제도별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의원 입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안과 다르게 부처에서의 정책 목표들을 포괄적으로 선정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할 경우, 서로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상대 사업자의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담론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모두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특히 사업자들은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의 주제 선정 시 큰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금일 회의에서 살펴본 법안 내용과 관련하여 규율 대상 선정 기준(이용자 수 및 트래픽 양) 및 규제 내용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 * i) '기술적 조치'와 같은 모호한 개념 도입, ii)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 불분명
 - 발의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안 통과 후 위헌 논쟁 등의 부정적 외부 효과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사후규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됨. 다음으로, 김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여러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규제 내용 상 조금 과도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이용자 보호 등과 같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들도 있음
 - 그런데 '역차별 해소'를 슬로건으로 하다 보니 일부 사업자만이 떠오르고, 그들을 대상으로 규제하려는 것처럼 보여져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법안별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박선숙 의원안에서의 과태료 2천만 원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임시중지명령의 경우 임시중지할 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점, 유민봉 의원안에서 이용·임차의 개념이 문맥상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역차별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정부가 규제 대상을 선별하기 보다는 스스로 declare 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와 책임을 연동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한다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o (○○○) 지난 1기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김성환 교수님의 말씀처럼 ‘역차별 해소’ 측면에서의 접근방식은 해외 사업자를 규제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 이에 역차별이 아닌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o (□□□) 금일 발제 내용 중 이성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상황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CP가 이용자일 경우에는 망 품질에 대해 ISP가 100% 책임져야 할 것이나,
 - CP가 최종 이용자에게 자신의 콘텐츠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최근 역차별 문제가 대두된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첫째는 동영상 콘텐츠 이용 급증으로 ISP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방향 트래픽이 늘어났으며, 둘째는 국내 CP와 다르게 해외 CP들은 라우팅을 우회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된 것임
 - 이런 상황에서 Access 망에서 CP가 포트를 과소 구매하거나, 혹은 라우팅을 우회한 후 ISP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할 경우, CP 역시도 망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여러 법안들이 나오게 된 것임
 - EC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후규제를 적용하고, 단기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어떤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규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역시도 CP 행위가 단기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CP의 행위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행위규제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사전규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추가로, 유럽에서는 제로레이팅 관련하여 OTT 사업자를 규제 수범자로 보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이유로 모든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 OTT 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o (△△△) 어떤 규제를 완화했는지?
- o (○○○) 보편적 서비스, 필수설비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이 있음
- o (□□□) ○○○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치 EC가 부가사업자에게 서비스 품질 의무를 부여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해됨
- o (△△△) 그러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o (○○○) 그렇다면 위에서 ○○○께서 “EC에서는 . . 어떤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규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역시도 .사전규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라고 발언하였는데 EC의 어떤 사전규제를 고려하라는 것인가 묻고 싶음

-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절한 망 용량을 확보하고,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신사 IDC 내 캐시서버를 운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전략적 판단에 의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는 라우팅을 마치 송신자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어폐가 있음. 단지 콘텐츠를 국내망사업자들의 망의 어느 지점을 통해 공급할지 즉 캐시서버를 통해 공급할지 국내망사업자가 접속료를 내는 해외망사업자를 통해서 공급할지 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국내망사업자는 국내 이용자들에게 full connectivity를 팔고 있고 국내 망의 어느 지점에 콘텐츠가 투하되든 그 콘텐츠에 국내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접속하도록 할 의무는 국내망사업자가 가지고 있음.
- 그리고 ○○○께서 새로운 OTT 규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통신법 상 페이스북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더 이상 Information service가 아닌 것인지? 그것이 마치 OTT 규제가 생겨서 품질 보장, 망 용량 확보 등 기술적 부분에서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제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 o (□□□) 제로레이팅 관련 여러 유형이 있으나, ○○○께서는 CP와 연동된 제로레이팅 사례로 한정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유럽의 경우, 시장 내 대부분을 해외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적용 중임
-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국내 토종기업이 존재하는 점에서 유럽과 국내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함
- 뿐만 아니라, CP 입장에서 이용자 보호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사업자 변경이 용이한 인터넷 서비스와는 달리, 이동통신 서비스는 약정기간 적용으로 사업자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쉽게 이동할 수 없다는 차이가 존재함
-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 중심으로, 더 나아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함
- o (△△△)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함
- 거기에 더하여 부가통신사가 할 수 없는 망 용량 확보,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 부가통신사업자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개인, 시민단체 등이 서로 소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o (○○○) CP가 망 품질을 제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o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음
- o (△△△) 라우팅 시 수신측은 발신측이 정한 policy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결국 CP가

policy를 정하면 그 품질의 영향을 받는 것은 이용자임

- (○○○) 그 이슈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마지막으로 ○○○께 발언 기회 드리고, 방통위 반상권 과장님께 발언 기회 드리겠음
- (□□□) 망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많이 사용하다보면, 다른 누군가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일전에 넷플릭스가 망 상황에 따라 화질을 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는데, 이를 통해 CP 역시도 효율적인 망 활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됨
 - 발의법안 내용 중 이용자 수,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지위에 있는 이들 사업자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가운데,
 - 규제 도입을 검토하기 전 효율적인 망 활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임시중지명령과 관련해서는 규제관할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장기적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 (○○○) 임시중지명령과 즉시 강제요건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혼재된 상태로 논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음 회의에서는 금일 회의에서 논의한 의제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 측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 뒤 다른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방통위 반상권 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차기 회의에서는 사전에 인터넷기업협회 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고려하여 논의 주제를 선정코자 함
- (□□□) 통신사의 입장도 있으니 양쪽 의견을 골고루 청취하시어 반영해주시기 바람.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음.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1소위원회 차기 회의(2차 회의)는 9월 중 개최 예정이며, 개최 일시는 미정

2-2-2.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9. 10. 22.(화) 10:00~12:30
- 장소 : 과천시민회관 세미나룸1
- 참석자
 - (발제자)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 John Milburn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1소위원장), 아주대 김성환 교수,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고려대 이성엽 교수, 성균관대 김민호 교수, 잉카리서치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한양대 신민수 교수
 - (소비자 단체)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관련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콘텐츠웨이브
 - (정부) 방통위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과기정통부 나상민 통신경쟁정책과 사무관

2) 개회사 및 발제

□ 개회사

- (○○○) 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소위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하나셋 코퍼레이션의 John Milburn CTO께서 발제해 주실 예정이며, 발제 후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 진행하겠습니다.

□ Internet Transit and Peering in Korea: My perspective (발제: John Milburn)

- (한국의 인터넷 환경) 한국은 단일 언어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로컬 콘텐츠, 정액제 시스템 제공 등으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가 제공되기 위한 최고의 인터넷 환경을 보유
 - 뿐만 아니라, 시장 내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함에 따라,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이용자들이 저가로 양질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인터넷을 둘러싼 환경 변화 : 경제성 측면) 전세계적으로 Transit 비용이 낮아지고, ISP 간 무정산을 기반으로 하는 Peering 접속 형태가 증가하는 등 인터넷 환경이 크게 변화
 - 그러나 한국의 접속시장은 상호접속 고시가 제정되던 당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 * 여전히 시장 내 Big 3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들 간 상호 동등접속(peering)을 하고 있으며, 3사 외 ISP들은 중계접속(transit)의 고객으로 취급받는 상황
- Transit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해외 추세와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오히려 과거보다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한국의 콘텐츠를 해외로 전송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트래픽이 peering 망을 통해 전달되며, 해외 ISP에게 비용을 지불 해야 하는 transit은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됨
- o (한국의 IX) 한국은 해외와 다른 IX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용어(Peering/Transit) 사용에 있어서도 해외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짐
 - Peering과 Transit의 개념: Peering은 당사자(peer) 간 합의에 트래픽을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무정산하는 반면, Transit은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vider 간 관계로서 비용 지불을 필요로 함. 그러나 한국의 규제에서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동일한 개념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음
 - IX 구조: 해외에서는 하나의 IX point에 다수 ISP가 연동하여 상호 트래픽을 교환하는 반면, 한국은 3사(KT, SKB, LGU+)가 제공하는 IX point에 연동하여, 그들을 거쳐 타 ISP 혹은 CP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구조를 가짐
 - 즉, 한국은 해외와 달리 자유롭게 개방된 환경에서 상호 트래픽을 교환하는 구조가 아니며,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해외 업체들이 한국 내 IX point 관련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지 않음
- o (ISP-CP 간 관계) 과거 CP가 등장하던 당시 수익 상황이 좋지 못했던 CP들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통신사에게 수익 공유를 요청했으나, 통신사들은 이와 같은 요청을 거절
 - 오늘날 CP는 과거와 다르게 수익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노력과 실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통신사들은 콘텐츠 부분에서 성공한 기업(CP)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국내 CP들은 자사 고객의 대부분이 통신사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지불금액 자체에 대해 협상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통신사가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에 반해 해외 CP의 경우, 이들 사업자에게 한국은 매우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일본 등 인근 국가로 서버를 이동 혹은 한국 시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것임
 - ※ [사례 1] '97년 한국의 호스팅 비용은 미국 대비 약 3~4배 정도 높았는데, 이로 인해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의 80% 이상이 미국에 호스팅 되어 있었음. 이에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비용으로 로컬 커넥션을 제공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었음
 - ※ [사례 2] 현재 대다수의 스타트업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비스(아마존 AWS, 구글의 GCP 등)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중
- o (5G 환경에서 통신사·정부에 대한 제언) 5G 환경에서 통신 인프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장비업체, 통신사가 구축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CP와 스타트업이 만들어 낸 혁신적

서비스를 수출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통신사에 대한 제언: 인프라 제공사업자로서 유무선 통신, 위성통신 등 핵심 사업분야에 집중한다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을 것
- 규제기관에 대한 제언: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최상의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개방적이고, 경쟁체제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내 CP에게 부과된 차별적 요금으로, 트래픽 처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원가가 전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규제를 통해 CP로 하여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한국계 CP와 스타트업에게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 사업자의 비용구조 악화에 따른 시장경쟁력 저하는 물론,
- CP/스타트업의 원가 상승이 결과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암묵적 세금 인상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

3) 1소위 위원 및 관계 사업자 토의

- o (□□□) 발제자의 발표 잘 들었음. 발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o (LGU+) Telco의 콘텐츠에 대한 투자 실패를 메꾸기 위해 규제가 만들어졌고, 그 규제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이해되는데, 그 논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
 - 물론 통신사들이 콘텐츠에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ex. 천리안, 하이텔 등)가 있기는 하나, 그 실패를 메꾸기 위해 지금의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 기본적으로 인터넷 시장 환경(Flat rate pricing, High bandwidth, Great content)을 어떻게 유지해야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함
- o (발제자) 통신사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기도 했지만, 기존의 좋은 콘텐츠(ex. 천리안, 하이텔)들을 사멸시키기도 함
 - 통신사에서는 Core infra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장하실 수 있을텐데, 유선 쪽만 봤을 때 서비스 원가 측면에서 수익성이 매우 높은 상황
 - 또한, CAPEX에 대해 가속 감가상각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설비 투자 초창기 대부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되며, 과거보다 CAPEX 투자 속도가 많이 둔화된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되었음
 - 통신사의 경상수익 대비 연간 투자금액은 20% 수준에 불과한데, capacity 측면에서 볼 때 통신사가 투자를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다만, 통신사가 거대한 조직이다 보니 직원 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면 효율성은 물론, 기업의

이윤(margin)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 (△△△) 회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1소위 위원님들은 2세션 회의(1소위 위원회의)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1소위 위원이 아닌 다른 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함
 - 발제자께서 상호접속 고시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발제 내용에 자체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금일 논의 주제는 망 이용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코멘트 시에는 논의 주제에 맞게 발언해주시길 바람
- (방통위 반상권 과장) 발제자께서 규제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국내 CP들은 통신사와의 망 이용계약에 있어서 선택권이 없는 반면, 해외 CP들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통신사와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고 국내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
 - 만약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도 규제기관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발제자) 말씀하신 경우에도 규제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그 이유는 한국 시장에는 3개의 통신사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만약 해외 CP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가는 경우, 고객의 반응과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반응이 어떨지 생각한다면 3사 중 누군가는 그 상황에 굴복하여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임
 - ※ [사례 1] 과거 LGU+는 Youtube 서비스를 가져오기 위해 해외 co-location을 통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사 가입자 기반을 늘린 바 있음
 - 바로 이것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3개 사업자의 존재는 시장 내 경쟁을 가능하게 하므로, 해외 CP가 서비스 중단 후 시장을 떠나는 경우에도 규제기관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함
 - 또한, 국내 CP의 경우, 국제 트래픽에 대해서는 국내 통신사 망 사용을 중단하고, Telstra 등 다른 사업자와의 연동을 통해 국제 트래픽을 처리하고, 국내 통신사와는 순수하게 국내 상호 접속만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그리고 국내 트래픽 전송에 있어서 3개의 제공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간 경쟁으로 네트워크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계약이 나올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규제당국의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함
- (○○○) 사업자 간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이 시장을 떠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장 내 경쟁환경이 공정하지 않고, 힘의 논리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함
 -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정책을 바라볼 때에는 해당 국가의 전략이나 규제기관의 철학, 당시 시장 경쟁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 국내의 경우, 인터넷망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공정 경쟁 환경 구축을 위해 '04년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역무로 전환한 바 있음
 - 한편, 미국 FCC가 인터넷 망사업자를 기존 Title I 에서 Title II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사전 규제 하는 것이 맞는지, 사후규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상호접속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의된 바 있음

- 그리고 통신사들이 CP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망 이용대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CP 역시도 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 무엇보다 CP들이 어떻게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CP 역시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망 이용대가로 인해 스타트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CP들이며, 이미 통신사들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CP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며 협력계획을 세우고 있음
- 요컨대, ISP 간 접속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측면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산업 내 진입장벽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o (□□□) ○○○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상호접속 고시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체계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배경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
- 둘째, CP 역시도 통신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스타트업 피해 관련해서는 대형 CP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중소 CP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

o (△△△)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IX 제도로 인해 CP의 원가가 상승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가 통신사와 CP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전 세계적으로 해외 피어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X 제도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적용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이에 현행 상호접속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망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o (○○○) 원가 구조에 대해서는 지난 1기 때부터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어 판단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o (KT) 발표 잘 들었음. 그런데 발제 내용이 객관적인 논리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함. 분명히 정부의 목표는 사회 전체 이익 향상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호접속 고시가 Telco의 이익 향상을 목표로 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음.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첫 번째, 제가 아는 상호접속 고시에서의 peering과 transit의 개념이 글로벌 개념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음

- 두 번째, transit 단가가 전 세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오른다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근거 데이터가 불분명한 점에서 동의할 수 없음
 -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peering 접속이 늘어나는데 반해 한국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ITU의 Internet interconnection(2000)에 따르면 이미 96년부터 peering은 한계가 와서 transit이 대세가 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음
 - 네 번째, 한류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내 ISP가 transit을 제공하는지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해외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ISP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transit을 제공 중임
 - 다섯 번째, telco의 operating margin(영업이익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3사의 EBITDA margin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며, flat rate로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감가상각을 가속화 한다는 의견의 경우, 자문을 하시던 20년 전에는 맞을 수 있으나 지금은 다 정액상각을 하고 있어 이는 사실이 아님
 - 여섯 번째, telco가 통신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콘텐츠 사업 등을 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이는 기업의 전략에 대한 부분이므로, 선을 넘은 의견인 것으로 생각됨. 통신사업자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가입자를 늘리거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해외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임. 이러한 전략 하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사업자가 telco는 통신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많이 넘은 의견임
- o (발제자) 과거 두 분의 KT 회장님을 자문하며 느꼈던 점은 KT는 조직 규모에 따른 고질적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음
- 사실 감가상각은 매우 작은 이슈로, 감가상각 가속화 모델의 경우, 15년 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는 정액상각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통신사의 총 매출 대비 CAPEX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임. 또한 글로벌 수준의 이윤이 나오지 않는다면 핵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
 - 사실 CP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 가입자의 요청에 대해 응대 하는 것이 CP의 역할이기 때문에 트래픽 및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자유도는 통신사가 가지고 있음
 - 또한, 통신사의 트래픽 및 네트워크 구조 변경에 따른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들은 다른 통신사로 넘어가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의 원칙에 맡겨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 o (□□□) 지난번 회의에서 발제 자료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토론 준비가 충분치 못한 점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있었음. 이에 사전에 발제 자료를 공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받아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번에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문제가 있었음
- 물론 토론하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기 협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서라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서면 의견이 필요함. 이에 서면으로 의견을

보충하여 제출해주시면 위원들이 참고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 아울러 지난 1차 회의 발제에 대해 사후에 의견을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던 분들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의견 정리하여 송부해주시길 바람
- o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질문이 아니라 장시간 코멘트를 하고 계시다보니 지정 토론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것으로 첫 세션 회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어떠신지?
- o (○○○)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그것에 대해 두 번째 세션에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 o (SKT) 앞서 transit과 peering을 정의함에 있어 peering을 'without payment', 즉 '무정산'이라고 정의하셨는데, 현재 peering은 free-peering과 paid-peer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o (LGU+) peering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트래픽을 내 망까지 소통시키는 것이고, transit은 다른 사업자의 트래픽을 제3의 사업자에게 보내줘야 할 때 사용하는 용어임
- o (발제자) 용어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peering과 transit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peering은 network 사업자 간 트래픽을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transit은 접속 이용사업자와 접속 제공사업자의 관계로, A사업자가 B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B사업자와 연동 중에 있는 다른 여러 사업자와 트래픽을 소통하는 것을 의미함
-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는 peering 자체가 'without payment'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peering 중 99.8%가 'no payment'임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임
- o (SKT) 99% 이상이 peering이라고 하셨는데 프랑스 ARCEP 보고서에 따르면, peering과 transit 이 각각 절반으로 나타났으며, peering 내에서는 paid-peering이 50% 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는 정산하는 경우가 70% 이상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peering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오류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 o (발제자) peering 관련하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peering의 99.8%는 무정산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협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o (KT) PCH 데이터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 해당 데이터가 transit과 peering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 o (발제자) PCH는 명확한 peering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PCH 데이터는 peering만을 포함하고 있음
- transit은 전체 트래픽의 1% 미만으로, 한국의 ISP들은 물론, 주요 글로벌 ISP(KDDI, Softbank, PCCW, Singtel 등) 역시도 transit 비중이 매우 낮음(1% 미만 수준)
- o (□□□) 오픈넷에서는 토론문을 아침에 메일로 전체 공유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발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드리자면, 규제기관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러한 논란의 시작은 상호접속 고시의 개정인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발제자께서는 상호접속 고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발제자) 현행 상호접속 고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기관이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 역시도 좋은 방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 만약 바람직한 제도방향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상호접속 고시가 개정되기 전 2016년 이전의 내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 (네이버) ○○○께서 2번째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시간 상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답변할 시간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임. 시간을 조절 하도록 하겠음
- (○○○) PCH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하셨는데, BEREC의 2017년 보고서를 보시면 PCH의 의견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임
- (□□□) 바로 즉답하기는 적절치 않은 질문으로 보이므로, 각자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임
- (카카오) 당사의 경우, peering 상품만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용하지 못하는 transit 상품에 대해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 전체 트래픽의 90% 이상이 peering인 점에서 이 부분에 집중하여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해됨
 - 다양한 의견이 있으실 것으로 보이므로 서면으로 의견 보충하여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세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4) 1소위 위원 토의

- (□□□) 금일 논의 주제는 망 이용환경 개선으로, 앞서 망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그 배경이 되는 상호접속에 대한 발제가 필요하다는 인기협이 요청을 고려하여 발제를 진행하였음. 지금 부터 발제에 대한 코멘트 또는 망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이 협의회는 인터넷 상생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관계자(학계, 관련 단체 및 협회 등)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자리로써, 논의의 핵심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 환경에 바람직한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다수의 협의회에서 상호접속과 관련한 여러 논쟁을 들었는데, 발제 내용이나 사업자 의견이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

- 지금 망 고도화, 인터넷 생태계, 망 이용대가 원가, 스타트업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논의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함
 -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자 간 정산방식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으로 변경된 것을 지속해야 하는지, 혹은 현행 정산방식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임
 - 앞서 ○○○께서 그 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나 특수한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편적 원칙 또한 무시할 수 없음. 따라서 보편적 원칙에 입각하여 어떠한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또한, 정부는 협의회에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는 논의의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음
- **(방통위 박경주 서기관)** ○○○께서 말씀해 주신 협의회 목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기 상생발전 협의회에서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consensus를 모아 주시면 그것에 대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의제에 따라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경우 전문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과기정통부 나상민 사무관)** 상호접속 고시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호접속 고시 자체는 통신사 간 정산관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졌으나, 고시개정 이후 다른 연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에서 과기정통부는 '18.9월부터 연구반 운영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관련하여 구체적 사항이 마련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 본 협의회는 방통위의 입장에서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간 원활하고 투명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상호접속 고시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본 협의회 의 쟁점 사항이 아님
 - 상호접속 고시는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현재 별도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접속 고시를 바꾸는 것에 대한 논의는 본 협의회 의 임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 본 협의회 의 쟁점 사항은 상호접속 고시 자체가 아니라 망 이용환경과 관련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 지난 1기 협의회에 비교하여 진도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를 지속하는 과정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함
 - 지난 1기에서는 사업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에서 그쳤기 때문에 2기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통신사와 CP 간 대결구도가 이어지고 있어 아쉬움
 - 그리고 앞서 발제자께서 페이스북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외 CP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의제 설정 과정에서 상호접속 고시와 관련한 발제가 필요하다는 사업자 측의 요청에 따라 상호접속 고시에 대한 발제가 있다 보니, 망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
 -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보면, 정작 우리가 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게 되는 점이 아쉬우며,
 - 방통위나 KISDI에서는 망 이용환경 개선이라는 논의 이슈에 대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임
- (○○○) ○○○께서 말씀해주신 의견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됨. 자문을 하려면 큰 틀에서의 정부의 입장과 방향성을 알려주셔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말씀드릴 수 있음
 - 지난 1기에서는 관계자 간 합의된 사항도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주셔서 정책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었다고 생각함. 이번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망 이용환경 개선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어졌으면 하는 의제들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
 - 아울러 개인정보 이동문제의 경우 2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글로벌 사업자가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GDPR을 인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국내 대리인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개인정보 이동 이외의 다른 업무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 1차 회의에서 이성엽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바 있음
 - 망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이용자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사업자 관점에서는 망 구축·활용에 있어서 상호접속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유롭고 투명하게 협정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방통위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권한 확보 측면에서,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과기정통부는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위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일부 현행 망 중립성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의 작업 또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 추세나 상호접속제도의 인터넷 환경에 대한 기여, 과거로의 회귀 필요성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굉장히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것 같음
 - 이에 전 세계적 추세가 어떠한지, CP의 부담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지에 대해 방통위나 KISDI 측에서의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음
 - 마지막으로 협의회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회의 의제를 사전에 설정하고 그에 대한 ISP, CP의 의견을 받아 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함. 이 부분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KISDI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함

- (△△△)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상호접속, 망 중립성 등 망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전반적 내용을 그려볼 수 있는 코멘트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다만 규제 동향에 대한 정반대의 입장이 존재하므로, 전 세계적 트렌드와 CP의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적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서는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과 같이 큰 정책 목표를 제시해주셔야 목표 지향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말씀해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 (방통위 박경주 서기관) 발제한 것에 맞추어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금일 발제가 한 가지 주제에 집중되어 예정했던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후에는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음
- (○○○) ISP와 CP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위원들의 코멘트를 모으면 쟁점이 드러날 것임. 지금 상태에서는 KISDI에서도 정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KISDI) 1소위 의제는 역차별이며, 특히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주된 이슈임
 - 이에 1차 회의에서는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였으며,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인기협에서 근본적 원인이 상호접속 고시에 있다고 말씀하셔서 금일 회의에서는 상호접속 고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하지만 원래 1소위의 주된 의제는 망 이용료 역차별 해소임을 말씀드립니다
- (□□□) KISDI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논의 주제는 망 이용료 역차별 이슈이나, 망 이용료 산정기준을 만드는 것은 저희의 역할이 아님
 - 망 이용료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이미 상당 부분 발의 법안에 반영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논의 중인 법안의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도 없는 상황
 - 다만, 논의 중인 법안 중 유력한 법안 또는 법안들의 공통사항들을 모아 시행 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당초 저희 협회에서도 금일 회의에서 발제할 예정이었으나, CP측에서 이번에는 CP 진영에서 의견을 발제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고 하여 발제 하지 않았음.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 (△△△) 준비해주셨던 발제를 오늘 발표에 대한 사업자 의견의 형식으로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협의회에서 논의의 방향성을 상실한 이유는 모든 회의의 결론이 상호접속 고시로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사전규제기관은 과기정통부이고, 사후규제기관은 방통위이므로 방통위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범위를 논의하여 결론을 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소관의 상호접속 고시에 대해서만 논의가 집중되다 보니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것 같음
 - 망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시장의 불공정 이슈 또는 관행 등이 있다면 그를 예방할 수 있는

망 이용 계약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계속해서 통신사-CP 간 대결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통신사와 CP는 발전적 관계의 파트너이며, 서로 협력하는데 있어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임
 - 기본적으로 상호접속 고시 자체는 통신사 간 이슈였으나, 고시 개정 이후 CP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는 CP 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신사-CP 간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그러한 의사가 충분히 잘 전달되었다고 봄. 다만,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진행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임
- (□□□) 기본적인 입장은 발신자 종량제를 폐지하고 무정산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며, 망 이용료 (망 이용대가)의 개념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글로벌 공정 경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드가 공정해야하며, 글로벌 환경과 그 흐름을 같이 해야 하므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제도인 상호접속 고시의 개선이 필요함
 - 이외에도 공인인증제도, 인터넷실명제와 같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규제들이 엄청난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결국 인터넷 이용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
 -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국내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보편적인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늘 말씀드렸지만 CP도 인터넷 이용자이며, 일반 이용자들도 결국 모두 CP가 될 것임
 - 따라서 상호접속 고시 또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과 같이 전체 CP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와 같은 대형 CP들의 독과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자유 경쟁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함
- (△△△) 자칫 잘못하면 전체 CP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음
- (○○○) 이 회의는 기본적으로 방통위의 입장에서 망 이용대가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관리 및 책임을 누가, 그리고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방통위의 규제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함
 - peering 관련하여 접속 고시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 간 관계만 있을 뿐 ISP-CP 간 관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peering과 transit의 개념이나, 99.8%라는 수치를 사용함에 있어서

ISP-CP 간 관계까지 포함하여 말씀하시다보니 용어 사용의 혼동이 있는 것 같음. 과연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ISP-CP 간 관계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ISP와 CP 간 peering을 한다고 했을 때, CP가 순수한 CP인지 아니면 망을 보유한 CP인지가 관건인데, 사실 CP가 망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paid-peering의 개념이 등장하였으므로, peering과 transit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혼동이 있어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peering과 transit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을 1:1로 매칭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상 peering이 과연 어떤 CP(망 보유/미보유)인지가 분명해 진다면 국내 사례와 매치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o (□□□) 망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신민수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함. 인터넷 생태계 내에는 ISP, CP 그리고 이용자가 있는데, 참여자별 정책 이슈를 살펴보면, 이용자의 경우 투명성과 망 중립성을, 사업자인 ISP와 CP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는 수요 및 공급 독점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일본 총무성 연구반의 취지와 같이 망 이용에 대한 공정한 분담, 역차별도 이 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람
 - 보내주신 발제자료를 보며 질문이 있었는데, 발제를 듣다보니 답변을 얻을 수 있었음
 - peering에서 무료인 것이 필요조건인가? 아니라고 하신 것으로 보임
 - 발제자분이 생각하시는 ISP 사업자의 지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발제자께서 얼마든지 망을 끊어도 된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로 보시는 것 같음
 - CP는 사업자인가? 관련하여 peering이 network to network라고 말씀하신 점에서 CP를 이용자로 보시는 것 같음
 - 그리고 tier 1 사업자들의 peering policy를 보면, 대부분 접속 당시의 조건, 운영 중 조건, 일반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음. 발제자 분은 접속 당시의 조건만을 강조하시는데, 지금의 문제는 운영 중의 조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음
 - 관련하여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접속을 끊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기간통신사업자는 연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해결방안이 구현될 수 없는 상황임
 - 발제자분께서 지향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어 어떤 선택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음
- o (△△△) 긴 시간 수고 많으셨음. 회의에 참석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기 회의부터는 발제문을 사전에 받아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1소위원회 차기 회의(3차 회의)는 11월 중 개최 예정이며, 개최 일시는 미정

2-2-3. 제3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9. 11. 19.(화) 10:00~12:30
- 장소 : 과천정부청사 정부영상회의실(4동 1층)
- 참석자
 - (발제자)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센터장, 오픈넷 박경신 이사, 한양대 신민수 교수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1소위원장),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고려대 이성엽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고려대 이희정 교수 잉카리서치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 (소비자 단체) 오픈넷 박경신 이사,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관련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 (정부) 방통위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과기정통부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

2) 개회사 및 발제

□ 개회사

-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소위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공정한 망 이용과 관련하여 세 분의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박사님께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이며, 이에 대해 박경신 교수님과 신민수 교수님께서 코멘트 하신 후, 전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 발제 1.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발제: 권오상 센터장)

- (추진배경)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차별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
 - 이에 '18.11월부터 연구반을 구성(방통위, 과기정통부, 미디어미래연구소, KISDI)하여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 연구 진행 과정에서 ISP, CP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거쳐 내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7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ISP, CP 대상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 (현황 및 이슈) 망 이용계약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인터뷰 결과 다음의 이슈를 확인할 수 있었음

- i) ISP-CP 간 과금 방식 : ISP가 CP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전용회선이나 포트 대가는 용량에 기반을 둔 정액제인 반면, CP는 실제 이용량만큼 납부하고자 하는 종량제를 선호하는 상황
 - ii) 국내·외 CP 간 차이 : ISP가 국내 CP에게 부과하는 대가 수준과 해외 CP에 부과하는 대가 수준의 차이가 존재
 - iii) 글로벌 CP의 높은 협상력 : 글로벌 CP들은 해당 통신사에서 캐시서버를 철수할 수 있다는 강력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아웃사이드 옵션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상황으로, 일부 글로벌 CP들은 자사의 글로벌 표준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존재
- o (가이드라인(안) 구성 및 정책방향성)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은 전체 5개장,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망 이용계약의 경우, 사적 계약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시장의 자율적 영역을 존중하여 대가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망 이용계약에 초점을 두었음
 - 또한, 망 이용계약 과정에 있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ISP가 갑, CP가 을로 되어 있으나, 망 이용계약에서 누구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ISP·CP 모두에게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 글로벌 CP가 가지는 높은 협상력으로 인한 국내 CP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항(7조 정보의 제공, 8조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마련
- o (가이드라인(안) 주요 설명)
- 1조 총칙 :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서비스 제공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양자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
 - 2조·3조 정의 및 적용범위 : ISP, CP, CDN 등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만 정의하였으며, 적용 범위로는 ISP-CP, ISP-CDN 간 계약에 적용. 인터넷망 이용대가는 계약서에 그 내용이 포함 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맡긴다는 취지에서 정의 및 적용범위에서 제외
 - 4조 계약의 원칙 : 정부의 규제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사업자들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가장 기본적인 원칙(ex. 신의성실의 원칙 등)만을 명시
 - 5조 서면계약 : 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사업자간 불성실 계약 요청 사례가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상호 신뢰 도모 및 분쟁 발생 시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서면 이용계약 요청을 원칙으로 제시
 - 6조 계약서 작성 원칙 :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하는 등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원칙으로 제시되는 조항들을 명시
 - 7조 정보의 제공 : 대가 인상을 요구, 즉 가격 변화를 요구할 때 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간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이용자는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요청받은 상대방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 ※ 최근 일본 정부도 글로벌 IT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발생 하여도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한 계약 조항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

하고, 거래 정보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조사를 결정(19.4월)

- 8조 불공정행위의 유형 :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내용에 근거하여 4가지 불공정 행위를 정의 하였음. 동조 제2항에서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저성” 판단에 있어서는 규제기관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됨. 동조 제3항에서는 계약체결 거부, 이면계약 요구 등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조항
- 9조 부당성 판단기준 : 부당성 판단 시에는 1호~4호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비교 가능한 시기에 비교 가능한 대상에 대한 정보 또한 고려. 뿐만 아니라 해외 CP의 망 이용 대가를 국내에서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시장 내 경쟁상황, 상대방에 대한 CP의 경쟁력 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10조·11조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및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무 : ISP가 잡고, CP가 올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ISP·CP 모두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가진다는 개념 하에 ISP·CP 모두에 대해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ISP-CP, ISP-CDN, ISP-이용자, CP-이용자 관계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각각 규율하고자 하였음
 - 10조 ISP 의무 : CP, CDN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과 협의하도록 규정
 - 11조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트래픽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으로 인해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SP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
 - ※ ISP-CP가 BGP(Border Gateway Protocol) 연동 중인 경우, CP가 라우팅 경로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로변경, 트래픽 급증 등에 대한 통제권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CP들은 이용자 정보를 이용해 광고 등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조의 의무를 부여
- 12조~14조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재검토 기한(시행일 기준 매 3년 마다) 및 시행일을 명시

□ 발제 2. 인터넷의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 (발제: 고려대 박경신 교수)

- o (인터넷의 문명사적 의의) 과거에는 방송이나 신문 등과 같은 gate keeper를 설득시켰을 때에만 정보 전달이 가능하였지만, 인터넷에서는 모든 개인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모든 개인/단말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Fully connected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불가능함
 - 하지만 모두가 “조건 없이 옆으로 전달하도록 약속”한다면, Star나 Ring 형태의 연결만으로도 모두가 상호 소통할 수 있게 됨. 그것이 바로 TCP/IP이고, 이것이 인터넷의 핵심임
- o (인터넷의 구동원리) 인터넷에서 모든 개인/단말이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gate keeper가 있어서는 안되는데, 금전적/비금전적 조건을 만드는 순간 gate keeper가 필요해지므로 인터넷 상에서 정보전달료(termination fee)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인터넷의 구동원리인 망중립성의 경제적 공식임

- 정보전달료가 없으므로 종량제와 데이터 상한제 역시 있을 수 없음
- 종량제와 상한제가 없을 경우,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필요한 접속 용량을 구매하고, 접속용량을 판매한 망 사업자들은 그 속도와 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정직하게 상위계위 사업자와의 접속을 확보한다면 혼잡은 발생할 수 없음
 - ※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 기지국 하나를 예측할 수 없는 숫자의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데이터 상한이 허용되나, 원칙적으로는 데이터 상한제가 없는 것이 맞음
- 또한, 정보전달료가 없다는 명제는 망중립성 관련 다양한 규칙(no paid prioritization, no blocking, no throttling)들을 도출하게 함
- o (접속료의 의미와 접속유형별 접속료) 접속료는 접속 상대와의 물리적 연결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며, 연결성이 낮은 쪽이 연결성이 더 높은 쪽에게 혹은 킬러 콘텐츠를 가진 자에게 접속료를 지불
 - ※ 예를 들어 10개의 단말이 모여 있는 그룹(A)과 100개 단말이 모인 그룹(B)이 있을 경우, A가 B에게 접속료를 지불하려고 할 것임. 그러나 A 그룹에 킬러 콘텐츠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B가 A에게 접속료를 지불하거나 혹은 peering하여 무정산 할 수도 있음
-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비례하여 책정되며, 물리적 연결이 이루어지고 난 뒤의 패킷 이동에 대해서는 정보전달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접속료는 종량제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종량제에 기반하여 접속료를 받는 것은 인터넷 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을 위반
- 접속유형별 접속료
 - Transit : 연결성이 낮은 쪽이 연결성이 높은 쪽에 접속을 요구하며 내는 비용이 Transit fee이며, 접속을 통해 전세계 단말과의 소통을 원하는 경우에는 Full transit fee를 지불, 일부 단말 들하고만 소통하는 경우에는 Partial transit fee를 지불
 - ※ 현재 개인이 통신사에게 초고속인터넷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transit fee를 내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해당 통신사로의 접속을 통해 전세계 단말과 소통하고, 통신사는 이용자가 전 세계 단말과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접속용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Full transit fee를 지불하는 것임
 - Peering : 두 그룹 간 연결을 원할 때 peering fee를 지불하는데, 이 경우 연결성이 무의미하여 보통 무정산함. 또 어떤 그룹은 서로간의 연결만을 원하더라도 다른 한쪽이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를 paid peering이라고 함
 - ※ Google-France Telecom 사례의 경우, Google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수많은 연결성을 보유한 France Telecom과의 접속을 위해 paid peering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o (Peering·Transit 통계 관련 이슈) 계약 수 측면에서 볼 때 transit을 통해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으나, 통행량을 기준으로 본다면 peering과 transit 중 어느 유형이 더 많다고 단정 지을 수 없음
- 또한, free peering과 paid peering 비율에 대한 논란 관련해서는 계약 수 측면에서 free

peering이 훨씬 더 많지만, 킬러 콘텐츠와 연결성이 좋은 지역 과점 망 사업자 간 접속 등과 같이 대용량 접속에서 paid peering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적 통행량 기준으로는 paid peering이 많을 수 있음(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프랑스 ARCEP의 조사 결과가 도출된 것)

o (현행 상호접속 고시의 문제점) 발신제 종량제의 상호접속 고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접속료는 이웃에게만 내는 것이고, 망이용료/정보전달료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자신의 신호가 거쳐 가는 길목에서 gate keeper에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gate keeper 숫자에 따라 무한대로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이 경우 인터넷이 구동될 수 없으므로, 망 이용료는 있을 수 없음
- 그러나 국내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 고시에서는 사업자 간 망 이용료를 주고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공정한 망 이용료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 망 사업자로 하여금 좋은 콘텐츠 기업을 자사 망에 유치하여 고객에게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제공할 동인을 사라지게 하고, 장기적으로 CP에 대해 누적 통행량을 감안하여 접속료를 산정할 동기를 부여
- 이는 결과적으로 해외 사업자는 물론 국내 사업자까지 해외 망 사업자로 나가버리는 디지털 켄트리카이션을 유발할 것임

o 주요 이슈별 의견

- 인터넷 접속료 수준 : 인터넷의 특성 상 접속료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함. 다만, 인터넷 접속료(full transit) 국제 비교 결과, 다른 나라 대비 우리나라의 접속료 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전용회선 가격(이용약관 기준) 비교 결과, 미국 AT&T는 10Mbps에 약 10만원 수준인데 반해, 국내 사업자들은 10Mbps에 최소 85만원~최대 419만원 수준으로 미국 대비 30~40배 비쌈
- 페이스북 접속대란 :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발생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KT에서 SKB/LGU+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에 캐시서버 유지가 힘들다고 하자, 페이스북 측에서는 과거와 같이 캐시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콘텐츠를 제공한 것임
- 국내·외 CP 간 대가 수준 차이 : 국내 CP와 해외 CP의 대가 수준이 상이한 것은 국내·외 CP가 구매하는 서비스 루트가 다르기 때문임. 해외 CP는 캐시서버 접속료를 내는 반면, 국내 CP는 Full transit 접속료를 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차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음

o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 제11조 :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콘텐츠 접근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인터넷 구동 원리에 반함. 콘텐츠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접근하고자 하는 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사업하는 자(망 사업자)가 접속료를 받아 콘텐츠에 알아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콘텐츠제공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클라우드에 올리기 위해 필요한 접속료를 내는 것만으로 충분함
- 제4조~제10조 : 망 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망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Full connectivity를 약속했으면, 인터넷 망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망을 유지해야 함. 또한,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망 속도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신의 접속용량을 늘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음. 특히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잡이 ISP-CP 간 관계가 아니라,

ISP-이용자 간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전적으로 망 사업자가 책임져야 함

○ 기타 의견

- 발제자께서 CP가 종량제를 선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발신자 종량제로 인해 정액 접속료가 크게 인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를 선호할 CP가 많지 않으며, 종량제로 할 경우 킬러 콘텐츠는 나올 수 없음. 뿐만 아니라,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했을 때 수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확실함
- 양면시장은 한 업체가 양쪽 고객에게 온전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 망 사업자들은 CP와 이용자 사이의 루트를 모두 책임지고 있지 않으므로, 양면시장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취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음
- 마지막으로, 현재 상생협력 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중소 CP 대상 할인의 경우, 중소 CP에게 영원히 중소 CP로 남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중소 CP가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접속료 인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고시가 존재하는 한 평화로운 망 이용료, 접속료 협상은 불가능함. 따라서 상호접속고시 폐지 이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발제 3.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공정한 생태계 구축(발제: 한양대 신민수 교수)

- (제정 필요성) 글로벌 CP와 ISP 간 망 이용에 대한 계약 과정 혹은 협상 요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제도가 없는 상황
 - 이에 인터넷 시장 내 소비자에 대한 우월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망 이용 계약 과정에서의 협상 원칙 및 절차, 계약 요건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 (제정 의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ISP와 CP 간 차등은 있을 수 없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규제체계가 ISP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ISP와 CP 모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ISP·CP 간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 정당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취지 반영 : 망 이용비용에 대한 역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제정 취지 중 하나인 점에서, 1조·6조 등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 필요
 - 적용 범위 확대 : 현재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 CP가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3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 확대함으로써 실효성 확보 필요
 -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망 이용에는 비용 뿐만 아니라 그 외 요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계약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불공정 행위 유형 확대 : 현재의 8조 1호~4호까지의 내용만으로는 글로벌 CP의 망 이용대가

회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망 이용료 지불을 회피하는 경우도 불공정 행위 유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사업자 의무 수준 강화 : 현재의 가이드라인(안)에서는 ISP 대비 CP의 품질 유지 의무가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CP에 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의무 대상을 실질적 영향력을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CP로 한정 필요
- 성실 협상 조항 신설 : ISP가 협상을 요청해도 망 이용대가의 협상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글로벌 CP의 협상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ISP와 CP는 상대방이 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 포함 필요
- ISP의 망 품질 보호조치 근거 마련 :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ISP 망을 점유하면서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하는 CP에 대해서는 ISP가 이용자 품질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3) 1소위 위원 및 관계 사업자 토의

- o (○○○) 발제자의 발표 잘 들었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점에서 소위원들께서는 1소위 위원 토의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전체 회의에서는 관계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음
 - 그리고 인기협과 KTOA에서 사업자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음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발제자료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괄적 내용만 말씀드리겠음
 - 통신사 쪽에서 수정안으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7월 3일 최초 공개된 가이드라인 초안에 있었던 내용으로, 이를 통해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졌다고 생각함
 - 또한, 방통위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가 이용대가가 아니라 이용계약의 공정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통신사 쪽에서는 이용대가에만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면 정부가 통신사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함
-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정부는 물론 사업자 역시 작년 상생발전협의 회에 이어 현재까지 1년 이상 검토하였는데, 발언 내용을 보면 국법질서를 무시하는 주장을 하고 계심. 이와 같은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시간 관계상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망 이용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망 이용대가와 조건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언급은 당연히 필요한 것임
 - 적용 범위 관련해서는 현재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망 이용계약 체결 및 대가 지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경우도 포섭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으면 함

- 또한, 성신헌상이나 트래픽 관리 관련한 사항은 신민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당연한 이치이므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길 바랍
 - 그리고 불공정 행위 유형의 경우, 몇 가지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례와 같이 협의하자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 이에 망 이용계약 협의권자와 협의 일시, 장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거나 차별적인 인터넷망 대가를 요구, 혹은 정당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불공정 행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망 이용계약 변경·종료에 ISP가 대응할 수 있도록 CP에 대해 망 이용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3개월 전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의무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o (□□□) 두 협회 입장 잘 들었음. 사업자분들 중 보완하여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
- o (SKT) 초기 IX에 대한 논의 계획이 없었는데,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논의에서 IX 이슈가 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함
-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결 필요성이 상당히 이슈화 되었음
 - 그런데 정부가 CP 눈치를 보다가 이용자 보호, 인터넷 생태계의 안정적 발전이라는 취지가 초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고 생각함
 - 박경신 교수님 발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논의하는 서비스(상품)의 핵심은 국내 인터넷망에서의 connectivity임. 구글이 다른 국가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역시 해당 국가 내에서 인터넷 연결과 사용에 대한 것으로, 특정 국가까지 직접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것과는 관계 없음. 국내에서도 해외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며, 해당 트래픽은 2.6%에 불과함
 - 일각에서는 글로벌 CP가 국내까지 트래픽을 직접 가지고 오지 않았냐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를 예를 들자면, 운송비를 지불했다고 해서 그것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또한, paid peering 보다 (free) peering이 더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ARCEP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내 약 71% 정도가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 저는 오히려 종량제가 합리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paid peering의 경우, 트래픽 불균형 발생 시 그것을 유발한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이처럼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규모가 작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트래픽 양만큼 정산**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꼭 paid peering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음
- * 교환비율 1:4인 경우, 4의 트래픽을 가진 사업자가 5를 부담
- ** 교환비율 1:4인 경우, 3만큼 정산
- 그리고 다들 하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약관 가격과 전혀 다른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약관

가격의 1/100 수준으로도 계약 체결)되고 있으므로, 약관 가격을 가지고 비교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 도서관의 책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저자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지만, 인터넷 생태계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서관 예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이것은 Value 흐름에 따른 룰 세팅의 문제임
- 마지막으로, 가이드라인(안)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7조에서 망 이용대가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상 뿐만 아니라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변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 인터넷망 전용회선 용량 확보를 위해서는 ISP와 CP가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취지가 11조에 반영되었으면 하고, 동조 내용 중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협의할 사항이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o **(발제자)** ARCEP에서 망 이용대가를 구글에서 다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paid peering으로 내고 있는 것임. 그런데 paid peering 보다 종량제가 낫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임
 - 만약 프랑스와 동일하게 하려면 paid peering으로 하는 것이 맞음
 -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취지는 종량제를 국가가 강제하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협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임
 - 그리고 데이터를 국경까지 가져왔으니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 없음. 사업자 간 자율적으로 협상해야 할 문제를, 국가가 유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임
- o **(SKT)** 상황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음. 말씀하신대로 하면 모든 걸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대리점과 유통망 간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음
- o **(발제자)** 시장 논리에 맡기면 안된다는 것이 망중립성임. 시장 논리에 맡기면 안되고 망 이용료/정보전달료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인터넷의 구동원리임을 말씀드린 것임
- o (△△△) 발제자는 SKT말씀 다 들으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람
- o **(SKT)**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장 논리에 맡길 경우,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이러한 논의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됨
- o **(발제자)** 망 사업자가 상위계위 사업자로부터 transit을 더 사서 full connectivity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임
- o (○○○) 그와 같은 주장은 아까 발제하실 때도 했던 부분이므로, 다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음
- o **(네이버)**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전세계 어디에서든 네이버에 접속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그 나라에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는 없음
-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작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런 결론이 났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동의 없는, 어느 한 쪽에 의한 일방적 진행임
-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현저히', 합리적', '정당한', '적정한' 등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면 이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음
- 또한, 상호접속 고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논의 중 언급되는 많은 사건들이 상호접속 고시 개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가이드라인이 망 이용료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임
- 신민수 교수님께서 작년부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부 CP가 돈을 많이 벌고, 더 이상 ISP가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는 환경 변화로 인해 '이익은 내 것이지만, 비용은 네 것'이라는 논리가 도출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음
-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불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과연 불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것이 불공정한 것이라면 모두 같아야 하는데, 이 경우 위쪽에 맞춰야 하는지, 아래쪽에 맞춰야 하는지?
- 저희 입장에서는 원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상호접속 고시처럼 가격 상승을 유발할 것임
-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 간 비정상적인 관계를 감독하는 감독기관(ex. 공정위, 방통위 등)이 있을텐데, 방통위의 경우, IPTV를 포함하여 통신사업자가 채널이나 전파를 사용하는 대가로 내고 있는 기금에서 방통위 예산의 2/3~3/4이 나오고 있으며, 방통위/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및 협의회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KISDI를 포함한 출연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해당 기금에서 나오고 있는 점에서 방통위에서 '공정, 상생'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음
- 또 국내 시장을 걱정하면서 넷플릭스나 역차별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거 어느 사업자가 통신 과금서비스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앱마켓에서 그것을 만든 플랫폼 사업자와 동일한 비율의 수익을 가져갔었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당시 정부에서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땐 국내 시장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것인지? 그리고선 지금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명분으로 이용하고 계심
- 보통 시장에서 비용이 크다고 해서 가격을 올릴 건 큰 사업자는 없음(독과점 사업자 제외). 그리고 이것을 감독해야 할 의무는 정부에 있음
- 가이드라인 내용 중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저희는 심판자나 중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누가 감독할 것이며, 투명성 조항의 경우, 타사와 통신사 간 계약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실 것인지? 이는 알려주어서는 안되는 부분임
-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내용들, 통신사와 통신당국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저희는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주셨으면 하고,
-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정 수준의 망을 구매하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지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되어 있어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인터넷 중계 서비스를 시청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끝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실시간이 아니라는 것임.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5G 관리형 서비스 이야기를 하신 것은 충격적임

- 마지막으로, 협의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예를 들어 저희가 해외 CP의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해외 CP처럼 우리도 캐시서버를 같은 조건으로 내달라며 만나달라고 한다면 과연 만나주실지 잘 모르겠음

o (□□□)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르게 된 과정과 가이드라인 관련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음. 다음 발언 신청하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람

o (구글코리아)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함. 한국에서만 발신자 부담의 상호접속 고시가 존재하는데, 누가 원해서 만들었으며,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논의가 누구에 의해 출발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CP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 첫째로, '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통신사 간 상호정산하게 됨에 따라, 통신사들이 CP에게 트래픽 처리를 위한 비용 부담을 핑계로 돈을 더 내라고 하면서 CP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 것임. 김성수 의원께서 통신사가 국회에 망 이용대가 관련 유리한 데이터만 제출한 것 아니냐며 지적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셨는지 궁금함

- 둘째로, 아주 극소수인 예를 일반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peering과 transit을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임. 왜 이러한 구분을 유불리에 따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음

- 셋째로, 해외로 나가는 트래픽이 2.6%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외로 나가는 transit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peerign)에 대해서는 무정산 할 계획이 전혀 없으신지? 이는 앞서 네이버에서 캐시서버를 놓겠다고 요청하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임

- 넷째로, 글로벌 CP 협상력 등에 대해 좀 더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으면 함. 저희는 권오상 센터장님 발제자료의 7page 내용이 상당히 불편한데, 만약 캐시서버가 통신사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고, 저희가 강압적으로 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들으셨다면, 정확히 자료로 근거를 제출해서 보여주시길 바람

o (KT)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다 말씀해 주셨고,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 해왔던 점에서 이런 내용은 제외하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함

- 그리고 아까 구글에서 CP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라기보다는 20년 전 좋았던 시절, 통신사에게 모든 규제가 있던 시절을 지금도 그리워 하시는 것 같음

- 20년 전에는 망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 독점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고 만든 것이 망중립성인데, '중립성'이라는 이런 모호한 용어를 가지고 규제를 적용했음

- 물론 인터넷 초기에는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했으나, 20~30년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부 글로벌 CP들이 네트워크 사업자보다 훨씬 더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글로벌 독점력을

가지는 등 환경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이에 Tech giant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20년 전 망중립성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그리고 이제는 망 사업자 뿐만 아니라, CP들도 일정 부분 중립적 의무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므로, 변화한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박경신 교수님께서 발제 중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모두 적절치 않은 사례인 것 같음. 먼저, 도서관 사례의 경우, 통신사는 국영기업이 아니므로 맞지 않는 사례임. 그리고 건물주 사례의 경우도, 통신사들은 장사가 잘되어 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많이 유발하니까 돈을 받겠다는 것이므로 경우가 다름. 통신사를 공공재나 악덕기업으로 보고자 두 가지 사례를 넣으신 것 같아 상당히 불쾌함
- 그리고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반대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왜 망중립성에서는 계속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음. 저희는 망 사업자라서 계속 계약을 하는데, 망 사업자는 공공재니까 사적 계약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난 20년간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사적 계약이니 정부가 관여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입장이라고 보임

o (발제자) 제가 좀 대응하겠음

o (△△△) 지금 일일이 모든 쟁점에 대해 논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함

o (발제자) 15초만 시간을 주셨으면 함. 지금 글로벌 tech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나라만 망 사업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함. 바로 이것이 문제임

o (○○○) 금전적 혜택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음

o (발제자) 제 말이 끝나지 않았음. 제 발표는 망 사업자들이 악덕기업이고, 공공재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님. 도서관/건물주 사례는 통신사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기 위함임

-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14년 발신자 종량제 때문임. 발신자 종량제로 분쟁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드려고 하고 있음. 이게 무슨 꼴입니까?

o (□□□) 그 말씀은 아까 발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부분인 것 같음. 혹시 말씀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께서 하실 말씀 없으신지?

o (넷플릭스) 이번 회의에서 넷플릭스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온 것 같고, 위치도 3사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더 긴밀히 협의하라는 것 같음. 지금 넷플릭스 재정신청 관련하여 9번 정도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저희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사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회사였다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을 것임

- 이런 정책 과정에서 저희 의견도 드리고, 해외 사례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저희가 한번도 만난 적 없다고 하시는데, SK브로드밴드 직원분과 저희 담당자가 지난 1년 간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음. 이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대화 의지가 없는 것처럼 기사화 되는 것은 일종의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함. 저희는 SK브로드밴드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실 관계 확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음

- 국내에서 통신사들이 이용자와 CP 사이에서 중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하여 착신 접속독점(terminating access monopoly)이라는 용어가 있음. 일종의 CP와 이용자 사이에서 이용자를 불모로 삼아 속도를 제한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부분들이 CP가 가지는 구조적 약점이므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가이드라인 첫 미팅 때, 이 가이드라인이 기존 관계에서 재협상할 때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인 것인지, 아니면 기존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협상할 때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인 것인지 질문 드린 적 있음. 당시 과장님께서서는 기존 계약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협상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움
- 그 이유는 국내에서 어떤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통신사들이 이제부터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 협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이드라인에 의해 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SK의 웨이브가 동남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다면, SK는 각국 통신사에게 자발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함
-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망 이용대가가 일종의 디지털세로 이해되는데,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콘텐츠 및 현지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망 이용대가의 프레임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탄력적인 정책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또한, 글로벌 giant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 뭐라도 내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사의 경우, 전 세계 1,400여개의 ISP들과 Open connect라는 프로그램을 맺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o (카카오) 국내 CP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함. 가장 의문이 되는 점은 과거 통신사에서 CP(ex.유튜브 및 넷플릭스)를 활용하여 자사 가입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하시고선, 해당 CP가 돈을 내지 않는다고 언급하신 점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KTOA 및 신민수 교수님 발제자료 상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정당한 망 이용대가 산정을 명시해야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도 바라는 바 중 하나임. 망 이용대가가 어떻게 산정되었고, 왜 이 금액을 내야하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통신사 쪽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여 적절히 제공해주실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저희는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생각하겠음
- 또한, 가이드라인에 주관적 표현 혹은 애매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 가이드라인으로서 실효성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 글로벌 CP는 물론 국내 CP들은 ISP가 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며, 국내 CP는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해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트래픽 급증으로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ISP와 사전 협의를 할 수 있을지?

- 반면, ISP는 트래픽 유발로 인하여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다셨음. 그렇다면 접속을 차단한 이후 그 근거를 저희에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 그리고 그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상해주실 수 있는지? 당사의 경우, 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희의 서비스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으나, 망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임. 이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 해주실 수 있는지? 위 사항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o (△△△) 지금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 서면으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 (페이스북코리아) 앞서 가이드라인 관련 대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결정하실 문제이나, 저희 소위가 이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 생각됨
 - 기본적으로 CP의 입장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음
 - 작년에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여러 의미 있는 토론을 하긴 했으나, 결과보고서에 CP가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보고서에 들어간 바 있음. 이에 인터넷 업계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냈고, 가이드라인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에 남겨주시길 바라며, 이후 결정 하실 때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전문가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람
- o (LGU+)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앞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음. 다만, 권오상 박사님과 박경신 교수님 발제 내용 중 CP들이 종량제를 좋아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내용이 있었음. 참고로 당사의 경우, 트래픽 상위 10개 정도의 CP가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의 내용과 실제 시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말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할지 당혹스러운 점이 있음
 - 그리고 현행 상호접속 제도가 통신사들이 대가를 올리기 위해 정부를 설득한 결과라고는 절대 볼 수 없음. 당시 상당히 많은 찬반 토론이 있었으며, 그 출발점이 통신사가 아닌 CP였음을 말씀드리고 싶음.
- o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 상호접속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망 이용료가 올랐다는 주장에 대해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음
 - 2016년 이후 망 이용대가가 올랐다는 CP측 주장에 대해 관련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기존의 수준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었음
 -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은 망 이용대가가 올랐다고 보다는 향후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 기존의 주장을 철회하신 것으로 보여짐
 -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당시 김성수 의원실에서 국내 CP 6개 사업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평균 이용대가 추이를 살펴본 바 있는데, '15년을 100으로 했을 때 '16년 86, '17년 88, '18년에는 84로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매출액은 네이버를 기준으로 4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트래픽이 폭증했기 때문임. 따라서 CP에서 '16년 상호접속고시에 대해 망 이용대가가 올랐다는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저희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명확히 있으며, 이는 국감 때도 논의된 바 있음
 - 망 이용대가는 명확히 올랐으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줄어들지도 않았음
 -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는 국감에서 이미 잘못된 자료라고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신빙성이 없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점은 사실이 아님. 저희는 과기부에 이미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팩트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SKT)** 당시 국감장에 증인 서포트로 현장에 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망 이용대가'라는 것이 '대가(PxQ)'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가(P)'를 의미하는 것인지?
 - CP측에서는 국감 당시 단가(P)도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속기록에도 있는 내용임
 - 대가(PxQ)가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단가(P)가 올랐다고 말씀하셔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음. 저희의 주장은 단가(P)는 내려갔다는 점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단가와 가격이 올랐음
- **(SKT)** 그 부분은 저희가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음. 그리고 아까 박경신 교수님께서 발제하실 때 단가가 16%, 14%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진영이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심
- **(발제자)** 진영이 아님. 저는 소비자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접속료 단가는 TeleGeography 자료에 떨어진 것으로 나옴
 - 그런데 발신자 종량제 때문에 접속료 정산을 통행 총량에 근거하고 있어 대가가 올라갈 수 있음
- **(□□□)** 지금 이 팩트는 여기서 논의한다고 하여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조사하여 결정될 사항임
- **(네이버)** 자료조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방통위, 과기부 모두 인기협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고 계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영향을 가장 덜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도하는 것처럼 느껴짐. 이는 더 심한 왜곡을 일으킬 수 있음
 - 그리고 오른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데, 오른 회사도 있지만 내려간 회사도 있어 일률적이지 않음
 - 뿐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에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경쟁상황평가 자료를 가지고 계심
- **(△△△)** 이 문제는 지금 더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방통위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음
 - 주장하실 내용은 어느 정도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아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겠음

-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본 협의회는 자문기구이며, 작년 보고서 초안에는 가이드라인 외에도 고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이후 논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룰 세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고서 안에서 제시되었음
- 보고서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방통위에서 그 중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정책결정을 하신 것 같고, 이후 연구를 통해 현재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만들어진 것 같음
- 금일 설명해주신 가이드라인은 초안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불필요한 부분,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양측에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입장 반영이 덜 된 부분도 있음. 이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측면에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음
- 다만, 합의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제기되는 다양한 안을 모아 정책결정권자인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그 전까지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이 문제에 있어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임

4) 1소위 위원 토의

- o (○○○) 본 협의회는 자문기구이며, 자문기구의 경우 목적성이 있어야 하다 보니 망 이용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여러 표현 등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예전에는 망 사업자가 우위에 있어 망 중립성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논의했었다면, 지금은 상황이 변하여 CP가 거래상의 우위를 가지고 있어 협상력의 차이가 기울어진 것으로 보임. 특히 글로벌 CP들의 협상력이 우위에 있다고 전제된 것으로 보임
- 넷플릭스에서 말씀하셨지만 의문이 드는 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전제를 배경 및 목적으로 두고 너무 가볍게 시작하신 것 아닌지? 어느 한 일반 당사자가 자율적인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강요할 수 있는 구조가 확인 되었는지? 협상력 및 거래상 지위에 차등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 후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망 중립성 규제의 경우, 망 사용과 관련된 생태계 내에서 중립적으로 운영하라고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간섭한 것인데, 망을 이용하는 CP에게 돈을 내라고 규제하게 된다면, 규제가 망을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로 넘어가는 셈임. 이와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면 현재 상황의 변화 및 거래상의 지위 변동에 대한 내용이 선행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담겨야 할 것으로 보임
- o (□□□)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 o (△△△)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거래상 지위를 강요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지금 그러한 고려사항들은 빠져있는 것으로 보임
- o (○○○) 거래상 지위의 우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음. 금일 세세하게 말씀해주시기는 어려우니 서면으로 구체적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성엽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먼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음. 작년 5G 협의회,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ISP들은 임원급들이 나와 회사의 입장을 책임 있게 답변하는데 반해, 국내 CP들은 실무자가 나와서 책임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이 우려스러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이야기 해주셨으면 함
-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아, 고시는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자는 것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바 있음.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부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예전 회의록을 확인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작년 논의 시에는 망 이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지금 법 개정을 통해 금지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방통위에서 재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서 방통위 재정에 필요로 하는 구체적 지침을 제시 하도록 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또한, CP의 품질유지 의무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국회에서 의원 법안으로 제안되기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페이스북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CP에게도 망 품질과 관련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 망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다만, 통신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CP로 적용 대상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짐. 박민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없이 모든 CP에 대해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CP가 그러한 지위가 있다고 가정하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는 점 때문에 논란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글로벌 CP와 국내 대형 CP 위주로 가이드 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의무범위를 한정해야할 것으로 보임
- (△△△) 앞서 박민철 변호사님께서 우월적 지위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말씀해주셨는데, 예컨대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문서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임
- (○○○) 제8조에 불공정행위 유형이 있으나, '우월적 지위', '불합리한 사유'와 같이 거래상 지위에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임. 거래상 지위에 관련된 내용이 공통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판단되며, 관련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하겠음
- (□□□) 논쟁을 하는 데 있어 사업자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근거가 되는 자료·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충돌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이는 사업자 간 계약에 있어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음
- 방통위에서 생각하시는 가이드라인의 공표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고시의 형태인지, 행정규칙의 형태인지, 자율규약의 형태로 나오는지? 어떻게 공표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저희가 한 번도 이를 논의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고시 및 행정규칙의 형태로 공표된다면 행정기관 내에서의 행위를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이거나, 또는 기존의 법령이 불충분할 때 법령을 보충적으로 하는 규칙의 방식이 있음. 법령 보충적 규칙의 경우, 법에 의해 명확히 위임되지 않으면 그 행정규칙 자체가 위법일 가능성이 있음. 또한 이성엽 교수님 말씀처럼 행정규칙이라면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치 않은 것으로 보임. 재정도 말씀하셨으나, 재정 또한 법이 아니므로 불완전한 부분이 있음
 - 자율규약의 형태로 공표된다면, 이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같이 일종의 사적협약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 상 자율규약의 형태로는 공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법안 평가 시 '공정한'과 같은 주관적 표현들이 명확성 판단 부분에서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행위규제영역 중 거래행위규제에서 판단할 때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사업자간 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일단 가이드라인이 규칙의 형태로 공표된다면 사적거래의 영역에 있어 국가가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와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례, 여러 통계자료들이 필요한데, 객관적 자료에 대한 사업자 간 핑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규칙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임
 -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많은 영역에서 법안이 잘 안될 경우, 자율규제 또는 가이드라인이 문제해결 도구로서 손쉽게 활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제 생각에는 분쟁조정 기구의 형태로 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음. 방통위 반상권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방통위 반상권 과장)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움. 실무적으로 과기부와의 협의와 내부 보고가 필요한 사항임. 다만, 실무 담당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간 자율규약이나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됨
- 고시나 행정규칙의 형태로 간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법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임. 다만, 이성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통위에서 재정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한다던가, 금지행위가 아니더라도 조사 시 해석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입법과정을 거쳐 고시를 제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때 만들어질 고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단계에서는 자율규제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와 같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함임. 시장에서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해보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 이후에는 입법화 절차가 필요할 것임
 - 되도록 시장에서 사업자의 자율적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자율규제의 형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신사협정의 형태는 아닐 것임

- (○○○) 정산구조에 대한 상황이 질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서로 간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틀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지금 당장 결정하긴 어려우나, 관련하여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성적 법학의 관점에서 현재 어느 것이 최선인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일단 실행을 해보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규정을 확정해나가신다는 의미로 이해됨
 - 공정성과 같은 불분명한 단어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범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담은 단어를 사용하되, 추후 박민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구체적인 예시 등을 담아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면 될 것으로 보임
 - 인터넷 망 이용계약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은 ISP 관점 뿐만 아니라, CP 관점에서도 존재하므로,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지만, 결국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특정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든 계약이 불공정한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음
- (□□□) 인터뷰를 통해 실제 영업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음.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오히려 약자인 업체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임.
 -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중재하기로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인터넷 생태계에서 돈을 벌고 있는 ISP와 CP가 최종이용자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는 분명해졌는데, CP가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는 것 같음
 - 저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CP들이 돈을 낸 이상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은 ISP에게 있다고 생각함. 다만, 네트워크 자체를 '플랫폼'으로 본다면 ISP의 과금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망 품질 책임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여전히 팩트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상황임. 팩트는 하나인데, 서로의 해석이 달라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각 쟁점별로 규제기관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지난 1기 상생발전협의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팩트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양측의 자료를 받아 충실히 검토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봄
- (○○○) 박경신 교수님의 의견, 신민수 교수님의 의견들 모두 일리가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이슈로 보임
 - 망 중립성이 사실 절대불변의 선(善)은 아니나,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으며, 결국은 망 중립성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고 있어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상호대가의 경우, 일정부분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이드라인의 경우, 이렇게 참여한 논란 속에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함

- 대부분 B2C 거래에서의 문제들을 규율하고 있는데, 그 중 이용자 입장에서는 품질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페이스북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듯 품질의 문제는 소비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므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부분 CP에게 책임을 주는 것은 필요함. 관련하여 시민 사회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뒤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o (□□□) 일차적으로 기본적 발언은 모두 해 주신 것으로 보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입장이 다른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CP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모든 부분에 있어 확정적 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지금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의할 수 있는 틀(형식과 절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o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P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협회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음. 의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난 7/3일 가이드라인이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에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반대했으며, 지금도 동일함
-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과 수단이 적정성에 대해 회원사들과 고민해 보았을 때, 걱정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바임
- 문구의 수정을 떠나 현 상황에서 본 가이드라인이 정말로 상생협력을 위한 것인지,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바람
- o (△△△)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는 입장은 명백히 밝히신 것으로 보임. 세부적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문서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 (○○○) ○○○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글로벌 CP들이 망 이용계약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본 가이드라인의 경우, 발신자 종량제 상호접속 고시 및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규제기관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이에 ○○○의 말씀과 같이 가이드라인을 분쟁조정기구의 형태로 하는 방향성에 대해 찬성하며, 그렇게 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함
- 그리고 ○○○, ○○○께서 사실에 대한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첫 번째 토론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된 것으로 보여짐. 망 사업자들이 발신자 종량제 이후 접속료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프랑스 및 외국 사례 어디에도 종량제로 인터넷을 제공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임

- 또한, 프랑스 사례를 들어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엔 이것도 paid-peering 사례이므로, 접속용량에 근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없으셨음
- 마지막으로, ○○○께서 CP에게 망 품질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함. 이 점이 인터넷 구동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것임
- 그런데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으며,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과 상호접속고시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은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함
- o (□□□) ○○○의 의견을 존중하고 일관된 의견을 말씀해주시는 것 또한 알고 있으나, 시간 관계상 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수 없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
-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말씀해주셨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내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5)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1소위원회 차기 회의(4차 회의)는 12월 9일 개최 예정이며,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개최 장소는 미정으로, 추후 공지 예정)

2-2-4. 제4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9. 12. 09.(월) 14:00~16:30
- 장소 : 과천시민회관 세미나룸1
- 참석자
 - (전문가) 서울대 이원우 교수(1소위원장), 김앤장 박민철 변호사, 고려대 이성엽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호서대곽정호 교수, 잉카리서치앤컨설팅 조대근 대표
 -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관련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신문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 (정부) 방통위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2) 개회사 및 발제

□ 개회사

- (○○○) 지난 1기 결과보고서에는 전원 찬성한 의견만이 아니라, 찬성·반대 의견을 모두 담았으며, 이에 대한 방통위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집행한 점에서 보고서와 협의회가 달리 운영된 것 같지는 않음
 - 다만, CP 입장에서 불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마치 외형상 합의해 준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것으로 판단됨
 - 당초 계획 상에서는 금일 인터넷 기업과 통신사업자가 함께 인터넷 생태계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함께 논의하지 못하게 되어 안타까움
 - 우선, 오늘 4차 회의에서는 통신사업자 쪽에서 CP(중소 CP, 스타트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오신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음

□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중소 CP 지원·협력 현황 및 계획(발표: SKT 윤성은 상무)

[SKT의 스타트업 지원·협력 현황]

- True Innovation 5GX/NUGU Accelerator 프로그램
 - 사무공간, 테스트 단말, 기술지원, 사업전략 등 실무 멘토링, 사업 연계 추진
 - 법무, 마케팅, 세무, 특허 등 8개 교육 커리큘럼 운영
 -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연계 및 정부·민간 Accelerator·대학 등 협업 지원

※ 현재 True Innovation 5GX Accelerator 프로그램에서는 11개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 NUGU Accelerator 프로그램에서는 13개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여 진행 중

o ImpactUPs 프로그램

- 혁신기술 스타트업과 연계하여 환경오염, 취약계층 소외 등 사회문제 해결 추진
- 11개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 지원 및 국내·외 PR 지원, SK관계사와 협업 기회 발굴

o 향후 계획

- 빅데이터, NUGU, 5G, 모빌리티, T map 등 주제별 5개의 Accelerator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 선발 예정

[SKT의 중소 CP 지원 계획]

o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CP 서비스에 대한 제로레이팅 지원

- 지원 대상 선정 : CP 관련 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에서 1차 후보군 선정 이후 SKT와 협의하여 최종 선정
- 향후 계획 : 제공량 및 참여 CP 등은 중소 CP 관련 협회 등과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 할 예정이며, 약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월 2TB 정도(100TB/월) 지원할 계획

[SKB의 중소 CP 지원 계획]

o 중소 CP 상생 Zone 운영

- 지원 대상 선정 : 스타트업을 포함한 총 200개의 온라인 서비스 기반 중소 CP
- 향후 계획 :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통신사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며, SKB 서초센터의 100개 랙(rack)을 '중소 CP 상생 Zone'으로 운영함으로써 월 142만원 상당(전기료 포함 시 월 192만원)을 지원할 계획

□ KT의 중소 CP 망 이용 부담 지원 현황 및 계획(발표: KT 양성원 팀장)

[KT의 중소 CP 지원 현황]

o (네트워크 측면) 네트워크 측면에서 Cloud 서비스와 GiGA office 서비스를 제공 중

- Cloud 서비스 : 스타트업 및 중소 신규 서비스 개발사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인프라(가상 서버, storage, CDN 전송)를 무상 제공(월 50만원 상당)하고 있으며, KT Cloud 무료 체험 쿠폰 및 정기 교육 세미나 등을 정기적으로 병행함으로써 활용도를 극대화

※ 6개월 무상 제공 기간 종료 후에는 1년 간 이용요금의 30%를 추가 할인

- kt biz GiGA office 서비스 : 중소 CP 대상 특화 서비스로, 고객사와 KT지사를 GiGA LAN으로 연결하여 KT 지사에서 장비 호스팅, 인터넷접속, 보안, 통합관제 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가의 1/5 수준의 요금으로 서비스 제공

o (사업지원 측면) 비즈 콜라보레이션, 초기기술기업 투자 프로그램, 특허 무상 양도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비즈 콜라보레이션(스타트업 사업화 프로그램) :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지원 및 연구개발, 특허출원, 인증,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최대 업체당 5천만원 규모, 연간 15개사 선발 지원
- 초기기술기업 투자 프로그램 : 초기 테크 기반 스타트업 대상 투자 및 멘토링 제공, 창업팀 당 약 1억원 투자 예정
- 특허 무상 양도 지원 프로그램 : 협력사 및 중소기업 대상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KT 보유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17년 기준 44건 특허 20개사 양도)
- 창조경제혁신센터(경기, 인천) 연계 지원 프로그램 : 5G 서비스 개발 활성화를 위해 5G Open Lab 구축·운영

[향후 계획]

- o IDC 서비스 지원
 - 중소 CP 대상으로, 최대 1년간 IDC 서비스 무상 제공(연 3천만원 상당)
 -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시장요금의 30% 할인
- o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연계 상생협력 프로그램(안)
 - 지원 대상 선정 : 스타트업 및 중소 신규 서비스 개발사(Cloud 서비스),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비즈 콜라보레이션) 등 지원 대상 선정 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대상 우선심사권 부여
 - 향후 계획 : 기존 중소 CP 지원·협력 프로그램(Cloud 서비스, 비즈 콜라보레이션, 창조경제 혁신센터 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과정에서 지원 대상 선발심사위원회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참여하는 등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

□ LGU+의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방안(발표: LGU+ 강학주 상무)

[협력업체 지원 방안]

- o 자금지원 방안
 - 5G 장비 개발비 선제적 신규 지원 및 직접지원 금액 50% 확대 운영
- o 장비지원 생태계 구축
 - i)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5G 전략협력사 확대 운영, ii) 개발 전 단계에서 차별화된 메리트(ESI 활동 및 주기적인 기술워크샵 개최, 개발비 지원 등) 제공, iii)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한 중소협력사 특화영역 설정 및 확대
- o 공사 생태계 구축
 - 공사업체 계약금액을 상생협업체를 통한 적정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공사업체의 손익 관리
 - ※ 5G 공사의 경우, 기존 턴키방식 공사업체 선정에서 유프러스 공사업체를 활용한 분리 발주 방식으로 전환(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로 선정하지 않음)

- 공사업체와 유프러스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NW공사 특화 상생협의체를 신규 운영함으로써, NW장비 위주에서 NW 공사로 생태계 저변 확대

[스타트업 육성 계획]

o 스타트업 발굴

- 제휴 벤처 투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펀드 출자를 통해 ICT분야 스타트업 기업 대상 투자 진행
- 스타트업 육성회사(엑셀러레이터), 벤처투자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투자, 지원 대상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당사 서비스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직간접적 자본참여 등 지원 추진
- LG그룹 차원에서 미국 실리콘벨리에 설립한 펀드 운용사인 'LG Technology Ventures' 출자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 및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 발굴
- LG그룹 차원에서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전시하고, 당사와 협업 가능한 스타트업 발굴 및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매 2년마다 개최)

o 개발환경 지원

- 5G 이노베이션랩 제공 : 테스트 및 상용화까지 가능하도록 개발 및 회의 공간, 장비(셸드박스, RF 케이블, 디바이스, SW 플랫폼, 검증환경 제공

o 향후 계획

- 벤처투자회사 및 제휴 엑셀러레이터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대상 확대
- 투자기업의 활동과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 및 동반성장 기회 제공
- 경영, 재무, 회계, 인사, 주요 계약 시 법률 검토 등 투자기업의 관리시스템 미비점 개선 지원
- 스타트업포럼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기회 제공 등 스타트업포럼 등과의 협력 프로세스 추가 가능

[망 이용대가 지원 방안]

- 창립 초기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스타트업 또는 중소 CP를 대상으로, 망 이용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인터넷전용회선 또는 IDC 이용요금 중 감경대상을 선택할 예정

3) 1소위 위원 및 관계 사업자 토의

- o (□□□) 통신 3사의 발표 내용 잘 들었음.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 o (△△△)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내용은 없는지?
- o (SKT)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중소 CP의 트래픽이 아주 많지 않은 상황에서, CDN/IDC를 통해 소통되는 트래픽 중 어떤 트래픽이 중소 CP의 트래픽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 그것에 대해 별도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움
- 이에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 상면에 락을 사용하는 업체 이외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정부 혹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과 함께 지원 대상 기업(중소 CP)을 선정함으로써 약 20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

- 한편, 중소 CP들이 CDN이나 IDC를 사용하는 주목적은 망 이용대가 때문이 아님. 전 세계적으로 IT 부문을 아웃소싱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며, CDN에 가져다 놓고,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임
- 또한, 통신사가 5G에 투자함으로써 나타나는 낙수효과는 CP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제조사, 장비업체 등이 누리는데, 특히 상당수의 중소 장비부품업체들이 상장 폐지에까지 이르렀다가 5G를 계기로 부활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점에서 ISP가 5G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CP 외 많은 중소기업들이 낙수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o (○○○) CP 및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통신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엄청난 자금이 몰리는 등 공적 부문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CP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한편, 제조업체(ex. 삼성전자 등)들은 전체 ICT 생태계 내 가장 큰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이나 법적 이슈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생태계 내에서 제조업체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o (□□□) 다른 곳에서 CP를 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이 있기는 하나, 금일 회의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인 만큼 인터넷 기업과 망 사업자 간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말씀주시길 바람

-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의 말씀이 일리 있는 지적일 수 있겠으나, 글로벌 차원에서 이것이 큰 규모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으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원책들을 모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함

-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

o (△△△) 사업자분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크게 투자/인큐베이팅,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지원, 비즈니스 협력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음

- 저는 통신사와 CP 모두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는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함. 이에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선순환되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저는 클라우드 기반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예로서 BBC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BBC는 아마존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사용 중인데,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BBC의 모든 콘텐츠가 미국 서버를 중심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이와 유사한 국내 사례로 KBS가 있는데, 얼마 전 KBS 경평을 진행하며, KBS가 아마존과 계약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렇게 클라우드에 한번 없히게 되면 그것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영방송 서비스가 해외 서버에 올라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방송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대학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상황
- 이처럼 해외 서버로의 유출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통신사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통신사는 트래픽 소통을 위한 길만 만들고, 비즈니스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
- 이에 신생 기업들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특히 공공분야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자 (CP, 망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므로, 어떤 식으로든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원과 서비스 경쟁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아마존만큼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가격 경쟁력이라도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음

○ (○○○) 말씀 주신 내용에 공감함. 그런데 이는 어느 특정 사업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음

-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가게 되면 국내 법 적용이 어려워지는데, 만약 우리나라의 공공 정보가 해외 서버에 올라가게 되는 경우, 해외 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문제 발생 시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
- 이에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을 붙인다거나, 우리나라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경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이런 의사를 잘 전달하여 사업 과정에서 우리나라 CP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발표 내용 잘 들었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아마 이 자리에 CP들이 참여했다면 좋아하셨을 거라 생각되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함

- 정부가 이와 같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인터넷 업체와 통신사가 잘 협력하여 망 사업은 물론, 콘텐츠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함
- 사업자 관점에서는 대체로 망 사업자는 대기업이고, (CP에도 대기업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CP들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겠지만,
-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사들 역시 망 이용대거나 상호접속, 망 중립성 등 여러 이슈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러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짐
- 대기업이 사회적 가치나 CSR 관점⁵에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이를 비용이라고 보기보다는 통신사가 대기업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함
- 다만, 인터넷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 CP들이 있는데, 중소 CP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하시다 보면 서로 대립되는 이슈들이 많아 그런 부분들에서 섭섭한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함

- 또한, 도메인, 5G, AI, 오픈 이노베이션 및 IDC 관련 다양한 지원들도 좋지만,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이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같이 중소 CP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다음으로, KIF 펀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됨
 - 마지막으로, 제로레이팅 관련 부분들은 차별적 지원 등 논란의 소지가 존재하는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어떨지? 선의로 지원하셨을지라도, 발표 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o (△△△) 제로레이팅 부분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원방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음
- o (○○○) 작년에 발표된 BEREC의 제로레이팅 보고서를 보면, 아직은 제로레이팅 자체를 차별이나 공정 경쟁 이슈로 보지 않는 것 같고, 수직적 결합 영역에서의 문제만 있는 것으로 보임
- 사실 제로레이팅이 되면 최종 편익은 이용자에게 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로레이팅 지원도 괜찮다고 생각되나, 제로레이팅 적용 여부에 따른 차별적 지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접근방식 보다는 제로레이팅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화될 필요가 있음
 - 거래장터와 같이 다양한 CP들이 제로레이팅을 함으로써 다른 비즈니스와 연결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통신비용 부담을 낮춰주게 되는 형태(ex. 포켓몬고)로 누구나 액세스 할 수 있는 제로레이팅 마켓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비용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음
 - 하지만 특정사업자를 선별하여 선택적 지원하는 경우,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중소 사업자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 o (SKT)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세계적으로 제로레이팅이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BEREC 보고서에도 수직결합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나왔음
- 물론 일부 국가(ex. 인도)에서 규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는 통신사가 미디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면서 제로레이팅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제로레이팅이 활성화 될 경우, 시장 내 CP 사업자 간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마켓에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께서 말씀하신 11번가의 경우도 제로레이팅 효과가 미미하여 올해 초(2월)부터 제로레이팅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그리고 플랫폼 연계 관련 내용의 경우, 저희도 고민인데, 미국의 Sprint에서 Sponsored data라는 하나의 zone(app)을 만들어, 여기서 다운받는 것에 대해 제로레이팅을 적용

했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점에서, 각 사업자들이 제로레이팅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됨

-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기업 선정 기준이나 마켓 효과, 허용 기준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잘 만들어 보겠음

o (□□□) 의견 잘 들었음. 차례대로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o (△△△) 각 사에서 중소 CP를 중심으로 한 지원 방안을 잘 말씀해 주셔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으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각사 일정 및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다만, 금일 인터넷 기업은 물론 시민단체(오픈넷)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회의에 불참한 점에서, '상생' 측면에서의 결론이 잘 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터넷 자체를 좀 더 광범위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인터넷 생태계 정의를 너무 타겟하여 구체화하다 보니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상생방안을 만들기 어려웠던 것 같음. 이에 가이드라인 제목을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장하고, 불공정 행위 역시도 현재의 ISP-CP 간 망 이용 관련 계약상 불공정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생발전과 관련한 협약/협정/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성을 모두 포함하여, 보다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지?

- 요컨대, 불공정성이라는 것이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이니까, CP와 ISP를 구분하지 않고, 인터넷 상생발전을 위해 어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불공정한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조금 더 일반화하거나 포괄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o (○○○) 접점이 구체화되면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한 단계 추상화시켜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음

o (□□□) 불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모두 넣는다면, 클라우드와 CP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플랫폼과 참여 사업자 간 관계에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계약 관계들을 담을 수 있을 것임. 이처럼 사례를 특정하지 않고, 이런 다양한 계약관계를 차용할 수 있는 정도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 3사에서 지원방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사의 사정에 맞게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 주신 것 같음

- 금일 회의에 CP 측에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다면, 그것을 반영하여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텐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스러움

- 지난주 국회 공청회 때 패널로 참석하여 저희의 입장을 개진했었는데, 이에 대해 글로벌 CP가 강력히 항의하며, 공청회장에서 특정 업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언급하는게 맞느냐며

저에게 회사로 공문을 보내 공개 사과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을 하였음

- 그동안 CP 측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논의보다는 상호접속 제도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CP 측에서 반대하시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일 뿐임
- 지난 2년 간의 상생발전협의회를 마무리하며, 시장 내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하기 위한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CP 측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기업 대부분이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인터넷기업협회와 및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등과 함께 3사가 수용할 수 있는 니즈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계속해서 대화를 진행하겠음
- 그리고 아까 언급된 KIF의 경우, 2002년 통신 3사가 3,000억을 편당하여 2030년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i) 중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부분과 ii) 거기서 발생한 수입의 일부로 중소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하는 것이 있음

※ 현재 KTOA 건물 2개 층에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3사의 지원 하에 활동 중

o (△△△)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음. 제 생각에는 정부와 정책이 바뀌면서 그때 그때 강조되는 내용 역시 변화하다 보니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다만, 그동안 해오셨던 것들 중 잘 발굴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고, 협회나 각 사에서 만들어 둔 것들 중 현안이 바빠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신문협회에서 참석해 주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o (한국신문협회) 현재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음

o (○○○) 오늘 발표 잘 들었음.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첫째로, 3사가 준비해주신 중소 CP 지원방안이 내년 이맘때쯤 성과(ex. ISP가 지원한 CP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 등)로 나타나 그것을 프로모션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또한, 작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여러 중소 CP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A사의 경우 AWS로 넘어간 상황이었기에 옮기게 된 이유를 물었던 적이 있음. A사에서 답변하길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때문이 아니라, AWS의 유연한 대응*에 메리트를 느껴 옮겼다고 답하였음

* 배달 앱의 경우, 이용자들이 주문하는 시점이 굉장히 변칙적(주말, 프로모션 기간 등)인데, Telco들은 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반면, 아마존은 자신들에게 망 운용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

- 이와 같은 인터뷰를 통해 인터넷망에 액세스하여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느끼는 것은 중소 CP가 아니라 대형 CP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중소 CP 지원 방안의 핵심은 고정적 지출이 필요한 부분(ex. 랙, co-location, 보안, 운영, 전기요금 등)에 대한 지원이지,

전용회선 요금 감면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짐

- 제로레이팅의 경우, 최근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사실상 무제한(월 제공량 소진 이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로레이팅이 큰 의미가 없으며, 제로레이팅 적용에 따른 혜택은 학생들과 같이 낮은 수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돌아가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마지막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하여 T-mobile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음. T-mobile이 플랫폼을 만들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체들을 차별하지 않고 무료로 다 받아주는 대신 기술 스펙을 맞춰줄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마저도 차별이라고 하여 망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음. 결국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반대하게 되어 있음
 - 결국은 단순히 업체 차별, 업체 선정 부문에서의 걸림들을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허들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임. 이에 개별 사업자 간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것이 제로레이팅의 취지에 맞고, 그게 문제가 된다면 해외 사례와 같이 case by case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o (□□□) 사업자 발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 모두 코멘트 주셨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자가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 다만, “상생”이라는 것이 비단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던 점에서, 지원 방안들이 CP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맞게 잘 조정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짐
 -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CP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 분들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로 수용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사업자 의견 청취 및 전체 토론을 마치고, 잠깐 휴식 후 1소위 위원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o (△△△) 마지막을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음. 아까 중소 CP들의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예시(배달 앱)의 기업은 굉장히 큰 기업이고, 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서비스가 아님
- 하지만 기업 규모는 작지만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유발하는 서비스(게임, 홀로그램 등)를 제공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 말씀하신 내용의 초점 자체가 트래픽이 비용화되지 않는 CP를 예로 들어 제로레이팅이나 망 비용 부담,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o (○○○) 다양한 유형의 CP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상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음
- o (SKT) 동영상을 기반으로 한 아프리카 TV를 예로 들자면, 매출액 대비 전용회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나, CP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서비스 유형별 그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음

- 스타트업의 회계자료에서 망 이용대가가 어느 부분에 포함되는지 살펴보고자 조사를 했었는데, 조금 일반화하여 말씀드리자면, 망 이용대가가 부담이 되는 정도의 기업이라면 해당 기업은 이미 스타트업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 회의 때 스타트업포럼에게 인터넷 전용회선료가 부담이 되는 회계구조를 보여달라고 요청 드렸었지만 관련 사례를 제공 받은 바 없으며, 샘플링하여 몇 군데 살펴본 결과, 게임이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조차도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에 부담되는 비용구조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만약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희 지원 프로그램에 수용하여 지원할 생각이 있음
 - 그리고 '망 이용대가'에 대한 논의는 국회나 언론 등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니 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것인데, 양 진영의 의견을 조율하며 결과물을 도출하였으나,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작동할 것인지 의문이며, 결과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함. 지금도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함
 - 앞서 말씀하셨듯 ISP가 대기업이고, CP는 중소기업이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며, 통신사는 악의 축이라는 컨셉 하에 진행되던 것들이 있지만, 시장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글로벌 CP나 대형 CP들이 협상력 우위를 가지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 시점에서 이슈되는 것들이 다르다고 보여짐
 -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망 이용대가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이용자를 불모로 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제는 ISP뿐만 아니라 CP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 현재의 내용에서 더 일반화되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o (□□□) 일반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음
- 다만, 예외적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성과를 보여주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음
 -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자세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 사업자분들께서도 기제출한 의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바라며,
 - 작년 상생발전협의회 보고서가 다른 회의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점에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것으로 전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 1소위 위원 토의

- o (△△△) 1소위 위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논의된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발언해 주시고, 그 간 논의한 것 중에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하신 후 마무리

하도록 하겠음

- (방통위 반상권 과장) 금일 ISP의 중소CP 지원 방안 건과 관련하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사전에 만났는데,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3가지가 있음
 - ① 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중소 CP를 선정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 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선정 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을 구성하려 함
 - ② 통신사업자들이 중소 CP를 지원하는 방안이 통신사업자의 프로모션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CP를 유치한 후 Lock-in 하려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초기에 무료로 제공하여 CP를 Lock-in 시켜두고 나중에 CP가 CDN 또는 아마존 웹서버로 못 가도록 한다면, 이는 통신사업자의 프로모션이지 지원방안은 아님. 이 점에 대해서는 일정 지원 기간(2-3년)이 지나도 50%를 감면해주거나, Lock-in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음
 - ③ CP 중 망 이용대가에 민감한 CP는 데이터에 민감하고 트래픽을 아주 많이 유발하는 특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업체가 있음. 이외의 다른 CP들의 경우, 조대근 대표님 말씀과 같이 망 이용대가 외 부가서비스 또는 본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등에 더 민감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러한 점에서 단순히 망 이용대가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CP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입장임. 이 점에 대해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과 연관시키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대가가 아닌 부가서비스 또는 투자와 같은 방안에 대해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렸으며, 본 내용을 KTOA 윤상필 실장님께도 전달한 바 있음
 - 규제기관으로서 우려되는 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는 제로레이팅임. 제로레이팅은 불공정 및 여러 이슈가 존재하는 바, 이와 같은 내용을 지원방안에 담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 있음. 두 번째로는 통신3사가 CP를 지원하게 되면, 현재 중소 ISP(ex. 세종텔레콤)에 있는 CP들이 대기업 ISP로 빠져나갈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기관으로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음
 - 이에 정부는 개별 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통신사업자연합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상호간에 MOU를 맺는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여하려 함. 구체적으로 대가를 얼마만큼 할인하는지에 대한 부분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사전에 말씀드림
 - 얼마 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음. 현재 방통위의 입장은 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통신사와 CP들을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만나고자 하며, 필요 시 오픈넷,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도 만나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방통위 마지막 회의인 12월 26일에 보고하려 함. 기존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형태로 보고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최종 결정하실 것으로 보임. 가이드라인은 1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12월 말에 보고될 경우 실제 시행은 내년 1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가이드라인의 경우, 작년 보고서에서 CP들도 동의한 사항이었음. 당시에는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이슈 때문에 국내 CP들이 동의했었으나, 올해 국내 대형 CP들이 글로벌 CP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마치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되었음

- 지난 번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참여 했었는데, 당시 전반적으로 여야 모두 글로벌 CP와 관련하여 국내 CP 또는 ISP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으며,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협의회 수준으로 결과물을 발표하되, 정부가 이러한 정책 기조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또한,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사항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통신사업자들이 지원의 주체라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도권은 통신사업자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함. 만약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면 대리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ISP가 선정하지 못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물론,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ISP와 KTOA가 주관이 되어서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끝으로, 제로레이팅의 경우, 반상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규제 측면에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함. 관련하여 정부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아까 KTOA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간 협약을 말씀 주셨는데, 협약 체결 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는 등 이 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o (□□□) 가이드라인이 어떤 형태(규칙, 행정지도 등)로든 실효성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적합한 대상인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남음. 왜냐하면 행정규칙은 명백히 법률에 근거해야하나, 국내법 어디에서도 이 논의에서의 거래를 확정하거나, 정의한 바 없으며, 불공정 계약이나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그리고 페이스북과의 소송에서 방통위가 진 상황에서, 계약에 대해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규칙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사적계약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적 지도/개입이라고 생각됨. 사업자들 간 계약한다는 것은 사실 돈을 놓고 벌이는 게임이므로 민감할 수밖에 없음. 이에 일반규칙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사적계약의 준거 틀과 같이 규칙화되다 보니, 기업 간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음
 - 저는 여전히 계약 및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분쟁조정적 절차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사용하는 통계 기준이나 예시들이 모두 달라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안이 암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며, 더군다나 계약 당사자가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반상권 과장님 생각과 같이 상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드는데 있어서 정부가 어느 범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번 국가의 예산 혹은 누군가의 돈이 들어가야만 하는 후견주의 성격이 너무 강한 것 같음. 사실 시장에서는 각각의 가치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

가는 구조들이 필요함

-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서는 앞서 어떤 CP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논의하였는데, 대표적 예로 동영상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었음. 국내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 망 비용이나 스토리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1080p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720p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경쟁이 되지 않는 상황임
- 이런 부분에 있어 스타벅스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타벅스의 경우, 매장을 늘려감에 있어서 임대료를 주는 방식, 매출의 일부를 건물주와 세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최근에는 건물주들이 스타벅스를 유치하여 매출액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하기도 함
- 이처럼 시장 내 동영상 서비스 부문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있다면, 상호 투자적 개념으로 통신사가 잠재적 수익을 가격 요소에 반영하는 등 요금체계를 다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계약 영역에서 가치 기반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o (△△△)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주셨는데, 가이드라인은 법률, 명령, 규칙에 따라 위임을 받아 가이드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법규적 효력이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 다만, 현재 논의 중인 가이드라인의 경우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지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가급적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수용하는 것이 좋긴 하나,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정부입장에서는 논의의 시작점이 ISP-CP 간 관계보다는 글로벌 CP-ISP의 관계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정책목적 상 필요한 경우 일종의 행정지도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됨
- o (○○○)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의 형태라 하더라도 이는 표준적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들 간 어느 정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논의 때마다 시장 거래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본 규범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렸음
- o (□□□) 구속력이 없으니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지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음
- o (△△△) 죄송하게도 수업과 회의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하다보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유보하려함
 - 일단은 상생발전협의회가 글로벌 CP와 ISP간의 문제에서 출발하긴 했으나, 경영학적 측면에서 볼 때 두 진영은 supply chain으로 연결되어 있음. 즉, 제품에 대한 원자재를 콘텐츠 업체들이 제공하면, 그것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망 사업자들이므로, SCM 관점에서 이들 간 협력관계 구축이 지속가능한 인터넷 상생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함
 - 크게 2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제 생각에 도저히 타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망 이용대가 이슈이며,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논의한 상생방안임. 이 중에서 기업의 사회적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상생방안이므로, 상생방안이라는 용어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더 의미가 있을 것임

- 이에 크게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반상권 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제로레이팅과 같은 이슈들은 가급적 상생방안에 담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상생방안에서 제시한 지원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양쪽 진영이 가급적 협의함으로써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고, 서로가 원하는 형태의 상생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함
- 망 이용대가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CP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내 의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봄.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는 첫 걸음으로서, 규제관할권을 명확히 한 것임
- 또한, 작년 협의회에서도 구체적인 숫자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같은 형태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음. 다만, 현재 논의가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코멘트를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음

○ (○○○) 마지막 회의다 보니 논의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께서 말씀해주신 이슈의 경우, 현재 경실련이 통신사업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상태이며, SKB 재정 건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음. 이와 유사하게 방송통신 부문에서 계약을 통한 대가 분쟁 사례로는 지상파 재전송료 관련 문제, 최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분쟁이 큰 이슈였음

- ○○○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사업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두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셨음
-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과 망 관련 규제에 대해 스테디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 결정될 사항을 왜 정부에서 돈을 받으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음. 이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서부터 망 중립성에 대한 규제 철학까지 쭉 풀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음
-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가이드라인에는 계약 시 최소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음.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금까지 논의했던 시간도 있고, 추진하게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만큼 추진을 지속하되, SKT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CP와 ISP 간 파워시프트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 등의 요건들을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음

○ (□□□) ○○○께서 지난번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의견들이 결과물에 함께 담기면 좋을 것 같음. 그동안의 규제 역사를 보면 그때는 이런 것도 규제 했었나 싶은 것들도 있고, 그 중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규제를 시행하여 나쁜 영향을 미친 것들도 있음

- 결국은 이 정책에 대한 중국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가 현재의 시장,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해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음

-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것들 중 만장일치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나, 내용보다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기준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방통위에서는 여기서 도출된 안에다가 찬반의견을 모두 덧붙여 보고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므로, 박 변호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잘 정리하여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금일 CP들이 보이콧을 하게 된 이유가 상호접속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함이고, 과기정통부의 상호접속 연구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정산 구간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음
 - 통신 3사 내부에서 상생방안에 대해 협의할 때에서 마케팅이나 영업부서에서는 무정산 구간이 늘어나게 되면 CP에게 혜택을 주게 되는데, 또 무슨 혜택을 주어야 하나며 불멘소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 반상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사항들을 운영하기 위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의 MOU 체결을 해야 하나, 과연 인터넷기업협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저희가 MOU를 체결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음
 - 그리고 저희가 가입자를 볼모로 협상력이 파워시프트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생태계 내 시장지배력 측면에서 아직까지 글로벌 CP들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는 것이 사실임. 또한, 글로벌 CP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 주체가 불명확하다보니 협의 요청 시에도 협의 권한이 없다며 본사로 넘기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통상적으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장 개입의 전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내용 자체가 선언적 이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내 플레이어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발전 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플레이어들이 사업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시길 바랍
- o **(OOO)** 규제의 목적이 글로벌 CP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민단체에서는 통신사의 민원처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CP들의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음
 - 시민단체의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망 중립성이 저해되서는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
 - 이 회의에 참석하며 느꼈던 점은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서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그리고 CP가 일정 부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들과 논의해보니, 이 이슈를 왜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이드라인의 경우, 지금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법을 통해서 CP를 규제할 것이라는 확고한 시각이 있음. 이에 본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의 공정성이나 질서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어야만 CP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함
- 결국은 이용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본 가이드라인이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공청회에서 과기정통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누구는 냈다고 하고 누구는 내는 비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음. 이에 시장의 투명성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것이 선행되어야만 공정성을 논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대안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명분이 생길 것으로 보임
- o (□□□) 궁극적으로 소비자 주권 회복과 편의 증진이 바람직하나, 그 인과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결국 기본적인 원칙은 장기적으로 전체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회의 초반에 여쭙보려고 했었는데, 혹시 1소위 1차 회의에서 다뤘던 개정안들의 진행상황은 어떤지?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안과 정부의 입장이 일치되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안이 있는지?
- o (방통위 박경주 서기관) 1차 회의 당시와 동일한 상황이며, 사실 이번 회기가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o (△△△) 말씀의 내용으로 보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논의 진행이 더 어려운 것 같음. 지금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해당 법안을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음
 - 그리고 상생방안 중 망 이용대가 말고, CP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들 중 관리권 등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 통신사들은 어떤 입장인 것인지? 부정적인지?
- o (○○○) 제가 알기에는 해주고는 싶지만, 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 o (□□□) 역량이 부족한 것이 맞음. 지금 통신사 클라우드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임.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맞춰줘야 하는데, 내부 프로세스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보니 소비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주는 과정이 너무 길다고 함
- o (△△△) 그런데 ○○○께서 말씀하신 법안들 중, 회기 전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 있지 않은지?
- o (방통위 반상권 과장) 여야가 합의되면 회기 전이라도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 없음

- (□□□) 총선 전에는 논의 시간이 부족하여 총선 이후 통과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통신사업자연협회) 쟁점이 없거나 여야의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통과되기도 함
- (△△△) 법안 진행 상황의 경우, 확인 차 질문드렸음. 추후 검토의견 제출 시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주시길 바랍
- (○○○) 구체적인 의견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함. 정리하는 상황이니 생각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 함.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도 중요한 아젠다이지만, 회의 타이틀 자체가 '상생'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음. 하지만 어느 순간 '망 이용대가'와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에 함몰되어 생태계 플레이어들과 관련된 이슈, 이용자 편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서 결과물로서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있음
 - 결국 중요한 아젠다였던 ISP-CP간 망 이용대가의 경우, 팩트 체크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있었으니, 팩트를 공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이 팩트 공유에 소극적이어서 말이 말을 낳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음
 -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관련하여 정부가 여기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했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것 같다고 생각함
 - 다른 나라에서는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연동을 끊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인터넷 액세스 서비스를 기간통신서비스로 분류함에 따라, 규제기관이 개입할 근거나 권한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ISP가 CP에게 인터넷 액세스 전용회선을 판매하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사항이 근원 없이 나오진 않은 것 같고, 결국은 분류하는 이 영역이 산업정책 내지는 규제적 차원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
- (□□□) ○○○ 말씀에 공감함. 그런 점에서 정부로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음.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구체적 근거 조문이 없다 보니, 결국 행정지도, 협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음
 - 큰 틀에서 보면 상생발전협의회는 우리나라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함. 그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모두가 잘 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분들께서는 자신이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던 것 같음
 - 그동안 주셨던 의견은 KISDI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실텐데, 방통위에서는 정리된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
 - 결국은 보고서의 형태로 남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임. 지난 1기 때에도 많은 논란이 있긴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들 중 소수 의견이었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활발히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문제점들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주시면 보고서에 잘

정리하여 담도록 하겠음. 혹시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해주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대략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12월 중 위원님들로부터 검토의견을 받고, 사업자 의견 수렴 및 위원들 간 논의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정리하여 1월 중 KISDI에서 초안을 송부드릴 것 같음. 위원님들께서는 초안 검토 후 의견을 주시고, 이를 반영하여 수정 후 1월 말 최종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음.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음

5)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소위는 4차 회의(12.09)를 마지막으로 종료
- o 사업자 의견 수렴 및 위원들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1월중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서면을 통해 위원들께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

2-3. 제2소위원회 회의

2-3-1. 제1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9. 9. 27.(금) 10:00~12:30
- 장소 : 방통위 4층 회의실
- 참석자
 - (전문가) 송실대 최정일 교수(2소위원장),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서강대 홍대식 교수, 연세대 김범수 교수, 동아대 류민호 교수, 건국대 황용석 교수
 - (소비자 단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 참여연대 양홍석 소장,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관련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코리아 스타트업포럼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넷플릭스
 - (정부) 방통위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과기정통부 이진수 인터넷제도혁신과장

2) 2소위 위원 및 관계 사업자 토의

주제 발표

[발제 1] 데이터 경제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제언(발제: 동아대 류민호 교수)

- (로컬 플랫폼) 자국의 플랫폼 사업자가 있는 국가는 전 세계 4~5개 정도임
 - 우리나라 외에 미국의 구글, 중국의 바이두와 텐센트, 러시아의 야andex, 체코의 세즈남, 일본의 야후재팬(야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 회사로 반만 로컬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을 예로 들 수 있음
 - 반면, 학자들 차원에서도 로컬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 그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어있지 않음
 - 따라서 로컬 플랫폼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자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
-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가는 양대 축) 중국과 미국이 현재의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음

-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나라에서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임
- 중국은 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측면보다는 산업진흥 측면에서 편성하여 사업자들이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주별로 자율주행자동차, 안면인식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음
- o (네트워크 효과) 중국과 미국은 AI, 인공지능 이전에 이미 검색, SNS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을 가지고 있었음
 -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가 있었다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기법을 통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는 의미임
 - 이런 점에서 기존의 이용자 베이스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경쟁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데이터의 외부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함
- o (GDPR)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데이터를 얼마나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가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은 EU의 GDPR임
 -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데이터 관리의 책임성 강화, 동의 요건 강화, 개인 정보 침해 통지 의무 부과, 통합감독기관 설립,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강화 등이 있음
- o (데이터 3법)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도 GDPR의 요건 강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음
 - 법체계를 일원화 하는 내용은 일맥상통함
 -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 가능한 데이터까지도 개인정보고 포괄하고 있으나 가명 형태로 처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데이터 3법이 통과되더라도 기존의 개인정보 동의 opt in방식을 opt out으로 전환해야 하는지와 제3자의 개인정보 활용 또는 이전 시의 동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아울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사후 책임 강화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o (국내 인터넷 규제 흐름)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적 시도를 살펴보면,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여러 이슈들이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음
 - 노무현 정권 때는 인터넷 사업자가 언론이나 아니냐에 대한 법안들이 많았으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불법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광고 표시 문제가 논의 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에는 부가통신사업자 경쟁상황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음
 -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뉴스 댓글 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아젠다가 추가되고 있는 상황임
 - 포털 사업자에게 경쟁상황평가를 도입하거나, 방송통신 발전기금에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

- o (쟁점 별 논의 ① 임의조작, 차별금지) AI가 활성화되며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임의조작 이 논의되고 있음
 -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차별이 제기될 수 있음
- o (쟁점 별 논의 ② DOES SIZE MATTER?)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서 제공한다는 데에 그 가치가 있음
 - Jean Tirole과 같은 학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이즈 및 독점 문제는 기존의 산업에서의 사이즈 및 독점 문제와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하며, 이는 플랫폼은 원래 사이즈가 클 때 더 많은 힘을 발휘하고 그 힘이 이용자의 유틸리티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 인터넷 검색 사업자들은 기존의 산업에서는 사이즈를 이용해 시장을 통제하는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나, 인터넷의 경우 One Click away 특성이 있어 사이즈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반면, 서비스의 규모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특정 서비스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그 데이터 자체가 전환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함
 - 정답은 없으나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직까지는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임
- o (쟁점 별 논의 ③ 자연독점, 필수설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자연독점, 필수설비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고 일부 주장하기도 함
 - 최근 이집트에서 우버와 유사한 서비스를 허락해주면서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기도 한 사례가 있음
 - 다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지적 자산이므로 공개되는 순간 그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터를 필수설비의 개념을 적용하여 공개를 의무화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음
 - 프랑스의 디지털공화국법은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 데이터 및 정부가 발주한 R&D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의 발효로 Station F라는 프랑스의 실리콘밸리가 생길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데이터 공개에 대한 요구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민간보다는 정부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o (쟁점 별 논의 ④ 서비스 통합과 지배력 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본질은 물리적 공간과 온라인의 공간의 융합이라 할 수 있음
 - 진정한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으로 넓히고 온라인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함
 - 서비스가 온라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넘어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사업자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가운데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충돌하는 가운데 영역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주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 사업자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이런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정비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기에 앞서 기존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함
 - 싸이월드,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왜, 무엇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직관 및 경험에 의해 생각해보자면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언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다만, 기존에는 사람들이 텍스트 기반으로 검색하였으나 점점 이미지와 동영상의 중요해지고 있어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성공 요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됨
 -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이를 플랫폼 사업자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서비스가 점차 고객 맞춤형 서비스화 되고 있으며, 소비자도 내가 무언가를 찾기 이전에 원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원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로컬 플랫폼의 서비스를 카테고리화 하여 보여주는 형태의 전략이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지 고민이 됨
 -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장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로컬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런 형태가 지속되면 국가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 GDPR이 기존의 개인정보 요건을 강화한 측면이 있어, 오히려 구글과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있음
 -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부담이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큰 사업자만 살아남을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선불리 강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존재함
 - 앞으로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한 사업자대 한 사업자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 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사단이 생기고 그 사단끼리의 경쟁 구도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 키스톤 플레이어는 모바일 OS 등을 보유한 사업자로 중심이 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니치 플레이어는 키스톤 플레이어가 보유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협력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어떤 사업자가 좋은 의미의 키스톤 플레이어인지를 판단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이론적으로는 키스톤 플레이어를 생태계에 사업자를 불러 모으고 기존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며 그 가치를 참여한 사업자들에게 공평히 나누어 주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가치를 독점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발제 2]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완화 -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발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실장)

- (인터넷 산업의 성장) 최근 인터넷 산업은 계속 성장해가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 생태계에서 CPND의 비중 및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계실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고성장 산업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3대 혁신전략 발표한 바 있음
- 2015년에 한국의 10대 기업에 네이버가 포함되었으며 2019년에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음. 이는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음.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 두 기업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및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미국의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중국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음
- o (성장의 대가) 인터넷 서비스 업계에서 바라보았을 때 성장의 이면에는 너무 많은 규제라는 대가가 있음
 - 발제문에 나열한 법은 일부이나, 모두 규제와 관련되어있으며 진흥을 위한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된 법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방통위 소관 법률은 13개, 가이드라인/지침은 27개가 있음.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의 원칙은 규제 법정주의로 되어 있으나, 법률과 가이드라인/지침의 비중만 보았을 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o (가이드라인 규제) 가이드라인의 정의 및 역할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량 준칙으로 알고 있음
 - 가이드라인이 법규적 효력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가이드라인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법령상 근거를 넘어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추가적으로 제정되고 있거나 개정을 논의 중인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방향으로 제·개정되고 있어 우려됨
 - 최근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허위조작정보 전문가 회의를 통한 권고안 등이 도입되어 또 다른 규제로 적용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음
- o (문제점 ①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이드라인이 3가지가 있음
 -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권 가이드라인은 2014년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도입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일반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나 가이드라인까지 도입이 되었음
 -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은 2012년 스마트폰 요금폭탄이라는 일부 기사와 여론에 대응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내용도 문제이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외부 업체인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위임함. 작년 국감에서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및 환불과 관련된 이슈가 많다고 지적을 받아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개정

하러 하고 있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유통되고 있는 앱이나 결제 수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문제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일부 사례들을 가지고 개선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은 아프리카TV 후원금, 유튜버 수입 등 일부 이슈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으나, 법적 근거도 없고 사업자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실효성도 없다는 가이드라인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아프리카TV에 확인해보니 가이드라인 상에는 1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해두었으나, 이미 2012년 9월에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월 150만 원 정도)을 활용하고 있음
- o (문제점 ②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그 근거를 넘어서는 가이드라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그 근거를 넘어서는 가이드라인은 2가지가 있음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의 준수사항 내에 밴드, 카톡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운영 채널을 통해 영업 시에는 링크 형태로 표시 및 불법지원금 안내 목적으로 음어 사용 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개정 또는 의견 수렴 시 부가통신사업자도 연구반에 참여하여 의견 및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들이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음
 -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제정되긴 했으나, 법률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방통위에 위임한 바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필수/선택 동의 항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위탁업체 관리 방식 등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신규 규제 창설의 실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o (문제점 ③ 가이드라인 이외 형식의 규제) 방통위와 KISA의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KISA의 앱 푸쉬 광고 안내서는 형식 상 안내서이나 내용을 보면 영리목적 광고 정보 범위 및 예외까지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o (문제점 ④ 헌법 및 법률 위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이드라인 규제의 문제가 있으며 개선이 필요함. 또한 이 부분들이 잘못하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될 우려가 있음
 - 헌법 제37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가이드라인은 이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규제원칙이 법정주의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8조의 행정지도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가이드라인이 법규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업계에서 솔직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에 대한 염려가 있어 사실 상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담당 부처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람
- o (과거사례) 가이드라인 제정에 있어 논의 과정에서 철회된 사항이 있어 사례로 말씀드리려 함
 - 문화부에서 2012년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기준(안)을 도입하려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 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어 기준(안)을 재검토해야한다고 해 철회된 바 있음

-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신규 제정 시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바람

o (규제 완화 방안 : 그림자 규제의 정비) 가이드라인의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 규제법정주의 원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라며, 과거 전 방통위 위원장님께서 외부 회의에서 말씀해주셨던 바와 국내외 동등 규제 원칙 하에서 바라봐 주시길 바람
- 사업자의 자율성 및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으면 함

□ 논의 주제 토론

[발제 1] 데이터 경제와 플랫폼 규제에 대한 정책 제언

o (○○○) 동아대 류민호 교수의 발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o (□□□)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이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에 비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향후 발제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고려해주시길 바람
- 아울러 금일 논의 주제와 관련하여 사전에 잘 공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논의 주제와 발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o (발제자) 저 역시도 사전에 논의 주제 등이 잘 공유되었으면 함

- 로컬 사업자의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리긴 했으나, 발제의 목적은 기존의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 관련된 규제가 어떻게 논의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으로 해외 사업자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규제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경제 및 데이터 경제에서 일종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말씀드렸음
- 이 자리는 산업 및 로컬 사업자 활성화가 주 쟁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존의 인터넷 사업자 규제가 기존의 로컬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많다보니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 금일 회의는 2소위 첫 번째 회의로 인터넷 분야에 있어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의미가 더 크며, 특정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차기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어 우리가 주지해야할 것은 우리 협의회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부가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로서의 성격이 우리의 역할임
- 아울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 이용자의 편익 제고 및 공정 경쟁과 관련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람

[발제 2] 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완화 -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 (○○○)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SKT)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이 다양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계시나, 법률의 기능이 서비스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가급적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 규제의 문제점 중 '②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그 근거를 넘어서는 가이드라인'의 예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연구반 참석을 요청하고 의견을 개진하라고 하여 부담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플랫폼 사업자를 안 부르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밴드나 카카오톡과 같은 C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인터넷 판매가 진행됨에 있어 금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 전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임
- (□□□) 오늘 두 분의 발제자께서 인터넷 이슈 전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사회 입장에서 볼 때 발제 내용의 관점이 편향적이었다고 생각함
 - 만약 저에게 국내 인터넷 환경 혹은 국내 인터넷 제도의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를 요청 하셨다면, 국내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관련 개인정보문제와 국가 감시의 위험성, 국민들이 인터넷 상 정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저작권, 독점권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 혹은 이런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민주적·국제적 거버넌스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 했을 것 같음
 - 인터넷 상생이라고 했을 때 누구와 누구의 상생을 의제로 하여 논의하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음
 - 차기 회의부터는 세부 의제에 대해 논의할 텐데, 사전에 보내주신 의제를 살펴보니 너무 포괄적으로 의제가 설정되어 있는 것 같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함. 만약 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입체적 결과물을 내는 것 자체로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KT)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은 전통적인 통신사와는 다르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됨
 - 특히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넘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음
 - 류민호 교수님께서 발제 중 Jean Tirole 교수의 연구내용을 언급하셨는데, 내용에 의문이 생겨 찾아본 결과, Tirole 교수의 연구내용은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독점에 대해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독점과 통신은 그 특성이 다르므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 Tirole 교수는 '17년 저서에서 플랫폼이 기존 산업과는 달리 네트워크 외부효과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독점력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규제 접근방식과는 다른 플랫폼 비즈니스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나, 아직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나의 규제로 정의하기 어려우므로, 케이스별 독점 해소를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함

- 그러나 아직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나의 규제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케이스별 독점 해소를 위해 어떤 규제가 필요할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현행 규제의 부족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이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통해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다음 회의 때 ○○○께서 발제해 주셨으면 함

-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협의회를 통해 어떤 결론이나 대안을 도출하면 더욱 좋겠지만,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함

- 협의회는 방향성이나 결과물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겠지만, 관련하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방통위 반상권 과장) 위원님들께서 협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저희는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성을 정할 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음

○ (○○○) 규제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일 텐데, 논의의 방향성이 '규제 완화'여야만 하는 것인지?

○ (방통위 반상권 과장) 규제 완화보다는 규제 개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음

○ (□□□) 이전에 보내주신 협의회 운영계획(안)을 보면 2소위 의제로 '규제 완화 I,II'가 기재되어 있는데, 인터넷 분야에서의 규제 이슈가 매우 다양하고, 각 이슈에 대해 2~3시간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2회의 회의를 통해 논의를 마무리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논의 의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정해주시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 주제 이외에도 오병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들과 같이 다양한 의제들이 고려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 소위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중간 휴식시간 후 소위원회 회의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음. 사업자나 관련 단체에서 참석해주신 분들 중 2소위에서 다뤘으면 하는 의제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 규제가 선행하지 못했을 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그 취지는 이해함

- 다만, 가이드라인에 의해 항상 국내 사업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국내·외 사업자에 대해 공평하게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구글코리아) ○○○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은 근본적으로 이 자리가 상생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 통신사와 CP를 한 자리에 모아 상생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또한, 사업자 간 역차별 이슈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 기준(bar) 자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달라는 것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함

o (○○○) 통신사업자 분들 다른 의견 없으신지?

o (LGU+) 방통위나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상위법에서 이용자 보호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해 규정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처벌받은 사례는 있지만, 가이드라인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보지 못했음

- 또한,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 제도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상위법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본 적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인기협 발제 내용 중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셨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은 앱마켓에서의 모바일 결제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 기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safety zone 마련을 위한 지침일 뿐 법률로써 사업자를 규제하고, 위반 시 사업자를 엄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
-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마치 불필요한 규제인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가이드라인을 이용자 이익 저해로 처벌받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

o (카카오) 인터넷기업협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발제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이 모든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저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은 민간기업의 사적 계약 영역에까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경우, 사업자가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고, 사업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가 존재
- 또한, 가이드라인이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며,
-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해당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처벌 받지는 않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우회적으로 행정적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 대해 재고해주셨으면 함

o (□□□) 사업자 및 관련단체 중 차기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으로 1차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3) 2소위 위원 토의

o (△△△) 지금부터 2소위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겠음

- (○○○) 앞서 회의에서는 사업자분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발언을 아꼈음. 저는 통신사와 CP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표라고 생각함.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큰 목표 아래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함. EU에서는 초연결성 증대를 통해 EU의 인터넷 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전 사업자가 협력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 Internet access services 및 Interpersonal services(ex. Skype, OTT 서비스 등)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고, 새로이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협의회 논의 주제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항목들을 예시로 주고, 그중 우선순위를 매긴다거나 혹은 추가/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여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함. 또한, 사업자의 경제활동이나 통신활동을 규제하는 정부의 대응방식에 있어서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EU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음. 일본에서는 미국과 EU의 규제 방향 중 더 효과적인 방식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쪽 규제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다른 의견 있으신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규제에 대한 인식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음. 통신사의 경우, 오랫동안 규제를 적용받다 보니 규제에 비교적 잘 적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음. 인터넷 상 법적 계약이라 함은 동일한 조건과 내용의 계약일 것이고, 다자간 계약은 당연히 약관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부당한 약관은 무효임. 그러나 오랫동안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제도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CP 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개인정보보호 관련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함.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나, CP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또한, 논의 주제 관련해서는 1소위·2소위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문가를 배치, 정부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각 소위별 논의 주제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 (○○○) 규제 강화, 완화와 같이 특정 방향이 정해져 있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고, 불필요한 것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함. 많은 기업에서 규제 완화를 말씀하시지만, 망중립성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제는 공적 필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임. 저는 이 협의회가 ISP와 CP,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입장차이/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를 가진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 사업자들을 위해 많은 역할과 지원(ex. CI 연계정보 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해외 사업자와 비교하여 과도한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봄. 향후 논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핵심 이슈를 리스트업하고, 시간이 허용된다면 그 이슈에 대해 각 당사자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내년에 특정 이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논의 과정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면 좋겠음. 이런 협의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된 결과를 내고 있는지, 운영원칙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면, 향후 다른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 (□□□) 관계자로서 KISDI나 방통위에서 추가 의견 있으신지?
- (방통위, KISDI) 의견 없음
- (△△△)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국내법의 역외적용 내지는 국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가 어느 수준에서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함
- (방통위 반상권 과장) 글로벌 IT 기업 관련하여 가장 문제 되고 있는 것은 세금 문제임. 세금 관련하여 기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가 도입되었음. 법인세의 경우 물리적 서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개념 도입이 필요한 바, 기재부 주관 하에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이외에도 전기통신망법의 국내 대리인제도의 경우 현재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규정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 이외에도 다국적 IT 기업 관련 다양한 법안들이 마련되어 국회 계류 중에 있음. 한편,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 예를 들어, 다국적 IT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 발생 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기업의 물리적 서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에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함
- (○○○) 작년부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으로 역차별이 발생하는 대표적 규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지 않음. 결국 정부가 규제를 만들면 해당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음. 이에 규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제도 등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으나,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예로서, 작년에 공정위가 모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내에 있는 외국 사업자들의 서버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 이에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이외에도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글로벌 규제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난 1기 협의회를 돌이켜 보면, 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이슈에 대한 갑론을박이 심했으나, 나름대로 국회로까지 가서 어떤 방향으로든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함. 이번 2기 협의회 경우,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도적 이슈를 다룸으로써 정부가 편향적이지 않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점은 의미 있다고 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결과물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이슈 제기가 아닌, 좀 더 범위를 좁혀 인터넷 이용에 따른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5G 관련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의 제도적 이슈,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어떠실지?

- o (△△△) 각 소위별 의제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소위 3차 회의에서 개인정보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음. 중복해서 논의 가능한 것인지?
- o (○○○) 소위별 의제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방통위 과장님과 각 소위 위원장이 모여 의견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음
- o (□□□) 소위별 논의 의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자고 하시니, ISP와 CP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상황에서 무엇에 대해 논의해야 할지 잘 정리되지 않음. 협의회가 진행되고 나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유사 주제에 대해 굉장히 많은 연구반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야 할지 고민이 됨. 어찌됐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o (△△△) 주제를 좁히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 그리고 1소위와 주제에 대한 조율이 된다면 2소위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논의하는 것에 동의함. 5G 관련 하나의 의제를 제안한다면, CI 관련 실명확인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어떨지 건의 드림
- o (○○○) 첨예한 이슈들은 10명 이하의 연구반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5G 관련해서는 KISDI에서 1기 때 다루었던 이슈들의 연장선이나 혹은 1기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슈에 대한 자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5G 관련 주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것으로 하겠음
- o (KISDI) 참고로 1기에서는 5G 관련하여 망중립성 이슈를 다뤘음
- o (□□□) 5G 서비스 활성화 이슈의 경우, 통신사와 CP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음. 향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적용될 것인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콘텐츠를 확보하여 여기에 맞게 기술 개발, 망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런데 이 기술이 적용되면 주도권을 뺏기지 않을까하는 서로의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음. 따라서 서로의 관점을 드러내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또한, 콘텐츠 측면에서 통신사들도 개발 중이겠지만 주로 CP 쪽에서 개발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서비스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통신사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 o (△△△) 큰 주제들은 정해진 것 같고, 소주제의 경우, 중간 중간 의견을 공유 및 조율하여 정하도록 하겠음.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음

4)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2소위원회 차기 회의(2차 회의)는 10월 5주에 개최 예정이며, 개최 일시는 미정

2-3-2. 제2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9. 11. 12.(화) 14:00~16:30
- 장소 : 과천시민회관 세미나룸 1
- 참석자
 - (발제자) 중앙대 이인호 교수, 연세대 김범수 교수
 - (전문가) 송실대 최정일 교수(2소위원장), 법무법인 광장 권순엽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연세대 김범수 교수
 - (소비자 단체) 진보네트워킹센터 오병일 대표,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
 - (관련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신문협회, KISA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넷플릭스
 - (정부) 방통위 신종철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2) 2소위 위원 및 관계 사업자 토의

□ 주제 발표

[발제 1]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의제도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동의제도의 설계 결함 -
(발제: 중앙대 이인호 교수)

- (개요) 실무적인 관점 보다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결함에 대해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함
 - 현행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한 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정보주체의 개별적 사전 동의에 기반한 형사처벌 위주의 경직된 보호체계'라 규정할 수 있음. GDPR 보다 강력한 동의기반의 사전 규제로 보이며, 해외에서도 한국이 일부 선진국가나 OECD 내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입법목적) 2014년에 개정된 한국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만, 개정 전에는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처음부터 입법 자체가 목적 설정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법제는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비밀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사생활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함. 반면, '86년 OECD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법제와는 그 성격이 달라,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GDPR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상 개인정보는 소통되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공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개인정보는 거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고, 거래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수집·이용되고 있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마련된 것이지,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님. 정리하자면 GDPR이나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주체를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유롭게 데이터가 흘러 안전하게 이용·활용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소유이며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는 사생활비밀과 같은 정보라는 오해가 강해, 동의만능주의에 입각하여 사전규제 방식으로 개인정보규제가 마련되어있음
 - 헬렌 니센바움 코넬 공과대학원 정보과학 교수는 동의에 기반한 데이터 보호 정책이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기본 가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음. 김기창 고려대 법전원 교수 역시 동일한 의견을 말하고 있음
- **(유럽 GDPR의 ‘이용과 보호의 균형모델’)** 유럽의 GDPR은 정보처리 시 합법적 근거를 요구함
- 개인정보보호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1. 법률의 근거 없이는 개인정보보호권을 침해할 수 없으며, 2. 법률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개인정보체계가 합법적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짐
 - 정보처리의 합법성요건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이행, 법적의무의 이행, 정보주체/자연인의 이익보호, 공익업무수행/공적권한행사, 정보처리자/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음
 - 국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만을 합법성 요건으로 보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법률적으로 요구하나, 유럽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법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음. 정당한 이익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합법성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률상 개인정보보호권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보호권을 통해 정보주체가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어, 이용과 보호의 균형모델이라 볼 수 있음
- **(미국과 일본의 ‘자율적/제한적 보호모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유럽과 달리 정보처리 시 합법적 근거를 요구하지 않음
- 민감정보/특수영역(의료정보, 아동의 개인 데이터 등)에서는 사전 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법 또는 소비자영역에서의 합법성 요건은 없음
 - 정보처리의 합법성요건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일정한 사후적 보호체계가 있어, 자율적/제한적 보호모델이라 볼 수 있음
- **(한국의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는 경직된 보호모델’)** 한국의 경우 합법성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수집/이용에 한해 GDPR에 유사한 합법성 요건을 인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제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전동의를

원칙을 채택함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수집/이용/제공 모두에 있어 사전동의 원칙을 채택하여, 법률적으로 사전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유럽의 경우 사전동의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에서 기업들이 동의를 받는 이유는 오히려 동의를 통해 책임을 면책하려는 행위(임의적 동의)임
- 개인적으로 사전동의 원칙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4차 산업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비실명화 조치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비실명화조치를 통해 처리된 데이터는 개인정보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어, 여전히 제3자 사전동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가이드라인이 법률의 개념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 또한, 개인정보보호권을 위협의 예방수준을 넘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절대화 하고 있음. GDPR의 경우 청구권에 대한 권리의 행사요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청구권에 대한 행사요건이 없어 거의 절대적 권리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모델의 경우 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현저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과잉 보호)으로 보이며, 실제적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개인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자는 생각으로 보임
- 정리하자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과는 동떨어진 경직된 보호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음
 - 사전동의(opt-in) 원칙을 법률적으로 요구
 - 포괄동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개별적/선택적 동의를 요구
 -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을 절대적 권리로 규정
 - 위반 시 과도한 형벌권을 행사
- 따라서 한국의 법률이 채택하는 보호모델은 동의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며, 합법성 요건으로서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보호권을 구별하지 않음. 또한, 개인정보보호권의 본질이 여러 실제적 권리 침해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의 권리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정보보호권 위반을 곧 정보 주체의 실제적 권리의 침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o **(유럽과 일본의 형사처벌조항 비교)** 유럽연합 GDPR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행정적으로 과도히 부과하고 있으나,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항은 각 회원국의 법률에 맡기고 있음
- 독일의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을 구체화한 개별 국내법으로 아래의 두 항(보안침해)을 위법 행위로 보고 있으며, 두 항의 범죄는 신고제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음
 - '계획적으로 권한 없이 공개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개인데이터를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대가를 받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할 의도 혹은 누군가를 해할 의도를 가지고 공개되지 않은 개인데이터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또는 기망으로 획득하는 행위'(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영국의 신 개인정보보호법은 아래의 항 등을 위법행위로 보고 있으며, 개인정보 주체가 아닌 개인정보처리자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170조] (a)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b)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는 행위, (c) 개인정보를 획득한 후, 획득 당시 그 데이터의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것을 보유하는 행위
 - [제171조]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해 책임을 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하는 행위
 - [제172조] 제171조의 적용에 있어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재식별화한 사람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테스트 조건”이란 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하는 조건
 - [제173조] 접근 요구를 한 정보주체가 받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공되는 것을 막을 의도로, 그 정보를 변경, 훼손, 차단, 삭제, 파괴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제84조에 따라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자를 처벌하고 있음
 - [집행방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의 권리의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우선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중대한 권리의익의 침해가 절박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개별적/선택적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이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국내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위법한 형벌권 집행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발제 2] Evidence- and Risk-based Privacy Regulation Approaches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규정과 보호 사례(발제: 연세대 김범수 교수)

- o **(개요)** 정보보호제도의 효과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 및 정책 집행이 필요한지를 중심으로 발제하고자 함
- o **(Privacy Regulation)** 정보주체(개인)와 개인정보를 분리시켜 두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위탁 및 수탁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제공(주로 제3자 제공이라 함)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의 연구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함
- o **(개인정보처리방침 효과)** 연세대학교에서는 지난 10년간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어떤 형태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지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성향(관심)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이용자의 경우 글보다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경우 더 쉽고 오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남
 - KISA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모델을 가이드로 제시할 때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주시길 바랍

-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을 요구하고 있음
 - 해외의 경우에도 이용목적 및 개인정보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편적이거나, 제공받는 자의 성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
- **(제3자 정보제공 알림의 효과)** 예전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었으나, 앞으로는 시민이나 고객이 관심 있고, 알아야하는 내용인지 그리고 알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세부 규정으로 인해 신규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Contact point를 찾기 어려워졌으며,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제3자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요청 시에 전달하도록 되어있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됨. 동일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제3자 정보제공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럽은 GDPR 시행 이후로 쿠키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음. 다만, 링크를 통해서 쿠키 관련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거나, 동의만을 묻는 경우가 많았음. 국가마다 구현 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보지도 않는 것들을 의무화하여 시행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 기반 효과적 제도 및 정책)** 그동안 학계에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데이터를 통해 현상을 분석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책결정 및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
 - 개인정보 관련 법제 개선 시에는 법제의 실효성을 고려해야하며, 케이스 스터디, 시뮬레이션, 로그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의 관계에 대한 오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권은 서로 다르며, 전통적인 사생활비밀보호권과 새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구별되어야 함

□ 논의 주제 토론

- (○○○)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음. 발제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외국의 의료의 방향은 정밀의료로 가고 있으며, 이는 의료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분석한 솔루션을 통해 실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엄청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이 너무 강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4차산업혁명을 떠나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가 의료 관련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경우 의료정보 특별법을 통해 의료정보를 연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음

- 또한, 동의제도만 보더라도 필수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형식적으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음. 동의의 효용성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동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몰입되어, 성역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의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o (△△△) 발제에 대해 상당부분 동의하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이인호 교수님께서 발제 중 '균형을 잃은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발제하신 동의제도 문제도 첨예한 문제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를 완화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 한다는 점임. 동의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고 활용을 하라는 의미임. 한편으로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정보주체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해야하는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임

- opt-in 방식과 관련하여 저는 현실적으로 GDPR과 우리나라 법제가 다르지 않다고 봄. GDPR 역시 합법적 요건으로 동의를 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을 때에도 구체적인 활용 목적에 따라 동의를 받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별동의를 특별히 엄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 실제로 과도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점은 철저히 법리주의적으로 보신 것으로 판단됨. 개인정보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다고 느끼진 않음. 일반 시민들은 개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기업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알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책임자는 그 기업의 개인정보 정책을 총괄하고 기업 내 독립적 감독을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조차 보통은 실무자 수준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로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저 역시도 동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개인의 권리가 법에서 규정된다고 해서 충분히 보장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중요성이 매우 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부재라 생각함

- GDPR은 정보주체의 권리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함.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과가 공개되거나 감독이 되고 있지 않음. 활용은 하려하고 있으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없어 균형 잡힌 법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 형사처벌 위주의 법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형사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개편된다면 시민사회도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소송으로 가더라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은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집단 소송을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되고 있지 않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개선이 필요함

o (○○○)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보호, 정보보호와 활용의 관점에서 위협이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두 분의 의견개진에 대해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토의 후 소위원회 토의가 준비되어있으므로 이후 사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음

- (발제자) ○○○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함. 활용의 가능성이 열려야 하나, 그 점이 배제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 ○○○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나, 한 편으로는 비슷한 부분이 있음. 다만 저 역시 동의를 없애자고 한 것은 아니며, 동의가 실질화 및 효과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음. 현재의 동의제도는 형식화 되어있으며 오히려 동의제도에 의존하여 기업에게 면책을 주는 상황이므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보호가 필요함
 -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효과적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GDPR의 경우 동의를 했더라도 개인정보보호권의 사후통제권이 여전히 주어지고 있음. 다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권리행사의 요건이 없어, 이를 실제로 행사하는 경우 정보처리자는 항변을 전혀 못할 것으로 보임
 - ○○○의 말씀과 같이, 정보주체가 보호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독립된 감독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기구가 분산되어있어 의미 있는 보호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기본적 세팅이 잘못되어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경우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은 전반적인 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부처가 기본적으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기구는 정부와 독립적이어야 할 것으로 보임. 보통은 기업의 데이터 활용으로 인해 개인의 감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나, 그보다는 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논의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기본적으로 기업은 스스로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보호만한 동기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봄. 시민들의 데이터에 관한 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비자의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음. 기업에게는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는 장치가 있으나, 정부에게는 없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발제자) 말씀 잘 들었음. ○○○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음
 - 개인정보 관련 이슈는 늘 갈등의 골이 깊고 서로의 철학이 다르며, 너무 다양한 이슈들이 혼재되어있다 보니 토론하기 상당히 어려움. 다만, 최근에는 여러 합의된 점도 보이고 해서 본 협의회와 같이 자주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함
- (□□□) 사업자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전에,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KISA에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후 비즈니스 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 (KISA) KISA에서 개인정보정책단장을 맡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시민단체와 산업계의 의견을 가장 밀접하게 듣고 있음.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면 틀린 의견은 없음. 시민단체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국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점, 산업계에서 말씀하시는 데이터 활용 제한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함

-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추어갈 수 있을지 또한 고민하고 있음. 고민을 하다 보니 개인정보를 왜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됨.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 아니라 이인호 교수님 발제와 같이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였음. 그러나 그 보다는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 자체에 집중하고 있고, 실질적 보호보다는 방법(동의유무 등)에 치중되어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말씀과 같이 위험을 왜 개인에게 다 넘기고 있는지, 누가 맡아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지도 고민해 보았음. 정부나 KISA와 같은 전문기관들이 나서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정당한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등을 심사한다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것으로 보임
- 통제권과 관련하여서는 opt-in 방식 보다는 상시통제권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음. 개인정보를 수집/제공을 시작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자가 언제든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 방안이 합리적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 이인호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아울러, KISA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으며, 법안이 개정된다면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음. 권리와 활용을 균형감 있게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며 준비하고 있음
- o (△△△) 아주 쉽게 생각해서 활용의 가치와 위험의 가치를 두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지를 판단한다면 쉽게 결정할 문제로 보이나, 이는 경계의 영역에서 생각해볼 문제로 보임.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고, 동의를 했다면 면책이 되고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임. 비즈니스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이슈 또는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사업자분들의 의견을 공유해주시길 바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임
- o (구글코리아) 말씀하신 내용들 모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음. 대부분이 동의방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며, 동의방식이 현행화 되어있다는 점도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형식화되어있는 동의방식을 개선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하나 아직 그 답은 못 찾은 것으로 보임
- 현행 법제는 개인정보 관련 사고만 나면 수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결국 수집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접근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대부분의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유출 사고이며, 집단 소송은 아직 되지 않으며 단체로 손해배상을 받아도 얼마 되지 않음. 유출사고를 해결하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하나 항상 동의를 어렵게 하거나, 까다롭게 하거나, 별개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수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온 자체가 방향성의 문제로 보임
- 이런 방식이 계속 유지된다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임. 국내 법률 상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열거하여 동의를 받게 되어있으나, 개인정보 항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유형화 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그 조차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민감정보 및 위탁정보의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게 되어있으며, 위탁/수탁업체를 열거하고

방법에 동의도 받아야 함. 이러한 방법으로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 따라서 논의의 초점을 실질적인 보호 및 유연한 활용에 맞추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임

- 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국감 당시 저희 회사가 발표한 'password check'라는 서비스에 대해 논의가 있었음. 이 서비스는 전 세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조합을 웹에서 긁어모아 데이터화 하여, 패스워드 입력 시 유출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임. 아이디와 패스워드 조합은 국내 법률상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 말 그대로 불법 서비스라며 모 의원님께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난 국감에서 말씀하셨음. EU의 GDPR에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생각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 조합을 수집하였으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나,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서비스임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와 같은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보완하고 스팸을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음. 무조건 수집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적발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임. 논의의 초점이 잘못된 것으로 보임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의 전신은 공공기관이 통제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였으나, '11.9월에 사적 영역까지 확대되었음

- 공적분야에서는 한번 개인정보가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보니, 사생활보호(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두고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기업이 다루는 개인정보(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들은 사적계약 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사실은 사적 영역이라 할 수 있음. 법률상 사적 영역에서는 사생활 보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도 존재하므로, 이 두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함
- '11.9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어 볼 필요가 있음. 면세점 이용 시 여권, 항공스케줄 등을 제공하듯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소비자로서의 이용자의 편익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실 동의제도의 경우 기업은 따르면 됨. 다만, 기업이 따르는 이유는 과징금과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용자 때문임. 당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므로, 당사는 보안을 목숨과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주시길 바람
- 정리하자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사전동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개인정보 수집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권한을 주는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임

○ **(SKT)** 두 분 교수님 발제 잘 들었음. 발제문을 살펴보다 보니 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왔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음

- 법 진행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기업이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보안·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 걱정에 기인한 점은 없었는지?

- 만약 해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능력이나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에 있어서 현행 제도를 일정 수준 완화해도 된다고 생각함
- 이러한 점에서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국가별 특수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음
- o **(발제자)** 현재의 규범이 만들어지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했다고 생각함
 - '개인정보보호'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규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인식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논의 당시 전문가들이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함
 - 또한, 미국과 유럽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가치 차이가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유럽에서는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보는 반면,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더 강조하고 있음
 - 이처럼 유럽에서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배경에는 나치의 경험을 통해 국가에 의한 감시와 통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음
 - 국내에서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연구하시는 분 중 많은 분들이 유럽에서 공부하셨는데,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느꼈던 것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주체의 인격의 한 요소로 보며,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임. 바로 이런 것들이 현재와 같은 규범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함
 -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위험이 과장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입법자들이 과잉반응하여 무리한 법을 만들어 낸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을 야기했다고 생각함
- o **(발제자)** 마지막에 과잉반응을 말씀하셔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이유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 체계 하에서 국민들 보호라는 부분에 있어 조금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 o **(KISA)**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하게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당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임
 - 인터넷 상에서 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다보니 유출된 정보의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였는데, 이는 온/오프라인에서 서비스 이용 및 인증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점에서 굉장히 강한 수준의 보호 조치 요구가 있었음
 - 그리고 처벌규정 관련해서는 처벌규정이 약한 경우, 기업 내부에서 보호 조치를 요구해도 CEO가 잘 듣지 않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기업 쪽의 요구가 있었음
- ※ 논의 초기 당시에는 CEO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조금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책임자 수준으로 완화된 바 있음

- (○○○) 공통적 내용을 정리하자면,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정당한 이익과 실질적 보호에 관한 철학적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음
 - 이에 논의 진행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과 실용적 가치를 아울러 새로운 요구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전체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잠깐 휴식시간을 가진 뒤 2소위원 위원 토의를 진행하겠음

3) 2소위 위원 토의

- (□□□) 지금부터 2소위 위원 토의를 시작하겠음
- (△△△) 개인정보 유출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불명확하다 보니,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금전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의 정도는 쉽게 예단할 수 없음
 - 과거 2005년 전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관련 많은 이슈가 제기되었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번호 암호화, 처벌 강화, 수집번호 제한 등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임.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식별번호가 존재하기는 하나, 대체로 조세 관련해서는 조세 번호를,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번호를 사용하는 등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 (○○○) ○○○ 말씀 잘 들었음. 이어서 ○○○께 의견 여쭙고자 함. 아까 이인호 교수님께서 동의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철학적 가치의 차이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별 제도의 간극이 크다는 점을 말씀주셨음.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 어떤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우선 형식적 측면에서 opt-in 방식은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이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시 안내 문구를 읽어 보는 이용자는 거의 없음. 결국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어 사전 동의가 형식화된 것이 문제임.
 -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해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써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점에서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특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것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함인데, 활용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과정 자체가 허들로써 작용할 수 있으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의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활용에 동의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소지가 존재하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o (△△△) 사전 동의 제도가 형식화되었다는 문제점에 동의하더라도, 그 대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함
 - 어떤 분들은 사전 동의하지 말자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움
 - 개인정보 동의를 좀 더 보기 쉽게 한다던가, 기술적 처리 방법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되기 힘들다고 생각함
- o (○○○)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자체는 그것을 수집·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집 목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마케팅 측면에서 현재 정보통신방법에서 광고성 정보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없이도 정보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처럼,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케팅 정보에 대해서는 가입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를 통해 어느 정도 룰 세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정보주체가 사후적으로 자기 정보를 관리(열람, 수정, 삭제요청 등)할 수 있는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으로써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룰 세팅이 필요함
- o (□□□) 다음으로 ○○○ 의견 듣도록 하겠음
- o (△△△) 개인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이해가 밝지 않으나, 개인정보 관련 기존 논의들을 통해 선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 개인정보의 문제가 왜 민감한지 살펴보면, 불편하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홉플러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내부적으로 난리가 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사실을 일반인들이 알게 된다면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그래서 떨어진 신뢰감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opt-in, 혹은 어떤 부분에서의 제도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측면에서 하기 어려우니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
 - 즉,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정말 쓰고 싶어서 동의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하지만 이는 합의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아까 오병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형사적인 것이 아니라도 징벌적 배상을 높인다던지,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충분히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많은 보안·유출 사건에서 실제 판결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기업에게 부과된 벌금은 1~2천만 원 수준으로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음
 -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함. EU의 경우, directive에서 업종이나 분야 등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 안되는지 그

- 사례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해두고 있음. 이처럼 어떤 업종이나 분야에서는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지 않는 등 세분화하여 일부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요컨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마련한 후, 앞 단계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임
 - 덧붙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까다로운 가입절차를 거쳐 가입 완료 후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법에서는 요청하면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다지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일 보내라고만 되어 있음
 - 이용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탈퇴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탈퇴 후 데이터가 지워졌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이므로, 만일 진입을 완화한다면 중간 단계에서 개인이 쉽게 취소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 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에서는 해지절차가 가입절차보다 쉬워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둔 것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인데, 일부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정보가 어디에 위탁되고, 제공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방통위나 KISA에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는 현행 제도가 그러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임
- (□□□) 현행 제도가 말씀하신 내용과 같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아실 수 있듯 그러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 1년에 7천억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의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이 반드시 동의제도를 통해서만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비식별화 조치 등 다른 기술적 방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의 경우 동의 제도에만 집중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1~2년 전 에스토니아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탐방하고 왔는데, 그곳에서는 적어도 공공 분야에서 주민번호 입력시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음
- 2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자기결정권에 대해 KISA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함. 그 전에 인기협에 발언 기회 드리겠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금일 회의에서는 동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모두가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고, 대부분 의견이 적극적이신 것 같아서 빠른 시일 내 합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음
- 또한, 이번 달 초 구글이 fitbit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fitbit 이용자들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알아본 결과, 양사 간 시너지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 반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fitbit을 인수하여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를 가정하여 생각

해보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인수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이에 조금 더 빨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여 개선된다면, 해외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함

- 구글의 가입화면과 네이버의 가입화면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제도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현재 국내 사업자들은 네이버의 화면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용자 혹은 동의제도가 효과적일 수 있을지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업자들은 opt-out을, 어떤 사업자들은 opt-in 방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경험에서 나오는 문제점, 또는 긍정적 반응을 캐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함

o **(KISA)**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보다는 '보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 이와 관련하여 자기정보 결정권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이용·사용하더라도, 이인호 교수님 발제자료에서 보셨듯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처리 정지, 열람 요구, 탈퇴 등) 할 수 있음
-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그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변심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권리 행사를 통해 영업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무조건적인 권리행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판결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권은 단순히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게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개인의 보장된 권리 행사 측면에서 모든 상황이 아닌 불법적 상황이나 비정상적 상황에서 권리 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권리를 의미
- 제 개인적으로, 개인정보보호권에 담긴 철학에 공감하나, 현재 자기정보결정권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개인정보 자체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악용되었을 때 굉장히 높은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개인들이 충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함
- 그런데, 논의에 있어서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 용어의 적절성을 가지고 다투는 측면이 있어 안타깝고, 꼭 필요한 시점에서 권리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면에 담긴 실질적인 논의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o **(방통위 신종철 과장)** 금일 회의에서 대립 되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음.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개인정보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 현상과 기술의 진보 등을 반영하여 진화해 나가는데, 대부분의 법제가, 특히 IT 관련해서는 환경 변화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동의제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제도라는 점에서, 원점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수년간 다양한 경험을 해봤지만, 대상 사업자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곳은 여기뿐임. 이런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존재하다보니, 사고 발생 시 법 위반사항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상황
 - 여기서 문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동의제도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동의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비교형량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스티디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o (□□□) 자율주행차를 하긴 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니까 주춤하는 것 같고, 개인정보의 경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지다 보니 생각지 못했던 사고나 위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음
-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자면,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나라와의 법·제도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제도에서는 법 위반 시 처벌규정이 미약하다 보니 사안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음
 -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으로는 동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유형별 분류를 통해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었음
 - 또한, 개인정보보호권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는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별도의 미팅이나 리뷰를 통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오늘의 논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음
- o (△△△)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며, 12월 2주 3차 회의에서는 5G 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음

4)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o 2소위원회 차기 회의(3차 회의)는 12월 2주에 개최 예정

2-3-3. 제3차 회의

1) 회의 개요

- 일시 : '19. 12. 13.(금) 14:00~16:00
- 장소 : 과천시민회관 세미나룸 1
- 참석자
 - (전문가) 송실대 최정일 교수(2소위원장), 한양대 신민수 교수,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서강대 홍대식 교수, 연세대 김범수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 (소비자 단체) 경실련 방효창 위원장
 - (관련 단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방송협회
 - (사업자) SK텔레콤, KT, LGU+
 - (정부) 방통위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2) 2소위 위원 및 관계 사업자 토의

□ 개회사

- (방통위 박경주 서기관) 언론을 통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기업협회,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에서 불참 의사를 밝혀왔음. 1소위에서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는데 이에 대한 이견 등으로 상생발전협의회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1소위와 2소위의 마지막 회의는 인터넷 사업자가 불참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음
 - 금일 논의 의제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콘텐츠 측면의 5G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선정되었으나, 직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못하게 되어 아쉬운 점이 있음. 아쉽지만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 2소위 3차 회의가 공식적인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임. 지난 1기 때에는 일정이 길게 잡혀 다소 여유가 있었으나, 이번 2기는 여러 일정들로 3차 회의로 끝나게 되어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음. 회의가 끝난 후 2소위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KISDI에서 수렴하여 초안을 만들고, 다시 한 번 피드백을 받아 1월 경 보고서를 제출하려 함. KISDI에서 일정한 포맷이나 안내 메일을 송부드릴 예정이며, 그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금일 주제는 정해진 대로 5G 생태계 활성화에 관련된 지원방안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음. 장준영 변호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각 통신사업자들이 간단하게 의견을 덧붙여서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소위 소위원회 토론의 진행하도록 하겠음

□ 주제 발표

[발제]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발제: 법무법인 세종 장준영 변호사)

- (개요)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려하며, 거대 담론에 대해 말씀드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여기 계신 여러 전문가 분들이 더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임. 저는 일반적으로 5G 생태계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예측하고, 그 변화에 따른 지원방안을 강구할 때 고려해야할 핵심 가치를 위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음

1. 5G 생태계의 특성

- (5G의 개념)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10배 많은 연결, 10배 짧은 저지연 기술로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으로 정의되는 차세대 통신기술을 의미함
 - 5G는 부품·디바이스·장비·콘텐츠 등 ICT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운송, 보건·의료 등 타 산업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촉발해 대규모 신시장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과기부에서 「5G+ 스펙트럼플랜」 발표 시, 전략산업별 5G 주파수 공급과 기술개발을 통해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2G(CDMA) 시절에 서비스 및 단말기를 선제적으로 개발 및 출시함으로써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던 선례가 있듯이, 5G도 단순한 통신 기술을 떠나 관련 산업에 경쟁력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기술발전이 필요
- (5G의 생태계의 특성) 이용자의 범위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순환적 생태계로 변화됨과 함께 개방성과 다양성을 지닌 생태계로 확장
 - 산업융합 및 혁신 : 기존 통신의 활용영역이 B2C 서비스에 국한되었다면, 5G는 IoT 기술을 필두로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첨단 단말 디바이스에 적용되어 B2B 서비스에 전면 활용됨에 따라 타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짐
 - 데이터 경제 활성화 : 5G의 등장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실시간으로 분석·공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단말장치의 다양화 : 5G 시대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기기와 클라우드가 5G 단일망으로 연결되어 가치사슬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2. 5G 생태계에 나타나는 변화 및 그에 대한 지원 방향

1) 이용자의 역할과 범위의 확대

○ 통신 양상의 변화

- 기존에는 ICT 생태계를 C-P-N-D의 단방향적 가치사슬로 설명했다면, 5G 시대에는 C-P-N-D-U(User)라는 순환적 가치사슬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됨은 물론이고 이용자의 개념이 변화할 것으로 보임
- 이용자의 역할 변화 :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에서의 이용자의 역할은 수동적인 소비자에

머물렀다면, 순환적 가치사슬 하에서 소비자는 새로운 투입요소로서 생산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됨

-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단말과 이용자 간의 수평적·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이며,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에 이용자의 피드백이 포함됨에 따라 이용자의 역할이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합리적 통제자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용자 범위 확대 : 기존의 통신이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통신을 의미하였다면, 5G 생태계에서는 사람과 단말·장비 간, 단말과 단말 간 통신이 구현됨에 따라 사물의 이용자화 현상이 나타남
- 인간에 국한되어 있던 이용자의 개념이 사물인터넷 등을 구현한 5G의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사물로 확대될 것이며, 5G 시대에는 단말과의 통신을 통해 인간이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단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됨

○ 지원 방향

- 5G의 초연결성에 기초하여 사물(기계)이 새로운 이용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이용자에 대한 개념과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한 정책철학과 법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함. 다만, 사물의 경우 산업적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한 직접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있어 기존의 이용자와 구별될 수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 등 IoT 전용 주파수 조기 발굴 및 공급, 관련 기술기준의 확정 등 이용자 확대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기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5G+ 스펙트럼 플랜」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추가 공급 정책을 발표한 바와 같이, 다른 기기의 IoT 구현을 위한 추가적 주파수 발굴·공급이 필요
- 이용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책임 소재 확정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므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여 사물인터넷 활용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사물인터넷의 활용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5G 통신의 적극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준비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
- 이용자의 범위 확대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해질 것으로 보이는 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의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

2) 사업자간 경쟁으로의 경쟁 범위 확대

○ 경쟁 양상의 변화

- 5G 시대에는 C-P-N-D의 경계를 넘어선 경쟁에서 나아가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과의 경쟁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콘텐츠·플랫폼·디바이스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C-P-N-D 각 사업내의 경쟁에서 사업 간의 경쟁으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와 같이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에 머물렀던 제조업, 건설업 등의 분야에도 5G가 활용됨에 따라 C-P-N-D외의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경쟁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5G는 글로벌 패권경쟁을 주도할 핵심 기술로서 국내 사업자간 경쟁에서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현 상황에서 5G를 기반으로 한 융합서비스의 트렌드는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와 같은 미래 융합기술 선진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규모, 자본력, 파트너십 측면에서 국내 사업자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들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

○ 지원 방향

- 경쟁에 참여하는 사업자 범위의 확대 및 경쟁 양상의 다변화에 대응되는 정책공간의 확대가 요구됨
- 기존의 경쟁정책이 C-P-N-D 사업자 내의 경쟁을 규율하였다면, 5G 시대에는 C-P-N-D 사업자간 및 C-P-N-D외의 전통적 아날로그 사업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함
- 이 고민은 방통위에서도 꾸준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5G의 경쟁영역 확대에 따라 가급적이면 큰 범위 내에서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의 틀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
- 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기 보다는 사업자간 대립되는 양상의 경쟁이 아닌 상호 의존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
- 5G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생태계 내의 경쟁정책이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 글로벌 패권 경쟁에 있어 글로벌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5G 활성화로 인한 부작용의 최소화 방안: 디지털 격차의 해소

○ 디지털 격차의 심화 현상

- 5G 시대에는 정보통신의 종류와 양이 이전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정보접근 및 활용에 있어 이용자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초기에는 정보격차의 개념이 물리적 접근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접근에 대한 격차가 줄어들면서 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격차가 디지털 격차의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격차는 접근격차, 이용격차, 성과격차로 분류할 수 있음
- 접근격차 : 기계 또는 기술에 접근할 가능성에 따른 격차로, 최근에는 줄어드는 추세
- 이용격차 : 단말기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이용에 따른 격차(ex. 진화된 단말 또는 기술에 대한 세대별 이용의 어려움)로, 앞으로 디지털 격차의 주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
- 성과격차 : 양적·질적 활용 수준과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격차
- 디지털 격차는 단순한 이용자 간 편익의 격차가 아닌 생산성 격차의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5G 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스시스템을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심화될 전망

○ 지원 방향

- 5G 시대에는 정보복지 차원에서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진화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 간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5G 인프라의 균형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19.4월 정부는 5G 시대의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마련을 지정한 바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단말기기, 모바일 웹·앱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 서비스 활용 교육 강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이통사의 비도심 지역 투자 시 세액 공제나 이중적 과세(전파사용료와 등록면허세)의 통합과 같은 비도심 지역 투자 유인 정책도 함께 적극적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음
- 5G 시대의 산업 외연 확장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인큐베이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5G 시대의 정보 격차는 단순한 이용 편의 격차 및 취약계층의 소외현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의 생산성 격차로 나타날 수 있어 경쟁력의 균형적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
 - 5G를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사업자를 양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
- 대형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여건 하에 경쟁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되고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통한 경쟁 제한 효과를 규율할 수 있는 경쟁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발표]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발표: KT, LGU+, SKT)

- o (KT) B2C의 경우 현재 3사가 치열할 정도로 열심히 경쟁하고 있으나,일각에서는 새로운 서비스가 부족하고, 차별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음. 이 이유를 다른데서 찾아보려 함
 - LTE 때에는 기존과는 다른 스마트폰이 출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으나, 5G의 경우 기존과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개선된 정도임. 폴더블 폰이나 플렉서블, VR 기기 등과 같은 차별화된 단말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단말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발전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혁신적 단말기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람
 - B2B의 경우 통신뿐만 아니라 제조업·운송 등 여러 산업과 연결되어야 하나, 그 산업에는 기존 산업의 규제가 존재하여 통신사업자들이 협업하기에 어려운 점들이 있음. 대표적으로 데이터, 의료, 에너지 산업의 경우 각 산업 특성에 맞는 규제들이 있음. 이와같은 산업들이 통신과 결합되었을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의 관점을 바꿔주시길 바람
 - 5G의 가장 큰 특징은 B2B, B2G이므로,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 생각하고 있음. 다만,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리스크가 크다보니, 정부의 B2G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시고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길 바람
- o (LGU+) 네트워크 사업자는 5G 생태계의 C-P-N-D 중, 네트워크와 일부 플랫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임. 디바이스의 경우 제조사가 있으며, 콘텐츠의 경우 저희는 어떤 콘텐츠가 있는지

리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5G에서도 이러한 포맷을 만들어보려 노력하고 있음.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큰 업체들이 5G 콘텐츠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저희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망을 열심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내년까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장비 및 공사업체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고 그와 동시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며 노력하고 있음
- 아울러, 타사와는 달리 자신이 없는 콘텐츠 부분은 철저히 오픈이노베이션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예를 들면, AI나 네비케이션과 같은 경우 외부 플랫폼 또는 앱을 가져와 저희에게 맞는 형태의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 기타 중소CP 지원방안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1소위 4차회의)에 발표 드린 바 있음. 요약하자면 장비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그룹 펀드를 이용하여 투자하고 있음. 또한 투자와 무관하게 유망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휴를 통해 자금, 컨설팅 및 내부 오픈이노베이션센터 개방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스타트업 발굴 지원에 있어 해외 진출 등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스타트업 포럼을 운영 중에 있음. 이외에도 품질 보장을 위해서 콘텐츠에 대한 망 이용대가 및 IDC 지원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내년 1월쯤 구체화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o (SKT) 저희는 LGU+와는 달리 5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받고 싶은 항목들을 생각해 보았음

- 작년 12월에 5G 전파 송출 이후 현재 1년이 지났으며, 지난 4월에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8개월 정도 지났음. 사실 3사 모두 올 하반기 정도에 5G 상용화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세계 1위를 놓치지 말자는 정부와 사업자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했었음. 초반에 통화품질, 단말기 부재 등으로 비난의 여론을 떠안으며 시작했었으나, 개선해가며 버티다보니 일 년이 지났음
- 세계 최초로 5G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자랑스러운 점이 있음. 해외에서 다수의 CEO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해외로 3사가 초청을 받기도 함. 다만, 최근 소송이 제기된 건도 있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국내 이용자 편의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함. 이는 안하려 한 것은 아니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현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어려운 환경이 있었다는 점과 지금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길 바람
-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산업융합 측면에서 B2B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희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았음. B2B는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데이터와 B2B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가 구분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기준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예로 들자면, 익명데이터(차량번호 등)만 따로 분류하고 모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데이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할 수 있는 opt-out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기술적 보장 조치가 마련된다면 데이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과거에 개인정보 유출되었을 때를 보면, 지켜야할 가이드라인 및 기준을 지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한편으로는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책임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임. 해커 등의 가해자 집단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중소기업 5G 생태계 지원의 경우, LGU+에서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음

□ 논의 주제 토론

○ (□□□) 발제와 사업자 3분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 발제자께서 데이터 경제, 산업융합, 이용자 권익, 디지털 격차 등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논의하면 좋겠지만 쉽기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먼저, ○○○께서 생각하기에는 어느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하는지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발제자께서 종합적으로 코멘트를 해주시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음

○ (△△△) 5G 시대에서는 이용자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용자 보호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실제로 5G가 되면 B2B2C도 가능해짐에 따라 B2B의 상대가 되는 사업자가 일반 이용자가 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실제 5G의 영역은 융합영역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이용자만 이용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확대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정 경쟁 이슈와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경쟁상황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현재는 전기통신서비스 내에서의 시장 점유율로 경쟁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나, 5G에서는 현재의 방식으로 시장획정 및 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지금과 같은 경쟁상황 평가 방법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만 규제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 반쪽짜리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측면에서 망 중립성 문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글로벌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사법권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프라이버시 보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개인정보 이동성을 통해 글로벌 사업자를 규제/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해왔던 정공법적인 접근이 5G에서는 더 어려워 질 것이므로, 다른 우회적인 방법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5G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발제자) 말씀해주신 내용은 제 발제 내용을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좋은 지적이라 생각됨. 현재 과기부에서 평가 중인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내에는 일부 부가통신사업만이 포함되어있음. 다만, 부가통신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시행될 예정임. 이러한 부분이 보다 신속하고 정밀하게 조사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선결되어야 규제의 방향에 대한 백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사업자가 게시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좋을 것으로 보임. 사실 제가 보기에는 5G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밀어붙여서 한 것이므로, 정부가 밀

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밀어주어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제도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재난이나 안전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정부가 투자하여 5G 망을 통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발제에서 말씀하신 B2G에 해당되는 사례로 보임. 시범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에 해당하는 성과가 나오게 되면, 5G의 긍정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게 될 것임
- 일반 이용자에게서 게임 등으로 5G의 긍정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기존의 LTE Advanced를 통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음. 따라서 정부의 조달 또는 구매력을 통해 5G 서비스가 차별화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왜 정부가 5G를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해주는지?
- 여러 통신망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선투자를 해주게 되면, 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투자 여력이 생기게 되어 다른 것들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저는 정부가 먼저 선행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o (□□□) 기존 CP를 제외한 IoT 제공사업자 중 5G 망 이용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있는지?
- o (LGU+) 아마 없을 것으로 보임.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아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o (△△△) 만약 그런 서비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 사업자는 기존CP와는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자들과 망 사업자들 간의 망 이용계약 관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 o (방통위 반상권 과장) 얼마 전에 중소 CP를 만났었는데, AR/VR을 개발하는 업체가 통신사와 독립적으로 계약을 맺기에는 망 이용대가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AR/VR과 같은 CP들은 없으신지?
- o (○○○) 결국 기존 시스템 내에서 하실 것 아닌지?
- o (LGU+) AR/VR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오픈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식과 3사의 플랫폼에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음
 - 그런데 AR/VR 서비스의 경우,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유발시키다보니 3사 입장에서는 각자 자기 망내로 수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에서 3사의 AR/VR 플랫폼에 들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CP들의 망 이용대가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독립적으로 IDC에 입주하는 형태로 붙이는 경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망 이용대가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 3사 모두 서비스 초기 단계인 AR/VR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3사가 플랫폼을 만들어, 여기서 서비스를 수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인터넷 전용회선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제휴의 형태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임
- o (방통위 반상권 과장) 제가 들었던 CP들의 불만은 AR·VR 서비스를 제공하는 CP가 이미 등장한 상황에서, 통신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언제든 CDN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독립적

계약을 할 수 없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었음

- 그 이유는 망 이용대가가 비쌀 뿐 아니라, 통신사들이 자사 IDC로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 다시 말해 통신사 지배력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상황에서 CP들은 특정 통신사에 lock-in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 통신사와 독립적인 계약을 맺고자 할 경우 망 이용대가가 부담스럽고, 비용 부담을 줄이자니 통신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에 대해 하소연한 것
- o (LGU+) 사업자별 서버나 망 운영 형태 등에 따라 맞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음
- o (KT) 기본적으로 통신사와 CP의 관계는 CP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접속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통신사 IDC로 들어와야 함
 - 그런데 말씀하신 CP들의 의견은 구글과 같이 해당 사업자가 가진 콘텐츠를 접속의 형태로 저렴하게 붙이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는 조금 다른 이야기임
- o (□□□) 아까 주파수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IoT 서비스의 경우, 아직도 비면허 대역을 그냥 쓰고 계시는 것인지?
- o (LGU+) SKT만 비면허 대역(LoRA)을 사용하고 있고, KT와 LGU+는 LTE 망 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면허대역(NB-IoT)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됨
- o (△△△) IoT 시장 규모가 더 커지면 주파수 대역이 더 필요하겠네요?
- o (LGU+) 그래서 5G+ 회의에서 비면허 대역 사용에 대한 이슈로 논의한 바 있음
- o (○○○) AR·VR의 경우, 수직계열화 가능성이 있어서 Open ATI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Open ATI로 가야 AWS로의 이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함
- o (LGU+) 저희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AR·VR 서비스는 없음
- o (방통위 반상권 과장) 통신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통신사와의 제휴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점, 독립적으로 AR·VR 서비스를 제공하는 CP가 등장해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됨
- o (LGU+)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음. 말씀하신 우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5G와 같이 초기 단계에는 사용할 서비스가 없다보니,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움직여 킬러 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용자의 요구사항도 있는 반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요구도 공존하여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음
- o (방통위 반상권 과장) 통신사 쪽에서는 콘텐츠가 없다고 하는데, CP들은 이미 AR·VR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 이외의 다른 서비스들이 나온다고 할 지라도 해당 서비스를 통신사 망에 실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음
- o (LGU+) 전체를 수용할 수 없으니, 제휴라는 이름으로 일부라도 수용하려고 하는 것임
- o (□□□)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 서비스 구현 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로부터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에 전체 토의와 2소위 위원 토의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자에게서도 함께 회의를 하시다 종료하는

것은 어떠실지?

- (전체 참석자) 이견 없는 것으로 동의
- (□□□) 그럼 짧게 휴식 후 논의 재개하도록 하겠음

3) 2소위 위원 토의

- (△△△) 지금부터 논의를 재개하겠음
- (○○○) 발제자께서 정리를 잘 해주신 덕분에 혼란스러웠던 제 생각이 정리될 수 있었음. 발표하신 내용 중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고, 이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 보통 5G 시대에는 B2C를 넘어 B2B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사업자 등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5G 기술에서 B2B는 시기상조이고, 6G, 7G 단계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함. 이에 사업자 분들의 의견을 여쭙보고 싶음
 - 그리고 발표 내용 중 ICT 생태계에서 이용자들의 역할이 변화(수동적 소비자→새로운 투입 요소로서 생산자)함에 따라, C-P-N-D-U의 순환적 생태계로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음
 - 발제문 4페이지에 보면, 이용자의 역할이 알고리즘에 대한 비판적, 합리적 통제자로까지 확대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통제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피드백을 하고, 사용 정보를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가게 하는 것 이외에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쭙보고 싶음
 - 또한, 이용자 범위를 사물로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자에 대한 개념과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정책철학과 법 제도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물을 이용자로 볼 경우, 이용자 정책 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음. 이와 같은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주셨으면 함
 -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
 - (개인정보 관련) 개인적으로 Opt-out이 사전동의와 효과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물론 Opt-out을 원하면 Opt-out 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겠지만, Opt-out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전동의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은 Opt-out 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할 것임
 -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자 간 생산성 격차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그 이유는 보통 정부가 투자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생기기 때문. 또 민간이 투자해서 구매하는 경우 보다 훨씬 싸게 지불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 전반적으로 서비스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우려가 있음. 특히, 상용망 사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 (□□□) 디지털 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 모바일 네트워크 등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문제발생 시 사후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앞으로 5G, 6G를 할 때에는 그동안과 조금 다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 정부에서는 관련된 것들 중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개인정보 갈등을 보면, 부작용으로 생기는 사회적 반작용, 또는 비용이 상당 수준 올라가 있고 거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같이 손을 맞잡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음
 - 또한, 해외 국가들을 보면 자국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 등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음. 국내 역시도 역외적용, 국내 대리인 제도 등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향후에도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나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람
 - 5G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B2G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정부가 여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마지막으로, 지난 달 OECD 글로벌 보안 포럼에서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음. 이스라엘의 경우,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에게 정부 펀딩을 원하는지 물었더니 정부 지원은 필요 없고, 정부의 역할은 새로운 제품을 사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 이스라엘에서는 정부가 저가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RFP 초기부터 여러 개의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고 있어 국내의 조달시장과 완전히 다름
 -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정부의 역할에는 자금지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 정부가 모든 형태의 상품에 대해 테스트베드가 되어 줄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이라도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o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고자 함. 금일 회의에 CP측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에도 원칙적인 이야기만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통신사의 입장에서 지원을 바라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5G 투자에 금년 5조 이상 투입되었고, 내년에는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있을 계획임
 - 5G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목록치 않은 것 같음
 - 저희가 B2B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5G 특성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제한되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예외를 인정해주셨으면 함
 - 그리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데이터 3법이 패스트트랙법안 때문에 불모로 잠혀 있는데, 국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적정성 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려는 CP에게도 제약사항이 되는 바,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얼마 전 투자세액 공제 제도가 12.12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00억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설비 투자를 위해 재투입될 것임. 하지만 기재위에서는 세수가 줄어들다보니 반대가 심한 상황이며, 기재부나 국회에서는 통신 3사가 대기업이고 경쟁 관계에 있어 내버려둬도 투자할텐데, 왜 도와주냐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음.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짐

* 기존에는 수도권 5G 설비 구축비용의 1%(비수도권은 공사비 제외한 비용의 3%)를 세액공제 하였는데, 내년에는 1% 상향되어 수도권에서 2%, 비수도권에서는 공사비를 포함한 비용의 3%를 세액공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는 핵심 인프라로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5G 경험/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과거 일본이 장악했던 시장이나,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맞물려 인도네시아에서 국내 통신사에게 5G 경험을 공유하자고 하는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 아울러, 통신사를 대신하여 저희가 운영 중인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3사가 5,000억 정도를 펀딩하여, 이를 가지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하거나, 거기서 발생한 수입의 일부로 중소 벤처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음. 이런 부분들도 공유하시어 사업자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함

※ 현재 KTOA 건물 2개 층에 12개 업체가 입주하여 3사의 지원 하에 활동 중

○ (△△△) 발제자님, 앞서 ○○○ 질문사항에 대한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 (발제자) ○○○께서 크게 두 가지 정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첫째로, 이용자가 합리적 통제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주권 측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는데, 현재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이 빅데이터화 되어 사업자의 생산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용자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임. 구체적으로 현행 법 체계에서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와 같은 적극적 행사 내지는 사업자가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는 등 사업자에게 허들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음
- 둘째로, Opt-in과 Opt-out의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Opt-in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불필요한 사전적 절차가 되어버렸다는 것임. 즉, 기업이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들을 사전에 세팅해야 하는데, 이것들이 개인정보 활용에 허들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 법에는 Opt-in과 Opt-out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시작 단계에서의 허들을 없애는 것이 비용 절감이나 새로운 서비스 진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음

○ (○○○) 그럼 사전 동의 완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 (발제자) 맞음. 서비스 가입 시 현행 법 제도에서는 사전 동의를 고지하고, 이용기간 및 이용 목적 등을 별도로 고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는 점에서 완화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음

- (□□□) 몇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음. 이는 유럽의 GDPR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현재 개정된 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로 있어서, 독립성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짐
 - 또한, 신용정보/의료정보의 경우, 워낙 개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의료정보의 경우에는 익명화되면 정보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므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가명정보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음. 차라리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음
 - 그 외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비식별화 조치를 할 때 보안문제, 익명화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영향평가 등 이런 후속조치를 얼마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하여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님
 - 그리고 5G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언급된 특성들은 maximum 기준이라는 점임. 최종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특성을 체감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에 있어서 망 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 일단 망 중립성 완화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ex. 자율주행차, 긴급의료서비스 등)를 제공해 봄으로써,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 정말로 초저지연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그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센서에 의해 현재의 교통상황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5G 망을 통해 정보를 내려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 이러한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5G 망 말고, LTE-Advanced 망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이에 먼저 망 중립성 완화를 선행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일단 이런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더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함
- (△△△) 지금까지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협력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보니, 5G만 별도로 구분하여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음
 - 특히, 자율주행차/IoT/스마트시티 등의 서비스들은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오늘 회의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를 논의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3법이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1소위와 2소위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전반적 이슈들을 다뤘던 것 같은데, KISDI에서 의견 요청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사업자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취합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음
 -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상으로 2소위 마지막 회의를 마치겠음

4) 마무리(차기 회의 일정 등)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2소위는 3차 회의(12.13)를 마지막으로 종료

- 사업자 의견 수렴 및 위원들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예정(1월 중)이며, 서면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 진행 예정